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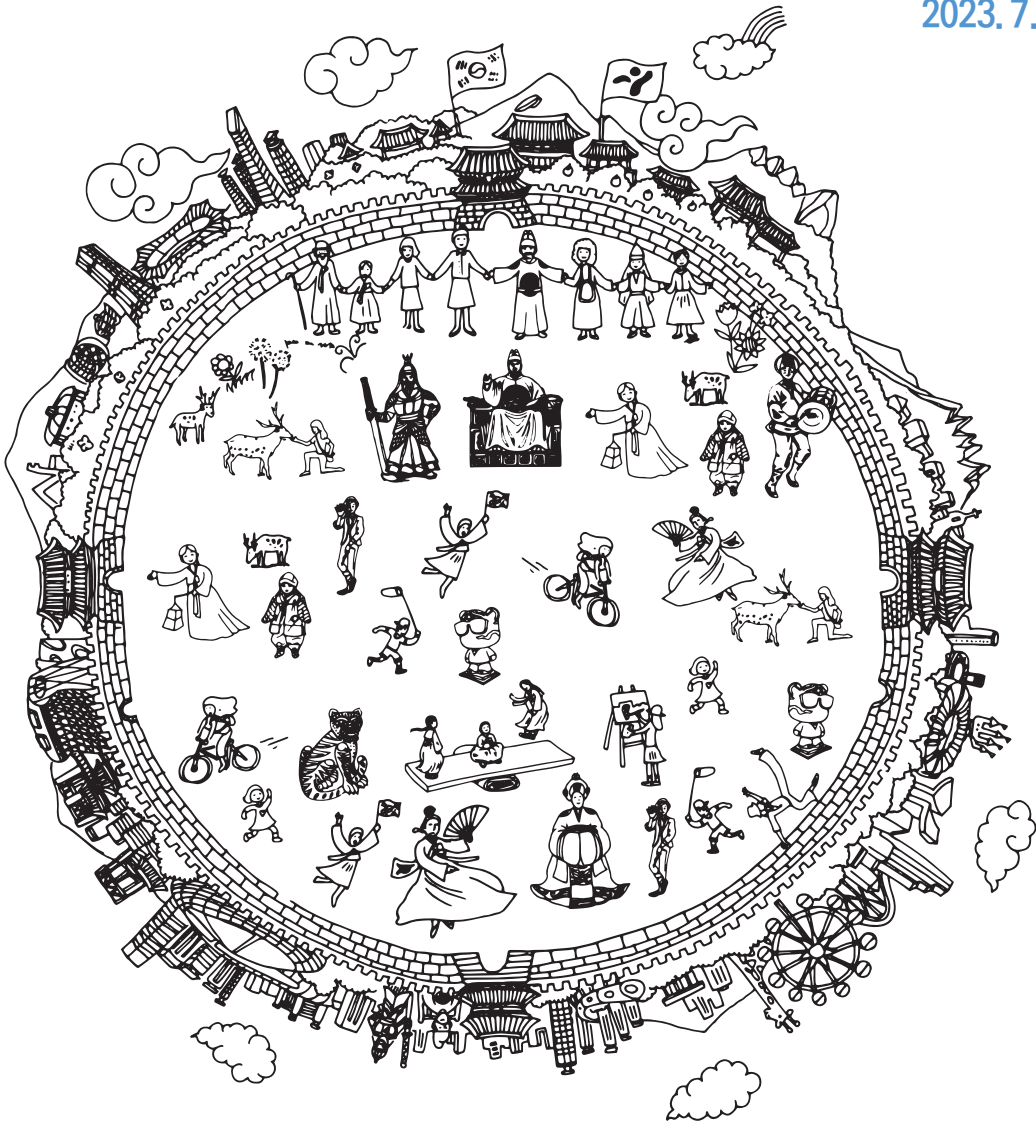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91호
2023. 7. 20.(목)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3 - 2122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 고 시

제2023 - 299호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36차) 승인 고시	16
제2023 - 301호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76
제2023 - 30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취소 고시	93
제2023 - 303호	관악구 신림동 75 - 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95
제2023 - 304호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	110
제2023 - 305호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17
제2023 - 306호	방배1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32
제2023 - 307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장위1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64
제2023 - 308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10
제2023 - 309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212

◆ 공 고

제2023 - 1998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215
제2023 - 2071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216
제2023 - 2072호	회계직인 폐기 공고	217
제2023 - 2079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218
제2023 - 2083호	회계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220
제2023 - 2086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222
제2023 - 209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223
제2023 - 2092호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재공람공고	224

제2023 - 2096호	「2023년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226
제2023 - 209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39
제2023 - 2103호	처분사전통지서(비영리민간단체 말소) 공고	241
제2023 - 2105호	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44
제2023 - 2110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245
제2023 - 2111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공고)	248
제2023 - 2113호	공시송달공고	261
제2023 - 2114호	공시송달공고	263
제2023 - 211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265
제2023 - 2118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공고	266
제2023 - 2120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267

◆ 구 고 시

제2023 - 96호	도시계획시설(소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종로구)	268
제2023 - 13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마포구)	272
제2023 - 8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274
제2023 - 98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초구)	286
제2023 - 116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동구)	288

◆ 구 공 고

제2023 - 88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열람공고(동대문구)	291
제2023 - 888호	도시관리계획[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KT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동대문구)	293
제2023 - 987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도봉구)	297
제2023 - 1123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공사완료 공고(마포구)	300
제2023 - 1251호	도시계획시설(온수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재열람공고 (양천구)	301
제2023 - 11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동작구)	302
제2023 - 1625호	도시관리계획(서리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A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 재열람공고(서초구)	308

◆ 기 타

제2023 - 23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310
제2023 - 236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311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122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개정(' 22.8월)에 따라 위성영상 공간정보의 등급 분류기준을 변경하고, 실정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우리시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비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및 별표 2)
- 나.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명칭 및 기준내용을 변경(안 제6조 및 별표1)
- 다.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설치 조항 삭제(안 제20조)
- 라.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공간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E - mail: jehee21@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층 공간정보담당관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공간정보담당관(☎02 - 2133 - 2856)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간정보담당관”을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각급기관의 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비치한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별표 2를 각급기관의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등급별 공간정보의”를 “공간정보 세부”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제6조 관련)

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공간정보	등 급	분류기준
항공사진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개제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좌표(經·緯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經·緯·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개제한	○ 정밀 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1.5m 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 단,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

전자지도	비공개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개제한	○ 군사지도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단,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
해양공간정보	비공개	○ 접경해역 수심 자료 ○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개제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 ○ 해도, 전자해도 등
기타 공간정보	비공개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시스템, 주소정보기본도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 개 제 한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 개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 주소정보 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을 제외한 주소정보안내도

[별 표 2]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가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서울특별시가 생산·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를 현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가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그 밖의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를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 라. 그 밖에 현 보관장소에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를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하거나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4. 반출절차

가.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제3호의 상황에 따른 반출시기로 파악될 경우에는 즉시 각급기관의 장의 반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나. 보관책임자의 반출조치

(1)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반출요원

보관책임자(부) 및 그 소속직원이 반출요원이 된다.

(2) 반출

반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를 반출장소* 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 반출장소 : 보안담당관은 반출장소를 지정하여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보관 용기 내부에 반출장소를 기재하여 비치한다. 보안담당관은 상황에 따라 반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3)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반출요원 또는 지정된 보조요원이 행한다.

5. 파기절차

- (1) 파기절차는 제4호에서 정하는 반출절차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다.
- (2) 적, 무장공비, 폭도, 그 밖의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의 안전반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를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6. 최종확인 및 보고

보안담당관은 반출 또는 파기 여부를 확인 후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 제공(복제·출력) 관리대장

일자	공간정보	자료 구분	건수 (매수)	출력자 (복제자)	제공사유	열람·수령자		예고문	보관 책임자
						소속	성명		

※ 자료구분란에는 “비공개” 또는 “공개 제한”으로 기재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u>공간정보담당관</u>(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된다. 1. 2. (생략) 제5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u>각급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보안문서 및 전산·공간정보에 대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아래 각 호를 반영하여 작성·비치하고 비상시 본 계획에 따라 행동한다.</u> 1. 목적 2. 적용범위 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 4.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② <u>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안전지출장소, 운반기구 등에 대한 지출계획표를 작성·비치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비상시 지휘계통이 없을 때를 중점으로 작성·비치한다.</u>	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 ----- <u>공간정보 보안담당관</u> ----- -----. 1. 2. (현행과 같음) 제5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u>각급기관의 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비치한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별표 2를 각급기관의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u>
제6조(공간정보의 분류) ① <u>각급기관의 장은 생산 공간정보를 별표1의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비공개", "공개제한" 또는 "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 제20조(공간정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u>시장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	제6조(공간정보의 분류) ① ----- ----- <u>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u> ----- ----- <삭 제>

현행	개정안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분류 기준 3.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관련 보안대책 4.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3조의 서울특별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99호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36차) 승인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 - 82호(2018.03.22.)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35차) 고시된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02 - 2133 - 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계획처 도시개발계획부(☎02 - 3410 - 7590)에서 각각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주요 변경내용]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1) 사업구역면적 축소

- (기정) 1,690,253.6㎡ → (변경) 1,690,171.6㎡, 감)82㎡
- 변경사유 : 관리청(KR)협의 결과 수색-광명 복선전철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토지인 상암동 1156 - 3(현재1156 - 12번지) 제척

(2) 6,7공구 개발기간 변경 및 8공구 신설

- 공구분할 : 6공구 → 6,8공구

구 분	사 업 준 공 일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기 정	2012.06.30	2006.12.31	2010.01.31	2011.12.31	2012.06.30	2018.12.31	2018.12.31	-
변 경	(사업준공)	(사업준공)	(사업준공)	(사업준공)	(사업준공)	2025.12.31	2025.12.31	2025.12.31

※ 변경사유

- 조속한 사업 준공을 위한 추가 공구 분할(8공구)
- 국공유지 수용협의 지연, 확정측량 결과 반영 등 사업준공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필요

(3) 6공구 계획 변경

- 구룡사거리 확대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광로2 - 2, 대로 2 - 13)
- 하수도시설 면적 조정

※ 변경사유

-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사업계획 반영

(4)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

번호	구분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기정	상암동	1156-3	답	812	82	국(철도청)	-	-	-	-	-
	제척	-	-	-	-	-	-	-	-	-	-	-
2	기정	성산동	496-4	대	96	96	(국)	-	-	-	-	-
	변경	성산동	496-4	대	96	96	국(기획재정부)	-	-	-	-	-

※ 변경사유

- 관리청 협의에 따른 제척 및 관리청 변경에 따른 토지조서 최신화

(5) 무상귀속 지번 및 관리청 변경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관 리 청	실제이용상황				비고
					공부	편입	무상 귀속		공공시설			공공 시설외	
									도로	구거	하천		
1	기정	상암동	1156-3	답	812	82	82	국(철도청)	82	-	-	-	-
	제척	-	-	-	-	-	-	-	-	-	-	-	-
2	기정	성산동	496-4	대	96	96	96	서울특별시	96	-	-	-	-
	변경	성산동	496-4	대	96	96	96	국(기획재정부)	96	-	-	-	-

※ 변경사유

- 관리청 협의에 따른 제척 및 관리청 변경에 따른 토지조서 최신화

(6) 사업시행자 변경

-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시장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I.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서울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변경

(1) 사업시행자 명칭 : 서울특별시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3) 대표자 성명

- 기정 : 서울특별시시장 박 원 순
- 변경 : 서울특별시시장 오 세 훈

3. 개발계획의 개요 : 변경

가. 개발 목적 : 변경없음

- (1) 정부의 장단기 주택건설 정책에 부응
- (2)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 공급
- (3) 서울 대도시권 서북부지역 부도심 형성
- (4)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로 체계적인 도시 성장에 기여
- (5) 경제적인 택지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라. 교통에 관한 계획 : 변경

(1) 도로 : 변경

구분	폭원 (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총계	기정	-	17,504.7	459,389.7	10	3,680.0	148,339.3	6(2)	1,030.2	15,921.7	11(3)	2,387.0	44,855.3	25(2)	8,578.5	204,181.3	2	678.0	17,472.1	1	99.0	908.0	1(2)	1,052.0	27,712.0	-	-	-
	변경	-	17,584.7	459,520.3	10	3,540.0	148,339.3	6(2)	1,030.2	15,921.7	11(3)	2,387.0	44,855.3	25(2)	8,578.5	204,181.3	2	678.0	17,472.1	3	319.0	1,120.6	1(2)	1,052.0	27,630.0	-	-	-
소계	기정	-	1(1)	1,838.0	97,268.6	1	1,838.0	96,827.2	(1)	-	30.5	(1)	-	410.9	-	-	-	-	-	-	-	-	-	-	-	-	-	-
	변경	-	2(1)	1,838.0	97,391.5	1	1,698.0	96,827.2	(1)	-	30.5	(1)	-	410.9	-	-	-	-	-	-	1	140.0	122.9	-	-	-	-	-
1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2류	기정	50	1(1)	1,838.0	97,268.6	1	1,838.0	96,827.2	(1)	-	30.5	(1)	-	410.9	-	-	-	-	-	-	-	-	-	-	-	-	-	-
	변경	50	2(1)	1,838.0	97,391.5	1	1,698.0	96,827.2	(1)	-	30.5	(1)	-	410.9	-	-	-	-	-	-	1	140.0	122.9	-	-	-	-	-
3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기정	-	8(8)	7,592.2	228,558.5	2	758.0	33,977.6	(2)	168.2	2,244.0	(2)	-	202.7	5,156.0	147,842.6	1	458.0	16,579.6	-	-	-	1(2)	1,052.0	27,712.0	-	-	-
	변경	-	9(8)	7,672.2	228,566.2	2	758.0	33,977.6	(2)	168.2	2,244.0	(2)	-	202.7	5,156.0	147,842.6	1	458.0	16,579.6	1	80.0	89.7	1(2)	1,052.0	27,630.0	-	-	-
1류	기정	30	1(1)	1,195.0	49,616.5	-	-	-	-	-	-	(1)	-	80.0	1,195.0	49,536.5	-	-	-	-	-	-	-	-	-	-	-	-

구분	폭원 (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2류	기정	25	1(1)	1,032.0	44,229.1	1	744.0	32,773.9	-	-	-	-	-	-	-	-	-	-	-	-	-	-	(1)	288.0	11,455.2	-	-	-		
	변경	25	2(1)	1,112.0	44,318.8	1	744.0	32,773.9	-	-	-	-	-	-	-	-	-	-	-	-	-	-	(1)	288.0	11,455.2	-	-	-		
	기정	25	6(6)	5,365.2	134,712.9	1	14.0	1,203.7	2	168.2	2,244.0	(1)	-	122.7	3(2)	3,961.0	98,306.1	1	458.0	16,579.6	-	-	-	1(1)	764.0	16,256.8	-	-	-	
	변경	25	6(6)	5,365.2	134,630.9	1	14.0	1,203.7	2	168.2	2,244.0	(1)	-	122.7	3(2)	3,961.0	98,306.1	1	458.0	16,579.6	-	-	-	1(1)	764.0	16,174.8	-	-	-	
소계	기정	-	19	5,305.0	104,747.0	5	954.0	16,508.8	1	489.0	10,388.0	4	1,875.0	40,266.4	9	1,987.0	37,583.8	-	-	-	-	-	-	-	-	-	-	-	-	
	기정	15	10	3,474.0	75,706.7	1	257.0	5,406.1	1	489.0	10,388.0	4	1,875.0	40,266.4	4	853.0	19,646.2	-	-	-	-	-	-	-	-	-	-	-	-	
	기정	12	9	1,831.0	29,040.3	4	697.0	11,102.7	-	-	-	-	-	-	5	1,134.0	17,937.6	-	-	-	-	-	-	-	-	-	-	-	-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기정	-	9	847.0	6,806.8	2	130.0	1,025.7	2	114.0	714.4	2	284.0	2,365.9	2	220.0	1,792.8	-	-	-	1	99.0	908.0	-	-	-	-	-	-	-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정	8	4	498.0	4,455.6	-	-	-	-	-	-	2	284.0	2,365.9	1	115.0	1,181.7	-	-	-	1	99.0	908.0	-	-	-	-	-	-	-
	기정	8	5	349.0	2,351.2	2	130.0	1,025.7	2	114.0	714.4	-	-	-	1	105.0	611.1	-	-	-	-	-	-	-	-	-	-	-	-	-

중 구

수 구

구분	폭원 (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포행자전역내리	소계	기정	-	19	1,922.5	22,008.8	-	-	-	3	259.0	2,544.8	5	228.0	1,609.4	10	1,215.5	16,962.1	1	220.0	892.5	-	-	-	-	-	-	
		잔량	1류	15	2	352.0	7,242.7	-	-	-	-	-	-	-	-	-	2	352.0	7,242.7	-	-	-	-	-	-	-	-	
			2류	10	1	297.0	4,456.0	-	-	-	-	-	-	-	-	-	1	297.0	4,456.0	-	-	-	-	-	-	-	-	
			3류	-	-	-	-	-	-	-	-	-	-	-	-	-	-	-	-	-	-	-	-	-	-	-	-	
		수량	1류	8	5	721.0	7,243.4	-	-	-	1	242.0	2,426.3	-	-	-	4	479.0	4,817.1	-	-	-	-	-	-	-	-	
포행자전역내리	소계	기정	8	1	16.0	113.3	-	-	-	1	16.0	113.3	-	-	-	-	-	-	-	-	-	-	-	-	-	-		
		2류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포행자전역내리	소계	기정	-	10	536.5	2,953.4	-	-	-	1	1.0	5.2	5	228.0	1,609.4	3	87.5	446.3	1	220.0	892.5	-	-	-	-	-	-	
		2류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안의 숫자는 1개노선의 공구별 종복 신장값임
주) 5공구 노선수 총계 오기 정정(기정:1 / 정정:2)

- (2) 주차장(변경없음) : 생략
 (3) 광장(변경없음) : 생략
 마. 대상토지의 단계별 구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바.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4. 개발기간 : 변경

가. 사업 착수일 : 1998년 6월 11일

나. 사업 준공일

구 분	사 업 준 공 일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기 정	2012.06.30	2006.12.31	2010.01.31	2011.12.31	2012.06.30	2018.12.31	2018.12.31	-
변 경	(사업준공)	(사업준공)	(사업준공)	(사업준공)	(사업준공)	2025.12.31	2025.12.31	2025.12.31

※ 공구분할 : 6공구 → 6,8공구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 : 변경

- 기 정

구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구성비 (%)	비고
합계	1,690,253.6	240,359.1	140,107.4	286,931.9	553,263.9	46,673.7	175,095.3	247,822.3	100.0	
주택건설용지	266,090.3	1,101.9	72,357.2	183,345.9	9,285.3	-	-	-	15.7	
공동주택	252,003.1	-	72,336.7	179,666.4	-	-	-	-	14.8	
주상복합	9,285.3	-	-	-	9,285.3	-	-	-	0.5	
단독주택	20.5	-	20.5	-	-	-	-	-	0.1	
근린생활시설	4,781.4	1,101.9	-	3,679.5	-	-	-	-	0.3	
공공시설용지	1,424,163.3	239,257.2	67,750.2	103,586.0	543,978.6	46,673.7	175,095.3	247,822.3	84.3	
도로	459,389.7	148,339.3	15,921.7	44,855.3	204,181.3	17,472.1	908.0	27,712.0	27.2	
상업시설	26,022.5	20,644.1	-	-	5,378.4	-	-	-	1.5	4개소
숙박업무시설	34,184.5	-	-	-	34,184.5	-	-	-	2.0	2개소
업무시설	150,931.4	12,029.5	-	-	138,901.9	-	-	-	8.9	
교육연구시설	7,878.5	-	-	-	7,878.5	-	-	-	0.5	
방송시설	34,270.1	-	-	-	34,270.1	-	-	-	2.0	2개소
주차장	10,249.2	2,375.6	-	2,342.0	5,531.6	-	-	-	0.6	4개소
광장	2,863.5	468.6	-	-	-	-	-	2,394.9	0.2	2개소

구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구성비 (%)	비고
공원	185,257.1	2,896.8	1,511.3	3,026.5	28,572.3	-	149,250.2	-	11.0	
녹지	75,503.1	15,250.5	18,697.2	12,209.0	20,210.4	4,252.5	-	4,883.5	4.5	완:31개소, 경관:10개소
하천	1,257.0	-	-	-	-	1,257.0	-	-	0.1	1개소
공공청사	10,076.4	-	-	1,817.8	1,144.6	-	7,114.0	-	0.6	
학교	67,173.6	-	11,599.0	32,063.4	23,511.2	-	-	-	4.0	학교:6개소
사회복지시설	22,090.9	-	17,907.2	991.3	-	3,192.4	-	-	1.3	4개소
종교시설	9,072.1	1,290.8	1,228.1	3,371.6	654.5	2,527.1	-	-	0.5	11개소
도시형공장	17,024.7	-	-	-	17,024.7	-	-	-	1.0	1개소:지상권 설정(507㎡)
자동차정류장	9,456.5	-	-	-	-	9,456.5	-	-	0.6	2개소
전기공급설비	3,917.0	-	-	316.0	-	-	3,601.0	-	0.2	
운동장및시장	211,405.8	-	-	-	-	-	-	211,405.8	12.5	1개소
철도시설	1,662.7	236.6	-	-	-	-	-	1,426.1	0.1	2개소
하수도시설	3,212.9	-	-	-	89.9	-	3,123.0	-	0.2	
차고지	6,901.6	-	-	-	-	6,901.6	-	-	0.4	4개소
가스충전소	1,614.5	-	-	-	-	1,614.5	-	-	0.1	1개소
문화및집회· 업무시설	35,212.8	35,212.8	-	-	-	-	-	-	2.1	1개소
문화시설	11,099.1	-	-	-	-	-	11,099.1	-	0.6	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463.1	-	-	1,463.1	-	-	-	-	0.1	1개소
교육연구· 첨단업무시설	15,232.7	-	-	-	15,232.7	-	-	-	0.9	1개소
상업위락시설	7,212.0	-	-	-	7,212.0	-	-	-	0.4	1개소
공동구	512.6	512.6	-	-	-	-	-	-	0.1	1개소
유치원	2,015.7	-	885.7	1,130.0	-	-	-	-	0.1	2개소

- 변경

구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구성비 (%)	비고
합계	1,690,171.6	240,359.1	140,107.4	286,931.9	553,263.9	46,673.7	14,746.0	247,740.3	160,349.3	100.0	
주택건설용지	266,090.3	1,101.9	72,357.2	183,345.9	9,285.3	-	-	-	-	15.7	
공동주택	252,003.1	-	72,336.7	179,666.4	-	-	-	-	-	14.8	
주상복합	9,285.3	-	-	-	9,285.3	-	-	-	-	0.5	
단독주택	20.5	-	20.5	-	-	-	-	-	-	0.1	
근린생활시설	4,781.4	1,101.9	-	3,679.5	-	-	-	-	-	0.3	
공공시설용지	1,424,081.3	239,257.2	67,750.2	103,586.0	543,978.6	46,673.7	14,746.0	247,740.3	160,349.3	84.3	
도로	459,520.3	148,339.3	15,921.7	44,855.3	204,181.3	17,472.1	1,120.6	27,630.0	-	27.2	
상업시설	26,022.5	20,644.1	-	-	5,378.4	-	-	-	-	1.5	4개소
숙박업무시설	34,184.5	-	-	-	34,184.5	-	-	-	-	2.0	2개소
업무시설	150,931.4	12,029.5	-	-	138,901.9	-	-	-	-	8.9	
교육연구시설	7,878.5	-	-	-	7,878.5	-	-	-	-	0.5	
방송시설	34,270.1	-	-	-	34,270.1	-	-	-	-	2.0	2개소
주차장	10,249.2	2,375.6	-	2,342.0	5,531.6	-	-	-	-	0.6	4개소
광장	2,863.5	468.6	-	-	-	-	-	2,394.9	-	0.2	2개소
공원	185,257.1	2,896.8	1,511.3	3,026.5	28,572.3	-	-	-	149,250.2	11.0	
녹지	75,503.1	15,250.5	18,697.2	12,209.0	20,210.4	4,252.5	-	4,883.5	-	4.5	원:31개소, 경관:10개소
하천	1,257.0	-	-	-	-	1,257.0	-	-	-	0.1	1개소
공공청사	10,076.4	-	-	1,817.8	1,144.6	-	7,114.0	-	-	0.6	
학교	67,173.6	-	11,599.0	32,063.4	23,511.2	-	-	-	-	4.0	학교:6개소
사회복지시설	22,090.9	-	17,907.2	991.3	-	3,192.4	-	-	-	1.3	4개소
종교시설	9,072.1	1,290.8	1,228.1	3,371.6	654.5	2,527.1	-	-	-	0.5	11개소
도시형공장	17,024.7	-	-	-	17,024.7	-	-	-	-	1.0	1개소:지상권 설정(507㎡)
자동차정류장	9,456.5	-	-	-	-	9,456.5	-	-	-	0.6	2개소
전기공급설비	3,917.0	-	-	316.0	-	-	3,601.0	-	-	0.2	
운동장및시장	211,405.8	-	-	-	-	-	-	211,405.8	-	12.5	1개소
철도시설	1,662.7	236.6	-	-	-	-	-	1,426.1	-	0.1	2개소
하수도시설	3,000.3	-	-	-	89.9	-	2,910.4	-	-	0.2	
차고지	6,901.6	-	-	-	-	6,901.6	-	-	-	0.4	4개소

구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구성비 (%)	비고
가스충전소	1,614.5	-	-	-	-	1,614.5	-	-	-	0.1	1개소
문화및집회· 업무시설	35,212.8	35,212.8	-	-	-	-	-	-	-	2.1	1개소
문화시설	11,099.1	-	-	-	-	-	-	-	11,099.1	0.6	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463.1	-	-	1,463.1	-	-	-	-	-	0.1	1개소
교육연구· 첨단업무시설	15,232.7	-	-	-	15,232.7	-	-	-	-	0.9	1개소
상업위락시설	7,212.0	-	-	-	7,212.0	-	-	-	-	0.4	1개소
공동구	512.6	512.6	-	-	-	-	-	-	-	0.1	1개소
유치원	2,015.7	-	885.7	1,130.0	-	-	-	-	-	0.1	2개소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다.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1) 도로 : 변경

(가) 도로 총괄표

구분	폭원 (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총계	기정	-	56(9)	17,504.7	459,389.7	10	3,680.0	148,339.3	6(2)	1,030.2	15,921.7	11(3)	2,387.0	44,855.3	25(2)	8,578.5	204,181.3	2	678.0	17,472.1	1	99.0	908.0	1(2)	1,052.0	27,712.0	-	-	
	변경	-	58(9)	17,584.7	459,520.3	10	3,540.0	148,339.3	6(2)	1,030.2	15,921.7	11(3)	2,387.0	44,855.3	25(2)	8,578.5	204,181.3	2	678.0	17,472.1	3	319.0	1,120.6	1(2)	1,052.0	27,630.0	-	-	
	기정	-	1(1)	1,838.0	97,268.6	1	1,838.0	96,827.2	(1)	-	30.5	(1)	-	410.9	-	-	-	-	-	-	-	-	-	-	-	-	-	-	
	변경	-	2(1)	1,838.0	97,391.5	1	1,698.0	96,827.2	(1)	-	30.5	(1)	-	410.9	-	-	-	-	-	-	1	140.0	122.9	-	-	-	-	-	
1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정	50	1(1)	1,838.0	97,268.6	1	1,838.0	96,827.2	(1)	-	30.5	(1)	-	410.9	-	-	-	-	-	-	-	-	-	-	-	-	-	-	
	변경	50	2(1)	1,838.0	97,391.5	1	1,698.0	96,827.2	(1)	-	30.5	(1)	-	410.9	-	-	-	-	-	-	1	140.0	122.9	-	-	-	-	-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류	기정	-	8(8)	7,592.2	228,558.5	2	758.0	33,977.6	(2)	168.2	2,244.0	(2)	-	202.7	4(2)	5,156.0	147,842.6	1	458.0	16,579.6	-	-	-	1(2)	1,052.0	27,712.0	-	-	
	변경	-	9(8)	7,672.2	228,566.2	2	758.0	33,977.6	(2)	168.2	2,244.0	(2)	-	202.7	4(2)	5,156.0	147,842.6	1	458.0	16,579.6	1	80.0	89.7	1(2)	1,052.0	27,630.0	-	-	
	기정	30	1(1)	1,195.0	49,616.5	-	-	-	-	-	-	-	(1)	-	80.0	1	1,195.0	49,536.5	-	-	-	-	-	-	-	-	-	-	
	기정	25	1(1)	1,032.0	44,229.1	1	744.0	32,773.9	-	-	-	-	-	-	-	-	-	-	-	-	-	-	(1)	288.0	11,455.2	-	-	-	
2류	25 변경	25 ~35	2(1)	1,112.0	44,318.8	1	744.0	32,773.9	-	-	-	-	-	-	-	-	-	-	-	-	1	80.0	89.7	(1)	288.0	11,455.2	-	-	-

구분	목원 (㎡)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3류	기정	25 ~35	5,365.2	134,712.9	1	14.0	1,203.7	(2)	168.2	2,244.0	(1)	-	122.7	3(2)	3,961.0	98,306.1	1	458.0	16,579.6	-	-	-	1(1)	764.0	16,256.8	-	-	-
	변경	25 ~35	5,365.2	134,630.9	1	14.0	1,203.7	(2)	168.2	2,244.0	(1)	-	122.7	3(2)	3,961.0	98,306.1	1	458.0	16,579.6	-	-	-	1(1)	764.0	16,174.8	-	-	-
소계	기정	-	5,305.0	104,747.0	5	954.0	16,508.8	1	489.0	10,388.0	4	1,875.0	40,266.4	9	1,987.0	37,583.8	-	-	-	-	-	-	-	-	-	-	-	-
	1류	15	3,474.0	75,706.7	1	257.0	5,406.1	1	489.0	10,388.0	4	1,875.0	40,266.4	4	853.0	19,646.2	-	-	-	-	-	-	-	-	-	-	-	-
2류	기정	12	1,831.0	29,040.3	4	697.0	11,102.7	-	-	-	-	-	-	5	1,134.0	17,937.6	-	-	-	-	-	-	-	-	-	-	-	-
3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기정	-	847.0	6,806.8	2	130.0	1,025.7	2	114.0	714.4	2	284.0	2,365.9	2	220.0	1,792.8	-	-	-	1	99.0	908.0	-	-	-	-	-	-
	변경	-	847.0	6,713.5	2	130.0	1,025.7	2	114.0	714.4	2	284.0	2,365.9	2	220.0	1,792.8	-	-	-	1	99.0	814.7	-	-	-	-	-	-
1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류	기정	8	498.0	4,455.6	-	-	-	-	-	-	2	284.0	2,365.9	1	115.0	1,181.7	-	-	-	1	99.0	908.0	-	-	-	-	-	-
	변경	8	498.0	4,362.3	-	-	-	-	-	-	2	284.0	2,365.9	1	115.0	1,181.7	-	-	-	1	99.0	814.7	-	-	-	-	-	-
3류	기정	8 미만	349.0	2,351.2	2	130.0	1,025.7	2	114.0	714.4	-	-	-	1	105.0	611.1	-	-	-	-	-	-	-	-	-	-	-	-
소계	기정	-	1,922.5	22,008.8	-	-	-	3	259.0	2,544.8	3	228.0	1,609.4	10	1,215.5	16,962.1	1	220.0	892.5	-	-	-	-	-	-	-	-	-
	1류	15	352.0	7,242.7	-	-	-	-	-	-	-	-	-	2	352.0	7,242.7	-	-	-	-	-	-	-	-	-	-	-	-
	2류	10	297.0	4,456.0	-	-	-	-	-	-	-	-	-	1	297.0	4,456.0	-	-	-	-	-	-	-	-	-	-	-	-

구분	목원 (㎡)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3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류 기정	8	5	721.0	7,243.4	-	-	-	1	242.0	2,426.3	-	-	-	4	479.0	4,817.1	-	-	-	-	-	-	-	-	-	-	-	-
2류 기정	8 미만	1	16.0	113.3	-	-	-	1	16.0	113.3	-	-	-	-	-	-	-	-	-	-	-	-	-	-	-	-	-	-
3류 기정	-	10	536.5	2,953.4	-	-	-	1	1.0	5.2	5	228.0	1,609.4	3	87.5	446.3	1	220.0	892.5	-	-	-	-	-	-	-	-	-
합계																												

주) ()안의 숫자는 1개노선의 공구별 중복 신장값임
 주) 5공구 노선수 총계 오기 정정(기정:1 / 정정:2)

- (2) 주차장(변경없음) : 생략
 (3) 광장(변경없음) : 생략
 (4) 공원 :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계	기정	-	185,257.1	2,896.8	1,511.3	3,026.5	28,572.3	-	149,250.2	-	-	
	변경		185,257.1	2,896.8	1,511.3	3,026.5	28,572.3		-	-	149,250.2	
주요해결된 사항	소계	기정	163,536.7	-	-	-	14,286.5	-	149,250.2	-	-	
		변경	163,536.7	-	-	-	14,286.5	-	-	-	149,250.2	
	1	기정	상암동 산21임 일원	149,250.2	-	-	-	-	149,250.2	-	-	
		변경	상암동 산21임 일원	149,250.2	-	-	-	-	-	-	149,250.2	
	2	기정	상암동 313-3답 일원	14,286.5	-	-	-	14,286.5	-	-	-	
	소계	기정	-	7,434.6	2,896.8	1,511.3	3,026.5	-	-	-	-	
	여 릿 이	1	기정	상암동 1282 대 일원	2,896.8	2,896.8	-	-	-	-	-	
		2	기정	상암동 114-1전 일원	1,511.3	-	1,511.3	-	-	-	-	
		3	기정	상암동 154-5대 일원	1,522.2	-	-	1,522.2	-	-	-	
		4	기정	상암동 462-2전 일원	1,504.3	-	-	1,504.3	-	-	-	
주 제	소계	기정	-	14,285.8	-	-	-	14,285.8	-	-	-	
	1	기정	상암동 260-2답 일원	4,630.7	-	-	-	4,630.7	-	-	-	
	2	기정	상암동 203-4답 일원	3,828.6	-	-	-	3,828.6	-	-	-	
	3	기정	상암동 260-2답 일원	3,154.7	-	-	-	3,154.7	-	-	-	
	4	기정	상암동 260-2답 일원	2,671.8	-	-	-	2,671.8	-	-	-	

- (5) 녹지(변경없음) : 생략
 (6) 공공청사(변경없음) : 생략
 (7) 교육시설(학교)(변경없음) : 생략
 (8)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생략
 (9)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 생략
 (10)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생략
 (11) 운동장 및 시장(변경없음) : 생략
 (12) 철도시설(변경없음) : 생략
 (13) 하천(변경없음) : 생략
 (14) 상업용지계획(변경없음) : 생략
 (15) 종교시설(변경없음) : 생략

(16) 도시형공장(변경없음) : 생략

(17) 하수도시설 : 변경

구분		위 치	면 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계	기정	-	3,212.9	-	-	-	89.9	-	3,123.0	-	-	
	변경	-	3,000.3	-	-	-	89.9	-	2,910.4	-	-	
1	기정	고양시 덕은동 569-2천 일원	3,123.0	-	-	-	-	-	3,123.0	-	-	
	변경	고양시 덕은동 569-2천 일원	2,910.4	-	-	-	-	-	2,910.4	-	-	
2	기정	상암동 205-3천 일원	89.9	-	-	-	89.9	-	-	-	-	

(18) 가스충전소(변경없음) : 생략

(19) 차고지(변경없음) : 생략

(20) 교육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21) 공동구(변경없음) : 생략

(22) 방송시설(변경없음) : 생략

(23) 문화 및 집회·업무시설(변경없음) : 생략

(24) 문화시설 : 변경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1	기정	상암동 산21임 일원	11,099.1	-	-	-	-	-	11,099.1	-	-	박정희 기념도서관
	변경	상암동 산21임 일원	11,099.1	-	-	-	-	-	-	-	11,099.1	박정희 기념도서관

(25) 청소년수련시설(변경없음) : 생략

(26) 교육연구 또는 첨단업무시설(변경없음) : 생략

(27) 유치원용지(변경없음) : 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 변경

구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690,253.6	감) 82.0	1,690,171.6	
1공구	마포구 상암동 509-7대 일원	240,359.1	-	240,359.1	사업준공
2공구	마포구 상암동 16대 일원	140,107.4	-	140,107.4	사업준공
3공구	마포구 상암동 산21임 일원	286,931.9	-	286,931.9	사업준공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4공구	마포구 상암동 258-4답 일원	553,263.9	-	553,263.9	사업준공
5공구	마포구 상암동 470전 일원	46,673.7	-	46,673.7	사업준공
6공구	마포구 상암동 442-3전 일원	175,095.3	감) 160,349.3	14,746.0	
7공구	마포구 상암동 산53-27대 일원	247,822.3	감) 82.0	247,740.3	
8공구	마포구 상암동 산26-3임 일원	-	증) 160,349.3	160,349.3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가. 토지조서(변경분)

번호	구분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기정	상암동	1156-3	답	812	82	국(철도청)	-	-	-	-	-
	제척	-	-	-	-	-	-	-	-	-	-	-
2	기정	성산동	496-4	대	96	96	(국)	-	-	-	-	-
	변경	성산동	496-4	대	96	96	국(기획재정부)	-	-	-	-	-

8. 개발계획평면도 (Scale = 1/5,000) : 생략

II.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생략

2. 사업시행지(변경) :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509 - 7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1,690,253.6㎡ → (변경)1,690,171.6㎡ ※ 감 82.0㎡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생략

4.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 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 서울특별시
- 대 표 자 성 명 : (기정) 박 원 순 → (변경) 오 세 훈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5. 사업시행기간 : 변경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

- 사 업 착 수 일 : 실시계획 승인일
- 사 업 준 공 일

구 분	사 업 준 공 일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기 정	2012.06.30 (사업준공)	2006.12.31 (사업준공)	2010.01.31 (사업준공)	2011.12.31 (사업준공)	2012.06.30 (사업준공)	2018.12.31	2018.12.31	-
변 경						2025.12.31	2025.12.31	2025.12.31

※ 공구분할 : 6공구 → 6,8공구

나. 공종별 소요기간(변경없음) : 생략

6. 자금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7. 사업의 개요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 : 변경

- 기정

구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구성비 (%)	비고
합계	1,690,253.6	240,359.1	140,107.4	286,931.9	553,263.9	46,673.7	175,095.3	247,822.3	100.0	
주택건설용지	266,090.3	1,101.9	72,357.2	183,345.9	9,285.3	-	-	-	15.7	
공도주택	252,003.1	-	72,336.7	179,666.4	-	-	-	-	14.8	
주상복합	9,285.3	-	-	-	9,285.3	-	-	-	0.5	
단독주택	20.5	-	20.5	-	-	-	-	-	0.1	

구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구성비 (%)	비고
근린생활시설	4,781.4	1,101.9	-	3,679.5	-	-	-	-	0.3	
공공시설용지	1,424,163.3	239,257.2	67,750.2	103,586.0	543,978.6	46,673.7	175,095.3	247,822.3	84.3	
도로	459,389.7	148,339.3	15,921.7	44,855.3	204,181.3	17,472.1	908.0	27,712.0	27.2	
상업시설	26,022.5	20,644.1	-	-	5,378.4	-	-	-	1.5	4개소
숙박업무시설	34,184.5	-	-	-	34,184.5	-	-	-	2.0	2개소
업무시설	150,931.4	12,029.5	-	-	138,901.9	-	-	-	8.9	
교육연구시설	7,878.5	-	-	-	7,878.5	-	-	-	0.5	
방송시설	34,270.1	-	-	-	34,270.1	-	-	-	2.0	2개소
주차장	10,249.2	2,375.6	-	2,342.0	5,531.6	-	-	-	0.6	4개소
광장	2,863.5	468.6	-	-	-	-	-	2,394.9	0.2	2개소
공원	185,257.1	2,896.8	1,511.3	3,026.5	28,572.3	-	149,250.2		11.0	
녹지	75,503.1	15,250.5	18,697.2	12,209.0	20,210.4	4,252.5	-	4,883.5	4.5	완:31개소, 경관:10개소
하천	1,257.0	-	-	-	-	1,257.0	-	-	0.1	1개소
공공청사	10,076.4	-	-	1,817.8	1,144.6	-	7,114.0	-	0.6	
학교	67,173.6	-	11,599.0	32,063.4	23,511.2	-	-	-	4.0	학교:6개소
사회복지시설	22,090.9	-	17,907.2	991.3	-	3,192.4	-	-	1.3	4개소
종교시설	9,072.1	1,290.8	1,228.1	3,371.6	654.5	2,527.1	-	-	0.5	11개소
도시형공장	17,024.7	-	-	-	17,024.7	-	-	-	1.0	1개소:지상권 설정(507㎡)
자동차정류장	9,456.5	-	-	-	-	9,456.5	-	-	0.6	2개소
전기공급설비	3,917.0	-	-	316.0	-	-	3,601.0	-	0.2	
운동장및시장	211,405.8	-	-	-	-	-	-	211,405.8	12.5	1개소
철도시설	1,662.7	236.6	-	-	-	-	-	1,426.1	0.1	2개소
하수도시설	3,212.9	-	-	-	89.9	-	3,123.0	-	0.2	
차고지	6,901.6	-	-	-	-	6,901.6	-	-	0.4	4개소
가스충전소	1,614.5	-	-	-	-	1,614.5	-	-	0.1	1개소

구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구성비 (%)	비고
문화및집회· 업무시설	35,212.8	35,212.8	-	-	-	-	-	-	2.1	1개소
문화시설	11,099.1	-	-	-	-	-	11,099.1	-	0.6	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463.1	-	-	1,463.1	-	-	-	-	0.1	1개소
교육연구· 첨단업무시설	15,232.7	-	-	-	15,232.7	-	-	-	0.9	1개소
상업위락시설	7,212.0	-	-	-	7,212.0	-	-	-	0.4	1개소
공동구	512.6	512.6	-	-	-	-	-	-	0.1	1개소
유치원	2,015.7	-	885.7	1,130.0	-	-	-	-	0.1	2개소

- 변경

구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구성비 (%)	비고
합계	1,690,171.6	240,359.1	140,107.4	286,931.9	553,263.9	46,673.7	14,746.0	247,740.3	160,349.3	100.0	
주택건설용지	266,090.3	1,101.9	72,357.2	183,345.9	9,285.3	-	-	-	-	15.7	
공동주택	252,003.1	-	72,336.7	179,666.4	-	-	-	-	-	14.8	
주상복합	9,285.3	-	-	-	9,285.3	-	-	-	-	0.5	
단독주택	20.5	-	20.5	-	-	-	-	-	-	0.1	
근린생활시설	4,781.4	1,101.9	-	3,679.5	-	-	-	-	-	0.3	
공공시설용지	1,424,081.3	239,257.2	67,750.2	103,586.0	543,978.6	46,673.7	14,746.0	247,740.3	160,349.3	84.3	
도로	459,520.3	148,339.3	15,921.7	44,855.3	204,181.3	17,472.1	1,120.6	27,630.0	-	27.2	
상업시설	26,022.5	20,644.1	-	-	5,378.4	-	-	-	-	1.5	4개소
숙박업무시설	34,184.5	-	-	-	34,184.5	-	-	-	-	2.0	2개소
업무시설	150,931.4	12,029.5	-	-	138,901.9	-	-	-	-	8.9	
교육연구시설	7,878.5	-	-	-	7,878.5	-	-	-	-	0.5	
방송시설	34,270.1	-	-	-	34,270.1	-	-	-	-	2.0	2개소
주차장	10,249.2	2,375.6	-	2,342.0	5,531.6	-	-	-	-	0.6	4개소
광장	2,863.5	468.6	-	-	-	-	-	2,394.9	-	0.2	2개소
공원	185,257.1	2,896.8	1,511.3	3,026.5	28,572.3	-	-	-	149,250.2	11.0	
녹지	75,503.1	15,250.5	18,697.2	12,209.0	20,210.4	4,252.5	-	4,883.5	-	4.5	완:31개소, 경관:10개소
하천	1,257.0	-	-	-	-	1,257.0	-	-	-	0.1	1개소

구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구성비 (%)	비고
공공청사	10,076.4	-	-	1,817.8	1,144.6	-	7,114.0	-	-	0.6	
학교	67,173.6	-	11,599.0	32,063.4	23,511.2	-	-	-	-	4.0	학교:6개소
사회복지시설	22,090.9	-	17,907.2	991.3	-	3,192.4	-	-	-	1.3	4개소
종교시설	9,072.1	1,290.8	1,228.1	3,371.6	654.5	2,527.1	-	-	-	0.5	11개소
도시형공장	17,024.7	-	-	-	17,024.7	-	-	-	-	1.0	1개소:지상권 설정(507㎡)
자동차정류장	9,456.5	-	-	-	-	9,456.5	-	-	-	0.6	2개소
전기공급설비	3,917.0	-	-	316.0	-	-	3,601.0	-	-	0.2	
운동장및시장	211,405.8	-	-	-	-	-	-	211,405.8	-	12.5	1개소
철도시설	1,662.7	236.6	-	-	-	-	-	1,426.1	-	0.1	2개소
하수도시설	3,000.3	-	-	-	89.9	-	2,910.4	-	-	0.2	
차고지	6,901.6	-	-	-	-	6,901.6	-	-	-	0.4	4개소
가스충전소	1,614.5	-	-	-	-	1,614.5	-	-	-	0.1	1개소
문화및집회· 업무시설	35,212.8	35,212.8	-	-	-	-	-	-	-	2.1	1개소
문화시설	11,099.1	-	-	-	-	-	-	-	11,099.1	0.6	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463.1	-	-	1,463.1	-	-	-	-	-	0.1	1개소
교육연구· 첨단업무시설	15,232.7	-	-	-	15,232.7	-	-	-	-	0.9	1개소
상업위락시설	7,212.0	-	-	-	7,212.0	-	-	-	-	0.4	1개소
공동구	512.6	512.6	-	-	-	-	-	-	-	0.1	1개소
유치원	2,015.7	-	885.7	1,130.0	-	-	-	-	-	0.1	2개소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구분	폭원 (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총계	기정	-	17,504.7	459,389.7	56(9)	17,504.7	1,030.2	15,921.7	11(3)	2,387.0	44,855.3	25(2)	8,578.5	204,181.3	2	678.0	17,472.1	1	99.0	908.0	1(2)	1,052.0	27,712.0	-	-	-	-	-
	변경	-	17,584.7	459,520.3	58(9)	17,584.7	1,030.2	15,921.7	11(3)	2,387.0	44,855.3	25(2)	8,578.5	204,181.3	2	678.0	17,472.1	3	319.0	1,120.6	1(2)	1,052.0	27,630.0	-	-	-	-	-
소계	기정	-	1,838.0	97,268.6	1(1)	1,838.0	96,827.2	30.5	(1)	-	410.9	-	-	-	-	-	-	-	-	-	-	-	-	-	-	-	-	-
	변경	-	1,838.0	97,391.5	2(1)	1,838.0	96,827.2	30.5	(1)	-	410.9	-	-	-	-	-	-	-	-	-	-	-	-	-	-	-	-	-
1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류	기정	50	1,838.0	97,268.6	1	1,838.0	96,827.2	30.5	(1)	-	410.9	-	-	-	-	-	-	-	-	-	-	-	-	-	-	-	-	-
	변경	50	1,838.0	97,391.5	1	1,698.0	96,827.2	30.5	(1)	-	410.9	-	-	-	-	-	-	-	-	-	-	-	-	-	-	-	-	-
3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기정	-	7,592.2	228,558.5	2	758.0	33,977.6	168.2	2,244.0	(2)	202.7	4(2)	5,156.0	147,842.6	1	458.0	16,579.6	-	-	-	-	1(2)	1,052.0	27,712.0	-	-	-	-
	변경	-	7,672.2	228,566.2	2	758.0	33,977.6	168.2	2,244.0	(2)	202.7	4(2)	5,156.0	147,842.6	1	458.0	16,579.6	1	80.0	89.7	1(2)	1,052.0	27,630.0	-	-	-	-	-
1류	기정	30	1(1)	1,195.0	49,616.5	-	-	-	-	-	80.0	1	1,195.0	49,536.5	-	-	-	-	-	-	-	-	-	-	-	-	-	-
2류	기정	25	1(1)	1,032.0	44,229.1	1	744.0	32,773.9	-	-	-	-	-	-	-	-	-	-	-	-	(1)	288.0	11,455.2	-	-	-	-	-
	변경	25~35	1,112.0	44,318.8	1	744.0	32,773.9	-	-	-	-	-	-	-	-	-	-	-	-	-	(1)	288.0	11,455.2	-	-	-	-	-

구분	폭원 (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3류	기정	25	5,365.2	134,712.9	1	14.0	1,203.7	(2)	168.2	2,244.0	(1)	-	122.7	3(2)	3,961.0	98,306.1	1	458.0	16,579.6	-	-	-	1(1)	764.0	16,256.8	-	-	-
	변경	25	5,365.2	134,630.9	1	14.0	1,203.7	(2)	168.2	2,244.0	(1)	-	122.7	3(2)	3,961.0	98,306.1	1	458.0	16,579.6	-	-	-	1(1)	764.0	16,174.8	-	-	-
작은 단	소계	-	19	5,305.0	104,747.0	5	16,508.8	1	489.0	10,388.0	4	1,875.0	40,266.4	9	1,987.0	37,583.8	-	-	-	-	-	-	-	-	-	-	-	-
	1류	15	10	3,474.0	75,706.7	1	257.0	5,406.1	1	489.0	10,388.0	4	1,875.0	40,266.4	4	853.0	19,646.2	-	-	-	-	-	-	-	-	-	-	-
	2류	12	9	1,831.0	29,040.3	4	697.0	11,102.7	-	-	-	-	-	5	1,134.0	17,937.6	-	-	-	-	-	-	-	-	-	-	-	-
	3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단	소계	-	9	847.0	6,806.8	2	130.0	1,025.7	2	114.0	714.4	2	284.0	2,365.9	2	220.0	1,792.8	-	-	1	99.0	908.0	-	-	-	-	-	-
	1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류	8	4	498.0	4,455.6	-	-	-	-	-	2	284.0	2,365.9	1	115.0	1,181.7	-	-	-	1	99.0	908.0	-	-	-	-	-	-
보행자 전용 노면	3류	8	5	349.0	2,351.2	2	130.0	1,025.7	2	114.0	714.4	-	-	-	1	105.0	611.1	-	-	-	-	-	-	-	-	-	-	-
	소계	-	19	1,922.5	22,008.8	-	-	-	3	259.0	2,544.8	3	228.0	1,609.4	10	1,215.5	16,962.1	1	220.0	892.5	-	-	-	-	-	-	-	-
	1류	15	2	352.0	7,242.7	-	-	-	-	-	-	-	-	-	2	352.0	7,242.7	-	-	-	-	-	-	-	-	-	-	-
	2류	10	1	297.0	4,456.0	-	-	-	-	-	-	-	-	-	1	297.0	4,456.0	-	-	-	-	-	-	-	-	-	-	-
소	3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8	5	721.0	7,243.4	-	-	-	1	242.0	2,426.3	-	-	4	479.0	4,817.1	-	-	-	-	-	-	-	-	-	-	-	-

구분	폭원 (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로	2류 기정	8	160	113.3	-	-	-	1	160	113.3	-	-	-	-	-	-	-	-	-	-	-	-	-	-	-	-	-	-
	3류 기정	-	536.5	2,953.4	-	-	-	1	1.0	5.2	5	228.0	1,609.4	3	87.5	446.3	1	220.0	892.5	-	-	-	-	-	-	-	-	-

주 ()안의 숫자는 1개노선의 공구별 중복 신장값임
수) 5공구 노선수 총계 5기 정장(기정:1 / 정장:2)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도	도로 번호	시용 형태	기 능	기 점	종 점	연장 (m)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비 고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광로	2 2	일반 도로	주간선 도로	덕은동 교양시계 덕은동 579-14	대로2-13 덕은동 269-14	140	-	-	-	-	-	-	-	-	-	140 (140)	-	-	-	-	-	-	고양시
변경	광로	2 2	일반 도로	주간선 도로	덕은동 교양시계 덕은동 579-14	대로2-13 덕은동 269-14	140 (140)	-	-	-	-	-	-	-	-	-	140 (140)	122.9 (140)	-	-	-	-	-	-
기정	광로	2 93	일반 도로	주간선 도로	성신동 537-4	고양시 덕은동 269	2,498 (1,838)	96,827.2	-	30.5	-	410.9	-	-	-	-	-	-	-	-	-	-	-	-
변경	광로	2 93	일반 도로	주간선 도로	성신동 537-4	고양시 덕은동 269	2,358 (1,698)	96,827.2	-	30.5	-	410.9	-	-	-	-	-	151.2	-	-	-	-	-	-
기정	대로	1 1	일반 도로	보조간선 도로	상암동 129-2	수색동 (대로 3-32)	1,195	-	-	-	-	80.0	1,195	49,536.5	-	-	-	-	-	-	-	-	-	-

구분	등급	규모		이용 형태	기 능	기 점	종 점	연장 (m)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비 고
		등급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대로	2	13	일반 도로	주간선 도로	덕은동 83-31	향동동 5-2	6,528	-	-	-	-	-	-	-	-	-	-	6,528	-	-	-	-	-	고양시
변경	대로	2	13	일반 도로	주간선 도로	덕은동 83-31	향동동 5-2	6,528 (80)	89.7	-	-	-	-	-	-	-	-	-	6,528 (80)	89.7	-	-	-	-	
기정	대로	2	20	일반 도로	주간선 도로	성신동 53-26 (광로 2-93)	불광동 (대로 2-12)	6,723 (1,032)	44,229.1 (744)	32,773.9	-	-	-	-	-	-	-	-	-	-	(288)	11,455.2	-	-	
기정	대로	3	30	일반 도로	보조간선 도로	성신동 (대로 3-187)	상암동 129-2 (대로 1-1)	3,250 (306.2)	7,774.6 (14)	1,203.7 (168.2)	1,993.1	-	-	-	-	-	-	-	-	-	(124)	4,577.8	-	-	
기정	대로	3	32	일반 도로	주간선 도로	상암동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175 (937)	24,590.6	-	-	-	-	-	(479)	8,011.0	(458)	16,579.6	-	-	-	-	-	-	
기정	대로	3	1	일반 도로	보조간선 도로	상암동 1167-2 (중로 1-126)	수색동 (대로 3-32)	1,970	46,376.4	-	-	-	-	-	1,330	34,697.4	-	-	-	-	640	11,679.0	-	-	
변경	대로	3	1	일반 도로	보조간선 도로	상암동 1167-2 (중로 1-126)	수색동 (대로 3-32)	1,970	46,294.4	-	-	-	-	-	1,330	34,697.4	-	-	-	-	640	11,597.0	-	-	
기정	대로	3	2	일반 도로	보조간선 도로	상암동 56 (광로 2-93)	상암동 1-3 (대로 3-1)	944	23,843.4	-	-	250.9	-	-	944	23,592.5	-	-	-	-	-	-	-	-	
기정	대로	3	3	일반 도로	보조간선 도로	상암동 405 (광로 2-93)	상암동 229-13 (대로 3-1)	940	24,261.9	-	-	-	122.7	-	940	24,139.2	-	-	-	-	-	-	-	-	
기정	대로	3	4	일반 도로	보조간선 도로	상암동 302-3 (대로 1-1)	상암동 292-1 (대로 3-1)	268	7,866.0	-	-	-	-	-	268	7,866.0	-	-	-	-	-	-	-	-	
기정	중로	1	401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1186 (대로 3-1)	상암동 27-49 (대로 3-30)	257	5,406.1	257	5,406.1	-	-	-	-	-	-	-	-	-	-	-	-	-	

구분	구도	규모	이용 형태	기 능	기 점	중 점	연장 (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비 고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중로	1 1	일반 도로	직산 도로	상암동 73 (대로3-2)	상암동 산6 (대로3-30)	489	10,388.0	-	-	489	10,388.0	-	-	-	-	-	-	-	-	-	-	-	-	
기정	중로	1 2	일반 도로	직산 도로	상암동 98 (대로3-2)	상암동 876 (대로3-3)	164	4,494.2	-	-	-	-	-	-	164	4,494.2	-	-	-	-	-	-	-	-	
기정	중로	1 3	일반 도로	직산 도로	상암동 172-4 (대로1-1)	상암동 251-10 (대로3-1)	298	7,264.1	-	-	-	-	-	-	298	7,264.1	-	-	-	-	-	-	-	-	
기정	중로	1 4	일반 도로	직산 도로	상암동 85-2 (대로3-3)	상암동 445-1 (중로1-6)	1,089	22,597.9	-	-	-	-	1,089	22,597.9	-	-	-	-	-	-	-	-	-	-	
기정	중로	1 5	일반 도로	직산 도로	상암동 360-4 (중로1-4)	상암동 301 (대로1-1)	89	2,859.3	-	-	-	-	89	2,859.3	-	-	-	-	-	-	-	-	-	-	
기정	중로	1 6	일반 도로	직산 도로	상암동 1542-1 (광로2-93)	상암동 446 (대로3-32)	607	12,564.6	-	-	-	-	607	12,564.6	-	-	-	-	-	-	-	-	-	-	
기정	중로	1 7	일반 도로	직산 도로	상암동 383-1 (중로1-4)	상암동 374-3 (대로1-1)	90	2,244.6	-	-	-	-	90	2,244.6	-	-	-	-	-	-	-	-	-	-	
기정	중로	1 8	일반 도로	직산 도로	상암동 296단	상암동 292-3 (대로3-4)	94	2,354.5	-	-	-	-	-	-	94	2,354.5	-	-	-	-	-	-	-	-	
기정	중로	1 9	일반 도로	직산 도로	상암동 291 (대로 3-4)	상암동 258-1 (중로1-3)	297	5,533.4	-	-	-	-	-	-	297	5,533.4	-	-	-	-	-	-	-	-	
기정	중로	1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244-4 (중로1-3)	상암동 220 (대로3-3)	278	5,673.8	-	-	-	-	-	-	278	5,673.8	-	-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구분	등급	규모			이용 형태	기 능	기 점	중 점	연장 (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비 고
		구분	면적 (㎡)	폭원 (m)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중로	1	11	2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218 (대로3-3)	상암동 202-6 (중로2-6)	74	1,568.9	-	-	-	-	-	-	74	1,568.9	-	-	-	-	-	-	-	-	자진거 도로포 함
기정	중로	2	404	15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251 (중로 1-126)	상암동 1271 (중로 1-401)	250	4,127.5	250	4,127.5	-	-	-	-	-	-	-	-	-	-	-	-	-	-	
기정	중로	2	405	15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1188 (중로 1-126)	상암동 1271 (중로 2-404)	79	1,243.8	79	1,243.8	-	-	-	-	-	-	-	-	-	-	-	-	-	-	
기정	중로	2	406	15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1183 (중로 1-401)	상암동 1178 (중로 2-407)	89	1,428.2	89	1,428.2	-	-	-	-	-	-	-	-	-	-	-	-	-	-	
기정	중로	2	407	15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1153 (중로 1-126)	상암동 495 (중로 1-401)	279	4,303.2	279	4,303.2	-	-	-	-	-	-	-	-	-	-	-	-	-	-	
기정	중로	2	1	15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산14-8 (중로 1-2)	상암동 136-4 (중로 2-2)	202	3,084.3	-	-	-	-	-	-	202	3,084.3	-	-	-	-	-	-	-	-	
기정	중로	2	2	15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170-3 (대로 3-3)	상암동 산11-1 (대로 3-2)	164	2,523.6	-	-	-	-	-	-	164	2,523.6	-	-	-	-	-	-	-	-	
기정	중로	2	3	15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369 (대로1-1)	상암동 251-13 (대로3-1)	265	4,337.5	-	-	-	-	-	-	265	4,337.5	-	-	-	-	-	-	-	-	
기정	중로	2	4	15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368-2 (대로 1-1)	상암동 251-45 (대로 3-1)	253	4,170.3	-	-	-	-	-	-	253	4,170.3	-	-	-	-	-	-	-	-	

구분	규모			이용 형태	기 능	기 점	중 점	연장 (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비 고
	등급	구분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중로	2	5	15	일반 도로	점선 도로	상암동 304 (대로 1-1)	250	3,821.9	-	-	-	-	-	-	250	3,821.9	-	-	-	-	-	-	-	-	
기정	중로	2	6	15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202-4 (대로 1-1)	297	4,456	-	-	-	-	-	-	297	4,456.0	-	-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기정	소로	1	1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12-3 산12-3 (중로 1-1)	242	2,426.3	-	-	242	2,426.3	-	-	-	-	-	-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기정	소로	1	2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11-4 산11-4 (중로 2-1)	80	797.3	-	-	-	-	-	-	80	797.3	-	-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기정	소로	1	3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36-1 산12-3 (중로 3-3)	75	749.0	-	-	-	-	-	-	75	749.0	-	-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기정	소로	1	4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93 산11-4 (대로 1-1)	177	1,786.2	-	-	-	-	-	-	177	1,786.2	-	-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기정	소로	1	5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87 산12-3 (중로 1-11)	147	1,484.6	-	-	-	-	-	-	147	1,484.6	-	-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기정	소로	2	1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11-21 산12-3 (대로 3-2)	115	1,181.7	-	-	-	-	-	-	115	1,181.7	-	-	-	-	-	-	-	-	
기정	소로	2	2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394 산21 (중로 1-4)	99	908.0	-	-	-	-	-	-	-	-	-	-	99	908.0	-	-	-	-	
기정	소로	2	3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334 산21 (중로 1-4)	134	1,127.0	-	-	-	-	134	1,127.0	-	-	-	-	-	-	-	-	-	-	

구분	규모			이용 형태	기 능	기 점	중 점	연장 (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비고
	등급	구분	폭원 번호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소로	2	4	8	일반 도로	상암동 431-1 (중로1-6)	상암동 448 (중로1-6)	150	1,238.9	-	-	-	-	150	1,238.9	-	-	-	-	-	-	-	-	-	-	
기정	소로	2	5	8	보행자 전용도 로	상암동 6-1 (중로1-1)	상암동 34-37	16	113.3	-	-	16	113.3	-	-	-	-	-	-	-	-	-	-	-	-	
기정	소로	3	1	6 ~ 10	일반 도로	상암동 1533 (중로1-401) 상암동 1280-1	상암동 1258 (중로2-404) 상암동 1285-1	369 (110)	903.3	(110)	903.3	-	-	-	-	-	-	-	-	-	-	-	-	-	-	
기정	소로	3	2	6	일반 도로	상암동 24-9 (대3-30)	상암동 24-8	20	122.4	20	122.4	-	-	-	-	-	-	-	-	-	-	-	-	-	-	
기정	소로	3	4	6	보행자 전용도 로	상암동 34-58	상암동 34-7	1	5.2	-	-	1	5.2	-	-	-	-	-	-	-	-	-	-	-	-	
기정	소로	3	5	6	일반 도로	상암동 37-15 (대3-30)	상암동 37-27	42	259.6	-	-	42	259.6	-	-	-	-	-	-	-	-	-	-	-	-	
기정	소로	3	6	6	일반 도로	상암동 115-7 (대3-30)	상암동 115-5	72	454.8	-	-	72	454.8	-	-	-	-	-	-	-	-	-	-	-	-	
기정	소로	3	7	4	보행자 전용도 로	상암동 357-1 (중로1-4)	상암동 357 (소로2-3)	42	166.4	-	-	-	-	42	166.4	-	-	-	-	-	-	-	-	-	-	

구분	등급	규모		이용 형태	기 능	기 점	중 점	연장 (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비고
		구분	번호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소로	3	8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335-2 (소로2-3)	상암동 335-2	21	81.4	-	-	-	21	81.4	-	-	-	-	-	-	-	-	-	-	-	-
기정	소로	3	9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431-1 (중로1-6)	상암동 451-2	60	362.0	-	-	-	60	362.0	-	-	-	-	-	-	-	-	-	-	-	-
기정	소로	3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36-6 (중로2-2)	상암동 136-1 (대로1-1)	64	382.0	-	-	-	-	-	64	382.0	-	-	-	-	-	-	-	-	-	-
기정	소로	3	11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672-1	상암동 695	220	892.5	-	-	-	-	-	-	-	220	892.5	-	-	-	-	-	-	-	-
기정	소로	3	12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134-7	상암동 8-17	105	611.1	-	-	-	-	-	105	611.1	-	-	-	-	-	-	-	-	-	-
기정	소로	3	13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300-2	상암동 300-2	8.5	34.3	-	-	-	8.5	34.3	-	-	-	-	-	-	-	-	-	-	-	-
기정	소로	3	14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97-1	상암동 197-1	96.53	965.3	-	-	-	-	96.53	965.3	-	-	-	-	-	-	-	-	-	-	-
기정	소로	3	15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223	상암동 224-3	19.5	39.9	-	-	-	-	-	19.5	39.9	-	-	-	-	-	-	-	-	-	-
기정	소로	3	16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91	상암동 91	4	24.4	-	-	-	-	-	4	24.4	-	-	-	-	-	-	-	-	-	-

주) ()는 사업지구내 구간임
 주) 5공구 노선수 총계 오기 정정(기정:1 / 정정:2)

- (2) 주차장(변경없음) : 생략
(3) 광장(변경없음) : 생략
(4) 공원 :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계	기정	-	185,257.1	2,896.8	1,511.3	3,026.5	28,572.3	-	149,250.2	-	-			
	변경		185,257.1	2,896.8	1,511.3	3,026.5	28,572.3		-	-	149,250.2			
전국 자치 단체 별	소계	기정	-	163,536.7	-	-	-	14,286.5	-	149,250.2	-	-		
		변경	-	163,536.7	-	-	-	14,286.5	-	-	-	149,250.2		
	1	기정	상암동 산21임 일원	149,250.2	-	-	-	-	-	149,250.2	-	-		
		변경	상암동 산21임 일원	149,250.2	-	-	-	-	-	-	-	149,250.2		
	2	기정	상암동 313-3답 일원	14,286.5	-	-	-	14,286.5	-	-	-			
	어 린 이 유 원	기정	-	7,434.6	2,896.8	1,511.3	3,026.5	-	-	-	-			
		1	기정	상암동 1282 대 일원	2,896.8	2,896.8	-	-	-	-	-	-		
		2	기정	상암동 114-1전 일원	1,511.3	-	1,511.3	-	-	-	-	-		
		3	기정	상암동 154-5대 일원	1,522.2	-	-	1,522.2	-	-	-	-		
		4	기정	상암동 462-2전 일원	1,504.3	-	-	1,504.3	-	-	-	-		
주 제 지 역 별	마 래 화 원	소계	기정	-	14,285.8	-	-	-	14,285.8	-	-	-		
		1	기정	상암동 260-2답 일원	4,630.7	-	-	-	4,630.7	-	-	-		
		2	기정	상암동 203-4답 일원	3,828.6	-	-	-	3,828.6	-	-	-		
		3	기정	상암동 260-2답 일원	3,154.7	-	-	-	3,154.7	-	-	-		
		4	기정	상암동 260-2답 일원	2,671.8	-	-	-	2,671.8	-	-	-		

- (5) 녹지(변경없음) : 생략
- (6) 공공청사(변경없음) : 생략
- (7) 교육시설(학교)(변경없음) : 생략
- (8)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생략
- (9)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 생략
- (10)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생략
- (11) 운동장 및 시장(변경없음) : 생략
- (12) 철도시설(변경없음) : 생략
- (13) 하천(변경없음) : 생략
- (14) 상업용지계획(변경없음) : 생략
- (15) 종교시설(변경없음) : 생략
- (16) 도시형공장(변경없음) : 생략

(17) 하수도시설 : 변경

구분		위 치	면 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계	기정	-	3,212.9	-	-	-	89.9	-	3,123.0	-	-	
	변경	-	3,000.3	-	-	-	89.9	-	2,910.4	-	-	
1	기정	고양시 덕은동 569-2천 일원	3,123.0	-	-	-	-	-	3,123.0	-	-	
	변경	고양시 덕은동 569-2천 일원	2,910.4	-	-	-	-	-	2,910.4	-	-	
2	기정	상암동 205-3전 일원	89.9	-	-	-	89.9	-	-	-	-	

(18) 가스충전소(변경없음) : 생략

(19) 차고지(변경없음) : 생략

(20) 교육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21) 공동구(변경없음) : 생략

(22) 방송시설(변경없음) : 생략

(23) 문화 및 집화업무시설(변경없음) : 생략

(24) 문화시설 : 변경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1	기정	상암동 산21임 일원	11,099.1	-	-	-	-	-	11,099.1	-	-	박정희 기념도서관
	변경	상암동 산21임 일원	11,099.1	-	-	-	-	-	-	-	11,099.1	박정희 기념도서관

(25) 청소년수련시설(변경없음) : 생략

(26) 교육연구 또는 첨단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27) 유치원용지(변경없음) : 생략

라.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생략

마. 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 생략

8.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 생략

9. 토지 등의 매입 및 보상계획서 : 변경

나. 용지취득 및 보상계획

(1) 현황 및 추진계획

구 분	필 지 수	면 적(㎡)	추진계획
계	기정	2,814	1,690,253.60
	변경	2,813	1,690,171.60

구 분			필 지 수		면 적(㎡)	추 진 계 획	
토 지	사 유 지		기정	2,058	1,351,527.60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착수 ◦적극 협의 추진하고 협의 불응 토지는 공용수용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토지는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하고 보 상금 공탁후 소유권 이전	
			변경	2,058	1,351,527.60		
	국 · 공 유 지	소 계	기정	756	338,726.00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토지수용법 절차에 의거 관리청과 협의하여 매입	
			변경	755	338,644.00		
		유 상	기정	354	160,082.81		
			변경	354	160,082.81		
		무 상	기정	515	178,643.19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조치
			변경	514	178,561.19		
지 장 물			1식		◦협의이전적극 협의 추진하고 협의 불응건은 공용수용		

10. 이해 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생략

11.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변경없음) : 생략

1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별첨1

1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
가. 토지조서(변경분)

번호	구분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기정	상암동	1156-3	답	812	82	국(철도청)	-	-	-	-	-
	제척	-	-	-	-	-	-	-	-	-	-	-
2	기정	성산동	496-4	대	96	96	(국)	-	-	-	-	-
	변경	성산동	496-4	대	96	96	국(기획재정부)	-	-	-	-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별첨2

1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변경없음) : 생략

16. 사업시행지의 지적도 (Scale = 1/1,200)(변경없음) : 생략

17. 실시계획 평면도 (Scale = 1/5,000) : 생략

■ 별첨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총괄조서(변경)

가. 무상귀속토지 총괄조서(변경없음)

나. 대체시설토지 총괄조서(변경)

구 분		폭 원	시설수(개소)	연장(m)	면적(㎡)	비 고
도 로	기정	2 ~ 50m	56	17,504.7	459,389.7	버스정차대포함
	변경	2 ~ 50m	58	17,584.7	459,520.3	버스정차대포함
철도시설	기정	-	2	-	1,662.7	
광 장	기정	-	2	-	2,863.5	
공 원	기정	-	10	-	185,257.1	
녹 지	기정	-	41	-	75,503.1	
공 동 구	기정	-	1	2,468	512.6	도로지하에 매설
상수도시설	기정	-	-	18.370	-	도로지하에 매설
하수도시설	기정	-	-	31,428	3,212.9	하수도시설1 면적 축소
	변경	-	-	31,428	3,000.3	
하 천	기정	-	1	-	1,257.0	
문화시설	기정	-	1	-	11,099.1	박정희 기념도서관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 시 행 할 자

- 기정 :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변경 :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시 행 방 법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 공공시설의 조서(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분)

(1) 7공구(변경분)

▣ 국(국토교통부)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관 리 청	실제이용상황				비고
					공부	편입	무상귀속		공공시설			공공 시설외	
									도로	구거	하천		
1	기정	상암동	1156-3	답	812	82	82	국(철도청)	82	-	-	-	
	제척	-	-	-	-	-	-	-	-	-	-	-	
2	기정	성산동	496-4	대	96	96	96	서울특별시	96	-	-	-	
	변경	성산동	496-4	대	96	96	96	국(기획재정부)	96	-	-	-	
소 계			기정		178	178	178	-	178	-	-	-	
			변경		96	96	96	-	96	-	-	-	

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조서 (변경)

(1) 도로(변경)

(가) 도로계획 총괄

구분	폭원 (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총계	기정	-	56(9)	17,504.7	459,389.7	10	3,680.0	148,339.3	1,030.2	15,921.7	11(3)	2,387.0	44,855.3	25(2)	8,578.5	204,181.3	2	678.0	17,472.1	1	99.0	908.0	1(2)	1,052.0	27,712.0	-	-	-
	변경	-	58(9)	17,584.7	459,520.3	10	3,540.0	148,339.3	1,030.2	15,921.7	11(3)	2,387.0	44,855.3	25(2)	8,578.5	204,181.3	2	678.0	17,472.1	3	319.0	1,120.6	1(2)	1,052.0	27,630.0	-	-	-
소계	기정	-	1(1)	1,838.0	97,268.6	1	1,838.0	96,827.2	(1)	-	30.5	(1)	-	410.9	-	-	-	-	-	-	-	-	-	-	-	-	-	-
	변경	-	2(1)	1,838.0	97,391.5	1	1,698.0	96,827.2	(1)	-	30.5	(1)	-	410.9	-	-	-	-	-	-	1	140.0	122.9	-	-	-	-	-
1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류	기정	50	1(1)	1,838.0	97,268.6	1	1,838.0	96,827.2	(1)	-	30.5	(1)	-	410.9	-	-	-	-	-	-	-	-	-	-	-	-	-	-
	변경	50	2(1)	1,838.0	97,391.5	1	1,698.0	96,827.2	(1)	-	30.5	(1)	-	410.9	-	-	-	-	-	-	1	140.0	122.9	-	-	-	-	-
3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기정	-	8(8)	7,592.2	228,558.5	2	758.0	33,977.6	(2)	168.2	2,244.0	(2)	-	202.7	4(2)	5,156.0	147,842.6	1	458.0	16,579.6	-	-	-	1(2)	1,052.0	27,712.0	-	-
	변경	-	9(8)	7,672.2	228,566.2	2	758.0	33,977.6	(2)	168.2	2,244.0	(2)	-	202.7	4(2)	5,156.0	147,842.6	1	458.0	16,579.6	1	80.0	89.7	1(2)	1,052.0	27,630.0	-	-
1류	기정	30	1(1)	1,195.0	49,616.5	-	-	-	-	-	-	(1)	-	80.0	1	1,195.0	49,536.5	-	-	-	-	-	-	-	-	-	-	-
2류	기정	25	1(1)	1,032.0	44,229.1	1	744.0	32,773.9	-	-	-	-	-	-	-	-	-	-	-	-	-	-	(1)	288.0	11,455.2	-	-	-

구분	폭원 (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3류	변경	25 ~35	1,112.0	44,318.8	1	744.0	32,773.9	-	-	-	-	-	-	-	-	-	-	-	-	1	80.0	89.7	(1)	288.0	11,455.2	-	-	-	-
	기정	25 ~35	5,365.2	134,712.9	1	14.0	1,203.7	(2)	168.2	2,244.0	(1)	-	122.7	3(2)	3,961.0	98,306.1	1	458.0	16,579.6	-	-	-	1(1)	764.0	16,256.8	-	-	-	-
	변경	25 ~35	5,365.2	134,630.9	1	14.0	1,203.7	(2)	168.2	2,244.0	(1)	-	122.7	3(2)	3,961.0	98,306.1	1	458.0	16,579.6	-	-	-	1(1)	764.0	16,174.8	-	-	-	-
소계		-	5,305.0	104,747.0	5	954.0	16,508.8	1	489.0	10,388.0	4	1,875.0	40,266.4	9	1,987.0	37,583.8	-	-	-	-	-	-	-	-	-	-	-	-	-
1류		기정	15	3,474.0	75,706.7	1	257.0	5,406.1	1	489.0	10,388.0	4	1,875.0	40,266.4	4	853.0	19,646.2	-	-	-	-	-	-	-	-	-	-	-	-
2류		기정	12	9	1,831.0	29,040.3	4	697.0	11,102.7	-	-	-	-	5	1,134.0	17,937.6	-	-	-	-	-	-	-	-	-	-	-	-	-
3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9	847.0	6,806.8	2	130.0	1,025.7	2	114.0	714.4	2	284.0	2,365.9	2	220.0	1,792.8	-	-	-	1	99.0	908.0	-	-	-	-	-	-
1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류		기정	8	4	498.0	4,455.6	-	-	-	-	-	2	284.0	2,365.9	1	115.0	1,181.7	-	-	-	1	99.0	908.0	-	-	-	-	-	-
3류		기정	8 미만	5	349.0	2,351.2	2	130.0	1,025.7	2	114.0	714.4	-	-	1	105.0	611.1	-	-	-	-	-	-	-	-	-	-	-	-
소계		-	19	1,922.5	22,008.8	-	-	-	3	259.0	2,544.8	3	228.0	1,609.4	10	1,215.5	16,962.1	1	220.0	892.5	-	-	-	-	-	-	-	-	-
중도		1류	15	2	352.0	7,242.7	-	-	-	-	-	-	-	2	352.0	7,242.7	-	-	-	-	-	-	-	-	-	-	-	-	-

구 분	구원 (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영 노 로	2류기정	10	1	297.0	4,456.0	-	-	-	-	-	-	-	-	1	297.0	4,456.0	-	-	-	-	-	-	-	-	-	-	-	-
	3류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류기정	8	5	721.0	7,243.4	-	-	1	242.0	2,426.3	-	-	-	4	479.0	4,817.1	-	-	-	-	-	-	-	-	-	-	-	-
	2류기정 미만	8	1	16.0	113.3	-	-	1	16.0	113.3	-	-	-	-	-	-	-	-	-	-	-	-	-	-	-	-	-	-
소 로		-	10	536.5	2,953.4	-	-	1	1.0	5.2	5	228.0	1,609.4	3	87.5	446.3	1	220.0	892.5	-	-	-	-	-	-	-	-	-

주 ()안의 숫자는 1:1노선의 공구별 중속 산정값임
주 5공구 노선수 총계 오기 정정(기정:1 / 정정:2)

(나) 도로조서

구분	구도	구도 번호	구도 번호	시용 형태	기 능	기 점	종 점	연장 (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비 고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관로	2	2	50	일반 도로	죽간선 도로	덕은동 고양시계 덕은동 269-14	140	-	-	-	-	-	-	-	-	-	-	-	140 (140)	-	-	-	-	-	고양시
변경	관로	2	2	50	일반 도로	죽간선 도로	덕은동 고양시계 덕은동 269-14	140 (140)	122.9	-	-	-	-	-	-	-	-	-	-	140 (140)	122.9	-	-	-	-	-
기정	관로	2	93	50	일반 도로	죽간선 도로	고양시 덕은동 269	2,498 (1,838)	97,266.6 (1,838)	96,827.2	-	30.5	-	410.9	-	-	-	-	-	-	-	-	-	-	-	-

구분	구도			사용 형태	기 능	기 점	종 점	연장 (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비고	
	등급	구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변경	광로	2	93	50	일반 도로	주간선 도로	고양시 덕은동 269	2,358 (1,698)	97,268.6	(1,698)	96,827.2	-	30.5	-	410.9	-	-	-	-	-	-	-	-	-	-	-	
	대로	1	1	35	일반 도로	상암동 129-2 (대로 3-30)	수색동 (대로 3-32)	1,195	49,616.5		-	-	-	-	80.0	1,195	49,536.5	-	-	-	-	-	-	-	-	-	
기정	대로	2	13	30~35	일반 도로	주간선 도로	덕은동 83-31	6,528	-		-	-	-	-	-	-	-	-	-	-	6,528	-	-	-	-	-	고양시
변경	대로	2	13	30~35	일반 도로	주간선 도로	덕은동 83-31	6,528 (80)	89.7		-	-	-	-	-	-	-	-	-	-	6,528 (80)	89.7	-	-	-	-	
기정	대로	2	20	30	일반 도로	주간선 도로	성암동 53-26 (광로 2-93)	6,723 (1,032)	44,229.1	(744)	32,773.9	-	-	-	-	-	-	-	-	-	-	-	(288)	11,455.2	-	-	
기정	대로	3	1	25	일반 도로	상암동 1167-2 (중로 1-126)	수색동 (대로 3-32)	1,970	46,376.4		-	-	-	-	-	1,330	34,697.4	-	-	-	-	-	640	11,679.0	-	-	
변경	대로	3	1	25	일반 도로	상암동 1167-2 (중로 1-126)	수색동 (대로 3-32)	1,970	46,294.4		-	-	-	-	-	1,330	34,697.4	-	-	-	-	-	640	11,597.0	-	-	
기정	대로	3	2	25	일반 도로	상암동 56 (광로 2-93)	상암동 1-3 (대로 3-1)	944	23,843.4		-	-	250.9	-	-	944	23,592.5	-	-	-	-	-	-	-	-	-	
기정	대로	3	3	25	일반 도로	상암동 405 (광로 2-93)	상암동 229-13 (대로 3-1)	940	24,261.9		-	-	-	-	122.7	940	24,139.2	-	-	-	-	-	-	-	-	-	
기정	대로	3	4	25	일반 도로	상암동 302-3	상암동 292-1	268	7,866.0		-	-	-	-	-	268	7,866.0	-	-	-	-	-	-	-	-	-	

구분	등급	규모		시용 형태	기 능	기 점	중 점	연장 (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비 고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대로	3	30 ~ 35	일반 도로	(대로1-1) 성산동 (대로 3-187)	(대로3-1) 상암동 129-2 (대로 1-1)	3,250 (306.2)	7,774.6		(14)	1,203.7	(168.2)	1,993.1	-	-	-	-	-	-	-	-	(124)	4,577.8	-	-	
기정	대로	3	32	일반 도로	죽간선 도로	상암동 수색동 (수색로)	2,175 (937)	24,590.6		-	-	-	-	-	-	(479)	8,011.0	(458)	16,579.6	-	-	-	-	-	-	
기정	중로	1	401	일반 도로	상암동 1186 (대로3-1)	상암동 27-49 (대로3-30)	257	5,406.1	257	5,406.1	5,406.1	-	-	-	-	-	-	-	-	-	-	-	-	-	-	
기정	중로	1	1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산6 (대로3-2)	499	10,388.0		-	-	499	10,388.0	-	-	-	-	-	-	-	-	-	-	-	-	
기정	중로	1	2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98 (대로3-2)	164	4,494.2		-	-	-	-	-	164	4,494.2	-	-	-	-	-	-	-	-	-	
기정	중로	1	3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172-4 (대로1-1)	298	7,264.1		-	-	-	-	-	298	7,264.1	-	-	-	-	-	-	-	-	-	
기정	중로	1	4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85-2 (대로3-3)	1,089	22,597.9		-	-	-	-	-	1,089	22,597.9	-	-	-	-	-	-	-	-	-	
기정	중로	1	5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360-4 (중로1-4)	89	2,859.3		-	-	-	-	-	89	2,859.3	-	-	-	-	-	-	-	-	-	
기정	중로	1	6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1542-1 (광로2-93)	607	12,564.6		-	-	-	-	-	607	12,564.6	-	-	-	-	-	-	-	-	-	

구분	구도	시용 형태	기 능	기 점	중 점	연장 (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비 고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중로 1	일반 도로	점산 도로	상암동 383-1 (중로1-4)	상암동 374-3 (대로1-1)	90	2,244.6	-	-	-	-	90	2,244.6	-	-	-	-	-	-	-	-	-	-	
기정	중로 1	일반 도로	점산 도로	상암동 296답 (중로1-4)	상암동 292-3 (대로3-4)	94	2,354.5	-	-	-	-	-	-	94	2,354.5	-	-	-	-	-	-	-	-	
기정	중로 1	일반 도로	점산 도로	상암동 291 (대로 3-4)	상암동 258-1 (중로1-3)	297	5,533.4	-	-	-	-	-	-	297	5,533.4	-	-	-	-	-	-	-	-	
기정	중로 1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244-4 (중로1-3)	상암동 220 (대로3-3)	278	5,673.8	-	-	-	-	-	-	278	5,673.8	-	-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기정	중로 1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218 (대로3-3)	상암동 202-6 (중로2-6)	74	1,568.9	-	-	-	-	-	-	74	1,568.9	-	-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기정	중로 2	일반 도로	점산 도로	상암동 251 (중로 1-126)	상암동 1271 (중로 1-401)	250	4,127.5	250	4,127.5	-	-	-	-	-	-	-	-	-	-	-	-	-	-	
기정	중로 2	일반 도로	점산 도로	상암동 1188 (중로 1-126)	상암동 1271 (중로 2-404)	79	1,243.8	79	1,243.8	-	-	-	-	-	-	-	-	-	-	-	-	-	-	
기정	중로 2	일반 도로	점산 도로	상암동 1183 (중로 1-401)	상암동 1178 (중로 2-407)	89	1,428.2	89	1,428.2	-	-	-	-	-	-	-	-	-	-	-	-	-	-	
기정	중로 2	일반 도로	점산 도로	상암동 1153 (중로 1-126)	상암동 495 (중로 1-401)	279	4,303.2	279	4,303.2	-	-	-	-	-	-	-	-	-	-	-	-	-	-	

구분	등급	규모			이용 형태	기 능	기 점	중 점	연장 (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비 고
		구분	구분	구분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중로	2	1	15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산14-8 (중로 1-2)	상암동 136-4 (중로 2-2)	202	3,084.3	-	-	-	-	-	-	202	3,084.3	-	-	-	-	-	-	-	-	
기정	중로	2	2	15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170-3 (대로 3-3)	상암동 산11-1 (대로 3-2)	164	2,523.6	-	-	-	-	-	-	164	2,523.6	-	-	-	-	-	-	-	-	
기정	중로	2	3	15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369 (대로 1-1)	상암동 251-13 (대로 3-1)	265	4,337.5	-	-	-	-	-	-	265	4,337.5	-	-	-	-	-	-	-	-	
기정	중로	2	4	15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368-2 (대로 1-1)	상암동 251-45 (대로 3-1)	253	4,170.3	-	-	-	-	-	-	253	4,170.3	-	-	-	-	-	-	-	-	
기정	중로	2	5	15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304 (대로 1-1)	상암동 308-3 (대로 3-1)	250	3,821.9	-	-	-	-	-	-	250	3,821.9	-	-	-	-	-	-	-	-	
기정	중로	2	6	15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202-4 (대로 1-1)	상암동 9-10 (대로 3-1)	297	4,456	-	-	-	-	-	-	297	4,456.0	-	-	-	-	-	-	-	-	자연거 도로포 함
기정	소로	1	1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12-3 (중로 1-1)	상암동 산12-3 (대로 3-2)	242	2,426.3	-	-	242	2,426.3	-	-	-	-	-	-	-	-	-	-	-	-	자연거 도로포 함
기정	소로	1	2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산11-4 (중로 2-1)	상암동 산12-3 (대로 3-2)	80	797.3	-	-	-	-	-	-	80	797.3	-	-	-	-	-	-	-	-	자연거 도로포 함
기정	소로	1	3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38-1 (대로 3-3)	상암동 136-9 (중로 2-1)	75	749.0	-	-	-	-	-	-	75	749.0	-	-	-	-	-	-	-	-	자연거 도로포 함
기정	소로	1	4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93 (대로 1-1)	상암동 187 (중로 1-11)	177	1,786.2	-	-	-	-	-	-	177	1,786.2	-	-	-	-	-	-	-	-	자연거 도로포 함

구분	등급	규모			이용 형태	기 능	기 점	중 점	연장 (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비 고
		구분	구분	구분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소로	1	5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87 (중로 1-11)	상암동 234-7 (대로 3-1)	147	1,484.6	-	-	-	-	-	-	147	1,484.6	-	-	-	-	-	-	-	-	지전거 도로포 함
기정	소로	2	1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11-21 (대로 3-2)	상암동 1385-8	115	1,181.7	-	-	-	-	-	-	115	1,181.7	-	-	-	-	-	-	-	-	
기정	소로	2	2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394 (중로 1-4)	상암동 산21	99	908.0	-	-	-	-	-	-	-	-	-	-	99	908.0	-	-	-	-	
기정	소로	2	3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334 (중로 1-4)	상암동 357-1 (중로 1-4)	134	1,127.0	-	-	-	-	134	1,127.0	-	-	-	-	-	-	-	-	-	-	
기정	소로	2	4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431-1 (중로 1-6)	상암동 448 (중로 1-6)	150	1,238.9	-	-	-	-	150	1,238.9	-	-	-	-	-	-	-	-	-	-	
기정	소로	2	5	8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6-1 (중로 1-1)	상암동 34-37	16	113.3	-	-	16	113.3	-	-	-	-	-	-	-	-	-	-	-	-	
기정	소로	3	1	6 ~ 10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1533 (중로 1-401) 상암동 1280-11 (대로 3-30)	상암동 1258 (중로 2-404) 상암동 1285-1	369 (110)	903.3	(110)	903.3	-	-	-	-	-	-	-	-	-	-	-	-	-	-	
기정	소로	3	2	6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24-9 (대로 3-30)	상암동 24-8	20	122.4	20	122.4	-	-	-	-	-	-	-	-	-	-	-	-	-	-	

구분	등급	규모			이용 형태	기 능	기 점	중 점	연장 (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비고
		구분	구분	구분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소로	3	4	6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34-58	상암동 34-7	1	5.2	-	-	1	5.2	-	-	-	-	-	-	-	-	-	-	-	-	
기정	소로	3	5	6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37-15 (대3-30)	상암동 37-27	42	259.6	-	-	42	259.6	-	-	-	-	-	-	-	-	-	-	-	-	
기정	소로	3	6	6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115-7 (대3-30)	상암동 115-5	72	454.8	-	-	72	454.8	-	-	-	-	-	-	-	-	-	-	-	-	
기정	소로	3	7	4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357-1 (종로1-4)	상암동 357 (소로2-3)	42	166.4	-	-	-	-	42	166.4	-	-	-	-	-	-	-	-	-	-	
기정	소로	3	8	4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335-2 (소로2-3)	상암동 335-2	21	81.4	-	-	-	-	21	81.4	-	-	-	-	-	-	-	-	-	-	
기정	소로	3	9	6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431-1 (종로1-6)	상암동 451-2	60	362.0	-	-	-	-	60	362.0	-	-	-	-	-	-	-	-	-	-	
기정	소로	3	10	6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36-6 (종로2-2)	상암동 136-1 (대로1-1)	64	382.0	-	-	-	-	-	-	64	382.0	-	-	-	-	-	-	-	-	
기정	소로	3	11	4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672-1	상암동 695	220	892.5	-	-	-	-	-	-	-	-	220	892.5	-	-	-	-	-	-	
기정	소로	3	12	6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134-7	상암동 8-17	105	611.1	-	-	-	-	-	-	105	611.1	-	-	-	-	-	-	-	-	

구분	구분			이용 형태	기 능	기 점	중 점	연장 (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비 고	
	도로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기정	소로	3	13	4	보행자 전용도 로	상암동 300-2	상암동 300-2	8.5	34.3	-	-	-	-	8.5	34.3	-	-	-	-	-	-	-	-	-	-	-	
기정	소로	3	14	4	보행자 전용도 로	상암동 197-1	상암동 197-1	96.53	965.3	-	-	-	-	96.53	965.3	-	-	-	-	-	-	-	-	-	-	-	
기정	소로	3	15	2	보행자 전용도 로	상암동 223	상암동 224-3	19.5	39.9	-	-	-	-	-	-	19.5	39.9	-	-	-	-	-	-	-	-	-	
기정	소로	3	16	6	보행자 전용도 로	상암동 91	상암동 91	4	24.4	-	-	-	-	-	-	4	24.4	-	-	-	-	-	-	-	-	-	

주) ()는 사업지구내 구간임

- (2) 광장(변경없음) : 생략
 (3) 공원 및 녹지계획 : 변경
 ○ 공원(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계	기정	-	185,257.1	2,896.8	1,511.3	3,026.5	28,572.3	-	149,250.2	-	-	
	변경		185,257.1	2,896.8	1,511.3	3,026.5	28,572.3		-	-	149,250.2	
생태환경 녹지관리위원회	소계	기정	163,536.7	-	-	-	14,286.5	-	149,250.2	-	-	
		변경	163,536.7	-	-	-	14,286.5	-	-	-	149,250.2	
	1	기정	상암동 산21임 일원	149,250.2	-	-	-	-	149,250.2	-	-	
		변경	상암동 산21임 일원	149,250.2	-	-	-	-	-	-	149,250.2	
	2	기정	상암동 313-3답 일원	14,286.5	-	-	-	14,286.5	-	-	-	
	어린이 공원	소계	기정	7,434.6	2,896.8	1,511.3	3,026.5	-	-	-	-	
		1	기정	상암동 1282 대 일원	2,896.8	2,896.8	-	-	-	-	-	
		2	기정	상암동 114-1전 일원	1,511.3	-	1,511.3	-	-	-	-	
		3	기정	상암동 154-5대 일원	1,522.2	-	-	1,522.2	-	-	-	
		4	기정	상암동 462-2전 일원	1,504.3	-	-	1,504.3	-	-	-	
주제 공원위원회	소계	기정	-	14,285.8	-	-	-	14,285.8	-	-	-	
	1	기정	상암동 260-2답 일원	4,630.7	-	-	-	4,630.7	-	-	-	
	2	기정	상암동 203-4답 일원	3,828.6	-	-	-	3,828.6	-	-	-	
	3	기정	상암동 260-2답 일원	3,154.7	-	-	-	3,154.7	-	-	-	
	4	기정	상암동 260-2답 일원	2,671.8	-	-	-	2,671.8	-	-	-	

- 녹지(변경없음) : 생략
 (4) 철도시설(변경없음) : 생략
 (5) 하수도시설 : 변경

구분		위 치	면 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계	기정	-	3,212.9	-	-	-	89.9	-	3,123.0	-	-	
	변경	-	3,000.3	-	-	-	89.9	-	2,910.4	-	-	
1	기정	고양시 덕은동 569-2천 일원	3,123.0	-	-	-	-	-	3,123.0	-	-	
	변경	고양시 덕은동 569-2천 일원	2,910.4	-	-	-	-	-	2,910.4	-	-	
2	기정	상암동 205-3전 일원	89.9	-	-	-	89.9	-	-	-	-	

- (6) 상하수도시설 : 도로 등의 지하에 매설(변경없음) : 생략
 (7) 공동구(변경없음) : 생략

(8) 하천(변경없음) : 생략

(9) 문화시설 : 변경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1	기정	상암동 산21임 일원	11,099.1	-	-	-	-	-	11,099.1	-	-	박정희 기념도서관
	변경	상암동 산21임 일원	11,099.1	-	-	-	-	-	-	-	11,099.1	박정희 기념도서관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없음

6. 대체구거의 단면결정에 따른 수리계산서 : 생략

7.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도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귀속도 : 생략

■ 별첨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총괄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690,253.6	감) 82.0	1,690,171.6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917.2	-	1,917.2	0.1	
	제2종일반주거지역	35,212.8	-	35,212.8	2.1	
	제3종일반주거지역	577,337.4	-	577,337.4	34.1	
	준주거지역	229,076.0	-	229,076.0	13.6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25,465.0	-	425,465.0	25.2	
	중심상업지역	37,262.3	-	37,262.3	2.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83,982.9	감) 82.0	383,900.9	22.7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상암동 1156-3답	자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82	50%	관리청(KR)협의 결과 수색 - 광명 복선전철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로서 사업구역에서 제척

2) 용도지역 결정도 (Scale = 1/5,000) : 생략

II.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사유 :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총괄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1	상암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상암동 509-7일원	1,690,253.6	감) 82	1,690,171.6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68호 (1997.3.6)	

■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	변경사유
변경	1	마포구 상암동 509-7일원	· 1,690,253.6㎡→1,690,171.6㎡ · 감) 82㎡	관리청(KR)협의 결과 수색-광명 복선전철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로써 사업구역에서 제척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Scale = 1/5,000) : 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토지이용계획 총괄 : 변경

- 기정

구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구성비 (%)	비고
합계	1,690,253.6	240,359.1	140,107.4	286,931.9	553,263.9	46,673.7	175,095.3	247,822.3	100.0	
주택건설용지	266,090.3	1,101.9	72,357.2	183,345.9	9,285.3	-	-	-	15.7	
공도주택	252,003.1	-	72,336.7	179,666.4	-	-	-	-	14.8	
주상복합	9,285.3	-	-	-	9,285.3	-	-	-	0.5	
단독주택	20.5	-	20.5	-	-	-	-	-	0.1	
근린생활시설	4,781.4	1,101.9	-	3,679.5	-	-	-	-	0.3	
공공시설용지	1,424,163.3	239,257.2	67,750.2	103,586.0	543,978.6	46,673.7	175,095.3	247,822.3	84.3	
도로	459,389.7	148,339.3	15,921.7	44,855.3	204,181.3	17,472.1	908.0	27,712.0	27.2	
상업시설	26,022.5	20,644.1	-	-	5,378.4	-	-	-	1.5	4개소
숙박업무시설	34,184.5	-	-	-	34,184.5	-	-	-	2.0	2개소
업무시설	150,931.4	12,029.5	-	-	138,901.9	-	-	-	8.9	

구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구성비 (%)	비고
교육연구시설	7,878.5	-	-	-	7,878.5	-	-	-	0.5	
방송시설	34,270.1	-	-	-	34,270.1	-	-	-	2.0	2개소
주차장	10,249.2	2,375.6	-	2,342.0	5,531.6	-	-	-	0.6	4개소
광장	2,863.5	468.6	-	-	-	-	-	2,394.9	0.2	2개소
공원	185,257.1	2,896.8	1,511.3	3,026.5	28,572.3	-	149,250.2		11.0	
녹지	75,503.1	15,250.5	18,697.2	12,209.0	20,210.4	4,252.5	-	4,883.5	4.5	완:31개소, 경관:10개소
하천	1,257.0	-	-	-	-	1,257.0	-	-	0.1	1개소
공공청사	10,076.4	-	-	1,817.8	1,144.6	-	7,114.0	-	0.6	
학교	67,173.6	-	11,599.0	32,063.4	23,511.2	-	-	-	4.0	학교:6개소
사회복지시설	22,090.9	-	17,907.2	991.3	-	3,192.4	-	-	1.3	4개소
종교시설	9,072.1	1,290.8	1,228.1	3,371.6	654.5	2,527.1	-	-	0.5	11개소
도시형공장	17,024.7	-	-	-	17,024.7	-	-	-	1.0	1개소:지상권 설정(507㎡)
자동차정류장	9,456.5	-	-	-	-	9,456.5	-	-	0.6	2개소
전기공급설비	3,917.0	-	-	316.0	-	-	3,601.0	-	0.2	
운동장및시장	211,405.8	-	-	-	-	-	-	211,405.8	12.5	1개소
철도시설	1,662.7	236.6	-	-	-	-	-	1,426.1	0.1	2개소
하수도시설	3,212.9	-	-	-	89.9	-	3,123.0	-	0.2	
차고지	6,901.6	-	-	-	-	6,901.6	-	-	0.4	4개소
가스충전소	1,614.5	-	-	-	-	1,614.5	-	-	0.1	1개소
문화및집회· 업무시설	35,212.8	35,212.8	-	-	-	-	-	-	2.1	1개소
문화시설	11,099.1	-	-	-	-	-	11,099.1	-	0.6	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463.1	-	-	1,463.1	-	-	-	-	0.1	1개소
교육연구· 첨단업무시설	15,232.7	-	-	-	15,232.7	-	-	-	0.9	1개소
상업위락시설	7,212.0	-	-	-	7,212.0	-	-	-	0.4	1개소
공동구	512.6	512.6	-	-	-	-	-	-	0.1	1개소
유치원	2,015.7	-	885.7	1,130.0	-	-	-	-	0.1	2개소

- 변경

구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구성비 (%)	비고
합계	1,690,171.6	240,359.1	140,107.4	286,931.9	553,263.9	46,673.7	14,746.0	247,740.3	160,349.3	100.0	
주택건설용지	266,090.3	1,101.9	72,357.2	183,345.9	9,285.3	-	-	-	-	15.7	
공동주택	252,003.1	-	72,336.7	179,666.4	-	-	-	-	-	14.8	
주상복합	9,285.3	-	-	-	9,285.3	-	-	-	-	0.5	
단독주택	20.5	-	20.5	-	-	-	-	-	-	0.1	
근린생활시설	4,781.4	1,101.9	-	3,679.5	-	-	-	-	-	0.3	
공공시설용지	1,424,081.3	239,257.2	67,750.2	103,586.0	543,978.6	46,673.7	14,746.0	247,740.3	160,349.3	84.3	
도로	459,520.3	148,339.3	15,921.7	44,855.3	204,181.3	17,472.1	1,120.6	27,630.0	-	27.2	
상업시설	26,022.5	20,644.1	-	-	5,378.4	-	-	-	-	1.5	4개소
숙박업무시설	34,184.5	-	-	-	34,184.5	-	-	-	-	2.0	2개소
업무시설	150,931.4	12,029.5	-	-	138,901.9	-	-	-	-	8.9	
교육연구시설	7,878.5	-	-	-	7,878.5	-	-	-	-	0.5	
방송시설	34,270.1	-	-	-	34,270.1	-	-	-	-	2.0	2개소
주차장	10,249.2	2,375.6	-	2,342.0	5,531.6	-	-	-	-	0.6	4개소
광장	2,863.5	468.6	-	-	-	-	-	2,394.9	-	0.2	2개소
공원	185,257.1	2,896.8	1,511.3	3,026.5	28,572.3	-	-	-	149,250.2	11.0	
녹지	75,503.1	15,250.5	18,697.2	12,209.0	20,210.4	4,252.5	-	4,883.5	-	4.5	원:31개소, 경관:10개소
하천	1,257.0	-	-	-	-	1,257.0	-	-	-	0.1	1개소
공공청사	10,076.4	-	-	1,817.8	1,144.6	-	7,114.0	-	-	0.6	
학교	67,173.6	-	11,599.0	32,063.4	23,511.2	-	-	-	-	4.0	학교:6개소
사회복지시설	22,090.9	-	17,907.2	991.3	-	3,192.4	-	-	-	1.3	4개소
종교시설	9,072.1	1,290.8	1,228.1	3,371.6	654.5	2,527.1	-	-	-	0.5	11개소
도시형공장	17,024.7	-	-	-	17,024.7	-	-	-	-	1.0	1개소:지상권 설정(507㎡)
자동차정류장	9,456.5	-	-	-	-	9,456.5	-	-	-	0.6	2개소
전기공급설비	3,917.0	-	-	316.0	-	-	3,601.0	-	-	0.2	
운동장및시장	211,405.8	-	-	-	-	-	-	211,405.8	-	12.5	1개소
철도시설	1,662.7	236.6	-	-	-	-	-	1,426.1	-	0.1	2개소
하수도시설	3,000.3	-	-	-	89.9	-	2,910.4	-	-	0.2	
차고지	6,901.6	-	-	-	-	6,901.6	-	-	-	0.4	4개소
가스충전소	1,614.5	-	-	-	-	1,614.5	-	-	-	0.1	1개소

구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구성비 (%)	비고
문화및집회· 업무시설	35,212.8	35,212.8	-	-	-	-	-	-	-	2.1	1개소
문화시설	11,099.1	-	-	-	-	-	-	-	11,099.1	0.6	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463.1	-	-	1,463.1	-	-	-	-	-	0.1	1개소
교육연구· 첨단업무시설	15,232.7	-	-	-	15,232.7	-	-	-	-	0.9	1개소
상업위락시설	7,212.0	-	-	-	7,212.0	-	-	-	-	0.4	1개소
공동구	512.6	512.6	-	-	-	-	-	-	-	0.1	1개소
유치원	2,015.7	-	885.7	1,130.0	-	-	-	-	-	0.1	2개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 변경

(가) 도로 총괄표

구 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총 계	기정	56(9)	17,504.7	459,389.7	18(1)	5,742.0	139,809.3	17(2)	5,512.0	179,562.9	21(6)	6,250.7	140,017.5
	변경	58(9)	17,584.7	459,520.3	18(1)	5,742.0	139,809.3	19(2)	5,592.0	179,775.5	21(6)	6,250.7	139,935.5
광로	기정	1(1)	1,838.0	97,268.6	-	-	-	1(1)	1,838.0	97,268.6	-	-	-
	변경	2(1)	1,838.0	97,391.5	-	-	-	2(1)	1,838.0	97,391.5	-	-	-
	1공구	1	1,698.0	96,827.2	-	-	-	1	1,698.0	96,827.2	-	-	-
	2공구	(1)	-	30.5	-	-	-	(1)	-	30.5	-	-	-
	3공구	(1)	-	410.9	-	-	-	(1)	-	410.9	-	-	-
	4공구	-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
	6공구	1	140.0	122.9	-	-	-	1	140.0	122.9	-	-	-
	7공구	-	-	-	-	-	-	-	-	-	-	-	-
	8공구	-	-	-	-	-	-	-	-	-	-	-	-
대로	기정	8(8)	7,592.2	228,558.5	1(1)	1,195.0	49,616.5	1(1)	1,032.0	44,229.1	6(6)	5,365.2	134,712.9
	변경	9(8)	7,672.2	228,566.2	1(1)	1,195.0	49,616.5	2(1)	1,112.0	44,318.8	6(6)	5,365.2	134,630.9
	1공구	2	758.0	33,977.6	-	-	-	1	744.0	32,773.9	1	14.0	1,203.7
	2공구	(2)	168.2	2,244.0	-	-	-	-	-	-	(2)	168.2	2,244.0

구 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3공구	(2)	-	202.7	(1)	-	80.0	-	-	-	(1)	-	122.7	
	4공구	4(2)	5,156.0	147,842.6	1	1,195.0	49,536.5	-	-	-	3(2)	3,961.0	98,306.1	
	5공구	1	458.0	16,579.6	-	-	-	-	-	-	1	458.0	16,579.6	
	6공구	1	80.0	89.7	-	-	-	1	80.0	89.7	-	-	-	
	7공구	1(2)	1,052.0	27,630.0	-	-	-	(1)	288.0	11,455.2	1(1)	764.0	16,174.8	
	8공구	-	-	-	-	-	-	-	-	-	-	-	-	
중로	기정	19	5,305.0	104,747.0	10	3,474.0	75,706.7	9	1,831.0	29,040.3	-	-	-	
	1공구	5	954.0	16,508.8	1	257.0	5,406.1	4	697.0	11,102.7	-	-	-	
	2공구	1	489.0	10,388.0	1	489.0	10,388.0	-	-	-	-	-	-	
	3공구	4	1,875.0	40,266.4	4	1,875.0	40,266.4	-	-	-	-	-	-	
	4공구	9	1,987.0	37,583.8	4	853.0	19,646.2	5	1,134.0	17,937.6	-	-	-	
	5공구	-	-	-	-	-	-	-	-	-	-	-	-	
	6공구	-	-	-	-	-	-	-	-	-	-	-	-	
	7공구	-	-	-	-	-	-	-	-	-	-	-	-	
	8공구	-	-	-	-	-	-	-	-	-	-	-	-	
소로	기정	9	847.0	6,806.8	-	-	-	4	498.0	4,455.6	5	349.0	2,351.2	
	1공구	2	130.0	1,025.7	-	-	-	-	-	-	2	130.0	1,025.7	
	2공구	2	114.0	714.4	-	-	-	-	-	-	2	114.0	714.4	
	3공구	2	284.0	2,365.9	-	-	-	2	284.0	2,365.9	-	-	-	
	4공구	2	220.0	1,792.8	-	-	-	1	115.0	1,181.7	1	105.0	611.1	
	5공구	-	-	-	-	-	-	-	-	-	-	-	-	
	6공구	1	99.0	908.0	-	-	-	1	99.0	908.0	-	-	-	
	7공구	-	-	-	-	-	-	-	-	-	-	-	-	
	8공구	-	-	-	-	-	-	-	-	-	-	-	-	
특수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합계	기정	19	1,922.5	22,008.8	7	1,073.0	14,486.1	2	313.0	4,569.3	10	536.5	2,953.4
	중로	1공구	-	-	-	-	-	-	-	-	-	-	-	-
		2공구	-	-	-	-	-	-	-	-	-	-	-	-
		3공구	-	-	-	-	-	-	-	-	-	-	-	-
		4공구	3	649.0	11,698.7	2	352.0	7,242.7	1	297.0	4,456.0	-	-	-
		5공구	-	-	-	-	-	-	-	-	-	-	-	-

구 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공구	6공구	-	-	-	-	-	-	-	-	-	-	-	-
		7공구	-	-	-	-	-	-	-	-	-	-	-	-
		8공구	-	-	-	-	-	-	-	-	-	-	-	-
	소로	1공구	-	-	-	-	-	-	-	-	-	-	-	-
		2공구	3	259.0	2,544.8	1	242.0	2,426.3	1	16.0	113.3	1	1.0	5.2
		3공구	5	228.0	1,609.4	-	-	-	-	-	-	5	228.0	1,609.4
		4공구	7	566.5	5,263.4	4	479.0	4,817.1	-	-	-	3	87.5	446.3
		5공구	1	220.0	892.5	-	-	-	-	-	-	1	220.0	892.5
		6공구	-	-	-	-	-	-	-	-	-	-	-	-
		7공구	-	-	-	-	-	-	-	-	-	-	-	-
		8공구	-	-	-	-	-	-	-	-	-	-	-	-

주) ()안의 숫자는 1개노선의 공구별 중복 산정값임

주) 5공구 노선수 총계 오기 정정(기정:1 / 정정:2)

(나) 도로조서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2	50	주간선 도로	140	덕은동고양시계 덕은동579-14	대로2-13 덕은동269-14	일반 도로		경고제5006호 00-04-14	6공구
변경	광로	2	2	50	주간선 도로	140 (140)	덕은동고양시계 덕은동579-14	대로2-13 덕은동269-14	일반 도로			
기정	대로	2	13	30~ 35	주간선 도로	6,528	덕은동83-31	향동동5-2	일반 도로		경고제381호 98-09-15	6공구
변경	대로	2	13	30~ 35	주간선 도로	6,528 (80)	덕은동83-31	향동동5-2	일반 도로			
기정	광로	2	93	50	주간선 도로	2,498 (1,838)	성산동 537-4	고양시덕은동 269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1공구,2공구 3공구,6공구
변경	광로	2	93	50	주간선 도로	2,358 (1,698)	성산동 537-4	고양시덕은동 269	일반 도로			1공구,2공구 3공구,6공구
기정	대로	1	1	35	보조간선 도로	1,195	상암동 129-2 (대로 3-30)	수색동 (대로 3-32)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3공구 4공구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0	30	주간선 도로	6,723 (1,032)	성산동 53-26 (광로 2-93)	불광동 (대로 2-12)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1공구 7공구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 도로	1,970	상암동 1167-2 (중로1-126)	수색동 (대로 3-32)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4공구 7공구
변경	대로	3	1	25	보조간선 도로	1,970	상암동 1167-2 (중로1-126)	수색동 (대로 3-32)	일반 도로			4공구 7공구
기정	대로	3	2	25	보조간선 도로	944	상암동 56 (광로2-93)	상암동 1-3 (대로3-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2공구 4공구
기정	대로	3	3	25	보조간선 도로	940	상암동 405 (광로2-93)	상암동 229-13 (대로3-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3공구 4공구
기정	대로	3	4	25	보조간선 도로	268	상암동 302-3 (대로1-1)	상암동 292-1 (대로3-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4공구
기정	대로	3	30	25 ~ 35	보조간선 도로	3,250 (306.2)	성산동 (대로 3-187)	상암동 129-2 (대로 1-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1공구,2공구 7공구
기정	대로	3	32	30	주간선 도로	2,175 (937)	상암동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4공구 5공구
기정	중로	1	401	20	집산 도로	257	상암동 1186 (대로3-1)	상암동 27-49 (대로3-30)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1공구
기정	중로	1	1	20	집산 도로	489	상암동 73 (대로3-2)	상암동 산6 (대로3-30)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2공구
기정	중로	1	2	20	집산 도로	164	상암동 98 (대로3-2)	상암동 876 (대로3-3)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4공구
기정	중로	1	3	20	집산 도로	298	상암동 172-4 (대로1-1)	상암동 251-10 (대로3-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4공구
기정	중로	1	4	20	집산 도로	1,089	상암동 85-2 (대로3-3)	상암동 445-1 (중로1-6)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3공구
기정	중로	1	5	20	집산 도로	89	상암동 360-4 (중로1-4)	상암동 301 (대로1-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3공구
기정	중로	1	6	20	집산 도로	607	상암동 1542-1 (광로2-93)	상암동 446 (대로3-32)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3공구
기정	중로	1	7	20	집산 도로	90	상암동 383-1 (중로1-4)	상암동 374-3 (대로1-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3공구
기정	중로	1	8	20	집산 도로	94	상암동 296답	상암동 292-3 (대로3-4)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4공구
기정	중로	1	9	20	집산 도로	297	상암동 291 (대로 3-4)	상암동 258-1 (중로1-3)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4공구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0	20	특수 도로	278	상암동 244-4 (중로1-3)	상암동 220 (대로3-3)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4공구 (자전거도로포함)
기정	중로	1	11	20	특수 도로	74	상암동 218 (대로3-3)	상암동 202-6 (중로2-6)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4공구 (자전거도로포함)
기정	중로	2	404	15	집산 도로	250	상암동 1251 (중로 1-126)	상암동 1271 (중로 1-40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1공구
기정	중로	2	405	15	집산 도로	79	상암동 1188 (중로 1-126)	상암동 1271 (중로 2-404)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1공구
기정	중로	2	406	15	집산 도로	89	상암동 1183 (중로 1-401)	상암동 1178 (중로 2-407)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1공구
기정	중로	2	407	15	집산 도로	279	상암동 1153 (중로 1-126)	성산동 495 (중로 1-40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1공구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202	상암동 산14-8 (중로 1-2)	상암동 136-4 (중로 2-2)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4공구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164	상암동 170-3 (대로 3-3)	상암동 산11-1 (대로 3-2)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96호 (2002.5.30)	4공구
기정	중로	2	3	15	집산 도로	265	상암동 369 (대로1-1)	상암동 251-13 (대로3-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96호 (2002.5.30)	4공구
기정	중로	2	4	15	집산 도로	253	상암동 368-2 (대로 1-1)	상암동 251-45 (대로 3-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96호 (2002.5.30)	4공구
기정	중로	2	5	15	집산 도로	250	상암동 304 (대로 1-1)	상암동 308-3 (대로 3-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96호 (2002.5.30)	4공구
기정	중로	2	6	15	특수 도로	297	상암동 202-4 (대로 1-1)	상암동 9-10 (대로 3-1)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96호 (2002.5.30)	4공구 (자전거도로포함)
기정	소로	1	1	10	특수 도로	242	상암동 112-3 (중로 1-1)	상암동 산12-3 (대로 3-2)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2공구 (자전거도로포함)
기정	소로	1	2	10	특수 도로	80	상암동 산11-4 (중로 2-1)	상암동 산12-3 (대로 3-2)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4공구 (자전거도로포함)
기정	소로	1	3	10	특수 도로	75	상암동 138-1 (대로 3-3)	상암동 136-9 (중로 2-1)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4공구 (자전거도로포함)
기정	소로	1	4	10	특수 도로	177	상암동 193 (대로 1-1)	상암동 187 (중로 1-11)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4공구 (자전거도로포함)
기정	소로	1	5	10	특수 도로	147	상암동 187 (중로 1-11)	상암동 234-7 (대로 3-1)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4공구 (자전거도로포함)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15	상암동 11-21 (대로 3-2)	상암동 1385-8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4공구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99	상암동 394 (중로 1-4)	상암동 산2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6공구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34	상암동 334 (중로1-4)	상암동 357-1 (중로1-4)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3공구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150	상암동 431-1 (중로1-6)	상암동 448 (중로1-6)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3공구
기정	소로	2	5	8	특수 도로	16	상암동 6-1 (중로1-1)	상암동 34-37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2002-196호 (2002.5.30)	2공구
기정	소로	3	1	6 ~ 10	국지 도로	369 (110)	상암동 1533 (중로1-401 상암동1280-1)	상암동 1258 (중로2-404 상암동1285-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1공구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20	상암동 24-9 (대3-30)	상암동 24-8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1공구
기정	소로	3	4	6	특수 도로	1	상암동 34-58	상암동 34-7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2공구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42	상암동 37-15 (대3-30)	상암동 37-27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2공구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72	상암동 115-7 (대3-30)	상암동 115-5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2공구
기정	소로	3	7	4	특수 도로	42	상암동 357-1 (중로1-4)	상암동 357 (소로2-3)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3공구
기정	소로	3	8	4	특수 도로	21	상암동 335-2 (소로2-3)	상암동 335-2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3공구
기정	소로	3	9	6	특수 도로	60	상암동 431-1 (중로1-6)	상암동 451-2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2002-196호 (2002.5.30)	3공구
기정	소로	3	10	6	특수 도로	64	상암동 136-6 (중로2-2)	상암동 136-1 (대로1-1)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2002-196호 (2002.5.30)	4공구
기정	소로	3	11	4	특수 도로	220	상암동 672-1	상암동 695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5공구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105	상암동 134-7	상암동 8-17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4공구
기정	소로	3	13	4	특수 도로	8.5	상암동300-2	상암동300-2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56호 (2009.11.19)	3공구
기정	소로	3	14	4	특수 도로	96.53	상암동197-1	상암동197-1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56호 (2009.11.19)	3공구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5	2	특수 도로	19.5	상암동 223	상암동 224-3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77호 (2010.12.30)	4공구
기정	소로	3	16	6	특수 도로	4	상암동 91	상암동 91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77호 (2010.12.30)	4공구

주) ()는 사업지구내 구간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고
광로2-2	광로2-2	- 연장 및 면적 증가 - 연장 : 0m→140.0m - 면적 : 0m→122.9㎡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사업계획 반영	
광로2-93	광로2-93	- 연장축소 - 2,498+2,358m(감 140m)	노선 길이 정정	
대로2-13	대로2-13	- 연장 및 면적 증가 - 연장 : 0m→80.0m - 면적 : 0m→89.7㎡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사업계획 반영	
대로3-1	대로3-1	일부선형변경에 따른 면적 (감82㎡) 감소	관리청(KR)협의 결과 수색·광명 복선전철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 제척	

(2) 주차장(변경없음) : 생략

(3)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 생략

(4) 철도시설(변경없음) : 생략

나) 공간시설 : 변경

(1) 광장(변경없음) : 생략

(2) 공원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85,257.1	-	185,257.1		
소계					163,536.7	-	163,536.7		
기정	1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상암동 산21임 일원	149,250.2	-	149,250.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6공구 ▶8공구
기정	2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상암동 313-3답 일원	14,286.5	-	14,286.5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2002.5.30)	4공구
소 계					7,434.6	-	7,434.6		
기정	1	생활권공원	이린이공원	상암동 1282 대 일원	2,896.8	-	2,896.8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1공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생활권공원	이린이공원	상암동 114-1전 일원	1,511.3	-	1,511.3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2공구
기정	3	생활권공원	이린이공원	상암동 154-5대 일원	1,522.2	-	1,522.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3공구
기정	4	생활권공원	이린이공원	상암동 462-2전 일원	1,504.3	-	1,504.3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3공구
소 계					14,285.8	-	14,285.8		
기정	1	주제공원	문화공원	상암동 260-2답 일원	4,630.7	-	4,63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645호 (2007.8.2)	4공구
기정	2	주제공원	문화공원	상암동 203-4답 일원	3,828.6	-	3,828.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645호 (2007.8.2)	4공구
기정	3	주제공원	문화공원	상암동 260-2답 일원	3,154.7	-	3,154.7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9호 (2008.11.13)	4공구
기정	4	주제공원	문화공원	상암동 260-2답 일원	2,671.8	-	2,67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9호 (2008.11.13)	4공구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근린공원	• 면적변경 없음	• 공구별 분할사항 반영

(3) 녹지(변경없음) : 생략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생략

마) 환경기초시설 : 변경

(17) 하수도시설 :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하수도	고양시 덕은동 569-2천 일원	3,123.0	감) 212.6	2,910.4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 (1998.6.16)	6공구 (오수펌프 장)
기정	2	하수도	상암동 205-3전 일원	89.9	-	89.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96호 (2002.05.30)	4공구 (오수펌프 장)

○ 하수도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하수도 시설	• 면적 감소 - 3,123.0㎡→2,910.4㎡(감212.6㎡)	•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시행계획 선형 반영

바) 방재시설 : 변경

(1) 하천(변경없음) : 생략

3) 도시계획시설이외의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 변경

가)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나) 단독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라) 상업용지(변경없음) : 생략

마)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생략

바) 종교시설(변경없음) : 생략

사) 도시형공장(변경없음) : 생략

아) 차고지(변경없음) : 생략

자) 가스충전소(변경없음) : 생략

차) 교육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카) 방송시설(변경없음) : 생략

타) 문화 및 집화업무시설(변경없음) : 생략

파) 문화시설 : 변경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1	기정 상암동 산21임 일원	11,099.1	-	-	-	-	-	11,099.1	-	-	박정희 기념도서관
	변경 상암동 산21임 일원	11,099.1	-	-	-	-	-	-	-	11,099.1	박정희 기념도서관

하) 청소년수련시설(변경없음) : 생략

거) 교육연구 또는 첨단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너) 유치원용지(변경없음) : 생략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Scale = 1/5,000) : 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1(변경없음) : 생략

나)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2 : 변경

구 분		가구/획지번호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 원	근린공원	근1	149,250.2	-	149,250.2	
		근2	14,286.5	-	14,286.5	
	어린이공원	어1	2,896.8	-	2,896.8	
		어2	1,511.3	-	1,511.3	
		어3	1,522.2	-	1,522.2	
		어4	1,504.3	-	1,504.3	
공원	문화공원	문1	4,630.7	-	4,630.7	
		문2	3,828.6	-	3,828.6	
		문3	3,154.7	-	3,154.7	
		문4	2,671.8	-	2,671.8	
녹지	완충녹지	완1	4,883.5	-	4,883.5	
		완2	808.6	-	808.6	
		완3	736.0	-	736.0	
		완4	353.6	-	353.6	
		완5	941.2	-	941.2	
		완6	829.4	-	829.4	
		완7	3,673.4	-	3,673.4	
		완8	987.4	-	987.4	
		완9	428.2	-	428.2	
		완10	481.5	-	481.5	
		완11	1,794.8	-	1,794.8	
		완12	1,180.7	-	1,180.7	
		완13	1,189.3	-	1,189.3	
		완14	5,894.6	-	5,894.6	
		완15	3,181.6	-	3,181.6	
		완16	540.4	-	540.4	
		완17	389.4	-	389.4	
		완18	1,273.1	-	1,273.1	
		완19	857.6	-	857.6	
		완20	822.7	-	822.7	
		완21	850.6	-	850.6	
		완22	877.8	-	877.8	
		완23	3,506.7	-	3,506.7	
		완24	1,341.8	-	1,341.8	
		완25	1,471.7	-	1,471.7	
		완26	1,150.7	-	1,150.7	
		완27	1,458.9	-	1,458.9	
		완28	1,456.5	-	1,456.5	
		완30	645.5	-	645.5	

구 분		가구/획지번호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경관녹지	완31	629.5	-	629.5	
		완32	1,010.2	-	1,010.2	
		경1	15,250.5	-	15,250.5	
		경2	5,768.8	-	5,768.8	
		경3	1,620.6	-	1,620.6	
		경4	3,540.0	-	3,540.0	
		경5	425.6	-	425.6	
		경6	335.4	-	335.4	
		경7	783.9	-	783.9	
		경8	461.3	-	461.3	
		경9	1,119.5	-	1,119.5	
		경10	550.6	-	550.6	
광 장	미관광장	광장1	2,394.9	-	2,394.9	
		광장2	468.6	-	468.6	
공공청사	동사무소	동1	883.1	-	883.1	
	파출소	파1	261.5	-	261.5	
	우체국	우1	868.2	-	868.2	
	소방파출소	소	949.6	-	949.6	
	운전면허시험장	서부운전면허시험장	7,114.0	-	7,114.0	
주차장		주1	2,375.6	-	2,375.6	
		주2	3,623.6	-	3,623.6	
		주3	2,342.0	-	2,342.0	
		주4	1,908.0	-	1,908.0	
사회복지시설		복지1	2,448.9	-	2,448.9	
		복지2	15,458.3	-	15,458.3	
		복지3	3,192.4	-	3,192.4	
		복지4	991.3	-	991.3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정류장1	4,986.2	-	4,986.2	
		자동차정류장2	4,470.3	-	4,470.3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1	3,601.0	-	3,601.0	
		전기공급설비2	316.0	-	316.0	
운동장 및 시장		운동장 및 시장	211,405.8	-	211,405.8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1,463.1	-	1,463.1	
문화시설		문화시설1	11,099.1	-	11,099.1	
철도시설		철도시설1	1,426.1	-	1,426.1	
		철도시설2	236.6	-	236.6	
하수도시설		하수도시설1	3,123.0	감) 212.6	2,910.4	
		하수도시설2	89.9	-	89.9	
공동구		공동구1	512.6	-	512.6	
하 천		하천	1,257.0	-	1,257.0	
유치원		유치원1	885.7	-	885.7	
		유치원2	1,130.0	-	1,130.0	

- 다)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등에 관한 기준(변경없음) : 생략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생략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생략
-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Scale = 1/5,000) : 생략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02 - 2133 - 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계획처 도시개발계획부(☎02 - 3410 - 75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01호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34-10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2.6.15.) 및 2023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4.5.)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구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도곡동 934-10번지 일대	20,970.0	-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100.06% ⇒ (11,541.9억 - 3,554.7억) / 7,982.7억 × 100 = 100.06% - 총 수입 추정 : 11,541.9억 - 총 지출 추정 : 3,554.7억 - 종전자산총액 추정 : 7,982.7억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	- 우성아파트 공동주택 소유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 보정률 (1.40) ※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토지평가액 포함하며, 상기 보정률은 본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임. ※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 우성아파트 상가 소유자 = 대지권 또는 지분과 건물을 일체로 각각의 집합건물을 본건 및 인근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격을 추정. (전유면적당 단가 × 전유면적)

추정 분담금 산출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76㎡형	19.2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100.06%)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84㎡형	20억			
	상가(지하) 471.30㎡	54.3억			
	상가(1층) 362.02㎡	93.5억			
	상가(2층) 362.02㎡	51.5억			
	상가(3층) 362.02㎡	37.4억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정비계획 결정도서 참조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0,970.00	10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8.00	0.13	-
	공 원	28.00	0.13	-
획 지	소 계	20,942.00	99.87	-
	획지1	20,942.00	99.8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20,970.0	-	20,970.0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0,970.0	-	20,970.0	100.0	-

5.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공 원

■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 경	-	싸리고개 공원	근린공원	도곡동 555번지	5,443.8	증)28.0	5,471.8	서고시 제82호 '97.3.31.	-

■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 원	•공원면적 변경 - 증) 28.0㎡	•공원구역의 정형화 및 구역내 토지이용의 개선을 위한 공원 면적 증 가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종류	법정기준	법정면적(㎡)	계획면적(㎡)	비고
근린생활 시설	근린생활시설	-	-	800	-
주민 공동 시설	경로당	225㎡ 이상	225	230	-
	작은도서관	서울시 : 500~1,000세대, 158㎡ 이상	158	160	-
	운동시설	-	-	820	옥내 : 340㎡ 옥외 : 480㎡
	어린이놀이터	200㎡ + (세대수×1)	748	760	-
	어린이집	서울시 : 500~1,000세대, 330㎡ 이상	330	340	-
	다함께돌봄센터	-	-	150	-
	커뮤니티시설	-	-	280	지역개방시설
부대시설	경비실	-	60	60	-
	관리사무소	10 + (세대수 - 50) × 0.05	34.9	90	-
	저수조	(세대수 × 0.6) + 소방용수	358.8	400	-
	MDE/방재/ 기계/전기실	-	-	500	-
기타시설	지하주차장	-	-	32,121	근린생활시설 포함

※ 지역개방시설 내 실내형 어린이놀이터 포함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		계	존 처	개 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 설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20,970.0	도곡동 934-10번지 일원	3	-	-	3	-	-

8. 건축시설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층수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정비 계획	예정 법정 상한	
신 설	도곡우성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20,970.0	획지1	20,942.0	도곡동 934 - 10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30.39% 이하	299.53% 이하	최고 26층이하 (80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구 분				세대수	비 율(%)	비 고	
			계				548	100.00		
			공동 주택	공공 주택	60㎡이하	59㎡형	82	14.96		
					60㎡~85㎡이하	84㎡형	6	1.09		
				분양	60㎡이하	59㎡형	58	10.58		
					60㎡~85㎡이하	84㎡형	270	49.27		
					85㎡초과	110㎡형	132	24.10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75.90%										
심의완화 사항			• 예정법정상용적률 : 299.5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계획목표			
			획지 및 도로 연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개방감 확보 및 도로·보행환경 개선			

나. 용적률 계획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산정내용						비 고
토지이용 계획 (㎡)	구역면적	획 지	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신설 정비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소 계	토 지(지분)			
				공 원			
	20,970.0㎡	20,942.0㎡	28.0㎡	28.0㎡	-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 시설 국공유지 면적 = 28.0㎡ - 0㎡ - 0㎡ = 28.0㎡ (구역 면적 대비 0.13%)						
토지 기부채납	• 토지 기부채납 : 28.0㎡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210%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정비예정구역 계획용적률 210% 적용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구 분		인센티브		비 고		
	합계		24%		총 24%중 최대 20%적용 ※녹색건축물 12%중 의무비율 8%를 제외한 4% 완화적용		
	장수명주택(우수)		10%				
	녹색건축물(최우수)		12%				
	지능형건축물(4등급)		6%				
상한용적률 산정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 + 1.3 x 가중치 x a [토지]) = 230% x (1 + 1.3 x 1.0 x 0.001337026) = 230.39% a [토지] = 공공시설제공면적(토지)÷공공시설부지 제공(토지)후 대지면적 = (28.0㎡) ÷ {20,970.0㎡ - 28.0㎡} = 0.001337026						
법적상한 용적률	• 299.53% 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의거 소형주택(60㎡이하) 건설 및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국민주택규모 주택건립 용적률	• 34.57% 이상 (계획 : 34.01%) (299.53% - 230.39%) x 0.5 = 34.57%						

■ 예상법적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내 용	비 고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 상한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 -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법적 상한용적률 299.53% 이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결정된 예정 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심의를 통해 확정	-

■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산출근거	용적률(%), 면적(m ²)	비 고
기준용적률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적률 체계	210.00%	-
허용용적률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완화항목	230.00%	-
정비계획용적률	기부채납을 통한 용적률 완화 $\text{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 [\text{토지}])$	230.39%	-
법적상한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299.53	300.00%
증가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 299.53% - 230.39%	69.1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4조제4항」
국민주택규모 주택 면적 산출	계획대지면적 $\times$ (증가용적률의 1/20이상) 20,942.0m ² $\times$ 34.57%	7,239.65m ²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최소면적 (계획:7,287.87m ²)

9.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예상 세대수	비 고
관리처분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현황 : 390세대 •변경 : 548세대 증) 158세대	-

10.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 분	지 점	개선방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주변 분석대상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 : 3개소
진출입 동선	- - -	• 사업지 진출입구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 - 비신호교차로(점멸신호) • 방문자, 입주자 진입차로 분리 • 사업지 진출입구 회전반경 확보 : R=8.0m
대중교통 및 보행, 자전거	- -	•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 2개소 •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자전거보관소 설치
주차	- - - -	• 계획주차대수 : 747대(자주식) • 법정주차대수 : 657대 • 주차수요대수(2027년) : 679대 - 법정의 113.7%, 수요의 110.0% 확보 • 어린이보호차량 정차공간(Drop - zone) 확보
교통안전 및 기타	-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차량경고등 : 1개소

11.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 보전	자연 환경	• 질·성토의 균형을 고려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는 토공계획 수립 • 기존구역 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 공간 확장	-
	생활 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사용(LNG)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 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 방지	수재해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대상지 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대상지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자연토양 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공원, 전면공지 등 녹지조경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수해	• 대상지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재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 계획을 수립 • 대상지내 모든 아파트에 대하여 스프링클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비치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소방도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범위		내 용	비 고
용도제한을 통한 교육 환경보호	정비구역 전체		• 불허용도계획을 통한 유흥업소(단란주점, 안마사술소, 안마원)등 교육환경 위해시설 입지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교육 환경 보호 구역	상대 보호 구역	• 설정기준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류 제9조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되는 행위 및 시설은 금지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호부터 29호까지에 해당되는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	
통학권 보행안전 대책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 지정기준 :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 신호기·안전표지 설치, 도로부속물 설치,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등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분명한 시야선 확보	- 건축물 설계나 도시계획 시 부명한 시야선을 확보하고, 숨을 수 있는 장소 최소화 - 산책길을 따라 관목을 식재하고, 안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 확보 - 수목 식재 형태 및 크기의 일관성 유지로 은닉장소를 없앴
적합한 조명의 사용	적절한 조명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둠이 없는 적합한 조명설계
고립지역 개선	시야선이 닿지 않거나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곳, 사람의 통행이 적거나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유사시 구조 요청 또는 구조가 어려운 지역을 과감히 없애는 설계
사각지대의 개선	감시가 곤란한 지역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설계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	다양한 복합시설 배치로 활용도를 높여 시설이용을 증진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연적인 감시로 안전성 확보
활동인자 증대	일정지역에 모여 활동하도록 하여 도로나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감소
영역성 강화	특정지역에 대한 소유감·영역성 부여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게는 허가받지 않은 영역 침범에 불안심을 증폭시켜 범죄를 예방
정확한 표시로 정보제공	표지판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주민이나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쾌적한 공간설계 지향	보안장비 설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환경이 메말라 오히려 공포감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안락감을 제공

1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신 규	획지1	20,942.0	도곡동 934-10번지 일원	20,942.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강남구 도곡동 934-10번지 일원	20,942.0	7동	88세대	59.90㎡ / 84.0㎡	의무 연면적 7,239.65㎡

I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 규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도곡동 934·10번지 일대	-	증) 20,970.0	20,970.0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0,970.00	10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8.00	0.13	-
	공 원	28.00	0.13	-
획 지	소 계	20,942.00	99.87	-
	획지1	20,942.00	99.8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용도지역 결정 사항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제3종일반주거지역	20,970.0	-	20,970.0	-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공원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	싸리고개 공원	근린공원	도곡동 555번지	5,443.8	증) 28.0	5,471.8	서고시 제82호 '97.3.31.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 원	• 공원 면적 변경 - 증) 28.0㎡	• 공원구역의 정형화 및 구역내 토지이용의 개선을 위한 공원 면적 증가

5.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신 규	획지1	20,942.0	도곡동 934-10번지 일원	20,942.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전 총	비 고
신 규	허용용도	획지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2) 건폐율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지 역	건폐율	비 고
신 규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3)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기존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10%	• 230.00%이하	• 299.53%이하 (법정상한용적률)	-

※ 법정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예정법정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심의를 통해 확정됨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인센티브	비 고
합 계	• 24%	총 24% 중 최대 20% 적용 ※녹색건축물 12% 중 의무비율 8%를 제외한 4% 완화적용
장수명주택(우수)	• 10%	
녹색건축물(최우수)	• 12%	
지능형건축물(4등급)	• 6%	

■ 상한(법적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토지 기부제납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신 규	28㎡	34.57%	-

4)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지 역	최고높이	비 고
신 규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 최고층수 26층 이하(80m 이하)	-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 고
신 규	획지1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진출입구	• 도곡로14길 및 남부순환로363길에서 진출입	-

3) 국민주택규모 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 계획기준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4항)

제54조제4항(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용)	
-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 계획기준2(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제1항)

제30조제1항(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용 등)	
- 법 제5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기준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 × 50%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계획

구 분		주요내용			
법적상한용적률		연면적 : 62,728.30㎡ / 부지면적 : 20,942.00㎡ = 299.53%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 230.39% (기준용적률 : 210%, 인센티브 : 20%, 기부채납 : 0.39%)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299.53% - 230.39% = 69.14%			
	증가된 용적률의 50%	69.14% × 0.5 = 34.57% 20,942㎡ × 34.57% = 7,239.65㎡			
	의무 연면적	7,239.65㎡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합계	88	7,287.8758㎡	의무 연면적 7,239.65㎡ (34.57%) 이상
		59㎡형	82	6,608.2324㎡	
		84㎡형	6	679.6434㎡	

III. 2023년 제5차(2023.4.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심의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수정가결	- 수정사항 - 획지면적 : 20,942.0㎡ - 용적률 : 기준 210%, 허용 230%, 상한 230.39%, 법적상한 299.53% ※ 허용용적률 : 장수명 10%, 친환경(최우수 등급) 4%, 지능형건축물 6% - 공공기여 : 28㎡(0.13%) ※공원 - 높이계획 : 최고 80m 이하(최고 26층) - 세대수 : 전체 548세대(공공 88세대 포함)	반영
	- 조건사항 -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시 창의적인 디자인(안) 제시 (예시 : 창의적인 입면 디자인, 저층부 가로활성화계획 등)	추후반영

IV.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3.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변경)도
4. 정비계획 결정도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VI.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 - 2133 - 7141),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02 - 3423 - 6092)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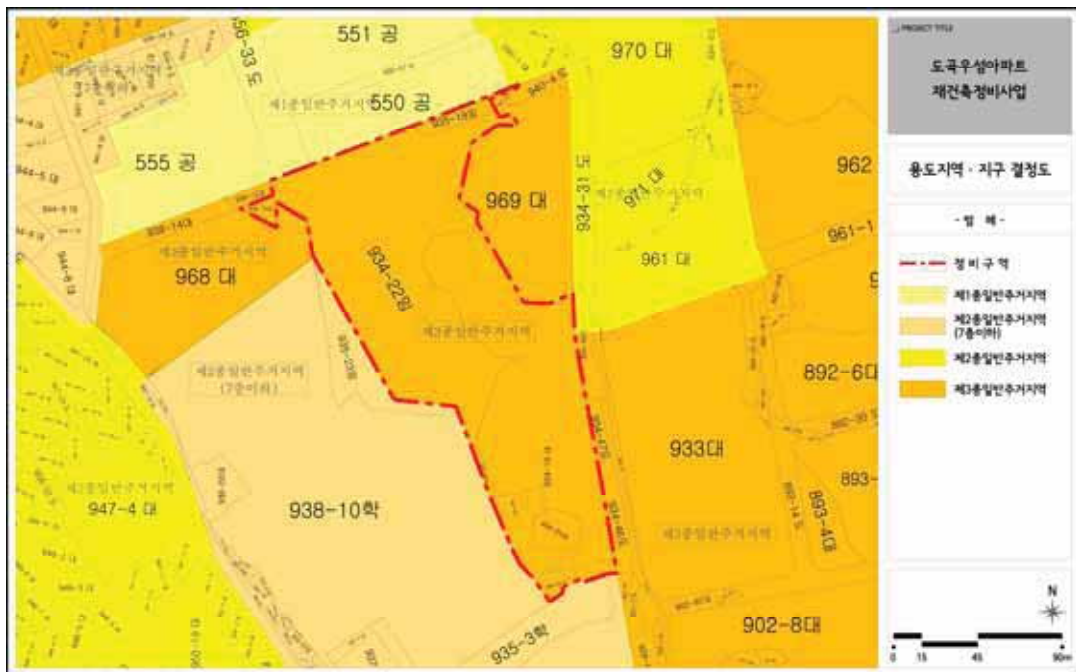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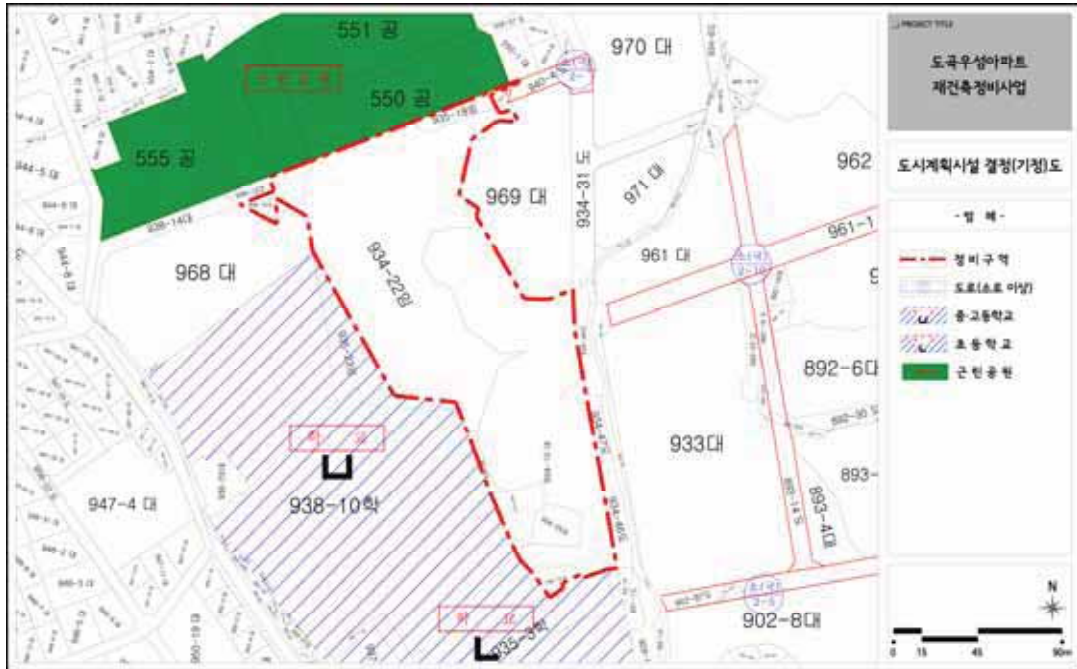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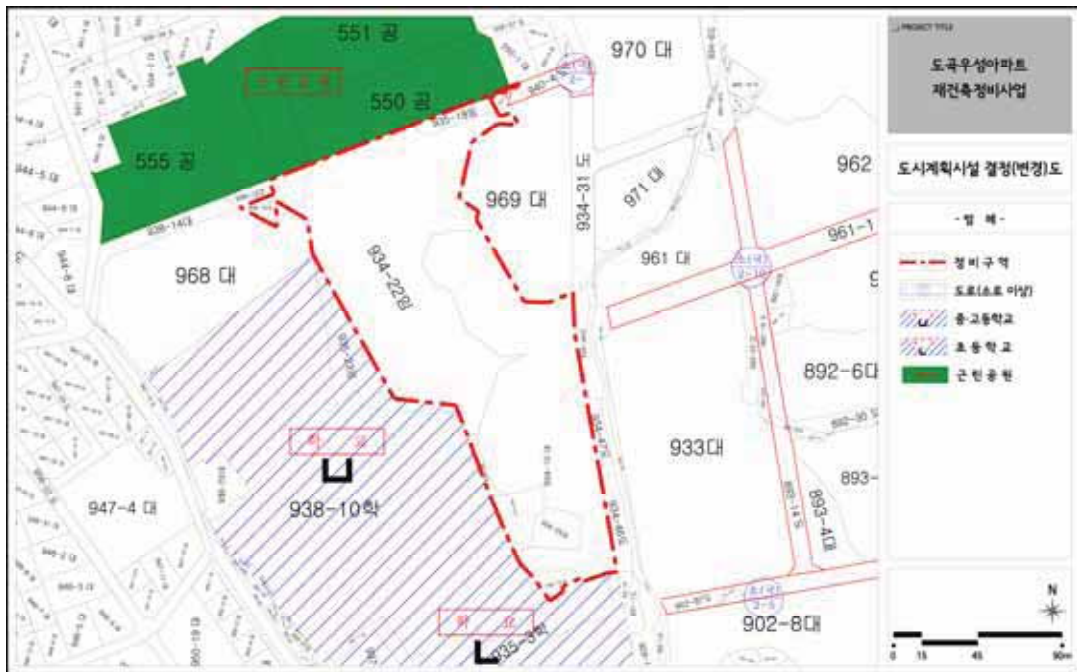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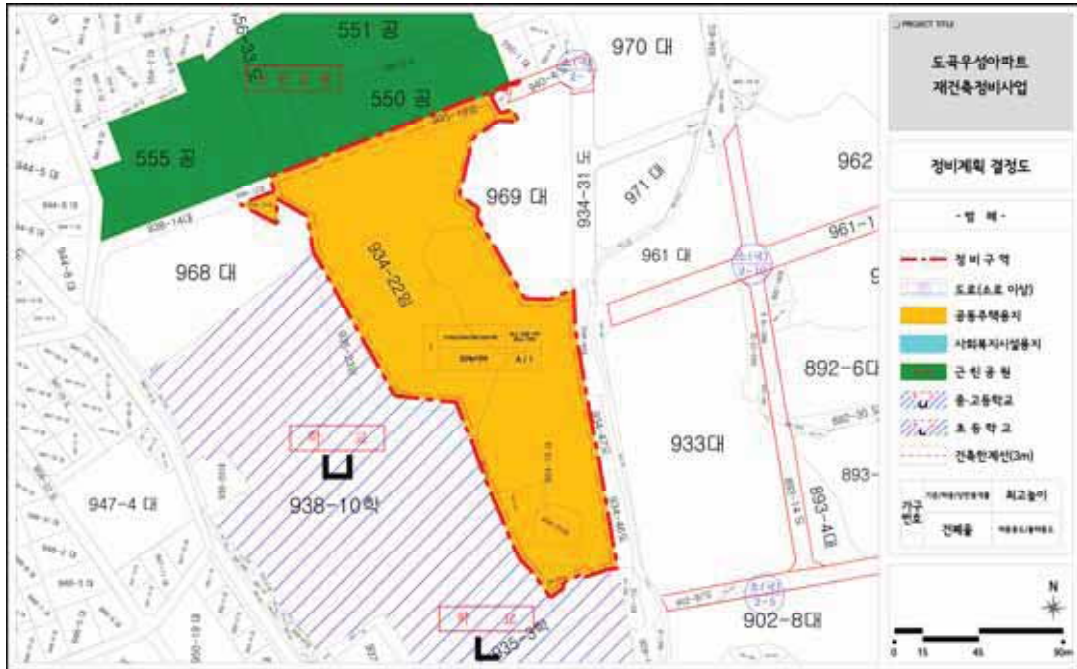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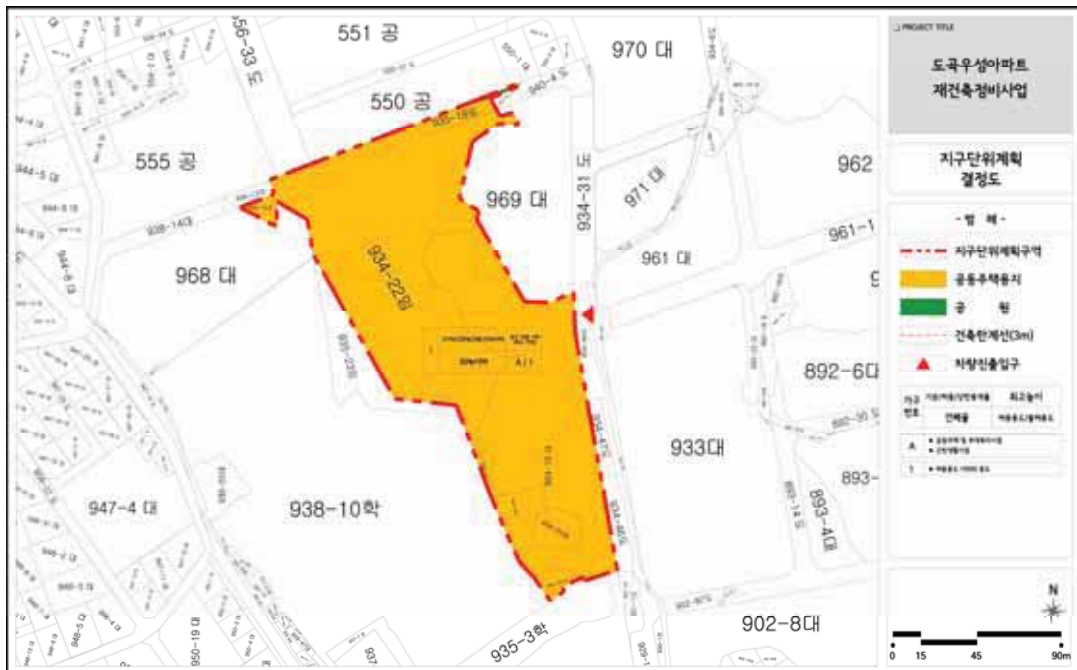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정비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0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취소 고시

1. 금천구고시 제2014 - 8호(2014. 3. 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 - 448호(2014. 12. 26.)로 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 - 67호(2015. 3. 12)로 변경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 - 164호(2015. 6. 18)로 변경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 - 268호(2015. 9. 10)로 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제2015 - 275호(2015. 9. 17)로 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 - 58호(2016. 3. 3)로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제2016 - 351호(2016. 11. 10)로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제2016 - 373호(2016. 11. 17)로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제2018 - 415호(2018.12.20.)로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제2023 - 45호(2023.2.9.)로 변경인가 고시된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취소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1. 사업내용(실시계획 변경인가 취소 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가산동319 - 10(디지털3단지) ~ 독산1동998 - 10(두산길) (변경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건설공사
 -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1) 전 체 : 폭4차로, 연장452m (지하차도290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 변경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78) 및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02-6438-24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취소 사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절차 이행을 위해 실시계획 변경인가 취소 후 재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03호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85호(2019.8.29.)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6호(2023.2.9.)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되었으며, 제2023-73호(2023.3.9.)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된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장

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 명칭 :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변경)
-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위 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745일원	※ 확정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지번 재부여로 75-6, 75-38, 75-62, 75-63, 1641-7, 1641-113 → 1745, 1745-1로 변경
면 적	2,915.7㎡	2,962.6㎡	증) 46.9㎡

■ 변경사유 : 확정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의 변경 및 지번 재부여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1) 토지세목조서(변경)

[기정]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관악구 신림동	75	6	대	660.0	[위탁자] 주식회사 신림리더스 하우징 [수탁자] 우리자산 신탁	서울 관악구 신림로 344 에스케이허브 그린 301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삼정빌딩 12층	100%	-	-	-
2		75	38	대	185.0						
3		75	62	대	496.0						
4		75	63	대	496.0						
5		1641	7	대	480.2						
6		1641	113	대	598.5						
합계					2,915.7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관악구 신림동	1745		대	2,885.6	[위탁자] 주식회사 신림리더스 하우징	서울 관악구 신림로 344 에스케이허브 그린 301호	100%	-	-	
2		1745	1	도	77.0	[수탁자] 우리자산 신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삼정빌딩 12층				
합계					2,962.6	▲ 46.9㎡ 증가					

■ 변경사유 : 확정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의 변경 및 지번 재부여

2) 물건조서(변경)

[기정]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일자	규 모			소유자	관계인			관련 지번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관악구 신림동	75	6	대	근생	철골 구조	2002.12.31	1,488.0	-	2	[위탁자] 주식회사 신림리더스하우징	-	-	-	
		75	62	대											
		75	63	대											
2		75	38	대	주택	연와조	1971.08.05	95.2	1	1					
3		1641	7	대	기숙사	철근 콘크리트 조	1993.12.27	1,944.5	1	4	[수탁자] 우리자산신탁	-	-	-	
		1641	113	대											
합계								3,527.7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일자	규 모			소유자	관계인			관련 지번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	-	-	-	-	-	-	-	-	-	-	-	-	-	-	

■ 변경사유 : 기존 건축물 철거에 따른 내용 변경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499,960	증) 46.9	500,006.9	서고 제231호 (1996.08.1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증가 - 기정 : 499,960.0㎡ - 변경 : 증) 46.9㎡ - 변경 후 : 500,006.9㎡	• 확정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의 변경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변경없음)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 명칭 :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변경)
-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위 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745일원	※ 확정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지번 재부여로 75-6, 75-38, 75-62, 75-63, 1641-7, 1641-113 → 1745, 1745-1로 변경
면 적	2,915.7㎡	2,962.6㎡	증) 46.9㎡

■ 변경사유 : 확정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의 변경 및 지번 재부여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주택건설용지	2,838.7	증) 46.9	2,885.6	97.4	임대주택
도로	77.0	-	77.0	2.6	6m 도로 내 2m 폭원 확보
합 계	2,915.7	증) 46.9	2,962.6	100.0	-

■ 변경사유 : 확정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의 변경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총괄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계		499,960.0	증) 46.9	500,006.9	100.0	
주거 지역	소계	353,176.6	증) 77.0	353,253.6	70.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35,770.5	증) 6.1	35,776.6	7.1	
	제3종일반주거지역	76,956.6	-	76,956.6	15.4	
	준주거지역	240,449.5	증) 70.9	240,520.4	48.1	
상업 지역	소계	146,783.4	감) 30.1	146,753.3	29.4	
	일반상업지역	146,783.4	감) 30.1	146,753.3	29.4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계		2,915.7	증) 46.9	2,962.6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증) 6.1	6.1	0.2	· 신림동 1745, 1745-1
	준주거지역	-	증) 70.9	70.9	2.4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2,915.7	감) 30.1	2,885.6	97.4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관악구 신림동 1745	일반상업지역	2,915.7	2,885.6	· 확정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의 변경 - 면적 : 2,915.7㎡ → 2,885.6㎡ (감 30.1㎡)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관악구 신림동 1745-1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	6.1	• 도로조성에 따른 필지분할로 인한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
		준주거지역	-	70.9	

(3)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499,960	증) 46.9	500,006.9	서고 제231호 (1996.08.1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증가 - 기정 : 499,960.0㎡ - 변경 : 증) 46.9㎡ - 변경 후 : 500,006.9㎡	• 확정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의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규모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최대 개발규모	비 고
일반상업지역	간선도로 가각부	3,000㎡	
	간선가로변	2,000㎡	
	이면부 및 내부블럭	1,000㎡	
	신림동 1745 외 1필지	3,000㎡	청년안심주택을 위한 공동개발지정 계획 필지 (1745, 1745-1) ※ 확정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지번 재부여로 75-6, 75-38, 75-62, 75-63, 1641-7, 1641-113 → 1745, 1745-1로 변경
준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가로변	1,500㎡	
	이면부 및 내부블럭	700㎡	

※ 단일필지로써 최대개발규모 이상인 필지, 하나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기공동개발), 공동개발계획필지(권장포함)에 한해서는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계획적 개발 허용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① 획지 및 공동개발 기준(변경없음)

②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기정

가구번호	면 적(㎡)	지 번	면적(㎡)	계획내용	비 고
42 (신림동) (도곽E)	19,592.7	75-6대	2,915.7	지정	• 신림동 75-38 필지의 편입에 따른 가구면적 증가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지정
		75-38대			
		75-62대			
		75-63대			
		1641-7대			
		1641-113대			

※ 가구번호 1~41, 43~51 : 변경 없음

변경

가구번호	면 적(㎡)	지 번	면적(㎡)	계획내용	비 고
42 (신림동) (도곽E)	19,592.7	1745대	2,885.6	획지	• 청년안심주택

※ 가구번호 1~41, 43~51 : 변경 없음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 공동개발(지정) 변경 - 지정 : 신림동 75-6, 75-38, 75-62, 75-63, 1641-7, 1641-113 공동개발 지정(2,915.7㎡) - 변경 : 신림동 1745 획지계획(2,885.6㎡)	• 확정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의 변경 및 지번 재부여로 공동개발 지정에서 획지계획으로 변경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 용도계획(변경없음)

(2) 건축물의 개발밀도 계획

① 건폐율 결정조서(변경없음)

②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의 용적률

구 분	적용지역		용적률				비 고	
			기준 용적률	기본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변경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	-	200%	-	청년주택 사업에 따른 신규 편입필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접도조건 양호	250%	-	-	350%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기존 용도지역을 고려한 기준용적률 설정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450%	-	-	660%		
변경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600%	-	-	800%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기존 용도지역을 고려한 기준용적률 설정
			-	724.40% 이하1)	724.86% 이하1)	-	법적용적률 이하2)	신림동 1745, 1745-1에 한함 ※ 확정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지번 재부여로 75-6, 75-38, 75-62, 75-63, 1641-7, 1641-113 → 1745, 1745-1로 변경

※ 접도조건양호 : 주거지역 8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 접도조건불량 : 주거지역 8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

※ 용도지역 변경 시기 : 1991. 5. 11일 이후 적용

- 1) 용도지역이 다른 획지간 공동개발에 의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산정방식 적용
 2)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
 주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주2)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a) 이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비율
 - a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주3) 서로 다른 용적률 규제를 받는 단위대지간 공동개발에 의하여 하나의 대지로 개발이 되는 경우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① 가구 및 획지계획 등의 변경에 의해 대지에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하고, 이면부로 위치가 변경되는 대지(필지분할 포함)는 이면부 지침을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면적이 큰 대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지구단위계획 또는 운영지침에서 별도의 계획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② 용도지역이 다른 획지들이 획지간 공동개발에 의하여 하나의 대지로 개발이 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름

■ 변경사유 : 확정측량성과 반영 및 도로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기본용적률 변경

■ 용적률 적용기준(변경)

[기정]

구 분		내 용	계획사항	비 고
공공 기여율	기본용적률	· 기본 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20.34%(주1) 이상 - 2,838.7㎡ × 20.34% = 577.39㎡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면적 : 20.51%(79세대, 582.14㎡)	· 신림동 75-6, 75-38, 75-62, 75-63, 1641-7, 1641-113에 한함 · 모든 항목 충족시 기본용적률 부여
	용도별 비율	· 80% 이상 90% 이하 · 10% 이상 20%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주거 : 비주거 = 87.86% : 12.14%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규모의 경우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 설치	· 커뮤니티시설 : 292.21㎡ - 청년커뮤니티공간 : 195.28㎡ - 지역주민커뮤니티공간 : 96.93㎡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7㎡, 18A㎡, 39A㎡, 39B㎡, 42A㎡, 42B㎡ 계획 · 공공지원임대주택 - 전용 17㎡, 18A㎡, 18B㎡, 39A㎡, 39B㎡, 42A㎡, 42B㎡ 계획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주1) 제2종일반(7층 이하),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가중평균 공공기여율 적용

[변경]

구 분		내 용	계획사항	비 고
공공 기여율	기본용적률	· 기본 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20.48%(주1) 이상 - 2,885.6㎡ × 20.48% = 590.97㎡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면적 : 20.59%(79세대, 594.06㎡)	· 신림동 1745, 1745-1에 한함 ※ 확정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지번 재부여로 75-6, 75-38, 75-62, 75-63, 1641-7, 1641-113 → 1745, 1745-1로 변경
용도별 비율	주거	· 80% 이상 90% 이하	· 주거 : 비주거 = 87.96% : 12.04%	
	비주거	· 10% 이상 20%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 응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규모의 경우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 설치	· 커뮤니티시설 : 293.19㎡ - 청년커뮤니티공간 : 198.63㎡ - 지역주민커뮤니티공간 : 94.56㎡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7㎡, 18A㎡, 39A㎡, 39B㎡, 42A㎡, 42B㎡ 계획 · 공공지원임대주택 - 전용 17㎡, 18A㎡, 18B㎡, 39A㎡, 39B㎡, 42A㎡, 42B㎡ 계획	
· 모든 항목 충족시 기본용적률 부여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주1) 제2종일반(7층 이하),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가중평균 공공기여율 적용

■ 변경사유 : 확정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공공기여 의무면적 및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면적
변경, 건축설계 변경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용도비율, 주민공동시설 등)

㉠ 용도지역이 상향된 경우(1991.5.11 이후)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
용기준(변경없음)

㉡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입지시 기준허용용적률(변경없음)

③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변경없음)

(3) 건축물의 높이계획(변경없음)

(4) 건축물 배치계획(변경없음)

(5)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 및 통로계획(변경없음)

(2) 공공기여방안

① 공개공지의 조성(변경없음)

② 공공기여계획(변경)

[기정]

구 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공공기여계획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용도지역 변경 없음) → 일반상업지역	724.40% 이하	부지 면적의 20.34% 이상(주1) (577.39㎡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20.51% (79세대, 582.14㎡)	· 신림동 75-6, 75-38, 75-62, 75-63, 1641-7, 1641-113에 한함

주1)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적용

※ 단, 부지면적은 도로면적(77㎡)을 제외한 면적(2,838.7㎡)

※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변경]

구 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공공기여계획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용도지역 변경 없음) → 일반상업지역	724.86% 이하	부지 면적의 20.48% 이상(주1) (590.97㎡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20.59% (79세대, 594.06㎡)	· 신림동 1745, 1745-1에 한함

주1)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적용

※ 단, 부지면적은 도로면적(77㎡)을 제외한 면적(2,885.6㎡)

※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 변경사유 : 확정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공공기여 의무면적 및 공공기여 계획면적 변경

(3)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3. 방재계획(변경)

1) 호우재해(변경없음)

2) 사면 및 지반재해(변경)

- 지하굴토 공사시 사업지구내 알맞은 지하터파기 공법 선정

① 터파기 계획 : 흙막이공법 적용

② 흙막이 벽체

- 기정 : C.I.P 벽체 적용

- 변경 : C.I.P 벽체 적용(하부 RF BEAM 보강)

③ 지보재

- 기정 : 강재버팀보(STRUT, RAKER) 지지공법 적용
- 변경 : 역타공법 적용

④ 차수

- 기정 : S.G.R GROUTING 및 트윈젯 GROUTING공법 적용
- 변경 : S.G.M GROUTING공법 적용

■ 변경사유 : 굴토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흙막이 벽체, 지보재, 차수공법 변경

3) 기타재해(변경없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변경)

[기정]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관악구 신림동	75	6	대	660.0	[위탁자] 주식회사 신림리더스 하우징	서울 관악구 신림로 344 에스케이허브 그린 301호	100%	-	-	-
2		75	38	대	185.0						
3		75	62	대	496.0						
4		75	63	대	496.0						
5		1641	7	대	480.2						
6		1641	113	대	598.5						
합계					2,915.7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관악구 신림동	1745		대	2,885.6	[위탁자] 주식회사 신림리더스 하우징	서울 관악구 신림로 344 에스케이허브 그린 301호	100%	-	-	-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2		1745	1	도	77.0	[수탁자] 우리자산 신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삼정빌딩 12층				
합계					2,962.6	▲ 46.9㎡ 증가					

■ 변경사유 : 확정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의 변경 및 지번 재부여

2) 물건조서(변경)

[기정]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일자	규 모			소유자	관계인			관련 지번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관악구 신림동	75	6	대	근생 철골 구조	2002.12.31	1,488.0	-	2	[위탁자] 주식회사 신림리더스하우징	-	-	-	-	
		75	62	대											
		75	63	대											
2	관악구 신림동	75	38	대	주택	연와조	1971.08.05	95.2	1	1	[수탁자] 우리자산신탁	-	-	-	-
3		1641	7	대	기숙사	철근 콘크리트 조	1993.12.27	1,944.5	1	4					
		1641	113	대											
합계								3,527.7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일자	규 모			소유자	관계인			관련 지번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	-	-	-	-	-	-	-	-	-	-	-	-	-	-	

■ 변경사유 : 기존 건축물 철거에 따른 내용 변경

3) 토지취득방법(변경없음)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변경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변경없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1항에 따라 건축주가 해당요건에 적합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함(변경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위 치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 고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838.7	증) 46.9	2,885.6	100.0	-	-	-
주택건설용지	2,838.7	증) 46.9	2,885.6	100.0	자체사용	승인 후	-

■ 변경사유 : 확정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의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04호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근거 및 대상

□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시 대상 :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105개소

2.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

	담당 부서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1	안심돌봄복지과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목로 5 (신정동)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2	어르신복지과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동일로250길 44-142	저소득 어르신 보호
3	어르신복지과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로 199	저소득 어르신 보호
4	어르신복지과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성동구 마장로23길 12 (홍익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5	어르신복지과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랑구 양원역로 38 (망우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6	어르신복지과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노원구 섬밭로 313 (중계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7	어르신복지과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마포구 월드컵로36길 15 (성산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담당 부서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8	어르신복지과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신본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9	어르신복지과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37 (삼전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10	어르신복지과	시립영보노인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11	어르신복지과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동대문구 황목로 12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12	어르신복지과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13	어르신복지과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강동구 고덕로 199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14	어르신복지과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	은평구 수색동 354·10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15	어르신복지과	서울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동구 올림픽로 703	노인학대 신고·조사 및 예방 기관
16	어르신복지과	서울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은평구 역말로10길 30·1	노인학대 신고·조사 및 예방 기관
17	어르신복지과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노인학대 신고·조사 및 예방 기관
18	어르신복지과	서울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북구 노해로 69	노인학대 신고·조사 및 예방 기관
19	어르신복지과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동구 동남로71길 32·5 (명일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20	어르신복지과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북구 삼양로92길 40 (인수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21	어르신복지과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구 화곡로61길 85 (등촌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22	어르신복지과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구 보라매로 35 (봉천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23	어르신복지과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 군자로 88 (군자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24	어르신복지과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구 새말로16길 7 (구로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담당 부서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25	어르신복지과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시흥대로51길 93-32 (시흥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26	어르신복지과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노원로16길 15 (하계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27	어르신복지과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구 도당로2길 12-13 (쌍문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28	어르신복지과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 제기로33길 25 (청량리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29	어르신복지과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상도로11길 7 (대방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30	어르신복지과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구 서강로 68 (서강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31	어르신복지과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57 (천연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32	어르신복지과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구 삼일대로 467 (경운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33	어르신복지과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구 마조로 77 (마장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34	어르신복지과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종암로15길 10 (종암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35	어르신복지과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산구 독서당로11길 16 (한남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36	어르신복지과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 연서로 415 (진관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37	어르신복지과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 검재로9길 45 (면목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38	장애인복지정책과	시립평화로문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중증장애인 보호
39	장애인복지정책과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6 (홍은동)	중증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40	장애인복지정책과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	중랑구 검재로61길 81 (망우동)	중증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41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	비공개	피해장애인 일시보호

	담당 부서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42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성북)	비공개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43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남아)	비공개	피해장애아동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치료, 학업활동 지원
44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여아)	비공개	피해장애아동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치료, 학업활동 지원
45	장애인자립지원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46	장애인자립지원과	뇌성마비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47	장애인자립지원과	북부장애인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2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48	장애인자립지원과	상이군경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73 (상계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49	장애인자립지원과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 (남가좌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50	장애인자립지원과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2 (영등포동2가)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51	장애인자립지원과	남부장애인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52	장애인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53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 고덕로 201 (고덕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54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송파구 동남로 27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활프로그램 등 제공
55	장애인자립지원과	시립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양천구 목동서로 33 (목동)	장애인생산물판매
56	장애인자립지원과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서대문구 명지2길 14 (홍은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57	장애인자립지원과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송파구 마천로 226 (마천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58	장애인자립지원과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성북구 화랑로 134 1층 (하월곡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담당 부서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59	장애인자립지원과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번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60	장애인자립지원과	번동보호작업장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번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61	자활지원과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거리노숙인 상담 일시보호, 기타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62	자활지원과	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거리노숙인 상담 일시보호, 기타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63	자활지원과	시립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거리노숙인 상담 일시보호, 기타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64	자활지원과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성동구 가람길 125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및 노동능력 있는 노숙인에게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65	자활지원과	시립양평센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및 노동능력 있는 노숙인에게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66	자활지원과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및 알코올의존증, 정신질환 노숙인 대상 자립기반 조성 지원
67	자활지원과	시립은평의마을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및 단기간 가정, 사회 복귀 어려운 노숙인에게 상담, 치료, 요양 서비스 제공
68	자활지원과	시립돈의동쪽방상담소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20-2	쪽방상담소 운영 및 쪽방주민생활안정지원
69	자활지원과	시립창신동쪽방상담소	종로구 종로54길 29-3	쪽방상담소 운영 및 쪽방주민생활안정지원
70	자활지원과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중구 세종대로 30	쪽방상담소 운영 및 쪽방주민생활안정지원
71	자활지원과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용산구 후암로57길 9-12	쪽방상담소 운영 및 쪽방주민생활안정지원
72	자활지원과	시립영등포쪽방상담소	영등포구 경인로 823-2	쪽방상담소 운영 및 쪽방주민생활안정지원
73	양성평등담당관	시립여성보호센터	강남구 광령로34길 124 (수서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74	양성평등담당관	시립영보자재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75	양성평등담당관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대방동)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담당 부서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76	가족다문화담당관	서울이주여성디딤터	금천구 독산로50길 23 (시흥동)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
77	가족다문화담당관	마리공동체	비공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등
78	가족다문화담당관	서울시가족센터	중구 소파로4길 6	건강가정교육·상담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79	가족다문화담당관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긴급전화상담 및 긴급보호
80	아동담당관	시립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81	아동담당관	시립꿈나무마을 연두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82	아동담당관	시립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83	아동담당관	시립서부아동복지센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84	아동담당관	시립동부아동복지센터	동대문 답십리로69길 106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85	아동담당관	학대피해아동쉼터(중랑)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86	아동담당관	학대피해아동쉼터(관악)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87	아동담당관	학대피해아동쉼터(강서)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88	아동담당관	학대피해아동쉼터(동대문)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89	아동담당관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별관 104호	아동학대예방업무,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90	아동담당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구 신수로 46 4층 401호	아동학대예방업무,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91	아동담당관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구 은평로 210, 4층	아동학대예방업무,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92	아동담당관	서울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도봉구 노해로54길 84	아동학대예방업무,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담당 부서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93	아동담당관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영등포구 당산로2길12, 에이스테크노타워 407호	아동학대예방업무,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94	아동담당관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구 양천로47가길 12, 시정현 201호	아동학대예방업무,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95	아동담당관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송파구 동남로 103, 청송빌딩 4층	아동학대예방업무,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96	아동담당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광령로34길 124 (수서동)	아동학대예방업무,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97	아이돌봄담당관	서울특별시 제1호 노원·도봉권 거점형 키움센터	노원구 동일로231다길 10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98	아이돌봄담당관	서울특별시 제2호 동작 거점형 키움센터	동작구 노량진로 10 스페이스살림 內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99	아이돌봄담당관	서울특별시 제3호 종로 거점형 키움센터	종로구 사직로 8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100	아이돌봄담당관	서울특별시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구로구 서해안로 2329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101	아이돌봄담당관	서울특별시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구 회기로3길 17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102	아이돌봄담당관	시립 양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안양천로 1131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
103	아이돌봄담당관	제1호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동작구 노량진로 10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
104	정신건강과	시립영보정신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정신요양시설 운영
105	정신건강과	시립은혜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 - 1	정신요양시설 운영

3. 문의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02 - 2133 - 732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05호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0호(2016.10.6.)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부문)」에 따라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여, 2023년 제7차(2023.5.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장

I.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구 수표동 35 - 13번지 일원	42,641.6	-	42,64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0호(2016.10.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18.2.9.) 등에 의함

나. 정비지구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시행면적 (㎡)	구 분		비고
				획지(㎡)	정비기반시설(㎡)	
기정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중구 수표동 56 - 9번지 일원	2,678.8	2,230.0	448.8	-
기정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중구 수표동 56 - 1번지 일원	1,977.0	1,645.8	331.2	-
변경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중구 수표동 56 - 1번지 일원	4,756.1	3,875.8	880.3	-

※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변동될 수 있음

■ 변경사유 : 지구 통합 및 공동분담 정비기반시설 필지 확정에 따른 제1·2지구 면적 변경

2.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655.8	증) 100.3	4,756.1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780.0	증) 100.3	880.3	18.5	
	도로	265.0	증) 422.2	687.2	14.4	
	도로 및 공원	515.0	감) 515.0	-	-	
	공원	-	증) 193.1	193.1	4.1	
대지(획지)		3,875.8	-	3,875.8	81.5	

※ 기 결정된 공원 면적은 공동분담(도로·공원) 면적이며, 금회 정비기반시설 필지 확정에 따라 도로와 공원을 분리하여 결정

■ 변경사유 : 공동분담 정비기반시설 지정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756.1	-	4,756.1	100.0	
일반상업지역	4,756.1	-	4,756.1	100.0	

2)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방화지구	-	수표동 27-1 일대	55,151 (4,756.1)	-	-	1973.8.1. (건고시 제317호)	집단

※ () 는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내 편입면적임

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가액

구 분		종전토지등의 추산액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 (B)	비용부담액 (C)	분담금 추산액 (A+B+C)	분담률 (%)
		금액(A)	비율(%)				
합 계		179,569,666,000	100.0	40,430,334,000	418,200,000,000	638,200,000,000	100.0
토 지 등 소 유 자	수표동 56-4 외 15필지	123,197,404,148	68.61	27,738,049,018	-	150,935,453,165	23.65
	수표동 56-5 외 2필지	16,910,790,000	9.42	3,807,485,435	-	20,718,275,435	3.25
	수표동 56-3 외 1필지	8,787,509,852	4.89	1,978,518,790	-	10,766,028,643	1.69
	수표동 11-9	30,673,962,000	17.08	6,906,280,757	-	37,580,242,757	5.89
사업시행 예정자		-	-	-	418,200,000,000	418,200,000,000	65.52

※ 상기 권리가액은 추산액으로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자산(토지등소유자별) 및 종후자산(신축건축물)의 감정평가 등에 따라 확정(변경) 예정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구 분		권리가액	분양 예정가(원/㎡)		분담금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합 계		638,200,000,000	10,092,000	10,092,000	토지등소유자별 권리가액 - (시설별 분양 예정가 × 분양받는 면적)
토 지 등 소 유 자	수표동 56-4 외 15필지	150,935,453,165			
	수표동 56-5 외 2필지	20,718,275,435			
	수표동 56-3 외 1필지	10,766,028,643			
	수표동 11-9	37,580,242,757			
사업시행 예정자		418,200,000,000			

※ 분양예정가는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종후자산 감정평가에 의해 확정(변경)되며, 분담금은 토지등소유자별 권리가액 및 분양신청 물건에 따라 산정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확정(변경) 예정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근거

구 분	금 액(원)	비 고
총금액	638,200,000,000	· 대지비+공사비+대지조성비
대지비	220,000,000,000	· 추정 토지매입비
공사비	200,000,000,000	· 19,880평 × 약 1,000만원
대지조성비	218,200,000,000	· 설계비, 금융비, 보상비 등
분양예정 대지평가액	438,200,000,000	· 대지비+대지조성비
종전토지등의 추산액(A)	179,569,666,000	· 공시지가의 2배 적용
분양예정 대지평가차액(B)	40,430,334,000	· 분양예정 대지평가액 - 대지조성비 - 종전토지등의 추산액
비용부담액(C)	418,200,000,000	· 공사비+대지조성비
분담금 추산액	638,200,000,000	· A+B+C

※ 상기 비용은 추산액으로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건축계획, 사업규약, 자금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에 따라 확정(변경) 예정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도로 : 변경없음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27 (8.6~13.5)	집산 도로	5,390 (38.7)	세종로광장	고산자로	일반 도로	-	2003.5.28. (서고 제130호)	청계천로
기정	소로	1	a	10 (2.0)	집산 도로	90 (41.1)	을지로 2가 88 - 4	장교동 22 - 20	일반 도로	-	2007.05.17 (서고 제132호)	
기정	소로	1	b	10 (1.9)	집산 도로	307 (100.4)	을지로3가 95 - 5	수표동 56 - 11	일반 도로	-	2005.08.25 (서고 제255호)	
기정	소로	2	3	8 (1.7)	국지 도로	155 (51.2)	수표동 56 - 1	장교동 22 - 4	일반 도로	-	2007.05.17 (서고 제132호)	

※ ()는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내 폭원 및 연장임

2)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역사공원	수표동 11 - 9 일대	1,240.4	-	1,240.4	2005.08.25 (서고 제255호)	공동분담 (108.5)
기정	②	공원	역사공원	을지로2가 101 - 43 일대	1,551.0	-	1,551.0	2016.10.06 (서고 제310호)	공동분담 (84.6)

※ ()는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내 편입면적임

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 계획

1)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구 분	지구명	시행 면적 (㎡)	대지 면적 (㎡)	정비기반 시설면적 (㎡)	계획기반 시설내 기공공용지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	순부담 면적(㎡)	순부담율 (%)	비 고
기정	을지로3가구역 제1지구	2,678.8	2,230.0	448.8	-	-	448.8	16.8	-
기정	을지로3가구역 제2지구	1,977.0	1,645.8	331.2	-	-	331.2	16.8	
변경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4,765.1 (증 100.3)	3,875.8	880.3 (증 100.3)	-	-	880.3 (증 100.3)	18.5	

주1) 순부담율 = 순부담면적 / (시행구역면적 - 계획기반시설내 기존공공용지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 변경사유 : 공동분담 정비기반시설 지정에 따른 면적 변경

2)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확보) 계획 : 변경

(1)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 귀속)

기 정					변 경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제1지구	소 계			448.8	제1·2지구	소 계			880.3
	수표동	56 - 5	도로	5.3		수표동	56 - 1	도로	54.3
		56 - 6		6.5			56 - 4		26.3
		56 - 7		8.4			56 - 5		5.3
		56 - 9		11.1			56 - 6		6.5
		56 - 10		9.1			56 - 7		8.4
		56 - 11		42.5			56 - 9		11.1
		56 - 12		26.7			56 - 10		9.1
		56 - 13		22.6			56 - 11		42.5
		56 - 16		4.8			56 - 12		14.8
공동분담	도로 및 공원	311.8	56 - 16	4.8					
제2지구	소 계			331.2			56 - 17		15.2
	수표동	56 - 1	도로	54.3			56 - 18		10.0
		56 - 4		26.3			56 - 22		16.9
		56 - 17		15.2			56 - 23		5.3
		56 - 18		10.0			56 - 24		22.6
		56 - 22		16.9			56 - 25		11.9
		56 - 23		5.3		공동 분담	11 - 9	도로	416.2
	공동분담	도로 및 공원	203.2	101 - 32			공원	108.5	
						을지로 2가			도로
					공원				84.6

※ 필지의 일부가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되는 면적은 CAD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시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면적으로 재산정하여야 함

■ 변경사유 : 공동분담 정비기반시설 지정에 따른 면적 변경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을지로3가구역 제1지구	2,678.8	-	2,230.0	수표동 56-9번지 일원	10	-	-	10	-	-
기정	을지로3가구역 제2지구	1,977.0	-	1,645.8	수표동 56-1번지 일원	7	-	-	7	-	-
변경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4,765.1	-	3,875.8	수표동 56-1번지 일원	17	-	-	17	-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을지로3가구역 제1지구	2,678.8	-	2,230.0	수표동 56-9일원	업무, 숙박, 주거	60이하 근현대건축물 보존시 완화 (최대80%)	600/ 800/-	기준70/ 최고80 이하	
기정	을지로3가구역 제2지구	1,977.0	-	1,645.8	수표동 56-1일원	업무, 숙박, 주거	60이하 단, 저층부는 기부채납에 따라 완화(최대80이하)	600/ 800/-	70 이하	
변경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4,756.1	-	3,875.8	수표동 56-1일원	업무	50이하	1,115 이하	114 이하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 용적률 : ①+②+③ = 1,115.1%(용적률 1,115%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 193% 적용									
	목적	인센티브 대상		요건			인센티브	완화량		
	녹지 생태공간	개방형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지구별 개방형녹지 의무기준 30%초과 설치시 - 의무기준 초과면적을 도입시설면적으로 산정			정률부여 (계수2)	100%		
	친환경 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3개 항목 모두 법령에 따른 기준 초과시			정량부여 (최대30%)	30%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보행가로 활성화	무장애도시 조성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지침 상 우수등급 인증 시			정량부여 (최대30%)	30%		
		공공보행통로 등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			정률부여 (계수2)	30%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가로지장물 또는 지상전주 전선의 이전/지중화시			정률부여 (계수2)	3%		
	③ 상한용적률 : 322% 적용(322.1%)									
구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공공시설 (도로 및 공원) 기부채납	허용용적률 x (1 + 1.3 × α) (α = 부담면적/대지면적)				793% x (1+1.3×0.2271) (α = 880.3 ÷ 3,875.8)			234.07%		
공개공지 초과조성	허용용적률 x (의무면적 초과하는 공개공지 ÷ 대지면적)				793% × [(817.91 - 387.58) ÷ 3,875.8)			88.05%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최고높이계획 : ① + ② = 최고높이 114m이하 적용 • ① 개방형 녹지율에 따른 높이 완화 $= [\text{적정건폐율}(50\%) \times (\text{기준높이}(70\text{m}) + 20\text{m})] \div (80\% - \text{개방형녹지율}(39.1\%)) = 110.1\text{m}$ • ② 공개공지 초과 제공에 따른 높이완화 인센티브 $= \text{기준높이}(70\text{m}) \times (\text{의무면적 초과하는 공개공지}(430.33\text{m}^2) \div 2) \div \text{대지면적} = 3.9\text{m}$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수표로변 건축한계선(폭3m) 지정, 소로1 - a(10m), 소로1 - b(10m), 소로2 - 3(8m)변 건축한계선(폭2m) 지정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 내 전면공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공공보행 통로	• 인접 지역과의 보행 연속성 및 기존 골목가로 특성을 고려 대상지 중심부 24시간 개방된 공공보행통로(6m이상) 확보
	공개공지	•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계성 증진 및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대상지 동측변 공개공지 지정
	개방형 녹지	• 지구동축 :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 지정 • 지구남측·서측 : 보도(유효보도폭 3m이상)와 연계한 선형 녹지 지정 * 면적 산정시 개방형녹지 심의기준 2-2에 따라 실효성 없는 면적(공공보행통로 및 선크 등) 제외 * 개방형녹지는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심의기준'에 따르며 - 상세계획은 '녹지생태도심 디자인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조성할 것

※ 개방형녹지(선크 포함)의 개략적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녹지의 형상(선크 포함)은 조정 가능

사. 환경성 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개발현황 및 장래개발방향 등 주변여건에 부합하는 스카이라인 유도 • 주변 환경을 고려 차폐감 및 위압감이 완화될 수 있는 건축물 형태 유도	
환경보전	• 대지내 공지는 조경식재공간으로 조성하고 불투수 면적을 최소화 • 공사폐자재 분리수거, 재활용 및 위탁처리 • 저소음, 저진동 건설기계사용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 단지내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계획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장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토록 하며,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 개방형녹지 및 공개공지 조성시 대기오염물질의 정화능력 및 적응력이 우수한 환경정화 수종을 우선 식재토록 계획	
재난방지	• 건축법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내진성능 확보 등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사업대상지내 보행로와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부분은 우수침투가 가능한 투수성 바닥 포장을 사용하고,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소재를 이용 • 구역내 자연지반을 최대화하고 표면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침투율이 높은 자연성 포장 및 투수성포장재를 사용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시행면적 (㎡)	구 분		비고
				획지(㎡)	정비기반시설(㎡)	
기정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중구 수표동 56 - 9번지 일원	2,678.8	2,230.0	448.8	-
기정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중구 수표동 56 - 1번지 일원	1,977.0	1,645.8	331.2	-
변경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중구 수표동 56 - 1번지 일원	4,756.1	3,875.8	880.3	-

※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변동될 수 있음

■ 변경사유 : 지구 통합 및 공동분담 정비기반시설 필지 확정에 따른 제1·2지구 면적 변경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756.1	-	4,756.1	100.0	
일반상업지역	4,756.1	-	4,756.1	100.0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방화지구	-	수표동 27 - 1 일대	55,151 (4,756.1)	-	-	1973.8.1. (건고시 제317호)	집단

※ ()는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내 편입면적임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가.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27 (8.6~13.5)	집산 도로	5,390 (38.7)	세종로광장	고산자로	일반 도로	-	2003.5.28. (서고 제130호)	청계천로
기정	소로	1	a	10 (2.0)	집산 도로	90 (41.1)	을지로 2가 88 - 4	장교동 22 - 20	일반 도로	-	2007.05.17 (서고 제132호)	
기정	소로	1	b	10 (1.9)	집산 도로	307 (100.4)	을지로3가 95 - 5	수표동 56 - 11	일반 도로	-	2005.08.25 (서고 제255호)	
기정	소로	2	3	8 (1.7)	국지 도로	155 (51.2)	수표동 56 - 1	장교동 22 - 4	일반 도로	-	2007.05.17 (서고 제132호)	

※ ()는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내 폭원 및 연장임

나.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역사공원	수표동 11 - 9 일대	1,240.4	-	1,240.4	2005.08.25 (서고 제255호)	공동분담 (108.5)
기정	②	공원	역사공원	을지로2가 101 - 43 일대	1,551.0	-	1,551.0	2016.10.06 (서고 제310호)	공동분담 (84.6)

※ ()는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내 편입면적임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용도	비 고
기정	허용용도	제1·2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나. 건축물 건폐율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계획 내용	비 고
기정	제1지구	• 60%이하(근현대건축물 보존 시 완화 최대 80%)	
	제2지구	• 60%이하(저층부는 기부채납에 따라 완화 최대 80%)	
변경	제1·2지구	• 50%이하	

다. 건축물 용적률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계획 내용	비 고
기정	제1지구	• 600%/800%이하/ -	
	제2지구	• 600%/800%이하/ -	
변경	제1·2지구	• 1,115%이하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1·2지구)

구분	인센티브			비 고
신설	녹지생태공간		100%	193%
	친환경개발		30%	
	보행가로 활성화	무장애도시 조성	30%	
		공공보행통로 등 (지하공공보행통로 포함)	30%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3%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사항(1·2지구)

구분	용적률 완화			비 고
	토지 기부채납	건축물 기부채납	공개공지 초과조성	
신설	880.3㎡ (용적률 234.07%)	-	430.33㎡ (용적률 88.05%)	순부담률 18.5%

라.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계획 내용	비 고
기정	제1지구	• 70m이하(근현대건축물 보존 시 80m이하)	
	제2지구	• 70m이하	
변경	제1·2지구	• 114m이하	

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결정

구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 고
기정	수표로변	• 폭3m지정	
	소로1 - a, 소로1 - b, 소로2 - 3	• 폭2m지정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 고
공개공지	수표로변	- 조성규모 및 설치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름 - 보행결절점 및 간선가로변 -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계성 증진 및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대상지 동측변 공개공지 지정	
전면공지	수표로변, 삼일대로12길, 을지로9길	- 건축한계선으로 지정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 내 전면공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공공보행 통로	대상지 중심부	- 남북 보행 연속성을 위해 대상지 중심부 공공보행통로 6m이상 조성 - 인접 지역과의 보행 연속성 및 기존 골목가로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지 중심부 24시간 개방된 공공보행통로(6m이상) 확보	

2) 개방형녹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적용 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 고
개방형 녹지	수표로변(동측), 삼일대로12길(남측), 을지로9길(서측)	1,517.0㎡	- 조성계획 : 지구 동측, 남측, 서측 녹지 조성 - 동측 :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 - 남측, 서측 : 보행로(유효보도폭 3m이상)와 연계한 선형 녹지 * 개방형녹지는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심의기준'에 따르며, 상세계획은 '녹지생태도심 디자인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조성할 것 - 유지관리 : 관리주체는 개방형녹지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실시	

* 개방형녹지 면적 산정시 개방형녹지 심의기준 2-2에 따라 실효성 없는 면적(공공보행통로 및 선크 등) 제외
 ※ 개방형녹지(선크 포함)의 개략적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시 주관부서와 협의 하에 녹지의 형상(선크 포함)은 조정 가능

- 2023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조건사항’ 이행

· 공공보행통로는 건축물 내부에 계획한 바, 용적률 인센티브(30%)의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인성 및 개방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통로의 높이 및 폭원을 조정’ 하고, ‘통로 연결부는 가로활성화 용도를 배치’ 등을 검토할 것

I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IV.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심재창조과(☎2133 - 4633) 및 중구청 도심정비과(☎3396 - 5772)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06호

방배1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1호(2015.2.17.)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6-105호(2016.11.10.) 및 제2017-45호(2017.05.18.)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변경) 결정된 방배1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2.11.30.), 2023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보고(2023.06.21.)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방배13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	129,891.4	-	129,891.4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을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산액

추정 비례율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 100% 추정비례율 : 111.42% ⇒ (22,077억 - 12,514억) / 8,582억 × 100 = 111.42% 총 수입 추정 : 22,077억 총 지출 추정 : 12,514억 종전자산총액 : 8,582억
개별 종전 자산액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평가액 반영
추정 분담금 산출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평가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 - b)
	전용 39㎡형	5.13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111.42%)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에서 추정 권리가액을 감액한 결과가 (+)인 경우는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인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임.)
	전용 53㎡형	6.99억		
	전용 59㎡형	7.59억		
	전용 84㎡형	10.07억		
	전용 112㎡형	13.05억		
	전용 124㎡형	14.06억		
	전용 147㎡형	20.17억		
	전용 175㎡형	23.71억		

※ 2017년 관리처분계획 자료 등을 반영하여 추정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조합원 (재)분양신청 결과 등 기타 관리처분계획(변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추정분담금 추산액 산출은 예시(안)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17.09.07.(서초구 제 2017 - 101호))으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됨.

※ 상기 추정분담금 중 공사비에 대한 추정은 2017년 체결한 공동시행자와의 계약내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원자재 조달비용 상승 등의 요인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를 거칠 예정임.

※ 상기 금액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토지등소유자 (재)분양신청 기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원자재 조달비용 상승 요인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 예정임.

※ 상기 내용은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개략적인 산출금액으로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수립하여 확정됨.

3.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9,891.4	-	129,891.4	100.0	-
획 지	소 계	99,605.4	증) 15,325.4	114,930.8	88.6	-
	획지 A-1	67,565.8	증) 45,024.5	112,590.3	86.7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획지 A-2	10,071.1	감) 10,071.1	-	-	-
	획지 A-3	19,887.0	감) 19,887.0	-	-	-
	획지 B-1	1,049.7	증) 190.3	1,240.0	1.0	종교시설
	획지 B-2	428.0	증) 161.3	589.3	0.5	종교시설
	획지 C-1	603.8	감) 92.6	511.2	0.4	사회복지시설
정비기반	소 계	30,286.0	감) 15,325.4	14,960.6	11.4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시 설	도 로	10,887.0	감) 8,978.2	1,908.8	1.4	
	공 원	19,399.0	감) 6,347.2	13,051.8	10.0	근린공원 1개소

4.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9,891.4	-	129,891.4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2,686.4	감) 5,003.5	37,682.9	29.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168.0	증) 6,958.8	20,126.8	15.5
	제2종일반주거지역	74,037.0	감) 1,955.3	72,081.7	55.5

■ 용도지역(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541 - 117대 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5,452.6	토지이용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539 - 5대 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5.5	토지이용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541 - 139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제1종일반주거지역	325.5	토지이용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하향
530 - 44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33.3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541 - 42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39.1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하향
541 - 171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1,865.0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하향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폐지	중로	3	1	12	국지 도로	615	방배동 539-93대	방배동 518도	일반 도로	-	2015.2.17 (서울시 고시 제2015-41호)	
신설	중로	2	1	15	국지 도로	119	방배동 476-2대	방배동 517도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368	방배동 476-2도	방배동 519도	일반 도로	-	2015.2.17 (서울시 고시 제2015-41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변경	중로	3	2	12	국지 도로	260	방배동 480-1대	방배동 519도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3	3	12	국지 도로	15	방배동 519도	방배동 519도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2	1	8	국지 도로	73	방배동 541-134대	방배동 562-1대	일반 도로	-	2015.2.17 (서울시 고시 제2015-41호)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76	방배동 483-3대	방배동 530-136도	일반 도로	-	2015.2.17 (서울시 고시 제2015-41호)	
변경	소로	3	1	6	특수 도로	76	방배동 483-3대	방배동 530-136도	보행자 전용 도로	-		기능/ 형태 변경
기정	소로	3	2	3	국지 도로	65	방배동 476-2대	방배동 529-3대	일반 도로	-	2015.2.17 (서울시 고시 제2015-41호)	
기정	소로	3	3	3	국지 도로	75	방배동 537-6대	방배동 537-9대	일반 도로	-	2015.2.17 (서울시 고시 제2015-41호)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1	-	- 노선 폐지 - B = 12m / L = 615m	도시계획시설(도로)에서 보차혼용도로로 변경에 따른 폐지
-	중로2-1	- 노선 신설 - B = 15m / L = 119m	단지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노선신설
중로3-2	중로3-2	- 연장축소 - L = 368m → 260m 감) 108m	중로2-1호선 신설에 따른 중로3-2호선 연장축소
-	중로3-3	- 노선 신설 - B = 12m / L = 15m	통학로 안전을 고려하여 방현초교 진입로 확폭 및 시설결정
소로2-1	-	- 노선 폐지 - B = 8m / L = 73m	대우아파트 주차장으로의 진입도로(공원 내 도로) 확보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3-1	소로3-1	- 기능 및 형태 변경 - 일반도로→보행자전용도로	통학로 안전을 고려하여 방현초등학교 후문 진입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기능 및 형태 변경

나. 공원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83	방배 근린공원	근린 공원	서초구 방배동 539-14번지 일대	246,799.0 (19,399.0)	감) 6,347.2 (감 6,347.2)	240,451.8 (13,051.8)	1995.6.5 (서고시 제151호)	

※ 방배근린공원 최초 결정일에 관한 고시자료 미흡으로 서초구 도시계획과 전산상 등록된 최초 결정일로 보완

※ ()는 대상지내 포함되는 면적임.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3	방배 근린공원	●면적 변경 - 19,399㎡→13,051.8㎡	●절성토 최소화 및 과도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자 공원계획을 축소하고 공공 주택을 추가 확보

다.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사회복지시설	서초구 방배동 483-5번지 일대	603.8	감) 92.6	511.2	2015.2.17 (서고시 제2015-41호)	

■ 사회복지시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사회복지시설	●면적 변경 - 603.8㎡→511.2㎡	방현초등학교 진입로 확폭에 따른 면적 축소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축	주민 공동 시설	작은도서관	A-1	1,843.11	감) 0.01	1,843.10	지하
신축		보육시설	A-1	1,315.70	감) 13.44	1,302.26	지상
신축		어르신복지센터	A-1	795.27	증) 545.24	1,340.51	지상
신축		커뮤니티센터	A-1	5,261.46	증) 3,382.49	8,643.95	지상, 지하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축		어린이놀이터	A - 1	2,380.11	감) 0.11	2,380.00	실외
신축		주민운동시설	A - 1	620.05	증) 29.95	650.00	지상
신축	유치원		A - 1	2,418.59	감) 918.59	1,500.00	지상, 지하
신축	경비실		A - 1	199.06	감) 19.91	179.15	지상, 지하
신축	관리사무소		A - 1	983.24	-	983.24	지하
신축	근린생활시설		A - 1	12,728.61	감) 7,159.94	5,568.67	지상, 지하
신축	지하저수조		A - 1	5개소	감) 2개소	3개소	실외
신축	빗물저류조		-	1,622 ton	감) 28ton	1,650 ton	-
신축	조경면적		-	12,727.21	증) 27,772.79	40,500.00	-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신 축	철 거 이 주	
기정	방배13 주택재건축정비구 역	129,891.4	획지 A - 1	67,565.8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	499	-	-	499	-	
			획지 A - 2	10,071.1							
			획지 A - 3	19,887.0							
			획지 B - 1	1,049.7							
			획지 B - 2	428.0							
			획지 C - 1	603.8							
변경	방배13 주택재건축정비구 역	129,891.4	획지 A - 1	112,590.3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	499	-	-	499	-	
			획지 B - 1	1,240.0							
			획지 B - 2	589.3							
			획지 C - 1	511.2							

8. 건축시설계획 : 변경

가. 기정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기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 계획	예정 법적 상한		
기정	방배1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29,891.4	획지 A-1	67,565.8	방배동 541-179일대	공동주택 및 기타 복리시설	60.0 이하	211.79 이하	248.00 이하	48m이하 최고 16층 (평균15층)	
			획지 A-2	10,071.1	방배동 530-43일대	공동주택 및 기타 복리시설	60.0 이하			30m이하 최고 10층 (평균10층)	
			획지 A-3	19,887.0	방배동 541-87일대	공동주택 및 기타 복리시설	60.0 이하	145.24 이하	-	16m이하 최고 4층 (연립주택)	
			획지 B-1	1,049.7	방배동 480-2일대	종교시설 및 부대시설	60.0 이하	건축허가시 관련법령에 따름			
			획지 B-2	428.0	방배동 539-48일대	종교시설 및 부대시설	60.0 이하	건축허가시 관련법령에 따름			
			획지 C-1	603.8	방배동 483-5일대	사회복지시설 및 부대시설	60.0 이하	건축허가시 관련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 : 2,296세대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구분		세대수		비율(%)		비고		
			계		2,296		100.0				
			60㎡이하		1,422		62.0		소형주택 : 204세대		
			60㎡초과 ~ 85㎡이하		706		30.7				
			85㎡초과		168		7.3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60% 이상 - 소형주택 건설 :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심의완화 사항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38,380.1㎡)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2,828.9㎡) 예정법정상한용적률 : 248%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도로경계로부터 3m								

■ 용적률 계획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종교시설)	계획정비 기반시설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129,891.4㎡	99,001.6㎡	30,889.8㎡	2,061.4㎡	10,103.7㎡
공공시설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 면적 : 계획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30,889.8\text{㎡} - 2,061.4\text{㎡} - 10,103.7\text{㎡} = 18,724.7\text{㎡}$ (구역면적 대비 14.42%) · 기반시설부담 계획(순부담) $18,724.7\text{㎡} >$ 기준 $4,920.7\text{㎡}$ · 기준 - 1단계 중상향 : $38,380.1\text{㎡} \times 10\% = 3,838.0\text{㎡}$ (3.0%) - 2단계 중상향 : $2,828.9\text{㎡} \times 15\% = 424.3\text{㎡}$ (0.3%) - 층수완화 대상면적 : 2종(7층) $13,168\text{㎡} \times 5\%$ 658.4㎡ (0.5%) $\Rightarrow$ 전체 부담기준 면적 : $4,920.7\text{㎡}$ (구역면적 대비 9.05%)				
계획(기준) 용적률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 170%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beta = 170\% + 0\% = 170\%$ $\beta =$ 공동주택 수립기준의 용적률 인센티브항목 : 미선택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 (1 + 1.3\alpha)$ $= 170\% \times (1 + 1.3 \times 0.1891) = 211.79\%$ $\alpha =$ 공공시설부지 제공(순부담)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 $= 18,724.7\text{㎡}$ (순부담) / $99,001.6\text{㎡}$ (대지면적) $= 0.1891$ · 정비계획용적률 = 211.79% 이하 적용				

■ 임대주택 및 소형(국민)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계획 기준		· 소형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소형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		· 248.00% 이하 · 건축법 등에 따른 용적률 : 245.15%
상한용적률		· 211.79% 이하
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용적률 증가분	· 33.36% (= 245.15% - 211.79%)
	증가된 용적률의 50%	· 16.68% 이상 (= 33.36% $\times$ 0.5)
	의무 연면적	· 12,949.835㎡ 이상 (= 대지면적(77,636.9㎡) $\times$ 16.68%)

소형주택
확보계획

- 주택규모 : 전용 39.859㎡, 공급면적 54.547㎡
전용 59.896㎡, 공급면적 81.171㎡
- 세대수 : 204세대 (전용 39.859㎡ 124세대, 전용 59.896㎡ 80세대)
- 소형주택 공급면적 = 54.547㎡ × 124세대 + 81.171㎡ × 80세대
= 13,257.508㎡ > 12,949.835㎡

나. 변경(안)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 계획	예정 법적 상한			
변경	방배13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129,891.4	획지 A - 1	86,870.6	방배동 541 - 179 일대	공동주택 및 기타 복리시설	60.0 이하	191.81이 하	249.98 이하	70m이하 최고22층	평균 17층	제2종 일반 주거, 제2종 일반 주거 (7층)
				25,719.7	방배동 539 - 57 일대	공동주택 및 기타 복리시설	60.0 이하	110.26 이하	-	16m이하 최고 4층	제1종 일반 주거	
			획지 B - 1	1,240.0	방배동 480 - 2일대	종교시설 및 부대시설	60.0 이하	건축허가시 관련법령에 따름		제2종 일반 주거		
			획지 B - 2	589.3	방배동 539 - 32일대	종교시설 및 부대시설	60.0 이하	건축허가시 관련법령에 따름		제1종 일반 주거		
			획지 C - 1	511.2	방배동 483 - 5일대	사회복지 시설 및 부대시설	60.0 이하	건축허가시 관련법령에 따름		제2종 일반 주거 (7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2,369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구분		세대수		비율(%)		비고					
	계		2,369		100.0		공공주택 : 357세대 (기부채납 60세대 포함)					
	60㎡이하		1,130		47.7		공공주택 : 240세대 (기부채납 3세대 포함)					
	60㎡초과 ~ 85㎡이하		981		41.4		공공주택 : 117세대 (기부채납 57세대 포함)					
	85㎡초과		258		10.9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60% 이상 - 국민규모주택 건설 :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 계획	예정 법적 상한		
심의완화 사항	• 용도지역 상향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37,876.7㎡)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3,199.3㎡)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1,781.7㎡) 1단계 종상향 : 41,076㎡ 2단계 종상향 : 1,781.7㎡ •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시정비법 제54조) : 예정법정상용적률 249.98% ※ 참고 건축계획 용적률 ▶ 제2종일반·제2종일반(7층) : 용적률 = 249.98%③, 대지면적 = 86,870.6㎡④ ▶ 제1종일반 : 용적률 = 110.26%①, 대지면적 = 24,224.8㎡②										
	가중평균 용적률 산정 = $\frac{(① \times ②) + (③ \times ④)}{② + ④}$ $= \frac{\{(110.26\% \times 24,224.8㎡) + (249.98\% \times 86,870.6㎡)\}}{112,590.3㎡} = 218.06\%$										
	▶ 가중평균 용적률 : 218.06% • 향후 건축심의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고려하여 일조권 및 채광방향일조 등 완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도로경계 및 보차혼용통로 경계로부터 3m										
기타사항	• 공공보행통로 결정 : A1획지 내 3개소 20m, 방배근린공원 연계 6m, 방현초등학교 연계 6m • 보차혼용통로 결정 : A-1획지 내 2개소 - 효령로 ~ 중로3-2호선(B = 10M, L = 600M) - 보차혼용통로(10m) ~ 사방지(B = 6M, L = 85M) ※ 보차혼용통로는 구분지상권(폭 16m(건축선 후퇴부 6m 포함), 높이 지하1.5m~지상 9m)을 설정하며 지상권자는 서초구청, 존속기간은 영구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초구, 방배13 조합 간 합의서(제소전 화해 포함)를 체결하고, 분양계약서(조합원, 일반분양)에 위 내용을 명기하도록 함 (보차혼용통로 구분지상권 범위는 향후 실시계획인가(설계반영)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용적률 계획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종교시설)	계획정비 기반시설 등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 등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대지지분 (공공주택)	환산부지 (공동주택+사 회복지시설)	계		
	129,891.4㎡	114,419.6㎡	15,471.8㎡	3,039.8㎡	1,183.0㎡	4,222.8㎡	2,313.6㎡	10,844.6㎡	
공공시설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 면적 :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건축물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15,471.8㎡ + 4,222.8㎡ - 2,313.6㎡ - 10,844.6㎡ = 6,536.4㎡(구역면적 대비 5.03%) · 기반시설부담 계획(순부담) 6,536.4㎡ > 기준 4,374.9㎡ · 기준 - 1단계 총상향 : 41,076.0㎡ X 10% = 4,107.6㎡ (3.17%) - 2단계 총상향 : 1,781.7㎡ X 15% = 267.3㎡ (0.21%) ⇒ 전체 부담기준 면적 : 4,374.9㎡ (구역면적 대비 3.37%)						
공공 시설물 환산 면적	사회 복지 시설	· 환산부지 면적 = 표준건축비(원/㎡) × 공공시설연면적(㎡) / 부지가액(원/㎡) = 3,849,000 × 1,456 ÷ 19,778,000 = 283.0㎡							
		표준건축비	3,849,000원/㎡	▷ 종합복지관(1천~3천㎡) 건립 (공사비공공건축물건립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2022,서울시))					
		공공시설연면적	1,456.0㎡	▷ 지상 1,020㎡ / 지하 436㎡					
		부지가액	19,778,000원	▷ 구역내 토지 평균공시지가(기부채납 대상지 주변 4필지 2022년 공시자가 기준) × 2					
	공공 주택	· 환산부지 면적 = 표준건축비(원/㎡) × 공공주택 연면적(㎡) / 부지가액(원/㎡) · 전용 53형 = 1,119,300원/㎡ × 412.23㎡ ÷ 15,719,814원/㎡ = 29.3㎡ · 전용 84형 = 1,118,800원/㎡ × 12,235.05㎡ ÷ 15,719,814원/㎡ = 870.7㎡ · 대지지분 = 공공주택 공급연면적(㎡) / 지상층 공급연면적(㎡) × 공동주택 대지면적(㎡) · 전용 53형 = 217.59㎡ ÷ 245,518.29㎡ × 112,590.3 = 99.7㎡ · 전용 84형 = 6,411.36㎡ ÷ 245,518.29㎡ × 112,590.3 = 2,940.1㎡							
		표준건축비	1,119,300원/㎡	▷ 전용53형 : 11층 ~ 20층이하, 전용 50㎡초과 ~ 60㎡미만 : 1,119,300원/㎡					
			1,118,800원/㎡	▷ 전용84형 : 11층 ~ 20층이하, 60㎡초과 : 1,118,800원/㎡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규모별 건축비 적용, 국토부 제2023-64호)					
		공공주택 세대수 및 규모		▷ 임대주택 세대수 및 규모					
				구분	세대수	공급면적 (㎡)	계약면적 (㎡)	공공주택 공급면적(㎡)	공공주택 연면적(㎡)
				전용53형	3	72.53	137.41	217.59	412.23
전용84형				57	112.48	214.65	6,411.36	12,235.05	
		계	60	-	-	6,628.95	12,647.28		
부지가액	15,719,814원	▷ 구역내 토지 평균 공시지가(2022년 공시지가 기준) × 2							
계획(기준) 용적률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 170%						

구 분	산 정 내 용
허용용적률	$\cdot$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β = 170% + 9.32% = 179.27% β = 공동주택 수립기준의 용적률 인센티브항목 : 지능형 건축물 4등급(6%) + 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3.27%)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cdot$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 (1 + 1.3 α 토지 + 0.7 α 건축물) = 179.27% $\times$ (1 + 1.3 $\times$ 0.0481 + 0.7 $\times$ 0.0106) = 191.81% α 토지 = 공공시설부지 제공(순부담)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5,353.4㎡(순부담) / 111,379.8㎡(대지면적) = 0.0481 ※ 5,353.4㎡ : 정비반시설등 면적(15,471.8㎡) + 대지지분(3,039.8㎡) - 기존 국·공유지(2,313.6㎡ + 10,844.6㎡) ※ 111,379.8㎡ : 획지 면적(114,419.6㎡) - 대지지분(3,039.8㎡) α 건축물 = 환산 부지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183.0㎡ / 111,379.8㎡ = 0.0106 $\cdot$ 정비계획용적률 = 191.81% 이하 적용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cdot$ 249.98% 이하

■ 공공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공공기여(기부채납) 공공주택 건설 계획

계획 기준		• 공공주택 건설 :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기부채납)을 위하여 공공주택 제공					
공공주택 계획	공공주택 계획	• 60세대, 12,647.28㎡(연면적)					
		구분	세대수	공급면적 (㎡)	계약면적 (㎡)	공공주택 공급면적(㎡)	공공주택 연면적(㎡)
		전용 53형	3	72.53	137.41	217.59	412.23
		전용 84형	57	112.48	214.65	6,411.36	12,235.05
계	60	-	-	6,628.95	12,647.28		
기부채납 공공주택 계획	환산면적	• 900.0㎡ - 전용 53형 = 표준건축비(1,119,300원/㎡) × 공공주택 연면적(412.23㎡) ÷ 부지가액(15,719,814원/㎡) = 29.3㎡ - 전용 84형 = 표준건축비(1,118,800원/㎡) × 공공주택 연면적(12,235.05㎡) ÷ 부지가액(15,719,814원/㎡) = 870.7㎡					
		• 3,039.8㎡ - 전용 53형 = 공공주택 공급연면적(217.59㎡) ÷ 전체 지상층 연면적(245,518.29㎡) × 공동주택 대지면적(112,590.3㎡) = 99.7㎡ - 전용 84형 = 공공주택 공급연면적(6,411.36㎡) ÷ 전체 지상층 연면적(245,518.29㎡) × 공동주택 대지면적(112,590.3㎡) = 2,940.1㎡					
대지지분							

※ 기부채납 공공주택 규모·세대수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계획 기준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		• 249.98% 이하			
상한용적률		• 191.81%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용적률 증가분	• 58.17% (= 249.98% - 191.81%)			
	증가된 용적률의 50%	• 29.085% 이상 (= 58.17% × 0.5)			
	의무 연면적	25,266.34㎡ 이상 (=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86,870.6㎡) × 29.085%) ※ 제1종일반주거지역(24,224.8㎡)은 용적률 완화 대상지역이 아님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 297세대, 공급면적 25,365.03㎡ (의무 연면적 25,266.34㎡ 이상 확보)			
		구분	세대수	공급면적(㎡)	국민규모주택 공급연면적(㎡)
		전용 53형	60	72.53	4,351.80
		전용 59형	177	80.59	14,264.43
		전용 84형	60	112.48	6,748.80
		계	297	-	25,365.03
		용적률		29.20%	
				비고	
				≥25,266.34	
				≥29.085	

9.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 변경없음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도시경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자연경관과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옥상설비 등의 시각적인 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부속 구조물이나 설비 등은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건축물의 재질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소재를 사용
환경보전	-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인 녹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공원을 추가 확보하여 조정녹지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획 - 토지이용계획상 공원은 주변 녹지체계를 고려하여 계획 - 대상지 남측 및 동측 구릉지의 양호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지정 - 계획대상지내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단지 내 조정녹지 등 연계 녹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변에 형성된 녹지 및 생태지역과의 단절을 예방
재난방지	- 화재 : 단지내 소방도로 확보 및 소화전 설치,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금지 - 수해 : 사업지구내 조정면적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으로 토양포장을 및 우수유출량 감소 - 교통 : 진출입 동선의 합리화, 보차분리 등을 통해 사고발생 방지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자연환경	생태면적률	30%	○ 기 시가화 지역으로 대부분 포장상태 지역	· 생태면적률 30%이상 확보 만족
	녹지 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1	○ 기존 시가지로 주변 녹지여건을 고려하여 조정녹지 계획	· 옥상녹화 및 조정 등 계획에 반영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토공량 발생	· 발생 사토처리 대책 수립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지형변화를 최소화 계획	· 현 지형 지반고 및 건축계획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
		지하수위보전	○ 지하공간 계획	· 지하수위 모니터링 계획
비오톱 및 동식물상	4등급	○	· 비오톱유형평가 2(어린이공원), 5등급, 개별비오톱 3등급(어린이공원)과 제외등급	· 옥상녹화, 조정녹지 등 녹지 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향상
생활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계획대상지 북측은 주거지역으로 일조영향 예상	·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 계획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 건축물 계획시 주풍향(서북서풍) 고려 계획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청정연료 사용
		신재생 에너지사용	·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	· 현장여건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 사용 고려
	경관	Skyline보전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주변지역과 연계한 층고 계획
		조망권 확보	○ 도심지역 특성상 경관변화 경미	· 색채 및 디자인 계획을 통해 조화로운 경관형성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가로녹지율	○	· 녹음상태 불량, 기반시설 낙후	· 건축물 외곽 조경식재 계획 → 가로녹지율 증가
		입면차폐도	○	· 주요간선도로변에 입지	· 보행중심의 가로환경 조성
	휴식 및 여가공간		○	· 휴식 및 여가공간 등 생활공간의 변화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등 휴식공간 조성
	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 도로계획수립	○	· 보행자전용도로 검토	· 최소한의 차량동선구성으로 보행우선 공간 확보
	물순환	우수관리	○	· 계획대상지의 오수는 기존관거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로 유입·처리	· 공사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 유출저감 · 운영시 녹지공간 및 투수성포장 확보로 비점오염원 저감계획
추가	폐기물	폐기물 성상별 분리처리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 서초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소음진동	규제기준 만족	○	· 공사시 소음·진동영향이 예상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재 2,911세대 ↓ 변경 2,369세대 감) 542세대	기정 계획세대 : 2,296세대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정비구역 주변현황	활 용 계 획	비 고
대상지 남측 방현초등학교 입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 사업시행시 교육청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음	-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공동주택 주부 출입구	· 단지 출입구 보행동선에 설치 CCTV · 자연감시가 낮고 활동인지의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경우 경비실 또는 설치 CCTV · 단지 출입구에 출입차단기를 설치하여 차량 출입 통제 · 출입구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

구 분	내 용
주동출입구	- 출입구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식별 용이 - 경비실이 없는 주동에서는 자동 방범기와 설치
경 비 실	- 경비실 주변으로는 관목류를 설치하여 외부조망 확보 - 방범시스템 모니터링이 경비실에서 가능하도록 구축 - 위치는 아파트단지 주출입구와 주동출입구의 출입자를 효율적으로 감시 할수 있는 위치에 선정
담 장	- 공동주택 외곽은 조경이나 울타리 등을 거주자의 영역감 증진 - 단지경계 울타리 수목울타리 포함 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진입금지 - 단지전용공간 등의 표지판 설치 - 단지 내 인접하여 유해시설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공간적 분리를 위해 비투시형 담장을 설치
건축물	외벽에 각종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무단침입에 활용되지 않도록 배관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고, 버면 홈 또는 도출물이 없도록 계획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 공개공지는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으며, 자연스런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의 통행이 많은 장소와 주동 출입구 주변 또는 각 주동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며 CCTV설치 - 단지 내 상가는 외부인의 이용이 빈번하므로 단지 내 상가 주출입구는 아파트 단지를 경유하지 않고 출입하도록 동선 분리
주차장	- 주차장 입구에는 모든 차량의 출입 통제를 위하여 CCTV와 차량출입 차단기를 설치, 야간인지를 위해 조명설치 - 지하주차장은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기둥과 벽면을 규칙적으로 배치 - 지하주차장에는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되 차로 또는 통로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 - 장애인 및 여성배려주차장은 건물 출입구와 인접하여 설치
승강기	- CCTV 모니터링에 지장이 없도록 승강기 내부 조도는 바닥면 50Lux 이상이 되도록 계획 - 승강기 내부 및 1층 승강기 홀에 CCTV 설치
복도 및 계단	-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각 층 복도와 계단실 및 승강기 홀에 CCTV를 설치하고 반경 15미터마다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 - 복도와 계단은 인접한 주동에서 내·외부가 관찰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 창문 설치
조경	- 지하주차장 출입구 좌우3미터구간에는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교목 또는 지엽이 치밀한 관목 등의 조경수 식재를 지양 - 조경수가 건물 출입구와 조명을 가리지 않게 식재
벤치 및 파고라	유동인구가 적은 곳을 피하고 조명시설과 함께 설치 권장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방배1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서촉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	129,891.4	-	129,891.4	100.0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9,891.4	-	129,891.4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2,686.4	감) 5,003.5	37,682.9	29.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168.0	증) 6,958.8	20,126.8	15.5
	제2종일반주거지역	74,037.0	감) 1,955.3	72,081.7	55.5

■ 용도지역(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541-117대 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452.6	• 토지이용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539-5대 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5.5	• 토지이용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541-139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1종일반주거지역	325.5	• 토지이용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하향
530-44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33.3	•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541-42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39.1	•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하향
541-171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865.0	•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하향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폐지	중로	3	1	12	국지 도로	615	방배동 539-93대	방배동 518도	일반 도로	-	2015.2.17 (서울시 고시 제2015-41호)	
신설	중로	2	1	15	국지 도로	119	방배동 476-2대	방배동 517도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368	방배동 476-2도	방배동 519도	일반 도로	-	2015.2.17 (서울시 고시 제2015-41호)	
변경	중로	3	2	12	국지 도로	260	방배동 480-1대	방배동 519도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3	12	국지 도로	15	방배동 519도	방배동 519도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2	1	8	국지 도로	73	방배동 541-134대	방배동 562-1대	일반 도로	-	2015.2.17 (서울시 고시 제2015-41호)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76	방배동 483-3대	방배동 530-136도	일반 도로	-	2015.2.17 (서울시 고시 제2015-41호)	
변경	소로	3	1	6	특수 도로	76	방배동 483-3대	방배동 530-136도	보행자 전용 도로	-	-	기능/형태 변경
기정	소로	3	2	3	국지 도로	65	방배동 476-2대	방배동 529-3대	일반 도로	-	2015.2.17 (서울시 고시 제2015-41호)	
기정	소로	3	3	3	국지 도로	75	방배동 537-6대	방배동 537-9대	일반 도로	-	2015.2.17 (서울시 고시 제2015-41호)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1	-	•노선 폐지 - B = 12m / L = 615m	•도시계획시설(도로)에서 보차혼용도로로 변경에 따른 폐지
-	중로2-1	•노선 신설 - B = 15m / L = 119m	•단지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노선신설
중로3-2	중로3-2	•연장축소 - L = 368m → 260m 감) 108m	•중로2-1호선 신설에 따른 중로3-2호선 연장축소
-	중로3-3	•노선 신설 - B = 12m / L = 15m	•통학로 안전을 고려하여 방현초교 진입로 확폭 및 시설결정
소로2-1	-	•노선 폐지 - B = 8m / L = 73m	•대우아파트 주차장으로의 진입도로(공원 내 도로) 확보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3-1	소로3-1	•기능 및 형태 변경 - 일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통학로 안전을 고려하여 방현초등학교 후문 진입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기능 및 형태 변경

2)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3	방배 근린공원	근린 공원	서초구 방배동 539 - 14번지 일대	246,799.0 (19,399.0)	감) 6,347.2 (감 6,347.2)	240,451.8 (13,051.8)	1995.6.5 (서울시 고시 제151호)	

※ 방배근린공원 최초 결정일에 관한 고시자료 미흡으로 서초구 도시계획과 전산상 등록된 최초 결정일로 보완

※ ()는 대상지내 포함되는 면적임.

■ 공원(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3	방배 근린공원	•면적 변경 - 19,399㎡→13,051.8㎡	•절성토 최소화 및 과도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자 공원계획을 축소하고 공공주택을 추가 확보

3)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사회복지시 설	서초구 방배동 483 - 5번지 일대	603.8	감) 92.6	511.2	2015.2.17 (서울시 고시 제2015 - 41호)	

■ 사회복지시설(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사회복지시설	•면적 변경 - 603.8㎡→511.2㎡	방현초등학교 진입로 확폭에 따른 면적 축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 지	소 계	99,605.4	증) 15,325.4	114,930.8	-
	획지 A-1	67,565.8	증) 45,024.5	112,590.3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획지 A-2	10,071.1	감) 10,071.1	-	-
	획지 A-3	19,887.0	감) 19,887.0	-	-
	획지 B-1	1,049.7	증) 190.3	1,240.0	종교시설
	획지 B-2	428.0	증) 161.3	589.3	종교시설
	획지 C-1	603.8	감) 92.6	511.2	사회복지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기정	허용용도	획지 A-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기정	허용용도	획지 A-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폐지		-	-	-
기정	허용용도	획지 A-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폐지		-	-	-
기정	허용용도	획지 B-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기정	허용용도	획지 B-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기정	허용용도	획지 C-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용 도 지 역	건 폐 율	비 고
기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0% 이하	-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나)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정상한용적률		
기정	170.00%이하	170.00%이하	222.99%이하	248.00%이하	정비 계획	허용용적률 179.0% 상한용적률 222.99%
변경	170.00%이하	179.27%이하	191.81%이하	249.98%이하	정비 계획	허용용적률 179.27% 상한용적률 191.81%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변경)

구 분	인 센 티 브			비 고
	친환경에너지	지능형건축물	세입자 손실보상	
신설	-	4등급 6.00%	3.27%	총 9.27%

※ 지능형건축물 : 지능형건축물 인증(1등급~4등급으로 인증된 경우)

※ 세입자 손실보상 : 단독주택재건축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업무처리지침(주택건축본부, '19.04) 적용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변경)

구 분	용 적 률 완 화		비 고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기정	41.79%	33.36%	총 75.15%
변경	12.54%	58.17%	총 70.71%

다) 높이 계획(변경)

구 분	높 이 계 획			비 고
	기정	변경		
획지 A-1	48m이하(16층)	70m이하(22층)	평균 17층	2층, 2층(7층)
		16m이하(4층)		1층
획지 A-2	30m이하(10층)	-		
획지 A-3	16m이하(4층)	-		
획지 B-1	건축허가시 관련법령에 따름	건축허가시 관련법령에 따름		2층
획지 B-2	건축허가시 관련법령에 따름	건축허가시 관련법령에 따름		1층
획지 C-1	건축허가시 관련법령에 따름	건축허가시 관련법령에 따름		2층(7층)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효령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소로3-1, 3-2, 3-3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중로2-1, 3-2, 3-3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보차혼용통로변	●보차혼용통로 경계로부터 3m 후퇴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보차혼용통로	- 보차혼용통로 결정 : A-1획지 내 2개소 - 효령로 ~ 중로3-2호선(B = 10M, L = 600M) - 보차혼용통로(10m) ~ 사방지(B = 6M, L = 85M) ※ 보차혼용통로는 구분지상권(폭 16m(건축선 후퇴부 6m 포함), 높이 지하2.0m~지상15.0m)을 설정하며 지상권자는 서초구청, 존속 기간은 영구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초구, 방배13 조합 간 합의서(제소전 화해 포함)를 체결하고, 분양계약서(조합원, 일반분양)에 위 내용을 명기하도록 함 (보차혼용통로 구분지상권 범위는 향후 실시계획인가(설계반영)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결정 : A-1획지 내 3개소 - 효령로 ~ 방배근린공원(B = 20m, L = 209M) - 방배근린공원 연계 (B = 6m, L = 267M) - 방현초등학교 연계 (B = 6m, L = 150M)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항 목	지 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장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분석대상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8개소)
	㉓	●현재 차로운영 반영한 ③도구머리길 입구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안 제시
	㉔	●사업지내부 단지내 부도로 개설 - B=10.0m, L=590.0m - B=6.0m, L=85.0m
	-	●사업지 진출입구 설치지점 교차로 신설 및 기하구조(안) 제시(5개소)
	㉕	●사업지 북측 구름다리(방배교) 폭원 10m→12m로 2m 확폭
	㉖	●효령로 하은빌딩앞 횡단보도 부근의 유턴차로를 직진차로로 변경
	㉗	●③도구머리길 입구 교차로~방배역방면 불합리한 차로운영계획 재수립
	㉘	●효령로 태은빌딩앞 마을버스정류장 부근의 차로 재구획(3차로 직선화)
	-	●효령로(연세사랑병원↔대우효령아파트 주변)차로폭 조정을 통한 차로운영계획 재수립
	㉙	●남부순환로(D·D'단면 주변) 차로운영계획 재수립
	-	●방배교 남·북측 신호등 설치(3색등 : 2개소)
진출입동선	-	●효령로 및 남부순환로상 교차지점 신설을 배제한 사업지 진출입 동선계획 수립
	㉚	●사업지 인접 이면도로 확폭을 통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차로운영방안 제시 - 남부순환로287길: B=6.0m→15.0m, L=150m(3차로)
	㉛	- 효령로2길: B=6.0m→12.0m, L=204m(2차로)
	㉜	●효령로 진출구간 Set-back(3.0m)을 통한 완화차로 설치 - 가속차로 (B=4.0m, L=58m(데이퍼포함))
	㉝	●사업지 북측 전면 버스정류장 Set-back(3.0m)을 통한 버스베이 설치 및 버스정류장 이전 건의 - 버스베이 설치제원 : B=4.0m, L=58m(데이퍼포함) - 버스베이 위치를 교차로와 분리하여 이전설치
	-	●진출입구 및 사업지 인접 가각부 회전반경 추가 확보 - 회전반경 : R=6.0m ~ 12.0m
	㉞	●사업지와 남부순환로 및 효령로로 진출입하는 이면도로 접속지점 가각부 회전반경 추가 확보(5개소) 및 가속차로 설치 - 가각부 회전반경 : R=4.0m~6.0m - 남부순환로변 가속차로 설치 : B=3.0m, L=24.0m
	㉟	●사업지 북측 118동 동측 우회전차로 추가 확보 - 우회전 차로 : B=3.0m, L=30.0m
대중교통 및 보행	-	●종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㊱	●가속차로 설치에 따른 횡단보도 이전 설치 - 동측으로 11m 이동
	-	●사업지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 계획주차대수의 20.0%이상 설치 ●자전거 보관시설은 프레임 묶음형태 설치 ●자전거 보관소 주변 안내표지판 설치

< 표 계속 >

항 목	지 점	개 선 방 안
대중교통 및 보행	㉓	●방현초교 주변도로에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폭2m 보도 확보
	㉔	●사업지 북측 효령로 접속부 폭 2.0m 보행공간 설치 및 2.0m 보행로 설치(유색포장)
	-	●효령로 사업지측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보도폭 확보후 자전거전용도로(보도높이형) 설치(L=361.7m) ●자전거동선 단절된 부분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로 추가 설치로 자전거도로 연속성 확보
	-	●사업지 주변 횡단보도상 자전거 횡단로(유색포장) 4개소 설치
	㉕	●남부순환로287길 편측 보도 설치 - 보도설치 : B=2.0m, L=66.0m
	-	●효령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 위치이동 및 이전 - 사업지측 마을버스정류장 54m 이전으로 일반버스정류장과 통합 이용 - 사업지 맞은편 일반버스정류장 55m 위치이동
주차시설	-	●공사기간중 사업지 주변 거주자 주차면(19면)은 종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용지내 주차공간 제공
	-	●법정주차대수 : 2,537대 ●주차수요(2029년) : 2,743대 ●계획주차대수 : 4,819대(100% 자주식) - 법정대비 : 189.9% - 수요대비 : 175.7% - 장애인주차 : 법정의 3.0% 이상 설치 - 확장형주차 : 계획의 30.0% 이상 설치 - 여성전용주차 : 계획의 10.0% 이상 설치 - 전기자동차 주차 및 충전시설 : 계획의 5% 이상 설치
교 통 안 전 및 기 타	-	●횡단보도 구간에 점자 블럭 횡단보도 턱낮추기 시공
	-	●보행동선 단절구간에 횡단보도 및 험프식횡단보도 설치 - 횡단보도 : 25개소 - 험프식횡단보도 : 3개소
	-	●사업지 진출입 교차부에 고원식교차로 설치(1개소)
	-	●주차장 램프 끝단부에 경고등 설치(5개소)
	-	●진출입 차량의 시거확보를 위해 램프 끝단부 및 시거불량 지점에 반사경 설치
	-	●사업지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6개소)
	-	●도구머리길입구 교차로에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1개소)
	-	●사업지 단지 내부도로(10m)상 전면 미끄럼방지포장(흑색)설치
	-	●㉖신설도로와 효령로 접속 진출부에 중앙선 침범 방지를 위한 차로 규제봉 설치(L=140.0m)
	㉖	●엇갈림방지를 위해 남부순환로 차로규제봉 설치(L=15.0m)
	㉗	●사회복지시설 서측 도시계획도로 입구 턱낮춤 보도 설치*
	-	●방현초교 진입차량 정문 유도를 위해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	●방현초교 진입차량 정문 유도를 위해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주 : * 향후 준공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 검토함(관련기관, 심의등 협의후)

3)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자연 환경	1.생태 면적율	30%	○	· 기 시가화 지역으로 대부분 포장상태 지역	· 생태면적율 30%이상 확보 만족
	2.녹지 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1	○	· 기존 시가지로 주변 녹지여건을 고려하여 조경녹지 계획	· 옥상녹화 및 조경 등 계획에 반영
	3.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토공량 발생	· 발생 사토처리 대책 수립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 지형변화를 최소화 계획	· 현 지형 지반고 및 건축계획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
		지하수위보전	○	· 지하공간 계획	· 지하수위 모니터링 계획
	4.비오름 및 동식물상	비오름보전 등급 향상 및 동식물상보호	○	· 비오름유형평가 2(어린이공원), 5등급, 개별비오름 2등급(어린이공원)과 제외등급	· 옥상녹화,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름 기능(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향상
5.물순환	우수관리	○	· 계획대상지의 오수는 기존관거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로 유입·처리	· 공사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저감 · 운영시 녹지공간 및 투수성 포장확보로 비점오염원 저감계획	
생활 환경	1.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 계획대상지 북측은 주거지역으로 일조영향 예상	·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 계획
	2.바람 및 열	바람길 확보	○	· 주풍향 고려 및 통풍축 확보	· 건축물 계획시 주풍향(서북서풍) 고려 계획
	3.에너지 (대기질, 온실가스)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청정연료 사용
		신재생 에너지사용	-	· 에너지 사용 최소화	· 현장여건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 사용 고려
	4.경관	Skyline보전	○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주변지역과 연계한 층고 계획
		조망권 확보	○	· 도심지역 특성상 경관변화 경미	· 색채 및 디자인 계획을 통해 조화로운 경관형성
		가로녹지율	○	· 녹음상태 불량, 기반시설 낙후	· 건축물 외곽 조경식재 계획 → 가로녹지율 증가
		입면차폐도	○	· 주요간선도로변에 입지	· 보행중심의 가로환경 조성
	5. 휴식 및 여가공간		○	· 휴식 및 여가공간 등 생활공간의 변화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등 휴식공간 조성
	6.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 도로계획수립	○	· 보행자전용도로 검토	· 최소한의 차량동선구성으로 보행우선 공간 확보
추가	7.폐기물	폐기물 성상별 분리처리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 소초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8.소음진동	규제기준 만족	○	· 공사시 소음·진동영향이 예상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4) 공공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주택 세대수			공공주택 비율(%)			
			계	소형 주택	공공 주택 (기부채납)	전체 세대수 대비	전체 비율	소형 주택	공공 주택 (기부채납)
합 계	2,369	100.0	357	297	60	15.1	100.0	83.2	16.8
40㎡ 이하	79	3.3	-	-	-	-	-	-	-
40~50㎡ 이하	-	-	-	-	-	-	-	-	-
50~60㎡ 이하	1,051	44.4	240	237	3	10.1	67.2	66.4	0.8
60~85㎡ 이하	981	41.4	117	60	57	4.9	32.8	16.8	16.0
85㎡ 초과	258	10.9	-	-	-	-	-	-	-

□ 2022년 제12차(2022. 11. 3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	구역 중앙 보차혼용통로계획 관련 주관부서에서 향후 개방성 확보 및 교통사고시의 처리 등 이용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1. 보차혼용통로의 개방성 확보 및 유지·관리 담보를 위해 정비사업부지 보존 등기 시 구분지상권 등기 설정 (지상권자: 서초구청장, 존속기간: 영구) 2. 통행권 담보를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해 서초구, 방배13구역 조합 간 합의서 체결(' 23. 6.) 3. 통행방해시 행정조치방안 - 공유재산으로 취득·관리: 철거명령, 행정대집행 및 비용징수 -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시정명령, 행정대집행 및 비용징수 - 건축법으로 관리(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시 보차혼용통로계획 포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향후 조합에서 행정절차 진행시입주자 모집공고, 분양계약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보차혼용통로에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및 무단폐쇄 금지 등을 사전에 명시·공고 예정임	

□ 2023년 제9차(2023. 6. 21.) 도시계획위원회 보고결과 : 수정수용

구분	심의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수용	- 보차혼용통로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시 일반시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상부 적정 공간적 범위를 추가로 포함할 것	1. 구분지상권 설정 시 서초구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공간적 범위를 지하2.0m~지상15.0m로 제시 ※ 향후 사업시행시 구체적 설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I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4. 정비계획 결정도
5. (지구단위계획)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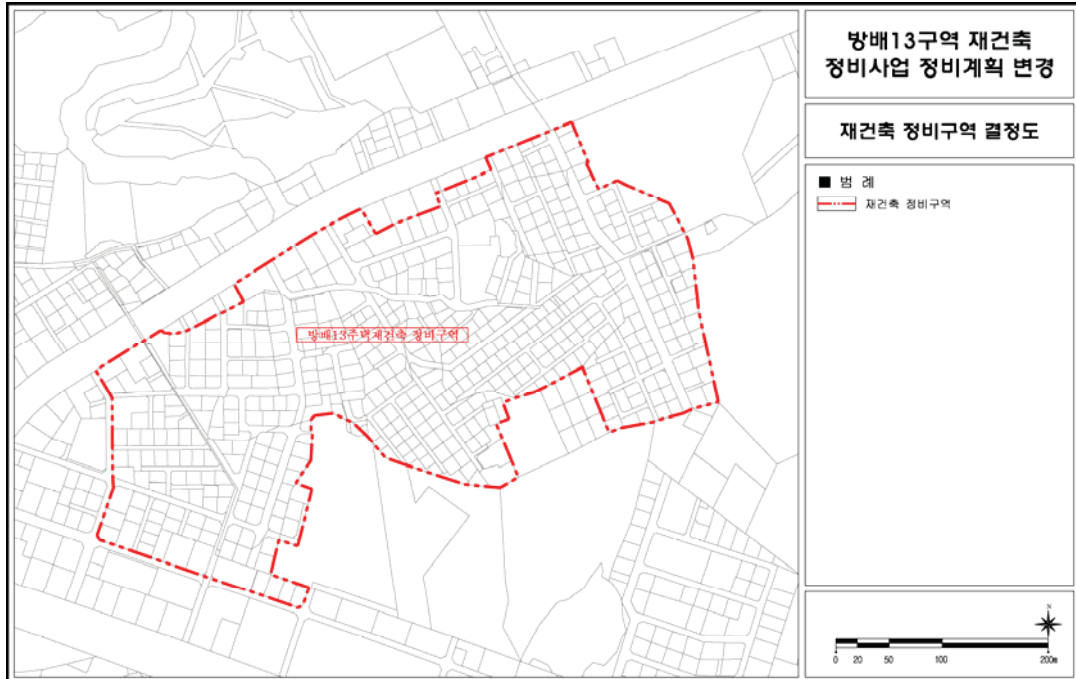
IV. 열람장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02 - 2133 - 7214), 서초구 재건축사업과(☎02 - 2155 - 7305)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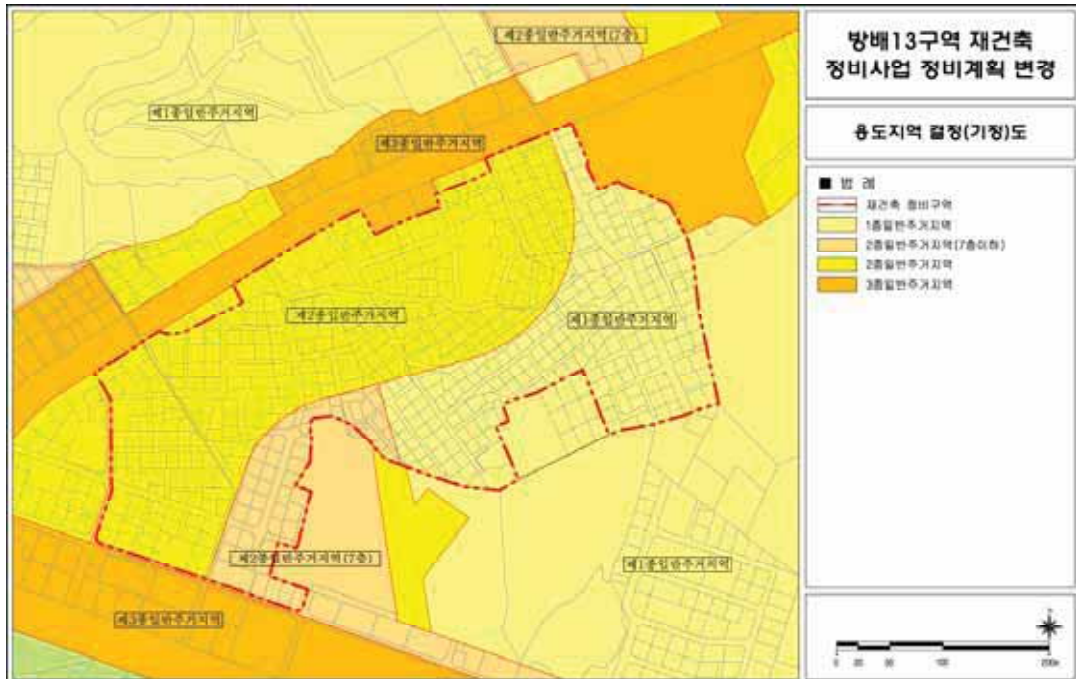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e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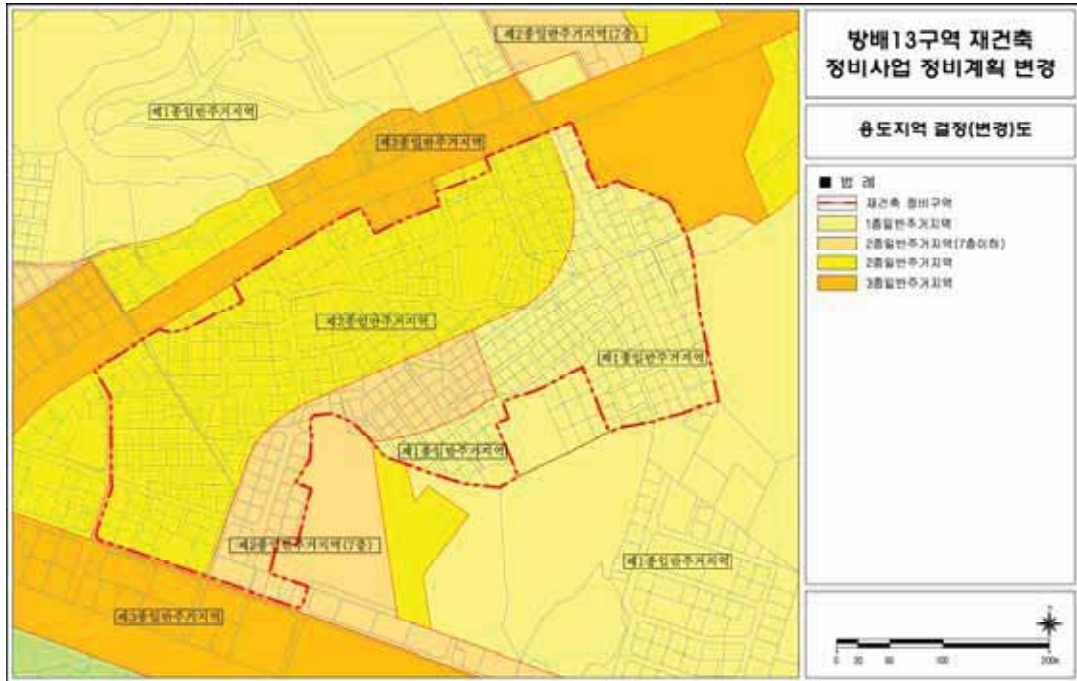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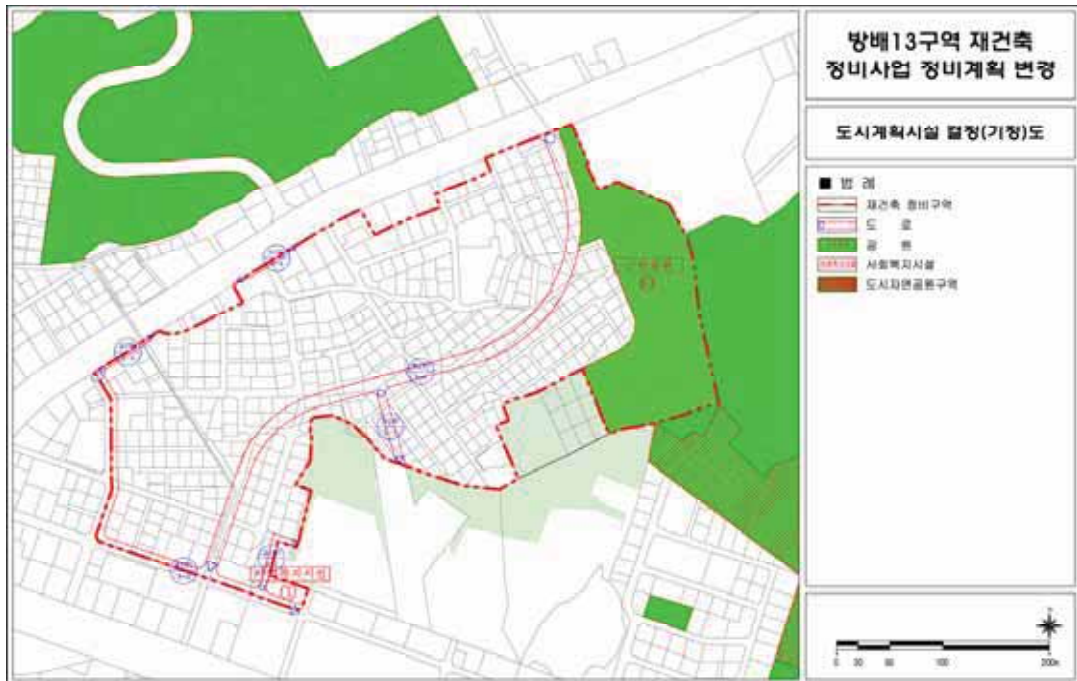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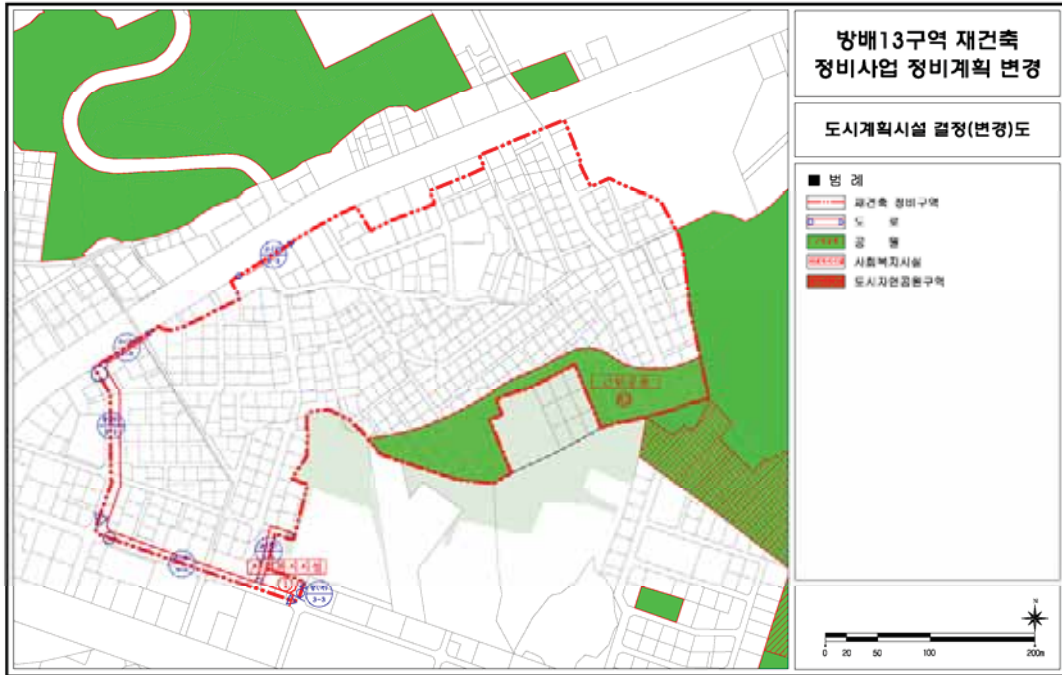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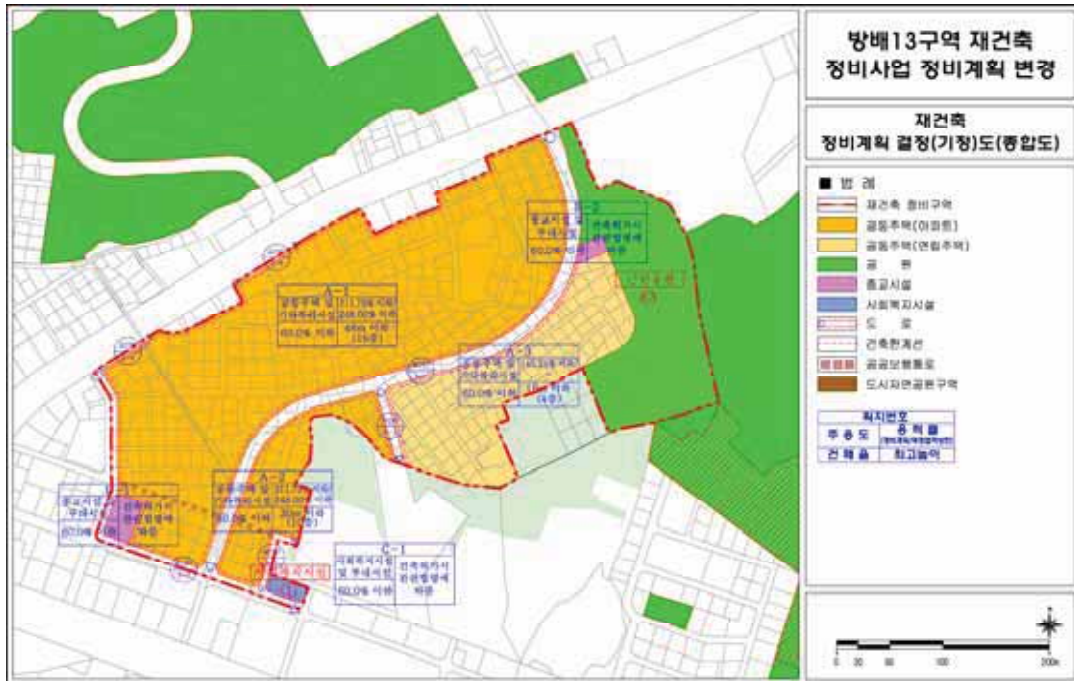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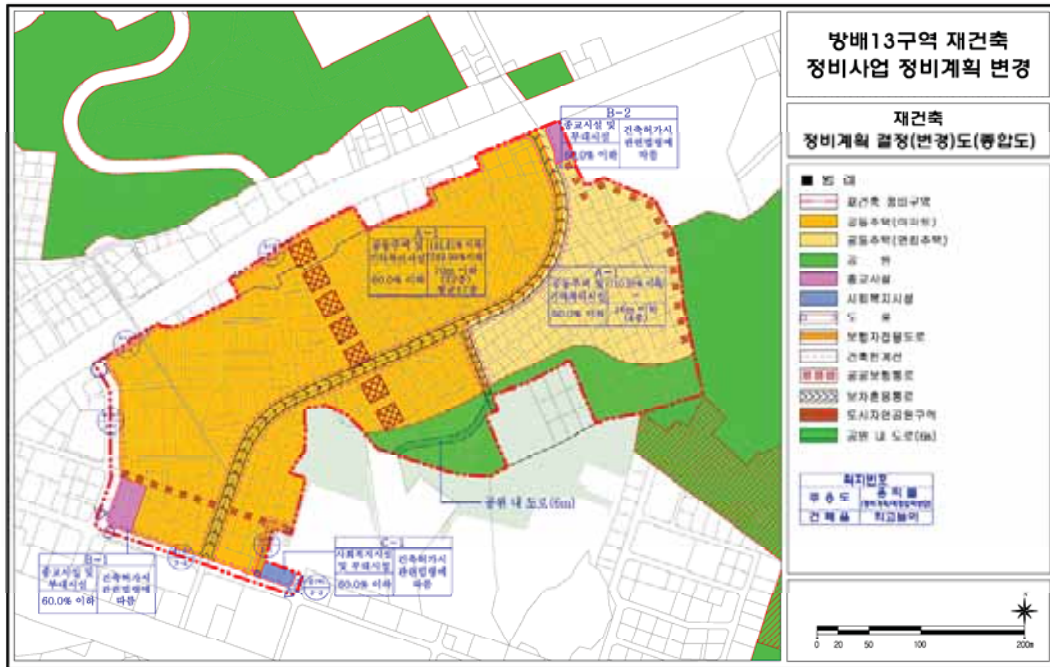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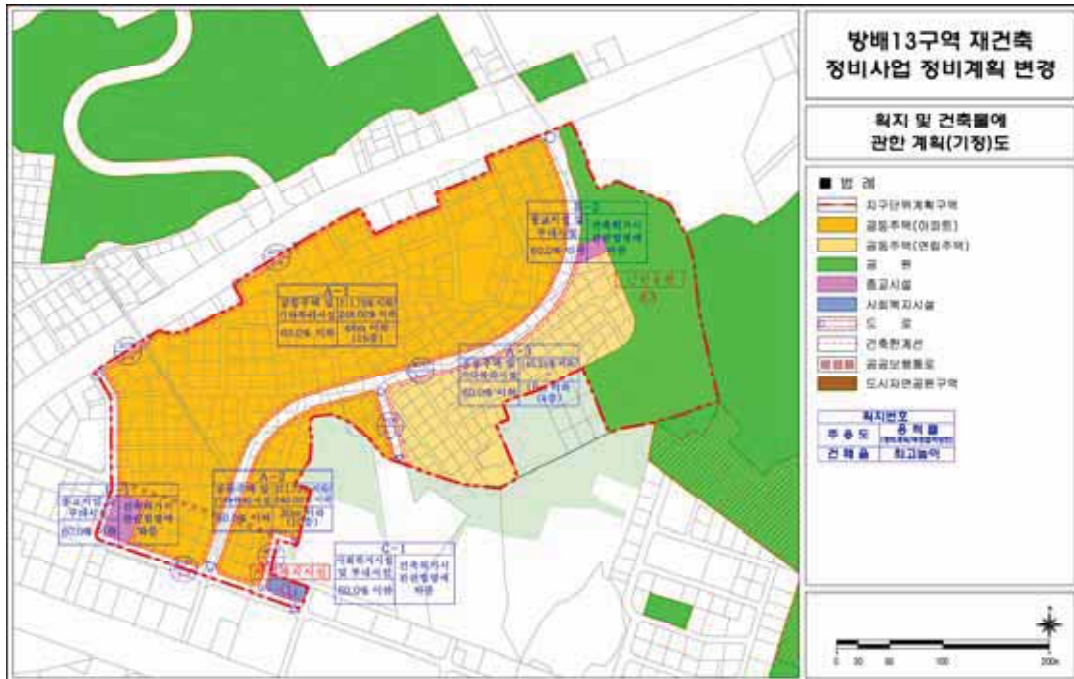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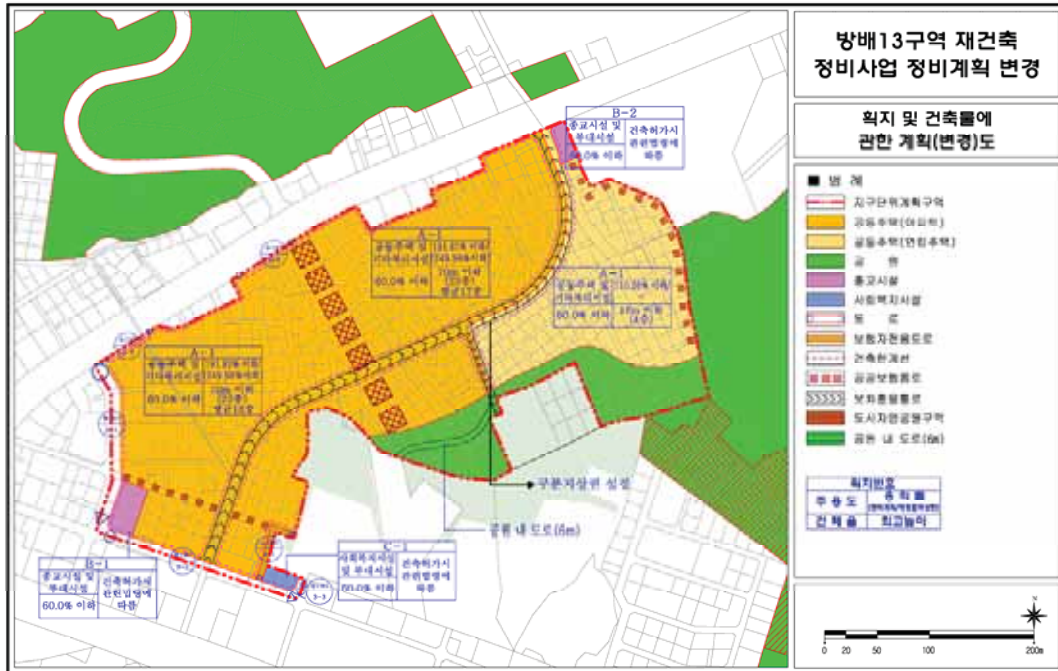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07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장위1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 - 357호(2006.10.19)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 - 196호(2007.06.2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 - 111호(2008.04.0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 145호(2009.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 - 142호(2010.04.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 - 311호(2010.09.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 - 114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 - 117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 - 162호(2011.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 - 231호(2011.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 - 244호(2011.0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 - 290호(2011.09.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 - 34호(2012.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 - 138호(2012.0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 - 169호(2012.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 - 10호(2013.0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 - 105호(2013.04.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 - 161호(2013.0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 - 301호(2013.09.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 - 273호(2014.07.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 - 327호(2014.0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 - 406호(2014.1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 - 108호(2015.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 - 132호(2015.05.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 - 320호(2015.10.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 - 73호(2016.03.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 - 219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 - 382호(2017.10.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 - 17호(2019.0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 - 88호(2019.03.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 - 240호(2019.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99호(2020.03.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149호(2020.04.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214호(2020.05.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313호(2020.07.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325호(2020.07.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576호(2020.12.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102호(2021.02.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254호(2021.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306호(2021.07.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302호(2022.07.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356호(2022.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 - 36호(2023.02.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 - 70호(2023.03.0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성북구 장위동 일원	920,535.7	-	920,535.7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총 계			920,535.7	-	920,535.7	-
촉진 구역	소 계 (9개 구역)		846,105.8	-	846,105.8	-
	장위1구역	장위동 144 - 24 일원	80,316.6	-	80,316.6	-
	장위2구역	장위동 290 - 9 일원	25,344.0	-	25,344.0	-
	장위3구역	장위동 305 일원	66,011.0	-	66,011.0	-
	장위4구역	장위동 62 - 1 일원	153,501.0	-	153,501.0	-
	장위5구역	장위동 173 - 114 일원	88,765.7	-	88,765.7	-
	장위6구역	장위동 25 - 55 일원	105,136.9	-	105,136.9	-
	장위7구역	장위동 189 - 3 일원	87,635.6	-	87,635.6	-
	장위10구역	장위동 68 - 37 일원	94,037.0	-	94,037.0	-
	장위14구역	장위동 233 - 552 일원	145,358.0	-	145,358.0	-
존치 지역	존치 관리구역	소 계	74,429.9	-	74,429.9	-
		존치구역 존치시설	74,429.9	-	74,429.9	-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분	재정비촉진 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장위1구역	성북구 장위동 144 - 24 일대	80,316.6	-	80,316.6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장위1구역)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계		80,316.6	-	80,316.6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38,573.1	증) 1,090.1	39,663.2	49.4	
	도로	16,350.1	-	16,350.1	20.4	
	녹지	4,034.7	-	4,034.7	5.0	
	학교	17,458.0	-	17,458.0	21.7	
	공공공지	103.9	-	103.9	0.1	
	청소년수련시설	326.9	-	326.9	0.4	존치시설
	공공청사	299.5	-	299.5	0.4	치안센터
	문화시설	-	증) 1,090.1	1,090.1	1.4	
택지 (획지)	소계	41,743.5	감) 1,090.1	40,653.4	50.6	
	1-1	36,018.0	-	36,018.0	44.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4,635.4	-	4,635.4	5.8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1-3	1,090.1	감) 1,090.1	-	-	

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장위1구역)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80,316.6	-	80,316.6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9,863.6	-	19,863.6	24.7
	제2종일반주거지역	60,453.0	-	60,453.0	75.3

라.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장위1구역)

1) 도로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40	25 ~31	간선 도로	11,530 (1,310)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도로	장위동	총고시722 (36.12.27)	한천로
기정	중로	1	510	20	집산 도로	489	장위동 153-9	장위동 237-90	일반도로		-	장월로
기정	중로	1	512	20	집산 도로	55	장위동 158-43	장위동 157-22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16	20	집산 도로	93	장위동 135-4	장위동 122-1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장위로
기정	중로	1	523	14 ~19	집산 도로	145	장위동 143-38	장위동 270-46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A	10		30	장위동 270-164	장위동 127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501	8	국지 도로	153	장위동 270-58	장위동 270-58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소로	3	B	6		133	장위동 136-53	장위동 133	일반도로			

※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연장을 의미함

2) 녹지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22	녹지	연결녹지	장위동 140-20일대	1,441.0	-	1,441.0	서고시111 (08.04.03)	
기정	a	녹지	경관녹지	장위동 134-35일대	2,232.4	-	2,232.4		
기정	b	녹지	경관녹지	장위동 135-1일대	378.9 (361.3)	-	378.9 (361.3)		

※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1구역 내 면적을 의미함

3) 학교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	광운초	학교	장위동124	17,458.0	-	17,458.0	서교위고5 (87.02.17)	기존하천 359㎡ 중복결정
		남대문중	학교	장위동124-1					

4) 공공공지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70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79-16	3,392.9 (103.9)	-	3,392.9 (103.9)	서교시111 (08.04.03)	

※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1구역 내 면적을 의미함

5) 공공청사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59	치안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155-1일대	299.5	-	299.5	서교시111 (08.04.03)	

6) 청소년수련시설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	성북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시설	장위동 135-2일대	326.9	-	326.9	서교시338 (97.10.28)	

7)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①	문화시설	문화시설	장위동 158-63일대	-	증) 1,090.1	1,090.1	-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부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문화시설	문화시설	• 신설 (증 1,090.1㎡)	•지역내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문화시설 신설

■ 건축물의 규모 결정 조서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문화시설	60% 이하	200% 이하	관련 법령에 의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없음)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후	
기정	장위1구역	80,316.6	장위동 144 - 24일대	364	4	-	360	-	

2)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장위1 구역	80,316.6	1 - 1	36,018.0	장위동 144 - 24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65이하 (적용 259.51)	22층 이하	29층이하 (88m이하)	
			1 - 2	4,635.4	장위동 124 - 3일대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법령에 의함	230이하	관련 법령에 의함		
			1 - 3	1,090.1	장위동 158 - 63일대	근린생활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학교	17,458.0	장위동 133일대	학교	관련 법령에 의함				
			청소년 수련시설	326.9	장위동 135 - 1일대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변경		80,316.6	1 - 1	36,018.0	장위동 144 - 24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65이하 (적용 259.51)	22층 이하	29층이하 (88m이하)	
			1 - 2	4,635.4	장위동 124 - 3일대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법령에 의함	230이하	관련 법령에 의함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학교	17,458.0	장위동 133일대	학교	관련 법령에 의함			
			청소년 수련시설	326.9	장위동 135-1일대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없음)			• 건립예정세대수 : 939세대 (공공주택 : 162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71세대(7.56%) [공공 : 71세대] - 전용면적 40~50㎡ : 69세대(7.35%) [공공 : 69세대] - 전용면적 50~60㎡ : 216세대(23.00%) [공공 : 22세대] - 전용면적 60~85㎡ : 556세대(59.21%) - 전용면적 85㎡이상 : 27세대(2.88%)					도시형생활주택 • 건립예정세대수 : 173세대 (임대주택:30세대) - 전용면적40㎡이하 : 173세대(100%) [임대:30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한천로 : 8m, 화랑로 : 10m(단, 지하부는 6m 완화적용) • 월계로, 장위로, 장월로, 순환도로, 국지도로변 : 6m • 학교와 획지1-2 사이에 경관녹지 ㉠ ~ 우이천 연결을 위한 공공보행통로(7m) 확보							

• 용적률 계획(기정)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 시설면적	기부채납 공공시설제공 (토지)면적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80,316.6㎡	41,743.5㎡	38,573.1㎡	7,164.1㎡	1,543.0㎡	23,782.0㎡	7,627.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8,707.1㎡ • 기부채납 공공시설 제공면적(토지) : 7,164.1㎡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38,573.1㎡ - 23,782.0㎡ - 7,627.0㎡ = 7,164.1㎡ • 기부채납 공공시설(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1,543.0㎡						
기반시설 부담률	• 기반시설 부담률 : (8,707.1㎡ ÷ 80,316.6㎡) × 100% = 10.8%(구역면적 대비)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210%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x (1+1.3x가중치xα) ▶ 대상지 • 기준용적률 210% • α(토지) = 7,164.1 / 40,200.5 = 0.1782 • α(건물) = 1,543.0 / 40,200.5 = 0.0384 ▶ 대상지 • 상한용적률 (완화가능용적률) = 210% x [(1+1.3x0.1782)+(1+1.3x0.0384)] = 269.13% ≥ 건축계획(안) 259.51%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α(건물) = 공공시설등 부지(건물)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41,743.5㎡ - 1,543.0㎡ = 40,200.5㎡						
정비계획 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259.51%						

-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 시설면적	기부채납 공공시설제공 (토지)면적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80,316.6㎡	40,653.4㎡	39,663.2㎡	8,254.2㎡	23,782.0㎡	7,627.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8,254.2㎡ • 기부채납 공공시설 제공면적(토지) : 8,254.2㎡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39,663.2㎡ - 23,782.0㎡ - 7,627.0㎡ = 8,254.2㎡					
기반시설 부담률	• 기반시설 부담률 : (8,254.2㎡ ÷ 80,316.6㎡) × 100% = 10.28%(구역면적 대비)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210%					
상한용적률	○완화가능 용적률 = 기준용적률 x (1+1.3x가중치xα) ► 대상지 • 기준용적률 210% • α(토지) = 8,254.2 / 40,653.4 = 0.2030 ► 대상지 • 상한용적률 (완화가능용적률) = 210% x [(1+1.3x0.2030)] = 265.42% ≥ 건축계획(안) 259.51%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변경대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기정	주택재개발	1단계 (2009년부터)	주택재개발조합	현황 : 866세대 계획 : 939세대 증) 73세대	-	

아.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기정	장위 1구역	-	-	15,887.55	●71세대(30세대)(7.56%)	●40㎡이하	괄호안의 세대수는 도시형 생활주택임.
					●69세대(7.35%)	●40~50㎡이하	
					●22세대(2.34%)	●50~60㎡이하	
					●전체:162세대(30세대)(17.25%)	-	

※ 세대수 항목의 괄호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 구역내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을 혼재배치하여 별도의 부지 구획하지 않음

자.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없음)

구분	재정비촉진 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장위1구역	성북구 장위동 144-24 일대	80,316.6	-	80,316.6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80,316.6	-	80,316.6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9,863.6	-	19,863.6	24.7
	제2종일반주거지역	60,453.0	-	60,453.0	75.3

3.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

1)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0	25 ~31	간선 도로	11,530 (1,310)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 도로	장위동	총고시722 (36.12.27)	한천로
기정	중로	1	510	20	집산 도로	489	장위동 153-9	장위동 237-90	일반 도로		-	장월로
기정	중로	1	512	20	집산 도로	55	장위동 158-43	장위동 157-22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16	20	집산 도로	93	장위동 135-4	장위동 122-1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장위로
기정	중로	1	523	14 ~19	집산 도로	145	장위동 143-38	장위동 270-46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A	10		30	장위동 270-164	장위동 12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501	8	국지 도로	153	장위동 270-58	장위동 270-58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소로	3	B	6		133	장위동 136-53	장위동 133	일반 도로			

※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2)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22	녹지	연결녹지	장위동 140·20일대	1,441.0	-	1,441.0	서고시111 (08.04.03)	
기정	a	녹지	경관녹지	장위동 134·35일대	2,232.4	-	2,232.4		
기정	b	녹지	경관녹지	장위동 135·1일대	378.9 (361.3)	-	378.9 (361.3)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1구역 내 면적을 의미함

3) 학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	광운초	학교	장위동124	17,458.0	-	17,458.0	시교위고5 (87.02.17)	기존하천 359㎡ 중복결정
		남대문중	학교	장위동 124·1					

4) 공공공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70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79·16	3,392.9 (103.9)	-	3,392.9 (103.9)	서고시111 (08.04.03)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1구역 내 면적을 의미함

5) 공공청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59	치안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155·1일대	299.5	-	299.5	서고시111 (08.04.03)	

6) 청소년수련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	성북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시설	장위동 135-2일대	326.9	-	326.9	서고시338 (97.10.28)	

7)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①	문화시설	문화시설	장위동 158-63일대	-	증) 1,090.1	1,090.1	-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문화시설	문화시설	• 신설 (증 1,090.1㎡)	• 지역내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문화시설 신설

■ 건축물의 규모 결정 조서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문화시설	60% 이하	200% 이하	관련 법령에 의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명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획지	소계	41,743.5	감) 1,090.1	41,743.5	50.6	
	1-1	36,018.0	-	36,018.0	44.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4,635.4	-	4,635.4	5.8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1-3	1,090.1	감) 1,090.1	-	-	획지1-3 → 문화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용도	비고
기정	허용용도 1-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허용용도 1-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도시형생활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허용용도 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상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 주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른 제한용도는 불허
변경	허용용도 1-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허용용도 1-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도시형생활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2) 건폐율 계획 (변경)

구분	지역	건폐율	비고
기정	1-1(공동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	30%이하
	1-2, 1-3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법령에 의함
변경	1-1(공동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	30%이하
	1-2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법령에 의함

3) 용적률 계획 (변경)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정상한용적률	
기정	1-1 (공동주택)	210%이하	-	265%이하	300%이하	계획(적용)용적률 259.51%
	1-2	230%이하				
	1-3	관련법령에 의함				
변경	1-1 (공동주택)	210%이하	-	265%이하	300%이하	계획(적용)용적률 259.51%
	1-2	230%이하				

4)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변경)

구분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토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기정	1-1 (공동주택)	48.65%	10.48%	59.13%
변경		55.42%	-	55.42%

5) 높이 계획 (변경)

구분		높이기준	비고
기정	1-1	· 평균층수 22층/ 최고층수 29층/ 최고높이 88m이하	-
	1-2, 1-3	· 관련법령에 의함	-
변경	1-1	· 평균층수 22층/ 최고층수 29층/ 최고높이 88m이하	-
	1-2	· 관련법령에 의함	-

6)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한천로	8m
	월계로, 장위로, 장월로, 순환도로, 국지도로변	6m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전면공지	1-1획지내 도로변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조정 및 보행자 공간으로 조성 - 폭원 : 6m~8m
공공보행통로	1-2획지내	●학교와 획지1-2 사이에 경관녹지 a ~ 우이천 연결을 위한 공공보행통로(7m) 확보

2)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결정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장위 1구역	-	-	15,887.55	• 71세대(30세대)(7.56%)	• 40㎡이하	괄호안의 세대수는 도시형 생활주택임.
					• 69세대(7.35%)	• 40~50㎡이하	
					• 22세대(2.34%)	• 50~60㎡이하	
					• 전체 : 162세대(30세대)(17.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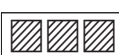
※ 세대수 항목의 괄호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 구역내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을 혼재배치하여 별도의 부지 구획하지 않음

3) 환경관리계획(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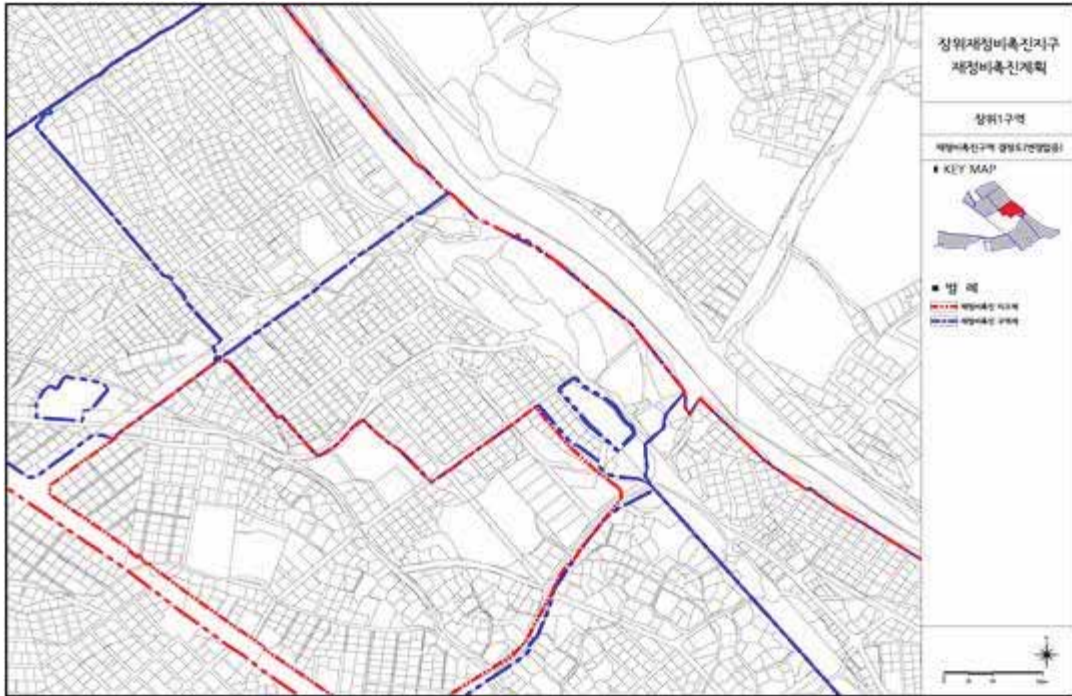
검토항목		검토 결과	환경영향	보전대책	비고
자연환경	토양표장 우수유출	X	-	• 현재보다 공원녹지 증가로 환경측면 유리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지하터파기에 따른 지형변화	• 발생토량은 조정토, 되메우기 등 실시 • 외부로의 토사유출입 자체	
	녹지변동 녹지체계	X	-	• 현재보다 공원녹지 증가로 환경측면 유리	
	습지보전	X	보전대상 습지 없음	-	
	비 오 톱	X	-	• 공원과 우이천을 연계하여 단지내 생물서식공간 확보	
생활환경	일 조	○	일조침해 예상	• 공간에 도로, 조경녹지, 휴게공간 등 계획	
	바 람	○	영향 미약	• 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충분한 오픈페이스 확보	
	경 관	○	고층건축물 신축에 따른 경관변화	•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건축설계	
	에 너 지	○	건물 신축으로 에너지사용 변화 예상	• 지역특성상 도시가스를 사용할 계획으로 지상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에너지절약형 단지를 조성할 계획	
	환경오염	○	오수량 및 생활폐기물 증가	• 중량물재생센터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	
도시재정비계획 시행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	건축폐기물의 발생, 비산먼지, 공사장 소음 문제 및 강우시 토사유출 예상	• 건축폐기물의 적법처리 및 비산먼지와 토사유출, 소음 저감방안 수립	

라.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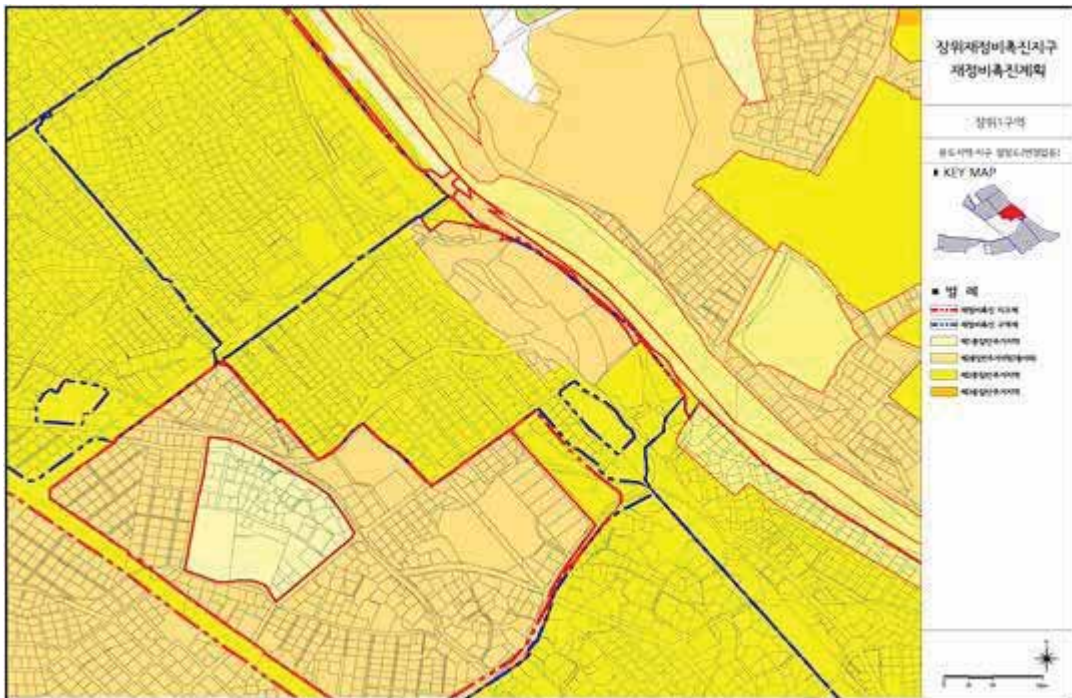
구분 및 범례	세부지침	계획 지표 및 예시 이미지				
 탑상형 배치구간	○ ‘탑상형 배치구간’은 탑상형아파트가 건축되는 주택용지로 정한다. ○ 탑상형아파트는 ‘탑상형 배치구간’에만 건축 가능하다. ○ ‘탑상형 배치구간’내 건축물의 높이는 최고 29층으로 정한다. ○ ‘탑상형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 “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주동을 수평 투영하였을 때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 이하 이고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로 구성된 단일 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진, 출입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단지의 조망감 및 경관형성 등 개방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table><tr><td>최고층수</td><td>29층</td></tr><tr><td>최저층수</td><td>13층</td></tr></table>	최고층수	29층	최저층수	13층
최고층수	29층					
최저층수	13층					
 고층배치구간	○ ‘고층 배치구간’의 주거동은 13~29층으로 정한다. ○ ‘고층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table><tr><td>최고층수</td><td>29층</td></tr><tr><td>최저층수</td><td>13층</td></tr></table>	최고층수	29층	최저층수	13층
최고층수	29층					
최저층수	13층					
 중층배치구간	○ ‘중층 배치구간’의 주거동은 8~12층으로 정한다. ○ ‘중층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table><tr><td>최고층수</td><td>12층</td></tr><tr><td>최저층수</td><td>8층</td></tr></table>	최고층수	12층	최저층수	8층
최고층수	12층					
최저층수	8층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란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 통행에 이용 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조성한 통로로, 지상부 설치 또는 지하통로형, 필로티형 등으로 설치·이용 할 수 있다. ○ ‘공공보행통로’의 보도포장구간 폭원은 최소 4m이상을 확보하고, 보도포장 외 구간은 친환경 단조성을 위해 보행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잔디포장등 투수성 포장을 허용한다. ○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대지 단차가 있는 경우 종단 구배를 최소화하여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table><tr><td>공공보행통로 폭원</td><td>7m</td></tr></table>	공공보행통로 폭원	7m		
공공보행통로 폭원	7m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 및 지하부분이 돌출되지 못한다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한 전면공지는 조경 및 보행자 공간으로 조성한다.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 불허구간’은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전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위치는 지침도를 따른다.	-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관련 사항은 붙임(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총괄)고시) 및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도서」에 명시 : 결정(변경)도서 게재 생략
6.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02 - 2133 - 7223)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 02 - 2241 - 283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없음)]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도]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이 하 여 백 -

붙임 :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총괄) 고시

1.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장 위 재정비촉진지구	주거 지형	성북구 장위동 일원	920,535.7	-	920,535.7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25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총계		920,535.7	-	920,535.7	100.0	
주거	소계	577,712.8	-	577,712.8	62.8	
	공동주택	535,767.8	-	535,767.8	58.2	
	복합용지	41,945.0	-	41,945.0	4.6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326,856.5	증) 1,090.1	327,946.6	35.6	
	도로	191,918.8	-	191,918.8	20.8	
	공원	59,301.4	-	59,301.4	6.5	
	녹지	16,776.7	-	16,776.7	1.8	
	학교	33,242.0	-	33,242.0	3.6	
	공공공지	4,747.3	-	4,747.3	0.5	
	공공청사	14,500.4	-	14,500.4	1.6	
	주차장	2,590.0	-	2,590.0	0.3	
	사회복지시설	1,000.0	-	1,000.0	0.1	
	청소년수련시설	2,779.9	-	2,779.9	0.3	
	문화시설	-	증) 1,090.1	1,090.1	0.1	
기타	소계	15,966.4	감) 1,090.1	14,876.3	1.6	
	종교시설	9,625.5	-	9,625.5	0.9	
	근린생활시설	5,422.9	감) 1,090.1	4,332.8	0.5	
	우체국	542.0	-	542.0	0.1	
	기타	376.0	-	376.0	0.1	

※ 기타는 획지14-3, 14-4 면적임.

나.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변경없음)

구분	기 정	증·감	변 경	비고
인구(인)	39,890	-	39,890	-
세대수(세대수)	14,774	-	14,774	-

※ 변경인구(인) : 세대당 2.7인 적용

1) 구역별 주택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구역별	합계				공공				분양			
		세대수 (비율%)	60㎡ 미만	60 ~85㎡	85㎡ 초과	소계	40㎡	40 ~50㎡	50 ~60㎡	소계	60㎡ 미만	60 ~85㎡	85㎡ 초과
계		14,774 (100%)	6,634 (44.9%)	7,168 (48.5%)	972 (6.6%)	2,558 (17.3%)	1,094	1,105	359	12,216 (82.7%)	4,076	7,168	972
기정	1구역	939	356	556	27	162	71	69	22	777	194	556	27
기정	2구역	513	242	268	3	92	40	37	15	421	150	268	3
기정	3구역	1,078	216	432	430	184	84	79	21	894	32	432	430
기정	4구역	2,840	1,309	1,438	93	484	194	200	90	2,356	825	1,438	93
기정	5구역	1,562	660	756	146	276	123	117	36	1,286	384	756	146
기정	6구역	1,637	758	818	61	285	129	126	30	1,352	473	818	61
기정	7구역	1,711	844	825	42	295	125	137	33	1,416	549	825	42
기정	10구역	2,004	988	958	58	341	139	137	65	1,663	647	958	58
기정	14구역	2,490	1,261	1,117	112	439	189	203	47	2,051	822	1,117	112

※ 전용85㎡ 초과 주택수 972세대 6.6%로 기준 20%미만 충족

※ 공공주택(2,558)은 세대 17.3%로 기준 15%이상 충족

※ 장위1구역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40㎡이하 173세대(임대30세대) 미포함

다. 기반시설 설치계획(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변경)

1) 교육시설계획(변경없음)

학교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장위초등학교	장위동 68-8	15,784.0	-	15,784.0	-
광운초등학교	장위동 128	17,458.0	-	17,458.0	-
남대문중학교	장위동 124-1				

2) 공공시설계획(변경)

구분	현황			계획			비고
	시설명	위치	면적 (㎡)	시설명	위치	면적 (㎡)	
기정	공공청사 (장위2동 주민센터)	장위동 69 - 54	798	공공청사 (장위2동 주민센터)	장위동 68 - 1335일대	1,007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라 장위10구역 내 대체 확보 • 장위2동주민센터 • 주민커뮤니티센터 - 생활체육관, 주민센터, 취미교실, 경로당, 유치원(어린이집) • 연면적: 1,800.0㎡
	복지시설 (장위2동경로당)	장위동 68 - 1055	165				
기정	공공청사 (장위지구대)	장위동 272 - 74	59.4	공공청사 (장위지구대)	장위동 272 - 74	59.4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른 시설환원(현황존 치)
기정	공공청사 (석관우체국)	장위동 69 - 176	506	공공청사 (석관우체국)	장위동 69 - 176	506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른 시설환원(현황존 치)
	공공청사 (장위우체국)	장위동 69 - 4	427	장위우체국	장위동 110 - 26	542	• 장위4구역 내 대체 확보
기정	공공청사 (성북벤처 창업지원센터)	장위동 65 - 154	1,825	공공청사 (성북벤처 창업지원센터)	장위동 65 - 154	1,825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른 시설환원(현황존 치)
기정	복지시설 (장위3동 어린이집)	장위동 77 - 64	978	복지시설 (장위3동 어린이집)	장위동 77 - 64	978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른 시설환원(현황존 치)
기정	청소년수련시설 (성북 청소년수련관)	장위동 135 - 2	2,696	청소년수련시설 (성북 청소년수련관)	장위동 135 - 2	2,779.9	장위1구역 • 성북청소년수련관 (지상4/지하2)
신설	-	-	-	문화시설	장위동 158 - 63 일대	1,090.1	장위1구역 • 1구역 문화시설 용지에 건축물 기부채납 예정 (3구역)
기정	공공청사 (장위3동 주민센터)	장위동 117 - 5	508	공공청사 (장위3동 주민센터)	장위동 98 - 1	2,050	장위4구역 • 장위3동주민센터 • 주민커뮤니티센터 (지상3/지하1) - 생활체육관, 주민센터, 취미교실, 도서 실, 경로당, 유치원(어린이집) • 연면적: 2,500.0㎡ ※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연면적 1,500㎡), 건강생활지원센터 (연면적 600㎡) 4구역 공공청사 대체 확보예정
	복지시설 (장위3동 경로당)	장위동 135 - 5	165				

구분	현황			계획			비고
	시설명	위치	면적 (㎡)	시설명	위치	면적 (㎡)	
기정	공공청사 (장위소방 치안센터)	장위동 34	419	공공청사 (소방치안센터)	장위동 270 - 172	986.9	장위6구역 • 장위동 소방치안센터 (지상3/지하1)
기정	-	-	-	공공청사 (장위3치안센터)	장위동 270 - 388	754.8	장위6구역
기정	-	-	-	공공청사 (주민커뮤니티센터)	장위동 158 - 15	1,297.2	장위5구역 • 주민커뮤니티센터 - 생활체육관, 취미교실, 도서실, 경로 당, 유치원, 복지센터(실버센터) • 연면적: 1,500.0㎡
기정	-	-	-	사회복지시설	장위동 176 - 9	1,000	장위3구역 • 복지센터 • 연면적: 2,000.0㎡ ※ 시설용도 변경 검토중
기정	-	-	-	공공청사 (치안센터)	장위동 155 - 1	299.5	• 장위1구역 치안센터
기정	공공청사 (장위1주민센터)	장위동 225 - 100	662	공공청사 (장위1주민센터)	장위동 225 - 100	662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장위14구역 내 대체확보 예정
	복지시설 (장위1동 어린이집)	장위동 218 - 27	307	복지시설 (장위1동 어린이집)	장위동 218 - 27	307	
	복지시설 (장수경로당)	장위동 218 - 27	307	복지시설 (장위경로당)	장위동 218 - 27	207	
	복지시설 (장위1동경로당)	장위동 산3 - 101	165	-	-	-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장위14구역 내 대체확보 예정
	공공청사 (장위1치안센터)	장위동 233 - 250	65.36	-	-	-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장위14구역 내 대체확보 예정
	-	-	-	도서관	장위동 233 - 209	3,460	장위14구역 • 공동주택용지 내 결정 • 연면적 : 3,460.0 • 대지지분: 1,503.9㎡ (기부채납)

구분	현황			계획			비고
	시설명	위치	면적 (㎡)	시설명	위치	면적 (㎡)	
기정	공공청사 (장위1주민센터)	장위동 225-100	662	-	-	-	
	복지시설 (장위1동 어린이집)	장위동 218-27	307	-	-	-	
	복지시설 (장수경로당)	장위동 218-27	307	-	-	-	
	복지시설 (장위1동경로당)	장위동 산3-101	165	공공청사 ①	장위동 233-631일대	7,370	• 장위14구역 공공청사 내 경로당(연면적 200㎡)
	공공청사 (장위1치안센터)	장위동 233-250	65.36	공공청사 ②	장위동 233-436일대	327	• 장위14구역 치안센터
기정	-	-	-	공공청사	장위동 68-942	408	장위10구역 • 해제구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청사 신설

※ 장위3동 주민센터 및 종합문화복지센터의 용도는 추가검토 및 협의 필요

※ 향후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면적은 향후 토지가액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구분		시설 번호	명칭	면 적(㎡)			명칭의 유래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76,078.1	-	76,078.1		
주제 공원	소 계			59,301.4	-	59,301.4		
	문화 공원	1개소	4,081.3	-	4,081.3			
		415	상길레문화공원	4,081.3	-	4,081.3	덕온공주의 하가의식인 '길레' 에서 공원명칭 부여	
생태·환경 보전 공원	근린 공원	3개소	30,248.0	-	30,248.0			
		411	아랫말공원	22,625.0	-	22,625.0	옛 장위동을 이루는 마을이름	
		413	푸석공원	-	-	-	옛 명칭인 푸석산(푸르름)에서 유래	
		140	오동근린공원	7,623.0	-	7,623.0	대상지의 남북축을 연결하는 공원	
	어린이 공원	4개소	24,972.1	-	24,972.1			
		417	석촌공원	8,321.0	-	8,321.0	석촌 윤용구 선생을 주제로 한 공원	
		418	간대공원	4,990.1	-	4,990.1	옛 장위동을 이루는 마을이름	
		419	장석공원	5,649.0	-	5,649.0	장석시장의 지역적 맥락에서 유래	
		A	장위공원	6,012.0	-	6,012.0	장위초교연계	
	녹지	소 계			16,776.7	-	16,776.7	
		자연 녹지	9개소	10,091.9	-	10,091.9		
22			장위산내길 (중앙연결녹지)	1,441.0	-	1,441.0	장위동 + 산 + 내 오동근린공원↔우이천 통경축확보	
25 ~27			푸른에움길 (수계연결녹지)	4,863.5	-	4,863.5	푸른 녹지와 물로 둘러싸인 길	
31 ~36			푸른에움길 (보행연결녹지)	2,733.4	-	2,733.4	보행중심의 환경생태녹지로 조성	
37			보행연결녹지	1,054.0	-	1,054.0	우이천 및 석계역 보행연결	
경관 녹지		5개소	6,684.8	-	6,684.8			
		a	경관녹지	2,232.4	-	2,232.4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b	경관녹지	378.9	-	378.9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c	경관녹지	1,208.0	-	1,208.0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d	경관녹지	2,651.5	-	2,651.5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e	경관녹지	214.0	-	214.0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 마. 교통계획 :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도서(교통계획) 참고
 바. 경관계획 :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도서(경관계획) 참고
 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비고
기정	장위1	-	장위동	144-24	8.0	-	-	-	1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2	-	장위동	290-9	2.5	-	-	-	2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3	-	장위동	305	6.6	-	-	-	6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4	-	장위동	62-1	15.4	-	-	-	3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5	-	장위동	173-114	9.0	-	-	-	3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6	-	장위동	25-55	10.5	-	-	-	5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7	-	장위동	189-3	8.8	-	-	-	2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10	-	장위동	68-37	9.4	-	-	-	3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14	-	장위동	233-552	14.5	-	-	-	4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아.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총 계				920,535.7	-	920,535.7	-
촉진 구역	소 계 (9개 구역)		846,105.8	-	846,105.8	-	
	장위1구역	장위동 144 - 24 일원	80,316.6	-	80,316.6	-	
	장위2구역	장위동 290 - 9 일원	25,344.0	-	25,344.0	-	
	장위3구역	장위동 305 일원	66,011.0	-	66,011.0	-	
	장위4구역	장위동 62 - 1 일원	153,501.0	-	153,501.0	-	
	장위5구역	장위동 173 - 114 일원	88,765.7	-	88,765.7	-	
	장위6구역	장위동 25 - 55 일원	105,136.9	-	105,136.9	-	
	장위7구역	장위동 189 - 3 일원	87,635.6	-	87,635.6	-	
	장위10구역	장위동 68 - 37 일원	94,037.0	-	94,037.0	-	
	장위14구역	장위동 233 - 552 일원	145,358.0	-	145,358.0	-	
존치 지역	존치 관리구역	소 계		74,429.9	-	74,429.9	-
		존치구역	존치시설	74,429.9	-	74,429.9	-

자.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계		920,535.7	-	920,535.7	100.0	
일반 주거 지역	소계	915,658.2	-	915,658.2	99.5	
	제1종일반주거지역	47,775.0	-	47,775.0	5.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67,528.2	-	67,528.2	7.3	
	제2종일반주거지역	759,047.8	-	759,047.8	82.5	
	제3종일반주거지역	41,307.2	-	41,307.2	4.5	
자연녹지지역		4,877.5	-	4,877.5	0.5	

차.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명칭	면적(㎡)			기준	상한	평균/ 최고층수	최고높이 (m)	
기정	장위 1구역	1-1	36,01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10.0	265이하	22층이하	29층이하 (88m이하)	
		1-2	4,635.2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법령에 의함	230%이하		관련 법령에 의함		
		1-3	1,090.1	근린생활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변경		1-1	36,01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10.0	265이하	22층이하	29층이하 (88m이하)	
		1-2	4,635.2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법령에 의함	230%이하		관련 법령에 의함		
기정	장위 2구역	2-1	17,862.6	복합용지	30이하	197.9	281.6이하	-	30층이하 (103m이하)	
기정	장위 3구역	3-1	52,68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190.0	230이하	22.3층이하	29층이하 (88m이하)	
기정	장위 4구역	4-1	37,76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10.0	269이하	22층이하	33층이하 (117m이하)	
		4-2	31,038							
		4-3	17,786							
		4-4	19,849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명칭	면적(㎡)			기준	상한	평균/ 최고층수	최고높이 (m)	
		4-12	296	근린생활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4-13	187							
기정	장위 5구역	5-1	57,02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10.0	275.65이하	22.4층이하	32층이하 (99m이하)	
		5-2	666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집회장	관련 법령에 의함					
기정	장위 6구역	6-1	41,501.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10.0	260.3이하	25층이하	33층이하 (100m이하)	
		6-2	19,447	복합용지	30이하	210.0	280.3이하	- /33층이하		
기정	장위 7구역	7-1	62,989.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10.0	267이하	22층이하	29층이하 (88m이하)	
		7-2	586.2	종교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7-3	425.9							
		7-4	26.8							
		7-5, 7-6	648.8							
		7-7	19.0							
		7-8	77.8							
기정	장위 10구역	10-1	73,14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11.0	263.390이하	22.3층이하	32층이하 (97m이하)	
기정	장위 14구역	14-1	105,97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150.0 210.0	212이하	16층이하	2층:25층(75m이하) 2층(7층):14층(45m이하)	
		14-2	164	종교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14-3	209	관련 법령에 의함						
		14-4	167							

카.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소계		1구역		2구역	3구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기정
촉진구역 면적(㎡)		846,105.8	846,105.8	80,316.6	80,316.6	25,344.0	66,011.0
기 반 시 설 면 적 (㎡)	계획기반시설①	257,691.4 (30.46%)	258,781.5 (30.58%)	38,573.1 (48.02%)	39,663.2 (49.38%)	7,481.4 (29.52%)	13,330.0 (20.19%)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②	79,407.3	79,407.3	23,782.0	23,782.0	627.0	607.0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③	70,093.2	70,093.2	7,627.0	7,627.0	787.0	5,522.0
	공공시설 설치 대지환산④	26,771.5	25,228.5	1,543.0 (기반시설 설치비용)	-	-	1,399.0
	대지지분⑤	494.5	494.5	-	-	-	-
	순부담면적(㎡) ①-②-③+④+⑤	135,456.9	135,004.0	8,707.1	8,254.2	6,067.4	8,600.0

구 분		면 적(㎡)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10구역	14구역
		기정	기정	기정	기정	기정	기정
촉진구역 면적(㎡)		153,501.0	88,765.7	105,136.9	87,635.6	94,037.0	145,358.0
기 반 시 설 면 적 (㎡)	계획기반시설①	44,315.0 (28.86%)	31,071.7 (35.00%)	43,716.3 (41.59%)	22,861.9 (26.09%)	17,823.0 (18.93%)	38,519.0 (26.50%)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②	5,237.0	12,382.6	19,018.0	4,613.7	2,174.0	10,966.0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③	7,951.0	3,981.3	13,556.0	4,227.95	5,403.0	21,038.0
	공공시설 설치 대지환산④	2,185.6	999.0	-	-	3,932.9	14,746.0 (공공청사 건축물 및 기부채납 공공주택) 1,966.0 (구역외 한천로 및 장월로 가각부 개설)
	대지지분⑤	-	-	-	-	-	494.5
	순부담면적(㎡) ①-②-③+④+⑤	33,312.6	15,706.8	11,142.3	14,020.3	14,178.9	23,721.5

타. 공공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전용면적 40㎡ 이하	전용면적 40 ~ 50㎡ 이하	전용면적 50 ~ 60㎡ 이하	계
기정	장위 1구역	71(30)	69	22	162(30)
기정	장위 2구역	40	37	15	92
기정	장위 3구역	84	79	21	184
기정	장위 4구역	194	200	90	484
기정	장위 5구역	123	117	36	276
기정	장위 6구역	129	126	30	285
기정	장위 7구역	125	137	33	295
기정	장위10구역	139	137	65	341
기정	장위14구역	189	203	47	439
계	기정	1,094(30)	1,105	359	2,558(30)
비율		42.8%	43.2%	14.0%	100.0%

파.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하. 기타 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 (변경없음)

거.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너.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더.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변경없음)

러.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장위1구역 외 변경없음)

1) 장위1구역(재개발사업) : I -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참고

2) 장위2구역(재개발사업) ~ 9) 장위14구역(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성북구 장위동일원	920,535.7	-	920,535.7	

2)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감	변 경	
계		920,535.7	-	920,535.7	100.0
일반 주거 지역	소계	915,658.2	-	915,658.2	99.5
	제1종일반주거지역	47,775.0	-	47,775.0	5.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67,528.2	-	67,528.2	7.3
	제2종일반주거지역	759,047.8	-	759,047.8	82.5
	제3종일반주거지역	41,307.2	-	41,307.2	4.5
자연녹지지역		4,877.5	-	4,877.5	0.5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3	35~38	간선 도로	9,500 (623)	종암동	장지리	일반 도로	장위동	건고시267 (71.06.10)	화랑로
기정	대로	3	39	25~30	간선 도로	5,110 (1,120)	미아동 42 - 13	하계동 184 - 1	일반 도로			월계로
기정	대로	3	40	25~31	간선 도로	11,530 (1,310)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 도로	장위동	총고시722 (36.12.27)	
기정	중로	1	A	20 ~26.5	보조 간선	1,348	장위동 64 - 89	장위동 310 - 22	일반 도로		총고시722 (36.12.26)	돌곶이로
기정	중로	1	510	20~25	집산 도로	489	장위동 154 - 9	장위동 237 - 90	일반 도로			장월로
기정	중로	1	512	20	집산 도로	55	장위동 158 - 43	장위동 157 - 22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13	20	집산 도로	356	장위동 74 - 140	장위동 119 - 1	일반 도로		서고시23 (71.03.02)	장위로
기정	중로	1	514	20	집산 도로	396	장위동 238 - 238	장위동 74 - 54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장위로
기정	중로	1	515	20	집산 도로	784	장위동 231 - 170	장위동 233 - 32	일반 도로		서고시 111 (08.04.03)	
기정	중로	1	516	20~23	집산 도로	93	장위동 135 - 4	장위동 122 - 1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장위로
기정	중로	1	517	20	집산 도로	570	장위동 165 - 3	장위동 291	일반 도로		건고시123 (73.04.04)	순환도로
기정	중로	1	521	18~20	집산 도로	366	장위동 69 - 48	장위동 36 - 9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기정	중로	1	522	20	집산 도로	289	장위동 178 - 1	장위동 201 - 5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23	14~19	집산 도로	145	장위동 143 - 38	장위동 270 - 463	일반 도로		서고시 111 (08.04.03)	장월로38길 가각부 개설
기정	중로	1	524	18~23	집산 도로	232	장위동 93 - 4	장위동 62 - 1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기정	중로	2	510	15	집산 도로	251	장위동 293 - 9	장위동 295 - 25	일반 도로			샘터길
기정	중로	2	511	15	집산 도로	371	장위동 316 - 9	장위동 316 - 9	일반 도로		건고시123 (73.04.04)	
기정	중로	2	512	15	집산 도로	167	장위동 60 - 2	장위동 55 - 28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A	13	집산 도로	140	장위동 68-77	장위동 69-49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기정	중로	3	520	12~15	국지 도로	269	장위동 43-3	월계동 492-11	일반 도로		서고시3 (69.01.18)	
기정	중로	3	521	12	국지 도로	364	장위동 63-75	장위동 43-6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3	524	12	집산 도로	26	장위동 55-25	장위동 55-21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석관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정	중로	3	526	13	집산 도로	197	장위동 300	장위동 317-2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527	12	국지 도로	43	장위동 110-28	장위동 110-21	일반 도로		서고시231 (11.08.11)	
기정	중로	3	-	12		378	장위동 237-268	장위동 238-510	일반 도로			장월로 (지구외)
기정	중로	3	-	12~15		651	장위동 238-534	상월곡동 35-7	일반 도로			장월로 (10구역)
기정	소로	1	S1	10	국지 도로	103	장위동 8-2	장위동 8-3	일반 도로		서고시212 (02.06.12)	석관 지구단위계획구 역
기정	소로	1	520	10	국지 도로	85	장위동 231-280	장위동 산 3-110	일반 도로	장위동	서고시 111 (08.04.03)	
기정	소로	1	524	10	국지 도로	80	장위동 122-6	장위동 120-14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S6	10~11		227	장위동 50-17	장위동 63-61	일반 도로		서고시212 (02.06.12)	석관 지구단위계획구 역
기정	소로	1	A	10		30	장위동 270-164	장위동 12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B	10	국지 도로	270	장위동 68-63	장위동 68-1110	일반 도로		서고시240 (19.07.25)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65	장위동 205-1	장위동 207-15	일반 도로		서고시406 (14.11.27)	
기정	소로	2	A	8	국지 도로	50	장위동 272-122	장위동 272-122	일반 도로		서고시240 (19.07.25)	
기정	소로	2	B	8	국지 도로	8	장위동 156	장위동 157-9	일반 도로		서고시99 (20.03.12)	빗물펌프장 (쓰레기 적환장) 진출입로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38	장위동 205-17	장위동 270-214	일반 도로		서고시406 (14.11.27)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39	6		25	장위동 63 - 59	장위동 63 - 60	일반 도로		서고시212 (02.06.12)	석관지구단위계 획구역
기정	소로	3	501	8	국지 도로	153	장위동 270 - 463	장위동 270 - 465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소로	3	524	6~8	국지 도로	142	장위동 37 - 31	장위동 56	일반 도로		서고시231 (11.08.11)	
기정	소로	3	A	4	국지 도로	38	장위동 272 - 122	장위동 272 - 122	일반 도로		서고시240 (19.07.25)	
기정	소로	3	B	6		133	장위동 136 - 53	장위동 134 - 3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34	6		220	장위동 274	장위동 65 - 3	일반 도로		서고시3 (69.01.18)	
기정	소로	1	①	10 ~15	국지 도로	673	장위동 231 - 39	장위동 233 - 636	일반 도로		서고시302 (22.07.14)	
기정	소로	1	②	10	국지 도로	340	장위동 233 - 20	장위동 233 - 156	일반 도로		서고시302 (22.07.14)	
기정	소로	1	A	10	국지 도로	10	장위동 63 - 58	장위동 63 - 71	일반 도로		서고시356 (22.08.25)	석관지구단위 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반영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A	주차장	주차장	장위동 238 - 229일대	6,012.0	-	6,012.0	서고시240 (19.07.25)	어린이공원 A중복결정 (하부조성)
기정	①	주차장	주차장	장위동 231 - 47 일대	2,590.0	-	2,590.0	서고시302 (22.07.14)	
기정	②	주차장	주차장	장위동 233 - 631 일대	7,370.0	-	7,370.0	서고시302 (22.07.14)	공공청사 중복결정 (하부조성)

※ 시설번호(①, ②)는 임시번호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원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140	오동 근린공원	근린 공원	미아,장위,변동, 상하월곡동	1,453,858.0 (7,623.0)	-	1,453,858.0 (7,623.0)	건고시2181 (66.02.05)	
기정	411	이꽃말 공원	근린 공원	월계동 479-4일대	22,625.0	-	22,625.0	서고시111 (08.04.03)	
기정	415	상길례 공원	문화 공원	장위동 289-29일대	4,081.3	-	4,081.3	서고시111 (08.04.03)	
기정	417	석촌 공원	어린이 공원	장위동 180-1일대	8,321.0	-	8,321.0		
기정	418	간대 공원	어린이 공원	장위동 207-48일대	4,990.1	-	4,990.1	서고시111 (08.04.03)	
기정	419	장석 공원	어린이 공원	장위동 110-53일대	5,649.0	-	5,649.0	서고시111 (08.04.03)	
기정	A	-	어린이 공원	장위동 238-229일대	6,012.0	-	6,012.0	서고시240 (19.07.25)	주차장A 중복 결정

※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면적을 의미함

(2) 녹지

■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22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140-20일대	1,441.0	-	1,441.0	서고시111 (08.04.03)	
기정	25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237-88일대	1,129.7	-	1,129.7	서고시111 (08.04.03)	
기정	26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203-14일대	1,110.3	-	1,110.3	서고시111 (08.04.03)	
기정	27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153-21일대	2,623.5	-	2,623.5	서고시111 (08.04.03)	
기정	31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72-2일대	831.0	-	831.0	서고시111 (08.04.03)	
기정	32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105-9일대	720.0	-	720.0	서고시111 (08.04.03)	
기정	34	녹지	연결 녹지	월계동 51-9일대	1,182.4	-	1,182.4	서고시111 (08.04.03)	
기정	37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100-2번지일대	1,054.0	-	1,054.0	서고시111 (08.04.03)	
기정	a	녹지	경관 녹지	장위동 134-35일대	2,232.4	-	2,232.4	서고시240 (19.07.25)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b	녹지	경관 녹지	장위동 135-1일대	378.9	-	378.9	서고시240 (19.07.25)	
기정	c	녹지	경관 녹지	장위동 62-42일대	1,208.0	-	1,208.0	서고시240 (19.07.25)	
기정	d	녹지	경관 녹지	장위동 156-3일대	2,651.5	-	2,651.5	서고시240 (19.07.25)	
기정	e	녹지	경관 녹지	장위동 287일대	214.0	-	214.0	서고시240 (19.07.25)	

(3)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70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77-79	3,392.9 (103.9)	-	3,392.9 (103.9)	서고시111 (08.04.03)	
기정	72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319-1	572.4	-	572.4	서고시111 (08.04.03)	
기정	74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213-6일대	1,339.0	-	1,339.0	서고시111 (08.04.03)	
기정	80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8-18일대	750.0	-	750.0	서고시111 (08.04.03)	
기정	82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3-36일대	282.0	-	282.0	서고시111 (08.04.03)	
기정	84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3-75일대	48.0	-	48.0	서고시111 (08.04.03)	
기정	86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2-72일대	440.0	-	440.0	서고시231 (08.04.03)	
기정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233-596일 대	340.0	-	340.0	서고시302 (22.07.14)	
기정	②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233-542일 대	471.0	-	471.0	서고시302 (22.07.14)	
기정	③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233-678일 대	401.0	-	401.0	서고시302 (22.07.14)	

※ 시설번호(①, ②, ③)는 임시번호 부여

※ 향후 장위15구역 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계획 등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52	장위3동 주민센터	공공 청사	장위동 98-1일대	2,050.0	-	2,050.0	서고시111 (08.04.03)	
기정	53	소방 치안센터	공공 청사	장위동 270-172일대	986.9	-	986.9	서고시111 (08.04.03)	
기정	54	장위3동 치안서비스센터	공공 청사	장위동 270-388일대	754.8	-	754.8	서고시111 (08.04.03)	
기정	55	장위3동 커뮤니티센터	공공 청사	장위동 158-15일대	1,297.2	-	1,297.2	서고시111 (08.04.03)	
기정	59	치안센터	공공 청사	장위동 275-18일대	299.5	-	299.5	서고시290 (11.09.29)	
기정	A	장위2동 주민센터	공공 청사	장위동 68-1335일대	1,007.0	-	1,007.0	서고시240 (19.07.25)	
기정	B	공공청사	공공 청사	장위동 68-942일대	408.0	-	408.0	서고시240 (19.07.25)	
기정	①	공공청사	공공 청사	장위동 233-631일대	7,370.0	-	7,370.0	서고시302 (22.07.14)	주차장② 중복결정
기정	②	공공청사	치안 센터	장위동 233-436일대	237.0	-	327.0	서고시302 (22.07.14)	

※ 시설번호(①, ②)는 임시번호 부여

(2) 학교

■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	장위 초등학교	학교	장위동 68-8	15,784.0	-	15,784.0	시교위고시5 (87.02.17)	
기정	-	광운 초등학교	학교	장위동 128	17,458.0	-	17,458.0	시교위고시5 (87.02.17)	
		남대문 중학교	학교	장위동 124-1					

(3)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21	장위 실버복지센터	사회복지 시설	장위동 176-9	1,000.0	-	1,000.0	서고시111 (08.04.03)	

(4)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	성북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시설	장위동 135-2일대	2,779.9	-	2,779.9	서고시338 (97.10.28)	

(5)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①	문화시설	문화시설	장위동 158-63일대	-	증) 1,090.1	1,09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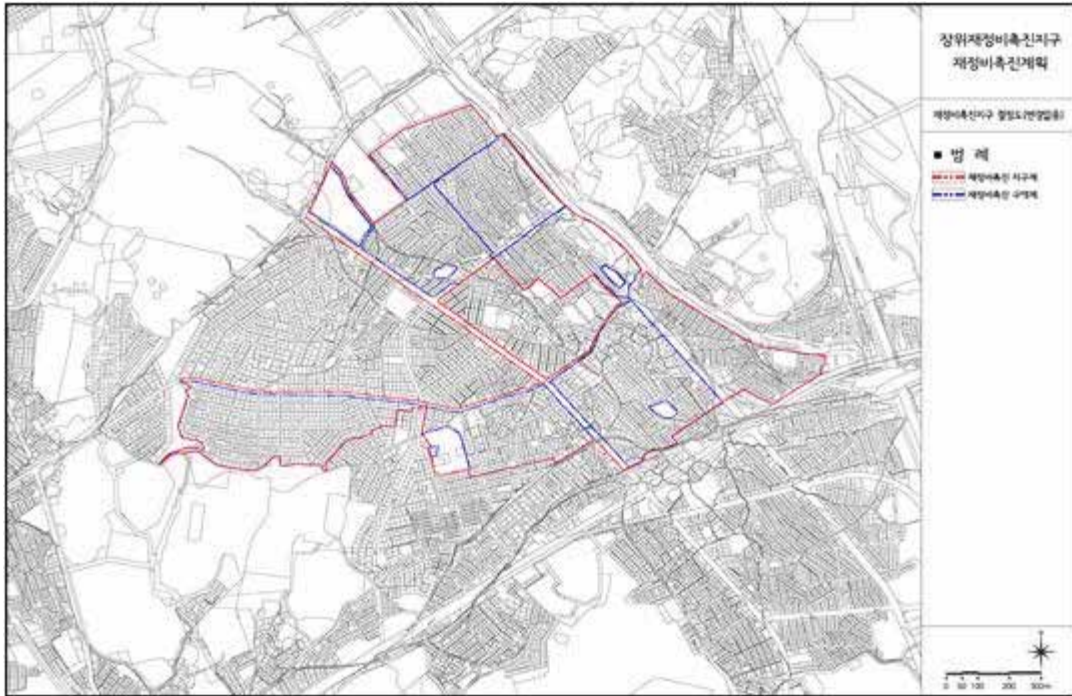
■ 문화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문화시설	문화시설	• 신설(증 1,090.1㎡)	•지역내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문화시설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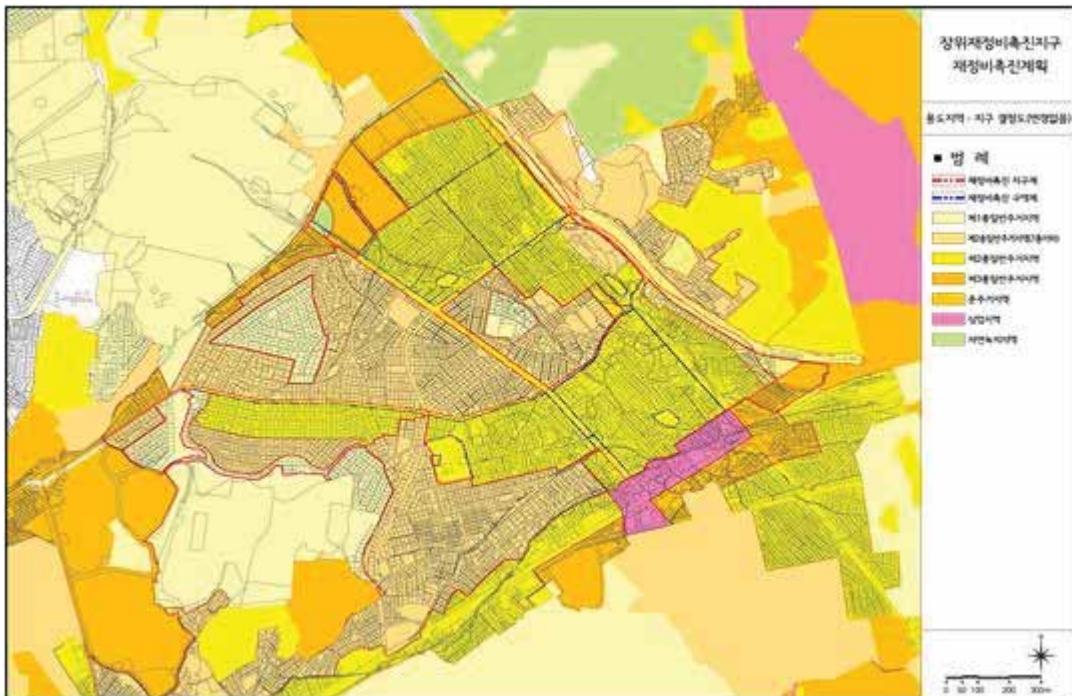
■ 건축물의 규모 결정 조서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문화시설	60% 이하	200% 이하	관련 법령에 의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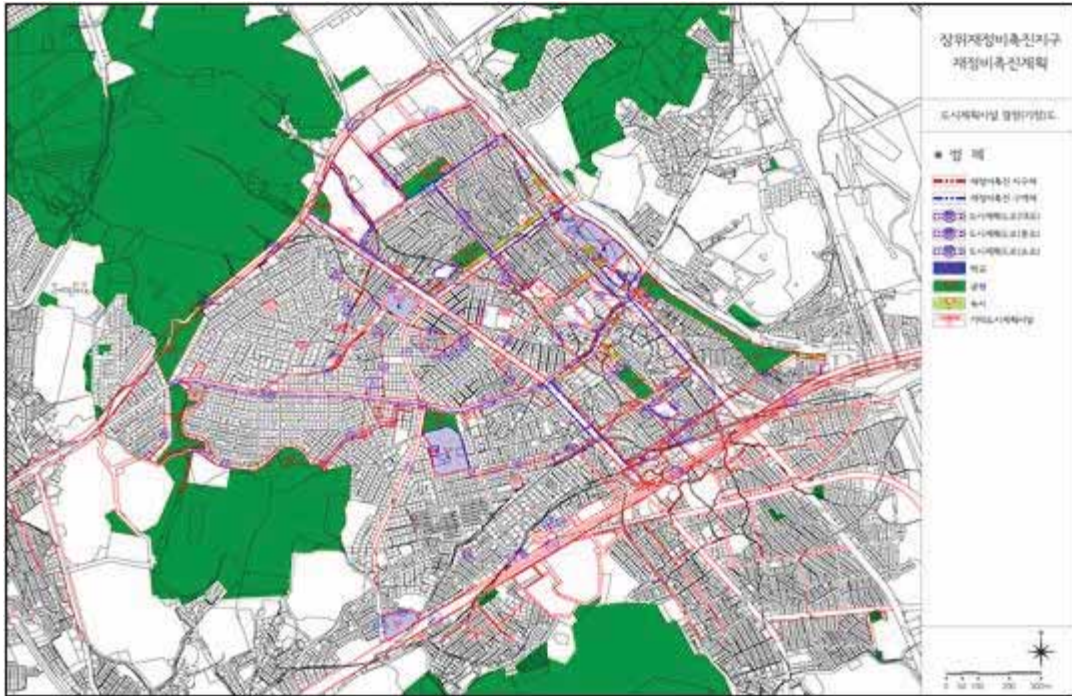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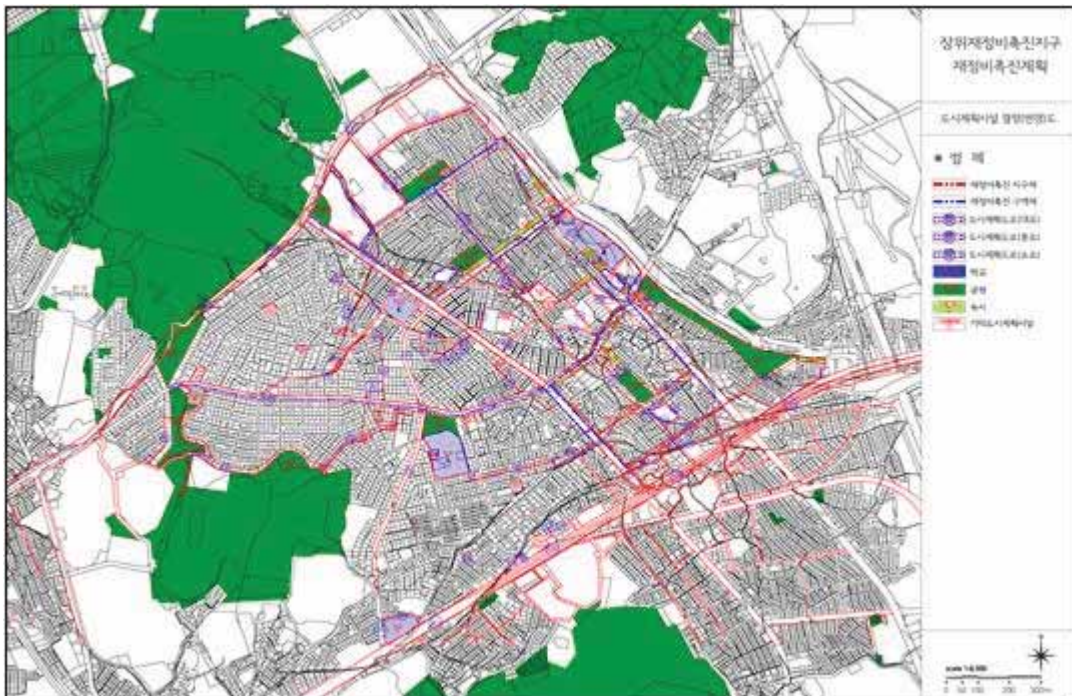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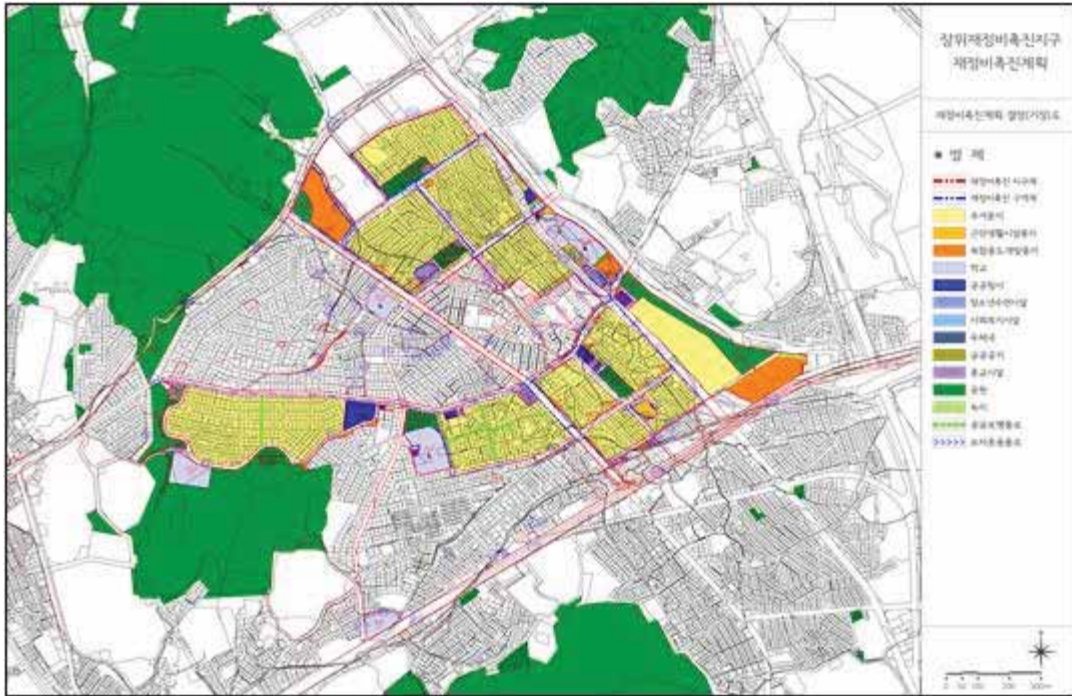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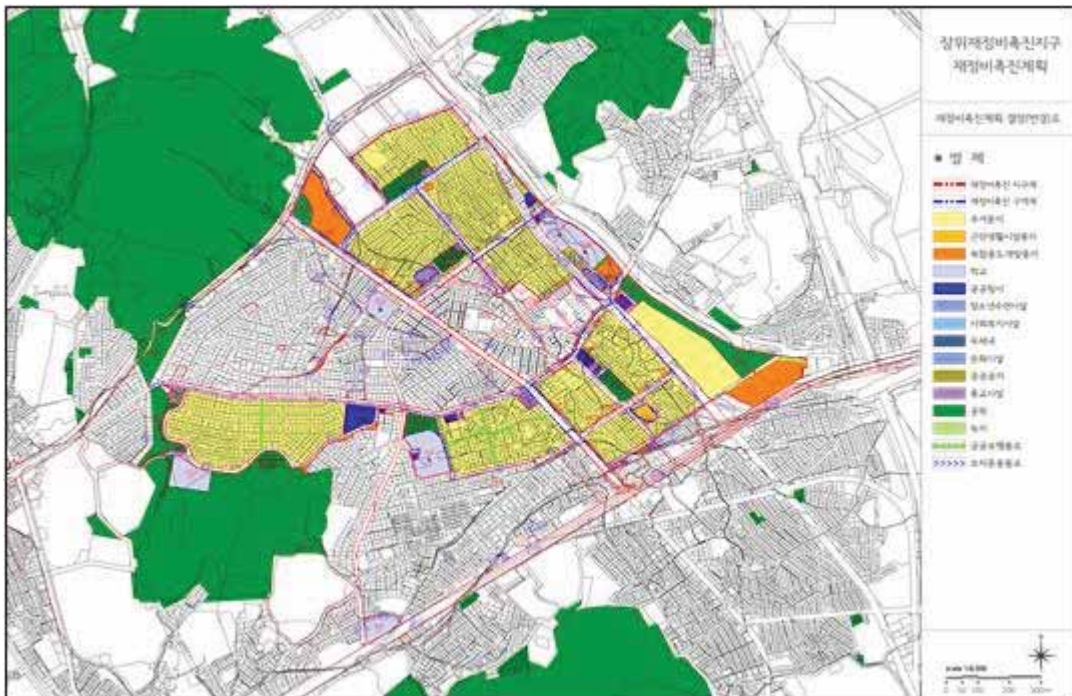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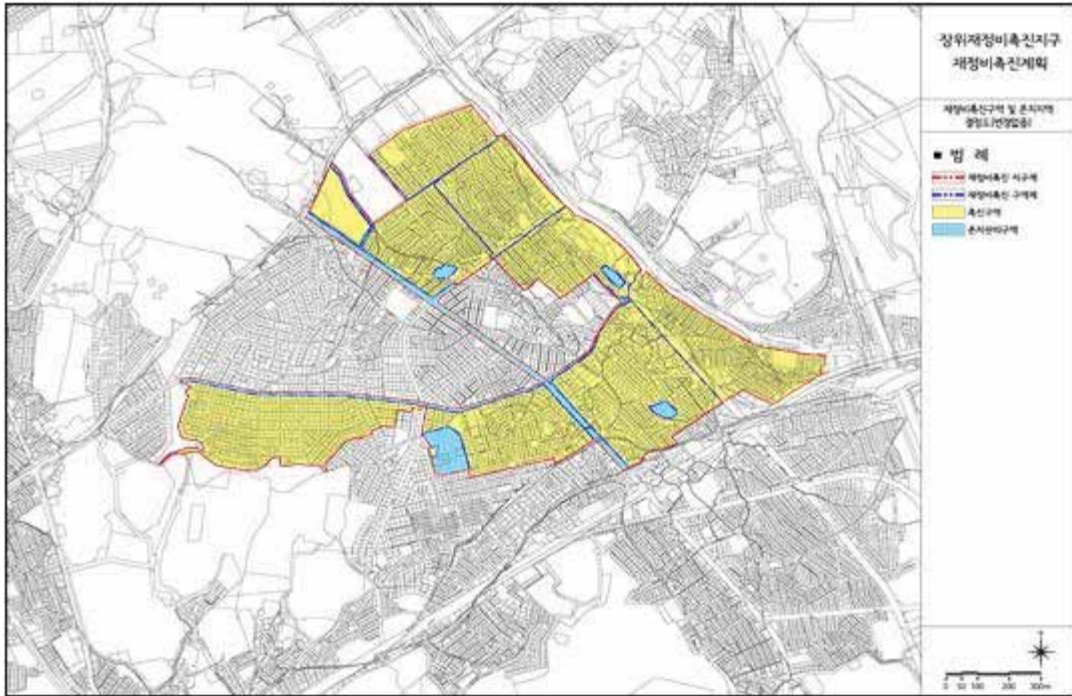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정)도]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및 준치지역 결정도(변경없음)]



- 이 하 여 백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08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108-3, -4 일대에 대하여 2023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23.6.2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 취지

-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수유1동, 송천동, 삼양동 및 삼각산동 고지대 수돗물 급수방식을 배수지 급수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을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신설)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수도공급설비 (배수시설)	강북구 미아동 산108-3, -4 일대	-	증)5,065	5,065	-	-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수도공급설비 (배수시설)	- 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 신설 - 면적: 5,065㎡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로 결정하고자 함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2133 - 8408) 및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설계과(☎3146 - 141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09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1. 대상지

가. 명 칭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금천구	시흥3동 950번지 일대	97,042.23		
			58,867.00	`23. 10. 27.	
			38,175.23	`23. 07. 20.	구역 확대 ※ 통합전문가 사전자문 `23. 07. 13. (의견: 적정)

2. 권리산정기준일 : 2023. 7. 20. (구역 확대 38,175.23㎡ 부분)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 관리계획수립시 변경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
름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
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
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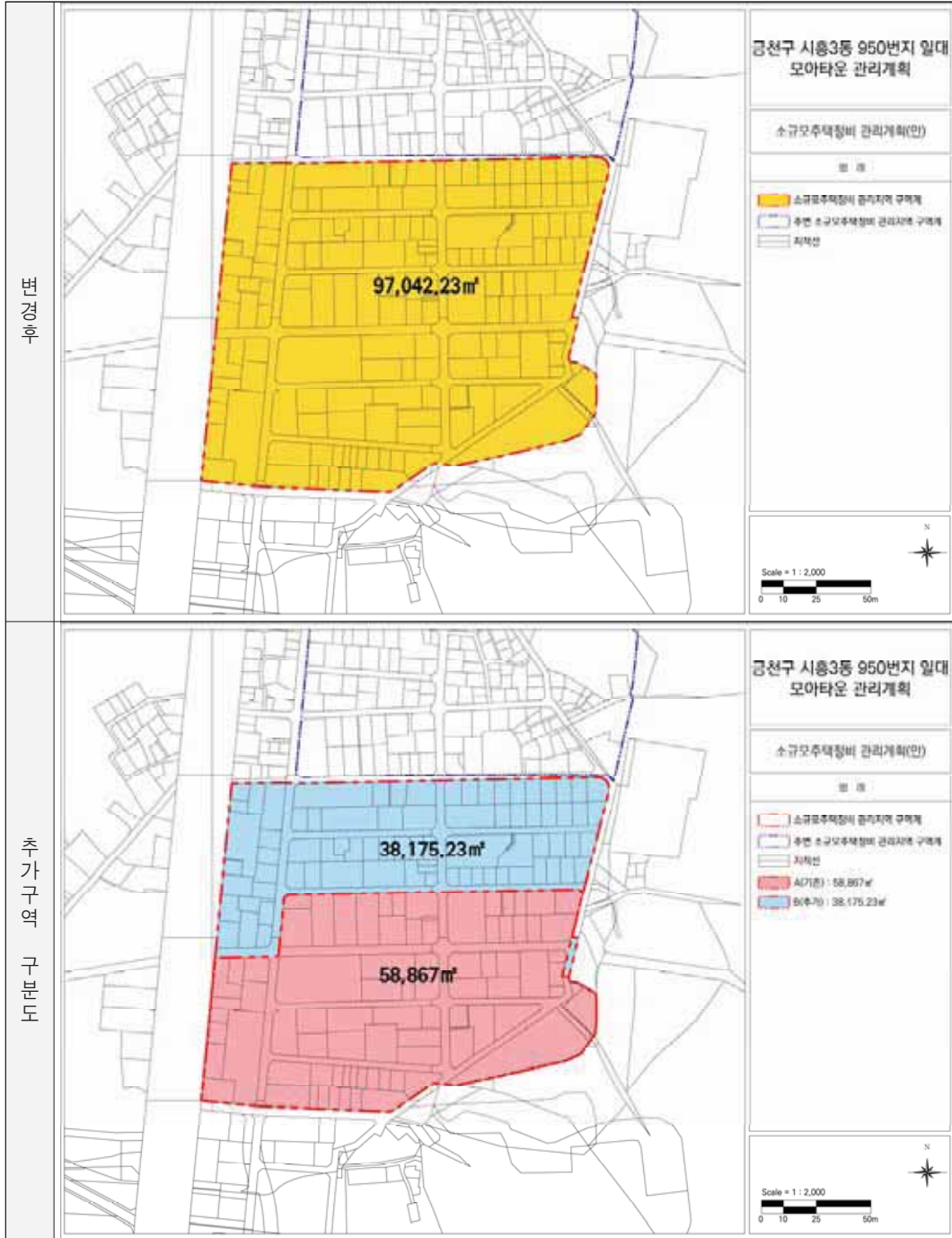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
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
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

1. 시흥3동 950번지 일대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998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법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및 폐기사유 : 본부명칭변경(한강사업본부→미래한강본부)(2023.7.1.字)

2. 직인 폐기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폐기 일자	사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총무과일상 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본부 명칭변경 (2023.7.1.)

3. 직인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총무과일상 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본부 명칭변경 (2023.7.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071호
중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3. 7. 20. ~ 2023. 8. 3.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제자	
㈜바른개발산업 (대표 배수일)	건축공사업 02-1693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5, 303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영업정지	2023.8.4.(금) 10:00 건설혁신과 청문실	주무관 김용성	법 제83조 제3호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072호
회계직인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폐기하고 동법 규칙 제 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1. 직인 폐기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2023.7.17.字)

2. 직인 폐기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폐기 일자	사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07.17.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2023.07.17.)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07.1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079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불능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박*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향로184번길 7	일시: 2023-05-13 06:08 장소: 강북강변로(서평택~성수동) 내용: 인천99아4717(트레일러5축, 길이 초과(실측값: 19m, 초과값: 2.3m), 적재물:철재)	처분일: 2023. 06. 22. 과태료: 30만원
신*호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353	일시: 2023-05-25 06:32 장소: 이문로(석계역~이문동) 내용: 경기83사3954(카고5축, 폭 초과(실측값: 2.78m, 초과값: 0.28m), 적재물:철재거푸집)	처분일: 2023. 06. 22. 과태료: 30만원
박*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52-10	일시: 2023-05-25 06:44 장소: 이문로(석계역~이문동) 내용: 인천15마6371(펌프카5축, 폭 초과(실측값: 2.78m, 초과값: 0.28m), 적재물:송수관)	처분일: 2023. 06. 22. 과태료: 30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23. 08. 31.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납부 전용(가상)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해당 행정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02 - 2210 - 1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083호
회계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폐기 및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1. 직인 폐기 및 등록 사유 : '23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2.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내용
가. 직인폐기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 인 폐기일자	비 고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코로나19대응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0.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변경
	코로나19대응지원과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코로나19대응지원과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코로나19대응지원과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나. 직인등록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 인 폐기일자	비 고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의료자원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의료자원과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2023.7.10.	조작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변경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의료자원과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086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법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및 폐기사유 : 본부명칭변경(한강사업본부→미래한강본부)(2023.7.1.字)

2. 직인 폐기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폐기일자	사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총무과분임 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본부 명칭변경 (2023.7.1.)

3. 직인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총무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총무과분임 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	본부 명칭변경 (2023.7.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09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11조(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 등록 직인(등록사유 : 고향사랑기금 설치에 따른 회계관인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계정 분임운용관인	훈민정음체 1.8cmX1.8cm		2023. 7. 10.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계정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X1.8cm		2023. 7. 1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092호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재공람공고

1. 「주택법」 제71조 및 제73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한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 재공람을 실시합니다.
2.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1. 공람명칭 :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2. 공람기간 : 2023. 7. 20.(목) ~ 2023. 8. 4.(금)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서울시청 공동주택지원과 (02-2133-7144) 및 각 구청 담당부서
4. 공람내용 :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 가.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나. 기초조사 및 수요예측
 - 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 라.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수립
 - 마. 안전한 리모델링 추진
 - 바. 리모델링 공공지원 강화
 - 사. 그 밖에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의견제출방법

공람 공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울시청 공동주택지원과와 각 구청 담당부서에 서면 또는 우편(공람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우) 04514 / 전화 : 02-2133-7144
2) 각 구청 담당부서

공급장소 및 의견제출처	전화번호	비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02 - 2133 - 7144	
종구청 도심정비과	☎02 - 3396 - 5723	
종로구청 주택관리과	☎02 - 2148 - 2617	
용산구청 주택과	☎02 - 2199 - 7366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02 - 2286 - 6576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02 - 450 - 9706	
동대문구청 주택과	☎02 - 2127 - 4664	
중랑구청 주택관리과	☎02 - 2094 - 2132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02 - 2241 - 2913	
강북구청 주택과	☎02 - 901 - 6817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	☎02 - 2091 - 3422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	☎02 - 2116 - 3920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02 - 3423 - 6063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	☎02 - 3425 - 5994	
송파구청 주택관리과	☎02 - 2147 - 2974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02 - 2155 - 7345	
은평구청 신속사업신속추진단	☎02 - 351 - 7492	
서대문구청 신통개발과	☎02 - 330 - 8997	
마포구청 주택상생과	☎02 - 3153 - 9322	
구로구청 주택과	☎02 - 860 - 2942	
동작구청 도시정비2과	☎02 - 820 - 1382	
금천구청 주택과	☎02 - 2627 - 1612	
영등포구청 주택과	☎02 - 2670 - 3661	
양천구청 재건축사업과	☎02 - 2620 - 3456	
강서구청 주택과	☎02 - 2600 - 6826	
관악구청 주택과	☎02 - 879 - 632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096호

「2023년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의 교통안전 확립과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2023년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시상인원 : 총 6명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 개인 또는 단체로 수상자 선정

○ 수상자로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시상내용 : 상패

※ 상금 및 부상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지급 불가

3. 후보자 추천 및 접수

○ 접수기간 : '23. 7. 20.(목) ~ 8. 25.(금) [37일간]

○ 추천대상(후보자 자격요건)

- 수상후보자 추천공고일('23.7.20.)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단,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지 제한 및 기간요건 적용 예외)

▶ 교통 캠페인, 교통 관련 교육·연구 등을 통해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교통 관련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

▶ 교통 분야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개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교통안전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형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추천자별 추천방법

추천자	추천방법
행정기관(자치구, 경찰서, 교육기관 등) 또는 행정기관 등록 단체	해당 기관장 명의 추천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공문 제출
시민 또는 행정기관 미등록 단체(동호회 등)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를 첨부하여 추천서 등 구비서류 우편·이메일 제출 ※ 미등록 단체는 단체명의로 추천불가

○ 제출서류 (①~④ 서식 : 붙임 참조)

- ① 추천서(별지 포함) 1부 ②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③ 공적내용서 1부 ④ 시민상 추천에 대한 동의서(별지 포함) 1부

⑤ 서울시 3년 이상 거주 또는 사업장·직장 증빙자료 각 1부

- 거주요건 : 주민등록초본(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
- 사업장·직장요건 :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등록증 등
 (단, 개인 후보자가 사업장·직장요건으로 증빙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필요)

⑥ 기타 공적 증빙자료

- ※ 추천자가 자치구인 경우 추가서류 - 공적심사의결서 1부 (별도양식은 없으며 추천사실에 대한 기관 내부 결재 공문을 뜻함)

○ 서류 제출 방법

- 공 문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 우 편 :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교통정책과
- 이메일 : hdew0912@seoul.go.kr

- ※ '23.8.25.(금) 18:00 공문발송우체국 소인·이메일 접수분까지 유효
 (접수기간 연장 시, 연장된 기한의 마지막 날 18:00까지, 연장필요 시 재공고 예정)

4. 수상자 발표 : '23. 10. 30. (월) 예정

5. 시 상 식 : '23. 11. 06. (월) 예정

- ※ 변경사유 발생 시 일정 조정 가능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작성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수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02-2133-22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제외대상 ※2023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및 시민상 조례 준용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을 수상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같은 해에 서울특별시 시민상 다른 분야의 상을 이미 수상하였거나 수상자로 확정된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일정 기준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붙임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및 세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및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서식 1 (추천자 작성)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 후보자 추천서

후보자명 (단체명)	한 글		성 별	단체의 경우 기재생략	사 전
	한 자	단체의 경우 기재생략			6개월이내 촬영한 천연색 사진
주 소 (소재지)					3.5cm×4.5cm
생년월일 (단체인 경우는 등록기관 및 등록 번호 기재)				전화번호	자 택 : 핸드폰 :
근 무 처	(전화)			직 위	

위 사람(단체)을 2023년도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23년 월 일

추 천 자 : 단체 및 기관명/ 000외 0인 (인)

대 표 자 : 0 0 0 (인)

주소(소재지) : _____

전화번호 _____

서울특별시 장 귀하

※ 제출서류 : ①추천서 1부(별지포함), ②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③공적내용서 1부, ④시민상 추천에 대한 동의서(별지포함) 1부, ⑤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또는 거주자직장 요건 증빙자료), ⑥기타 공적 증빙자료 1부

※ 추천자가 자치구인 경우 추가서류 : 공적심사의결서 1부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시 편지 가능한 전자파일 추가제출 필수

< 서식 1 별지(추천자 작성) > ※ 추천자가 시민 또는 미등록단체일 경우에만 작성

【 공동추천자 서명부 】

○ 10인 이상의 연서(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만 19세 이상) 원본 제출, 전자접수 시 스캔본 대체가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서식 2-1 (추천자 작성) >

공 적 조 서

				관리번호	기재생략
후보자 구 분	개인	성 명		생년월일	
	단체	단체명		사업자번호	
주 소	[서울시 거주기간 : 년]				
전화번호				직 연 (직장명/직위)	
☐ 공적요지 (대표적인 공적위주 작성 - 50자 내외)					
위와 같이 공적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 직 위 ,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추천자 기관(단체)명, 대표성명 (인) ※ 시민추천일 경우, 000의 0인, 추천대표자 (인)					

※ 행정기관 또는 등록단체 추천의 경우 : 작성자 - 소속부서장 / 추천자 - 기관장

※ 개인 또는 미등록단체 추천의 경우 : ex) 작성자 - 홍길동 / 추천자 - 홍길동 외 10인

< 서식 2-2 (추천자 작성) >

공 적 요 약 서

성 명	(한글)	(한자)	성별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기 간	공적내용 요약		비 고 (증빙자료 별첨)	
	○			

※ 본 공적요약서는 공적심사위원회에 그대로 제출될 예정이므로 1쪽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객관적 증빙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기관 발급 증명서 등 공식적인 증명 필요)

< 서식 3 (추천자 작성) >

공 적 내 용 서

주요 경력		수상 내역	
연월일	내 용	연월일	내 용
	단체의 경우 활동실적 작성		

공 적 내 용 (최대 3page 이내로 작성)

- 활동사진은 공적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사진 최대 6매 이내)
- 동영상, 언론보도자료, 잡지, 책자 등은 별도 제출 가능

공 적 내 용

< 서식 4 (후보자 작성) >

서울특별시 시민상 추천에 대한 동의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 수상후보자용)

□ 수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단체등록번호 등)	주 소	서울시 거주기간 (2023.7.20.까지)	개인 휴대전화 (단체 대표 휴대전화번호)

위 본인(단체)은 2023년 서울특별시 시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본인(단체)은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의 수상을 위한 거주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 거주 요건 : 수상후보자 추천공고일(2023. 7. 20.)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2. 본인(단체)은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의 제한 사유(이중시상의 금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수상 결정의 취소 및 수상 철회 등 수상과 관련한 일체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조례 제10조(이중시상의 금지원칙)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을 수상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같은 해에 서울특별시 시민상 다른 분야의 상을 이미 수상하였거나 수상자로 확정된 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본인(단체)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 결정의 취소 및 수상 철회 등 수상과 관련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 추천 제한 대상 : 불임 참고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을 수상한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 . .

성명(단체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 수상 및 기록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수상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 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보도자료, 각종 간행물, 인터넷 게시물 게재 **※공개정보 : 성명, 소속, 사진, 공적 내용, 수상일자**
- ㉢ 상패 수여 및 시민상수여확인서 발급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수상 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수상 추천서 5년

3. 개인정보의 수집 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직장, 직장주소, 거주기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공적사실, 인물(단체)사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의 추천 제한 대상에 준하여 적용함

서울특별시 시민상 추천 제한 대상

※ 해당 제한 사유의 발생 기준일 : 기관 추천일 기준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처분 관련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1회 벌금액 기준)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지침」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등으로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과 그 임원
 -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세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식 4 별지 (후보자 작성) >

서울특별시 시민상 수상후보자 자가 체크리스트

▶ 서울특별시 시민상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한사유(범죄경력 등)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후보자 추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천서 제출 전 자체 사전검토 자료로 활용

연번	항목	점검 사항	해당여부 (O / X)	비고
1	징계 및 형사처벌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	수사 또는 형사처분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또는 단체)입니까?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입니까?		
4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입니까?		
5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 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까?		
6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1회 벌금액 기준)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입니까?		
7	표창취소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지침」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적 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입니까?		
8	관련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속합니까?		
9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에 속합니까?		
10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에 속합니까?		
11		추천일 당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에 속합니까?		
12	사회적 물의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3. . . .

수상후보자 성명(단체명)

(인)

< 서식 5 (후보자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 시상을 위한 주소변동 이력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J)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09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을 위반한 업체에게 동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과태료 고지서 교부(송달)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납부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동법 제55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업체명	대표자	대상 소재지	위반사항	비고
아이에이치코퍼레이션	나인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1306호(가산동, 더루벤스밸리)	임대신고 없이 제3자에 임대사업 영위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23.7.20. ~ 2023.8.3.(15일간)

※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기간 : 2023.8.4. ~ 2023.8.31.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별첨 서식), 의견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전략산업기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7층 전략산업기반과

(☎02-2133-8531)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전자메일(mylyu81@seoul.go.kr)

6. 과태료 납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납부기한 : 2023.8.31.

나. 납부방법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기반과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

7. 공고 확인 및 안내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기반과(☎02 - 2133 - 853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103호
처분사전통지서(비영리민간단체 말소)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의2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 전 처분사전통지서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2.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4. 대상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6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부서
1	산소마을	영등포구 대림동 688번지 송림빌딩 3층	박채영	'10.3.24.	아동담당관
2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종로구 이화동 91-6 한국빈민운동회관	변은희	'03.2.5.	아동담당관
3	한국아동청소년권리 안전협회	동작구 사당동 203-11 은진빌딩 3층	이재연	'02.3.30.	아동담당관
4	한국아동안전관리교육협회	마포구 도화동 36 고려아카데미텔 2-1104호	김일영	'01.3.21.	아동담당관
5	인터케어	종로구 창신3동 23-344 종로사회복지관 3층 진료실내	백종만	'00.8.16.	아동담당관
6	한백아카데미	은평구 대조동 187-46	박숙자	'00.5.17.	아동담당관

5. 공고기간 : 2023. 7. 20.(목) ~ 2023. 8. 10.(목)
6. 의견제출기간: 2023. 7. 20.(목) ~ 2023. 8. 10.(목)
7.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아동담당관(☎02-2133-51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시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서울특별시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서울특별시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종질지(80g/m²)]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105호
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을 미달한 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사전통지서가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3. 7. 20. ~ 2023. 8. 3.

2. 처분대상 및 내용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04-3-0350	(유)청해수산 (황*태)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3개월 무실적 (2023.3월~2023.5월)	중도매업 허가취소

3. 처분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 제6호
- 동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1호
-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4. 이의제기 안내

-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유통담당관 ☎(02)2133-4466으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110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과태료 수시분 부과처분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3. 7. 20. ~ 2023. 8. 2. (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철도안전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증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예정입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2023. 8. 3. ~ 2023. 8. 16.
 -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14일
 - 이의제기 기한: 2023. 8. 3. ~ 2023. 10. 5.(60일간)
 - ※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5. 이의제기 안내
 -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이의제기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F A X: 02 - 2133 - 1076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 - 2133 - 4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2. 이의신청서 1부. 끝.

철도안전법위반과태료

부과일자 2023.7.1./납기 2023.8.31.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위반일자
1	1078832304907	기타	5503**-*****	이*숙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이동상인	150,000	2023-04-11 10:52
2	1078832304908	기타	5503**-*****	이*숙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이동상인	150,000	2023-04-13 10:51
3	1078832304909	기타	5503**-*****	이*숙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이동상인	150,000	2023-04-18 10:46
4	1078832304919	기타	5602**-*****	최*숙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7길	이동상인	150,000	2023-04-10 14:33
5	1078832304920	기타	5602**-*****	최*숙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7길	이동상인	150,000	2023-04-18 10:44

<서식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위반일시		위반장소	
	부과관청		부과일자	
	부과번호		부과금액	
이의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신청인 (인) 서울시장 귀하				

※ 문의전화 : 02 - 2133 - 4337 FAX : 02 - 2133 - 1076

☎ 팩스(FAX)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111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징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독촉 및 압류 예고장을 발송하였고,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징수 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4. 체납자 제재 안내
 - 가. 당사자는 본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55조에 규정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나. 과태료 체납액이 500만원(감치 1,000만원)이상이면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문의 전화 : 02-2290-6438~9, 6179, 6467 (서울시설공단)
5.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 가능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2부.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	남산1호터널	2023-01-16 08:58:47	30너9105	10,300	백*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	남산3호터널	2023-01-16 09:17:15	18노5690	10,300	김*옥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101번길
3	남산1호터널	2023-01-16 09:26:52	155어2426	10,300	하*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4	남산3호터널	2023-01-16 10:12:53	13저4422	10,300	김*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5	남산1호터널	2023-01-16 10:22:21	63도7538	10,300	J*N Y*****E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878번길
6	남산1호터널	2023-01-16 10:45:48	150두9679	10,300	이*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22번길
7	남산1호터널	2023-01-16 11:04:07	60다9666	5,150	강*영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8	남산3호터널	2023-01-16 12:32:41	114저1248	10,300	윤*란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9	남산1호터널	2023-01-16 13:27:56	115호4594	10,300	에***가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10	남산1호터널	2023-01-16 13:49:00	157루1004	10,300	성*혁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9길
11	남산3호터널	2023-01-16 13:59:32	115호4594	10,300	에***가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12	남산1호터널	2023-01-16 14:07:24	35더2335	10,300	H***G C**L G**E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벚꽃길
13	남산3호터널	2023-01-16 14:39:31	49로0993	10,300	주식회사 가****스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4	남산1호터널	2023-01-16 15:20:07	09주2364	10,300	김*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2가길
15	남산1호터널	2023-01-16 15:47:38	40구1088	10,300	정*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2길
16	남산1호터널	2023-01-16 15:58:55	57수7631	10,300	K***V U*****N*****H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대로116번길
17	남산3호터널	2023-01-16 16:22:18	317소4944	10,300	박*선	경기도 의왕시 행복마을3로
18	남산3호터널	2023-01-16 17:11:09	57수7631	10,300	K***V U*****N*****H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대로116번길
19	남산1호터널	2023-01-16 17:23:35	285로7513	10,300	장*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로5길
20	남산1호터널	2023-01-16 18:42:10	02구8199	10,300	최*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암5길
21	남산1호터널	2023-01-16 18:55:28	30너9105	10,300	백*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	남산1호터널	2023-01-16 20:09:52	124고4899	10,300	이*비	경기도 안성시 대학로
23	남산1호터널	2023-01-16 20:31:11	63머6112	10,300	(주) 지*****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125번길
24	남산1호터널	2023-01-17 07:49:47	39오9159	10,300	주식회사 제*****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5	남산1호터널	2023-01-17 08:54:35	33주7704	10,300	양*석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
26	남산3호터널	2023-01-17 12:31:47	16가0517	10,300	성*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로
27	남산3호터널	2023-01-17 12:37:51	28나5859	10,300	권*훈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1127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28	남산1호터널	2023-01-17 12:51:14	36다3360	10,300	주식회사 블**이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29	남산1호터널	2023-01-17 14:21:37	149수4071	10,300	임*옥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30	남산3호터널	2023-01-17 14:22:58	29머0303	10,300	주식회사 비**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현로
31	남산1호터널	2023-01-17 14:46:04	48머4039	10,300	김*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140번길
32	남산1호터널	2023-01-17 15:06:40	100우5412	10,300	큐*텔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8길
33	남산3호터널	2023-01-17 15:07:24	116더6543	10,300	김*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34	남산3호터널	2023-01-17 16:11:38	65오6071	10,300	이*권	경기도 과천시 문원청계4길
35	남산3호터널	2023-01-17 16:28:27	서울53도3791	10,300	(주)로**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4길
36	남산1호터널	2023-01-17 16:28:37	11서1466	10,300	이*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17번길
37	남산1호터널	2023-01-17 16:53:46	184수7299	10,300	황*현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충무로
38	남산3호터널	2023-01-17 16:58:27	45도8956	10,300	배*숙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무운로
39	남산3호터널	2023-01-17 16:58:46	316마4989	10,300	김*균	경기도 시흥시 미산로100번길
40	남산1호터널	2023-01-17 17:17:20	48주4466	10,300	최*미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송길
41	남산1호터널	2023-01-17 17:24:27	162서2604	10,300	임*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공설시장1길
42	남산1호터널	2023-01-17 17:34:28	285로7513	10,300	장*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로5길
43	남산1호터널	2023-01-17 17:34:30	57거5445	10,300	전*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44	남산1호터널	2023-01-17 17:44:51	48주4466	10,300	최*미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송길
45	남산1호터널	2023-01-17 18:56:26	101노2693	10,300	주식회사 굿****랑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안내보은로
46	남산1호터널	2023-01-17 19:02:22	34호6192	10,300	주식회사 어****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47	남산3호터널	2023-01-17 19:13:21	394조1060	10,300	최*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23길
48	남산3호터널	2023-01-17 19:21:03	37모1777	10,300	강*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일로151길
49	남산3호터널	2023-01-17 19:26:26	62너7746	10,300	이*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50	남산1호터널	2023-01-17 19:26:41	57거5445	10,300	전*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51	남산1호터널	2023-01-17 19:49:17	11로2905	10,300	김*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
52	남산3호터널	2023-01-17 20:24:29	16부8407	10,300	김*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53	남산3호터널	2023-01-17 20:41:05	40거6682	10,300	이*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7길
54	남산1호터널	2023-01-18 07:07:11	64루9644	10,300	우*경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55	남산1호터널	2023-01-18 07:12:57	35보4726	5,150	박*열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56	남산1호터널	2023-01-18 08:17:26	244서2502	10,300	류*숙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136번길
57	남산1호터널	2023-01-18 08:40:04	180마1092	10,300	김*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58	남산1호터널	2023-01-18 10:21:54	48거5834	10,300	방*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59	남산1호터널	2023-01-18 10:58:08	53마4916	10,300	김*현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60	남산1호터널	2023-01-18 11:23:32	48거5834	10,300	방*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61	남산1호터널	2023-01-18 11:45:21	157오2216	10,300	이*원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62	남산3호터널	2023-01-18 11:58:35	189루8466	10,300	김*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50길
63	남산3호터널	2023-01-18 12:18:31	101하7725	10,300	주식회사 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64	남산3호터널	2023-01-18 12:52:14	53마4916	10,300	김*현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65	남산1호터널	2023-01-18 13:59:53	194하3731	10,300	오*****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6	남산1호터널	2023-01-18 15:06:37	194하3124	10,300	오*****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7	남산3호터널	2023-01-18 15:13:03	390보6038	10,300	이*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12길
68	남산1호터널	2023-01-18 16:09:57	324루9092	10,300	심*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7길
69	남산3호터널	2023-01-18 16:13:05	62부6502	5,150	주식회사 금*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0	남산1호터널	2023-01-18 16:27:53	48거8911	10,300	최*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희로4길
71	남산1호터널	2023-01-18 16:54:27	26누0299	10,300	민*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35길
72	남산1호터널	2023-01-18 17:33:52	10조1143	10,300	이*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73	남산1호터널	2023-01-18 17:58:11	04모3261	10,300	김*학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74	남산1호터널	2023-01-18 18:19:22	68마8345	10,300	김*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282번길
75	남산3호터널	2023-01-18 18:41:50	54거4052	10,300	장*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4길
76	남산1호터널	2023-01-18 19:03:59	226소9791	5,150	이*창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8길
77	남산1호터널	2023-01-18 19:17:30	51주6233	10,300	최*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1길
78	남산1호터널	2023-01-18 19:29:08	226소9791	5,150	이*창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8길
79	남산1호터널	2023-01-18 19:37:52	154호1267	10,300	(주)3****가	경기도 평택시 추담로
80	남산1호터널	2023-01-18 19:40:31	09도0138	10,300	씩*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81	남산1호터널	2023-01-18 19:48:50	58버8358	10,300	김*선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42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82	남산1호터널	2023-01-18 20:03:50	18나6499	10,300	김*순	전라북도 완주군 봉등읍 둔산1로
83	남산3호터널	2023-01-18 20:28:30	63구7166	10,300	주식회사 커**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84	남산1호터널	2023-01-18 20:43:33	61루1583	10,300	(주)명****씨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충현로
85	남산1호터널	2023-01-19 07:00:56	66라5994	10,300	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로
86	남산1호터널	2023-01-19 07:19:19	172부8409	10,300	최*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87	남산1호터널	2023-01-19 07:24:39	60수6621	10,300	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88	남산1호터널	2023-01-19 07:35:22	45거4978	10,300	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2길
89	남산3호터널	2023-01-19 11:25:48	243부1857	10,300	정*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14길
90	남산3호터널	2023-01-19 12:06:45	05수3609	10,300	고*범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91	남산3호터널	2023-01-19 12:10:00	258더5628	10,300	이*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2	남산1호터널	2023-01-19 13:14:57	48주4466	10,300	최*미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송길
93	남산1호터널	2023-01-19 13:27:28	48주4466	10,300	최*미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송길
94	남산1호터널	2023-01-19 14:13:17	153어2449	10,300	주식회사 인**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101번길
95	남산3호터널	2023-01-19 15:43:09	153어2449	10,300	주식회사 인**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101번길
96	남산3호터널	2023-01-19 15:45:34	24우1648	10,300	메***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97	남산1호터널	2023-01-19 15:46:12	11나2084	10,300	주식회사 한*****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9길
98	남산3호터널	2023-01-19 15:49:09	53리0777	10,300	(주)인****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9길
99	남산3호터널	2023-01-19 16:00:40	05소4450	10,300	정*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낙은로97번길
100	남산1호터널	2023-01-19 16:50:18	36저9128	10,300	(주)더*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1	남산1호터널	2023-01-19 17:13:30	68루0668	10,300	주식회사 거****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102	남산1호터널	2023-01-19 17:42:08	260보1110	10,300	이*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03	남산3호터널	2023-01-19 20:03:39	09도0138	10,300	썩*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04	남산1호터널	2023-01-19 20:46:37	40소0545	10,300	김*닉	경상남도 양산시 고향의봄2길
105	남산1호터널	2023-01-20 07:15:35	11구9790	10,300	이*한	경기도 광주시 대명대길
106	남산3호터널	2023-01-20 07:18:08	282오3749	10,300	안*종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198번길
107	남산1호터널	2023-01-20 09:26:17	39거2956	10,300	김*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108	남산1호터널	2023-01-20 09:44:20	49서0512	10,300	주식회사 켄**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09	남산1호터널	2023-01-20 10:43:09	351무1316	10,300	이*래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74길
110	남산1호터널	2023-01-20 11:00:21	49러9542	10,300	김*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11	남산3호터널	2023-01-20 11:23:46	272오2144	10,300	조*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4길
112	남산1호터널	2023-01-20 11:46:53	16고6862	10,300	유한회사 한***통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22번길
113	남산1호터널	2023-01-20 11:53:02	28누7779	10,300	박*순	충청북도 제천시 내제로35길
114	남산1호터널	2023-01-20 11:57:11	14두3806	10,300	B****A T*****E A****A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2길
115	남산1호터널	2023-01-20 12:01:41	223무7042	10,300	홍*현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116	남산1호터널	2023-01-20 14:08:45	214가7547	10,300	남*현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747번길
117	남산1호터널	2023-01-20 14:41:08	211누5289	10,300	김*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18	남산3호터널	2023-01-20 14:49:33	55수1603	10,300	김*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87길
119	남산3호터널	2023-01-20 15:00:25	391부5992	10,300	V****V N**L R*****H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93번길
120	남산1호터널	2023-01-20 15:51:49	189루8466	10,300	김*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50길
121	남산1호터널	2023-01-20 16:07:23	23무7644	10,300	신*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당목가일길
122	남산1호터널	2023-01-20 16:23:45	357너2773	10,300	김*랑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16가길
123	남산3호터널	2023-01-20 16:38:41	55거7798	5,150	김*우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124	남산1호터널	2023-01-20 16:42:28	60우1562	10,300	장*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25	남산1호터널	2023-01-20 17:10:00	15수1789	10,300	시*****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27길
126	남산1호터널	2023-01-20 17:15:29	64머1570	10,300	박*연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노전길
127	남산1호터널	2023-01-20 17:19:34	14가5853	10,300	(주)랜****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43길
128	남산1호터널	2023-01-20 17:23:43	357너2773	10,300	김*랑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16가길
129	남산1호터널	2023-01-20 17:49:09	30노3737	10,300	최*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3길
130	남산1호터널	2023-01-20 18:54:13	60버9701	10,300	하*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9길
131	남산3호터널	2023-01-20 19:09:12	66로0895	10,300	노*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32	남산1호터널	2023-01-20 19:16:12	189루8466	10,300	김*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50길
133	남산1호터널	2023-01-20 19:17:09	167머2442	10,300	박*현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134	남산3호터널	2023-01-20 19:19:17	170서4298	5,150	도*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35	남산3호터널	2023-01-20 20:11:46	133하1984	10,300	주식회사 퍼****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담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36	남산1호터널	2023-01-25 07:03:30	01가3802	10,300	홍*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2길
137	남산1호터널	2023-01-25 07:21:59	68수6136	5,150	배*혁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5길
138	남산1호터널	2023-01-25 09:06:33	144부9363	10,300	이*주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
139	남산1호터널	2023-01-25 14:01:18	49머2634	10,300	청*****인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140	남산1호터널	2023-01-25 16:31:17	371조1066	5,150	N***I N***E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141	남산3호터널	2023-01-25 16:49:52	39여2005	10,300	주식회사 나*****씨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2	남산1호터널	2023-01-25 17:13:45	49머2634	10,300	청*****인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143	남산1호터널	2023-01-25 18:07:51	224거8019	10,300	임*현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로61번길
144	남산1호터널	2023-01-25 18:14:35	165구3832	10,300	박*분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67번길
145	남산1호터널	2023-01-25 19:42:01	46머5920	10,300	박*준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146	남산3호터널	2023-01-25 19:45:06	280거4868	10,300	윤*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31길
147	남산1호터널	2023-01-25 20:22:49	224거8019	10,300	임*현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로61번길
148	남산1호터널	2023-01-25 20:39:46	224거8019	10,300	임*현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로61번길
149	남산1호터널	2023-01-26 08:33:10	140버8798	10,300	한*숙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30길
150	남산1호터널	2023-01-26 09:32:15	17보0945	10,300	김*경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51	남산1호터널	2023-01-26 09:47:43	305더5695	10,300	김*근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우외로1길
152	남산1호터널	2023-01-26 10:47:25	314수3118	10,300	주식회사 유**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762번길
153	남산3호터널	2023-01-26 11:42:00	184노2071	10,300	곽*신	강원도 춘천시 마장길
154	남산1호터널	2023-01-26 12:11:58	199더9718	10,300	주식회사 삼***지	강원도 춘천시 동면 후만로
155	남산1호터널	2023-01-26 12:28:46	48다2477	10,300	이*훈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65길
156	남산1호터널	2023-01-26 12:47:47	34버5680	10,300	정*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157	남산1호터널	2023-01-26 13:26:45	142소7338	10,300	주식회사 예*****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58	남산1호터널	2023-01-26 14:53:02	370보8480	10,300	주식회사 세**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터2길
159	남산1호터널	2023-01-26 14:59:11	38누1195	10,300	허*애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
160	남산1호터널	2023-01-26 15:17:08	05마3588	10,300	주식회사 콤****씨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161	남산3호터널	2023-01-26 15:34:07	11너6185	10,300	박*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평안길
162	남산1호터널	2023-01-26 17:27:07	45조0302	10,300	이*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63	남산1호터널	2023-01-26 17:30:11	29로4041	10,300	오*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17길
164	남산3호터널	2023-01-26 18:25:09	35무5311	10,300	김*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11길
165	남산3호터널	2023-01-26 18:49:22	35무5311	10,300	김*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11길
166	남산3호터널	2023-01-26 18:53:03	18더4077	5,150	임*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8길
167	남산3호터널	2023-01-26 19:06:29	16여9176	10,300	장*리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1615번길
168	남산3호터널	2023-01-26 20:11:03	56무3140	10,300	윤*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14길
169	남산1호터널	2023-01-26 20:27:38	20로1276	10,300	재단법인 한*****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70	남산3호터널	2023-01-26 20:49:47	35무5311	10,300	김*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11길
171	남산1호터널	2023-01-27 08:36:46	42노9897	10,300	이*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8길
172	남산1호터널	2023-01-27 09:57:25	17보0945	10,300	김*경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73	남산1호터널	2023-01-27 10:25:37	69수7498	10,300	김*연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159번길
174	남산3호터널	2023-01-27 11:15:09	335너1100	10,300	전*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4길
175	남산1호터널	2023-01-27 11:26:56	15부0346	10,300	최*석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176	남산1호터널	2023-01-27 12:43:01	64다8581	10,300	최*아	경기도 화성시 동탄숲속로
177	남산3호터널	2023-01-27 14:19:47	18마6799	10,300	최*훈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
178	남산1호터널	2023-01-27 14:24:25	36다3360	10,300	주식회사 불**이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79	남산1호터널	2023-01-27 14:38:25	68소0744	5,150	(주)창****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9길
180	남산1호터널	2023-01-27 15:31:59	33라0276	10,300	윤*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직동2길
181	남산1호터널	2023-01-27 15:44:59	25수4813	10,300	김*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37번길
182	남산1호터널	2023-01-27 16:12:10	244주1789	10,300	이*경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남로
183	남산3호터널	2023-01-27 18:13:11	146부4539	10,300	김*숙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도로55번길
184	남산1호터널	2023-01-27 18:26:12	45저4560	10,300	강*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185	남산1호터널	2023-01-27 19:13:28	57거5445	10,300	전*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86	남산1호터널	2023-01-27 19:15:37	48다0147	10,300	(주)팀***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187	남산1호터널	2023-01-27 20:03:47	17보0945	10,300	김*경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88	남산3호터널	2023-01-27 20:18:44	13구5118	10,300	곽*춘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189	남산1호터널	2023-01-27 20:28:27	25거4048	10,300	허*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90	남산1호터널	2023-01-27 20:42:35	60다8300	10,300	(주)청****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91	남산1호터널	2023-01-30 08:43:56	56러4356	10,300	(주)레*****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92	남산1호터널	2023-01-30 08:50:47	142모7230	10,300	서*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2길
193	남산1호터널	2023-01-30 09:44:31	17보0945	10,300	김*경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94	남산3호터널	2023-01-30 18:35:51	67루6776	10,30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힐***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95	남산3호터널	2023-01-30 18:59:13	03너4973	10,300	박*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108번길
196	남산3호터널	2023-01-30 19:26:49	54거4052	10,300	장*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4길
197	남산1호터널	2023-01-30 20:10:51	55모9085	10,300	이****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98	남산3호터널	2023-01-31 08:46:20	16머0773	10,300	배*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99	남산3호터널	2023-01-31 09:29:55	226소9791	5,150	이*창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8길
200	남산3호터널	2023-01-31 10:41:00	105루3314	10,300	유*선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01	남산3호터널	2023-01-31 11:52:02	19구7340	10,300	(재)한*****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202	남산1호터널	2023-01-31 13:41:26	149모8959	10,300	한*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203	남산3호터널	2023-01-31 14:36:41	17가0669	10,300	심*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204	남산3호터널	2023-01-31 16:22:27	56조0306	10,300	주식회사 이*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별말로
205	남산3호터널	2023-01-31 17:17:22	23오1058	10,300	김*찬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2길
206	남산1호터널	2023-01-31 20:05:29	163무1377	10,300	Z*U R*****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41길
207	남산1호터널	2023-01-31 20:11:32	359부5134	10,300	김*향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
208	남산1호터널	2023-01-31 20:22:38	56무3721	10,300	김*흥	경기도 시흥시 배곧1로
209	남산1호터널	2023-01-31 20:40:15	394더3977	10,300	육*석	경기도 평택시 목천로17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	남산1호터널	2022-09-16 18:11:40	157허2660	10,300	(주)****스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65 (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1507동 1호
2	남산1호터널	2022-09-26 13:51:12	63호8231	10,300	김*곤	전북 군산시 하나운로 48 208동 1106호
3	남산3호터널	2022-09-29 11:46:42	125호1357	10,300	P*****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50 (더파크365) 405호
4	남산1호터널	2022-09-30 08:21:46	31저9003	10,300	(주)*****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57길 15 (신사동)
5	남산1호터널	2022-10-04 12:44:39	61하2250	10,300	김*나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173-88 603동 2801호 (마산동, 한강신도시동일스위트더파크뷰1단지)
6	남산3호터널	2022-10-12 13:26:16	106호2746	10,300	정*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 1009호
7	남산1호터널	2022-11-01 15:57:01	125호1115	10,300	양*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8길 47 (이도이동)
8	남산1호터널	2022-11-02 07:16:09	300우9322	10,300	(주)*화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장교동, 한화빌딩) 23층
9	남산1호터널	2022-11-03 17:46:52	167구4756	10,300	(주)*화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23층 (장교동, 한화빌딩)
10	남산1호터널	2022-11-07 12:15:05	125호4913	5,150	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11 407호
11	남산1호터널	2022-11-10 10:16:57	10호7465	10,300	이*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1777 1층
12	남산1호터널	2022-11-15 16:46:36	125호3420	10,300	(주)*****회	세종특별자치시 해밀3로 32 (해밀동, 해밀마을1단지) 205호
13	남산1호터널	2022-11-16 09:26:54	145허8474	10,300	전*주	경북 경주시 외동읍 신계입실길 39-7 (괘릉리)
14	남산1호터널	2022-11-16 11:48:05	36누1210	10,300	태*고(조*숙)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8
15	남산3호터널	2022-11-16 13:00:22	145허8474	10,300	전*주	경북 경주시 외동읍 신계입실길 39-7 (괘릉리)
16	남산1호터널	2022-11-16 17:59:26	59서8239	10,300	조*전	광주 동구 남문로753번길 20 (학동, 무등산아이파크) 101동 302호
17	남산1호터널	2022-11-17 07:04:33	53머4651	10,300	(주)****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9층
18	남산1호터널	2022-11-17 14:00:46	125호1019	10,300	강*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281 110동 602호
19	남산1호터널	2022-11-17 14:36:29	145허7063	10,300	안*성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125 (망월동) 102동 2003호
20	남산3호터널	2022-11-17 15:47:52	33하3297	10,300	이*현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67 (이지더원4단지아파트) 406동 1602호
21	남산3호터널	2022-11-17 19:34:50	169하1426	10,300	김*석	경기 부천시 소향로 203 비동 614
22	남산1호터널	2022-11-17 20:31:06	123보5483	10,300	한****(주)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장교동, 한화빌딩) 23, 24층
23	남산3호터널	2022-11-18 08:57:40	140하7837	10,300	다*찬(강*희)	서울 은평구 진흥로16길 7-9 (녹번동) 301호
24	남산1호터널	2022-11-18 12:13:31	370우7789	10,300	지*****드(이*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211 5403동 1504호
25	남산3호터널	2022-11-18 16:36:08	303오2963	10,300	김*훈(*락)	서울 광진구 동일로 178 1322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26	남산1호터널	2022-11-18 20:26:47	140하4590	10,300	리*****아(홍*갑)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32 (더샵센트럴파크1) 102동 4505호
27	남산1호터널	2022-11-21 07:43:40	169하5444	10,300	주*****색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343, 2층 남산동
28	남산1호터널	2022-11-21 15:54:40	54무7353	10,300	송*웅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7-11 1층 원플레이어
29	남산1호터널	2022-11-21 16:49:52	140호6308	10,300	주*****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16 (가산하우스디퍼스타) 1217호
30	남산1호터널	2022-11-21 19:22:45	169하5444	10,300	주*****색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343, 2층 남산동
31	남산1호터널	2022-11-22 10:48:10	157호9282	10,300	한*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6길 12 (양재동) 지하
32	남산1호터널	2022-11-22 12:40:00	179소5893	10,300	주*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수레실길 58-10 (능평리)
33	남산3호터널	2022-11-22 13:34:28	59서8239	10,300	조*전	광주 동구 남문로753번길 20 (학동, 무등산아이파크) 101동 302호
34	남산1호터널	2022-11-22 13:52:01	17두7021	10,300	(주)*****널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1120번길 33-1 (영남탑스빌아파트) 101동 302호
35	남산1호터널	2022-11-22 14:48:47	260주4108	10,300	법*****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49 (서초동, 우남빌딩) 12층
36	남산3호터널	2022-11-22 15:30:10	160호3755	10,300	임*준(사***향)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9-29 103동 103호
37	남산1호터널	2022-11-22 15:40:08	260주4108	10,300	법*****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49 (서초동, 우남빌딩) 12층
38	남산1호터널	2022-11-22 16:36:02	06두2512	10,300	최*진	경기 화성시 동탄숲속로 68 (능동, 동탄숲속마을자연앤데시앙아파트) 874동 2001호
39	남산1호터널	2022-11-22 16:45:43	154호8809	10,300	이*민	경기도 의정부시 송양로 45 811동 1201호
40	남산3호터널	2022-11-22 19:25:18	06두2512	10,300	최*진	경기 화성시 동탄숲속로 68 (능동, 동탄숲속마을자연앤데시앙아파트) 874동 2001호
41	남산1호터널	2022-11-22 20:07:49	122하3252	10,300	홍**자(박*관)	서울 은평구 진흥로5길 6-29 (역촌동) B동 202호
42	남산1호터널	2022-11-23 11:01:12	122호9984	10,300	이*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01 (야탑동, 장미마을)
43	남산1호터널	2022-11-23 13:45:08	361고7117	10,300	고*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11 C202동 931호
44	남산1호터널	2022-11-23 17:36:15	149호6918	10,300	주*****드	경기 포천시 동교로1길 37-2 사동 아동
45	남산3호터널	2022-11-23 18:14:40	361고7117	10,300	고*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11 C202동 931호
46	남산1호터널	2022-11-24 07:05:57	169하5444	10,300	주*****색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343, 2층 남산동
47	남산1호터널	2022-11-24 08:19:32	55소7262	10,300	팬*(곽*식)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175 101동 1108호
48	남산3호터널	2022-11-24 11:07:52	101하3195	10,300	이*성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검전말길 97
49	남산1호터널	2022-11-24 16:19:31	169하5444	10,300	주*****색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343, 2층 남산동
50	남산3호터널	2022-11-24 19:05:15	109호6865	10,300	김*안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87 317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51	남산1호터널	2022-11-25 11:39:15	373루3373	10,300	(주)*지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석정로 266-10
52	남산3호터널	2022-11-25 15:10:12	391마9762	10,300	장*혁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108 (방배동, 디오슈페리움2) 제비108호, 제비110호
53	남산1호터널	2022-11-25 17:04:12	25다4693	10,300	아***장(정*숙)	대구 북구 연암공원로 67 (산격동, 영광주택) 1동 302호
54	남산1호터널	2022-11-25 20:41:46	169허5444	10,300	주*****색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343, 2층 남산동
55	남산3호터널	2022-11-28 08:11:57	269소2498	10,300	(주)*****8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17길 15 쓰리에잇888
56	남산3호터널	2022-11-28 12:57:21	157허3766	10,300	박*영	서울 마포구 희우정로3길 7-10 (합정동) 402호
57	남산1호터널	2022-11-28 13:53:02	391부1800	10,300	김*웅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10 108동 2701호
58	남산1호터널	2022-11-28 14:44:54	167하8915	10,300	(주)****어	경기도 군포시 맑은내1길 83 (당정동) 2층
59	남산1호터널	2022-11-28 16:09:10	33호8164	10,300	김*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60, 104동 203호 (신봉동, 웰스톤 (신봉동, 웰스톤시티))
60	남산1호터널	2022-11-29 07:35:27	10주4605	10,300	쿠****짜	서울 용산구 신흥로 30-1 1층
61	남산1호터널	2022-11-29 13:38:33	29하1059	10,300	함*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552 (역삼동) 403호
62	남산1호터널	2022-11-30 12:53:45	122호3486	10,300	대****(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45 가동 1층
63	남산1호터널	2022-11-30 13:33:09	122호3486	10,300	대****(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45 가동 1층
64	남산1호터널	2022-11-30 15:12:26	171하1057	10,300	주*****오	서울 강남구 선릉로 747 (논현동) 지하1층
65	남산1호터널	2022-11-30 16:33:10	171하1057	10,300	주*****오	서울 강남구 선릉로 747 (논현동) 지하1층
66	남산1호터널	2022-12-02 15:16:26	260주4108	10,300	법*****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49 (서초동, 우남빌딩) 12층
67	남산1호터널	2022-12-02 16:03:32	260주4108	10,300	법*****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49 (서초동, 우남빌딩) 12층
68	남산3호터널	2022-12-02 19:01:33	167허7169	10,300	이*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40길 5, 2층(을지로 6가)
69	남산1호터널	2022-12-05 07:11:54	165호5873	10,300	김*민	서울 구로구 경인로20나길 46 해오름빌 오류동 203호
70	남산3호터널	2022-12-05 17:20:57	101하4255	10,300	최*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25길 36 (수유동, 바로세움) 302호
71	남산1호터널	2022-12-06 16:18:46	31하6146	10,300	추*웅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54-1
72	남산1호터널	2022-12-06 19:39:25	04호7061	10,300	윤*조	서울 강서구 강서로 18바길 19 동원 라테라스 302호
73	남산1호터널	2022-12-06 19:56:13	161하1249	10,300	이*영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4 (종림동, 브라운스톤서울) A동 514에이호
74	남산3호터널	2022-12-06 20:38:26	122호7072	10,300	주****츠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 99 (삼전동) 703호
75	남산1호터널	2022-12-07 09:43:40	172하3071	10,300	방*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66번길 14 438호
76	남산1호터널	2022-12-08 07:26:37	115호4578	10,300	건*영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연길 96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77	남산1호터널	2022-12-08 19:21:34	146호7033	10,300	K*****V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리1길 40 202호
78	남산1호터널	2022-12-08 20:20:29	68호8093	10,300	주*****션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54길 11-13 (신길동)
79	남산1호터널	2022-12-12 11:29:36	167하6727	10,300	강*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봉우재로 11(면목동)
80	남산1호터널	2022-12-12 14:15:58	21나8068	10,300	김*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64, 118-804 (개포동,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
81	남산1호터널	2022-12-13 10:26:33	153호7876	10,300	김*영	서울 관악구 신림로 44길 33
82	남산1호터널	2022-12-13 12:09:34	153호7876	10,300	김*영	서울 관악구 신림로 44길 33
83	남산3호터널	2022-12-14 19:47:29	152하5216	10,300	김*현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55 (미사강변 SK V1 center) 제지산614호
84	남산1호터널	2022-12-15 12:30:57	169호7904	10,300	주*****트	서울 강남구 학동로101길 26 (청담동) 211호
85	남산1호터널	2022-12-15 12:50:16	152하5819	10,300	정*훈	경기도 의정부시 송양로 94 (민락엘리트19단지) 1903동 2401호
86	남산3호터널	2022-12-15 16:19:42	194호6638	10,300	(주)***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55 (성북동)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1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1. 제 목 :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보
2. 공고기간 : 2023.07.20. ~ 2023.08.03.(15일간)
3.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신유* 등 2명(내역서 별첨)에 대한 지방세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
5.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02-2133-3492, 3495, 3467, 3475)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채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공시송달[2023년 7월]

연번	과세번호	세목명	주민/법인명	발송일자	주소	공시송달 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1	680 - 140004 - 202209 - 2 - 640 - 50000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유*	2023.06.12.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백양길 27 - **	폐문부재	2023.07.20.	24,764,180
2	680 - 104003 - 202008 - 1 - 640 - 002380	주민세 법인균등분	신유*	2023.06.12.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백양길 27 - **	폐문부재	2023.07.20.	51,500
3	680 - 140004 - 202209 - 2 - 640 - 500001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유*	2023.06.12.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백양길 27 - **	폐문부재	2023.07.20.	8,115,220
4	680 - 140003 - 202203 - 2 - 640 - 500016	법인지방소득세	신유*	2023.06.12.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백양길 27 - **	폐문부재	2023.07.20.	16,263,700
5	680 - 104102 - 202110 - 2 - 640 - 003760	주민세(사업소분)	신유*	2023.06.12.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백양길 27 - **	폐문부재	2023.07.20.	51,500
6	680 - 140003 - 202204 - 2 - 640 - 500024	법인지방소득세	신유*	2023.06.12.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백양길 27 - **	폐문부재	2023.07.20.	4,746,580
7	680 - 104102 - 202210 - 2 - 640 - 005708	주민세(사업소분)	신유*	2023.06.12.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백양길 27 - **	폐문부재	2023.07.20.	51,500
8	710 - 140004 - 202009 - 2 - 642 - 100164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김민*	2023.06.09.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190, ***호(학암동)	우편함수취	2023.07.20.	26,830
9	710 - 140004 - 202104 - 2 - 642 - 100150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김민*	2023.06.09.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190, ***호(학암동)	우편함수취	2023.07.20.	30,720
10	710 - 140004 - 202011 - 2 - 642 - 100420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김민*	2023.06.09.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190, ***호(학암동)	우편함수취	2023.07.20.	5,180
11	710 - 104003 - 202008 - 1 - 642 - 005390	주민세 법인균등분	김민*	2023.06.09.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190, ***호(학암동)	우편함수취	2023.07.20.	64,370
12	710 - 140004 - 202010 - 2 - 642 - 100143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김민*	2023.06.09.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190, ***호(학암동)	우편함수취	2023.07.20.	11,850
13	710 - 140004 - 202103 - 2 - 642 - 10001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김민*	2023.06.09.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190, ***호(학암동)	우편함수취	2023.07.20.	21,750
14	710 - 140003 - 202211 - 2 - 632 - 500001	법인지방소득세	김민*	2023.06.09.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190, ***호(학암동)	우편함수취	2023.07.20.	44,969,46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1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따라 납부최고서 등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1. 제 목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2. 공고기간 : 2023.07.20. ~ 2023.08.03.(15일간)
3.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이수* 등 2명(상세내역 별첨)에 대한 지방세 제2차납세의무 납부 최고
5.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02-2133-3492, 3495, 3467, 3475)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최고 공시송달[2023년 7월]

연번	과세번호	세무명	주인/법인명	발송일자	주소	공시송달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1	680 - 140003 - 201806 - 2 - 630 - 100029	법인지방소득세	이수*	2023.06.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308동 ***호 (신천동, 파크리오)	폐문부제	2023.07.20.	150,717,650
2	680 - 140004 - 201904 - 2 - 630 - 100266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이수*	2023.06.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308동 ***호 (신천동, 파크리오)	폐문부제	2023.07.20.	3,417,870
3	680 - 140003 - 201806 - 2 - 630 - 100029	법인지방소득세	이희*	2023.06.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308동 ***호 (신천동, 파크리오)	폐문부제	2023.07.20.	150,717,570
4	680 - 140004 - 201904 - 2 - 630 - 100266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이희*	2023.06.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308동 ***호 (신천동, 파크리오)	폐문부제	2023.07.20.	3,417,79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11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3839	23. 7. 14.	프로티엔에스 주식회사 최종락 110111-3066085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10길 14, 609,610호(성수동2가, 에이스하이엔드성수타워)
2	203840	23. 7. 14.	금창산업개발 주식회사 이시백 110111-3621673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 213-1, 3층(묵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8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118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1. 승인일자: 2023. 7. 17.
2.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주요내용

시 설 명 (사업시행자)	위 치	토지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연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장)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623,576	623,576	-	221,102.67	221,203.91	증) 101.24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02 - 2133 - 2015)
서초구 공원녹지과(02 - 2155 - 6880)
4. 열람기간: 시보게재 다음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게재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120호
종합공사사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3.7.20. ~ 2023.8.3.(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예강건설 산업주 (이영임)	건축공사업 04-562	영등포구 양평로22길 10 3층(양평동4가, 천희빌딩)	보증가능금액 실효 (2023.3.28.)	법 제10조	영업정지 5개월 (2023.8.4. ~ 2023.1.3.)	법 제83조 제3호
주이투릭스종합건 설 (박규리)	건축공사업 02-1576	영등포구 대림로 182, 202호(대림동, 남강빌딩)	보증가능금액 실효 (2023.3.31.)	법 제10조	영업정지 5개월 (2023.8.4. ~ 2023.1.3.)	법 제83조 제3호

2. 공고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9로 문의 바랍니다.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23-96호

도시계획시설(소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 - 116호(2004.04.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및 종로구고시 제2020 - 38호(2020.04.23.)로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3 - 66호(2023.05.25.)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부암1소공원의 도시계획시설(소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종로구공고 제2023 - 840호(2023.06.29.)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마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종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부암동 251 - 6 등 5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소공원)사업
- 2) 명 칭: 부암1소공원 조성사업
- 3) 사업내용: 공원 보상 및 조성

다. 사업면적: 5필지 661㎡

라. 사업시행자 및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

바 고시방법 : 종로구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관계 도서: 불임참조

아. 공사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종로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녹지과(☎02 - 2148 - 2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부암1소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기정	부암동 251-6	대지	188	188	오○○		부암동 251-6				
	변경	부암동 251-6	대지	188	188	오○○		송파구 **대로 1*1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압류	
2		부암동 251-10	대지	205	205	박○○		종로구 창*문로 *길 1				
3	기정	부암동 251-11	대지	155	155	나○○		부암동 251-11	이○○	부암동 251-11	근저당권	
	변경	부암동 251-11	대지	155	155	나○○		경기도 *리시 *골로*번길 3*	서초구	서초구 남부순환로 2548	압류	
									국민건강 보험공단	구리시 갈매중앙로86	압류	
									국	세종시 국세청로 8-14	압류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압류	
									이○○	고양시 일산*구 **대로 6*2	근저당권	
4		부암동 251-12	대지	106	106	양○○		전라남도 *양군 *양읍 연*길 *-12	○○ 새마을금고	영등포구 신*로 9*	근저당권	
5		부암동 251-42	대지	7	7	문○○		서대문구 **시장길 6*-1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부암1소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전체 면적	편입 면적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기정	-	-	-	-	-	-	-	-				
	변경	부암동 251-6	수목	개나리 향나무	H1.0*W0.6 H7.0*R28	15㎡ 1주	오○○		송파구 **대로 1*18				
2	기정	부암동 251-10	일반건축물	세멘 벽돌조, 연와조	65.39	65.39	박○○		부암동 251-10				
	변경	부암동 251-10	일반건축물	세멘 벽돌조, 연와조	77	77	박○○		종로구 창*문로*길 1				
			창고	-	8	8							
			수목	단풍나무	H8.0* R18+R28	1주							
				수수꽃다리	H4.0*R8								
3	기정	-	-	-	-	-	-	-	-				
	변경	부암동 251-11	수목	잣나무	H9.0*R16	1주	4○○		경기도 *리시 *골로*번길 *0				
				잣나무	H11*R32	1주							
				아까시나무	H8.0*R10	3주							
					H8.0*R12	1주							
					H8.0*R14	1주							
					H8.0*R20	1주							
4	기정	부암동 251-12	일반건축물	세멘 부록조	41.32	41.32	양○○		부암동 251-12				
	변경	부암동 251-12	일반건축물	세멘 부록조	45	45	양○○		전라남도 *양군 *양읍 언*길 *. *2	○○ 새마을금 고	영등포구 신*로 9*	근저당권	
			창고	-	5	5							
			가건물	-	40	40							

위 치 도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부암1소공원) 조성사업



사 업 평 면 도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부암1소공원) 조성사업



◆ 마포구고시 제2023-13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186호(2021.10.07.)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120호(2022.06.23.)로 실시계획 고시된 마포구 합정동 85-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에 대하여,
2. 도시계획선 분할에 따른 면적 정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하여 고시하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5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7월 20일

마 포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1.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경미한 사항)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공공지	합정동 85-9 일대	42.0	감)4.0	38.0	마포구고시 제2021-186호 (2021.10.07.)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변경 사유

시설명	내용	변경사유
공공공지	· 면적: 42㎡ → 38㎡(감 4㎡, 9.52%)	· 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정정)사항 반영

다. 관련도면: 별첨

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가) 변경내용: 대지면적 $42\text{m}^2 \rightarrow 38\text{m}^2$ (감 4m^2)
 - 나) 변경사유: 측량결과 반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동작구고시 제2023-8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3 - 4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동 작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동작하이팰리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사업계획(경미한)변경신고 수리일: 2023. 7. 7.

2. 사업주체(변경없음)

가. 성명 : 동작하이팰리스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장현섭

나.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15, 상정빌딩 4층(상도1동 261)

※ 공동사업주체 : 현대건설(주) 운영준(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3. 사업시행자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3 - 42번지 일원

나. 면적 및 규모

구분	용도	규 모			대지면적 (㎡)	건축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조경면적 (㎡)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용검사 예정일)
		층수 (지상/지하)	동	세대수							
기정	아파트	35/5	4	608	13,843.00	90,579.42	27.36	396.63	4,595.48	541,343,887	2026.02
변경						90,423.11					

4. 사업시행기간 : 2020.12. ~ 2026.02.

5.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없음)

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2)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변경	①	공공청사	상도동 23-42번지 일원	면적(㎡)		1,166.37	-	1,166.37	동작구고 시 제2020 - 130호	-
				연면적	계	2,254.33	-	2,254.33		
					지상2층	217.33	-	217.33		
					지상1층	1,152.14	-	1,152.14		
					지하1층	691.92	-	691.92		
					지하2층	84.54	-	84.54		
					지하3층	108.40	-	108.40		
				높이		지하3~1층 지상1~2층	-	지하3~1층 지상1~2층		

주) 입체적 결정하는 공공청사 면적은 수평투영 면적이며, 공공청사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이고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순부담률 기준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주) 공공청사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관할 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시 확정하여 준공 시 기부채납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다. 비주거시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도면 표시	운영기준	계획내용
①	-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여 지상1층과 2층은 비주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지상층 주택면적 합계의 비율이 90%미만으로 지상층에 건축하고 주택외의 시설은 지상층에 다음기준에 따라 건축을 권장한다. - 지상층 연면적 10%이상의 비주거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자치구청장이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입지여건을 고려 지하층에 설치 가능하다. 단, 지상층 비주거시설이 입지하는 건물의 지상1층과 2층에 비주거 설치를 권장한다.	- 지상층 연면적 : 54,904.99㎡ - 법정 비주거시설 면적 : 5,490.49㎡이상 - 비주거시설 확보면적 : 7,125.06㎡ - 지상층 비주거시설 : 1,369.47㎡ - 지하층 비주거시설 : 5,755.59㎡ ∴ 5,490.49㎡(10.0%) < 7,125.06㎡(12.98%)

주) 계획내용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이며, 향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운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라.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계획 : 변경없음

도면표시	운영기준	계획내용
①	-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하는 의무 용적률을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로 공급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45㎡ 이하 : 60%~80% 전용면적 45㎡ 초과 60㎡ 이하 : 20%~40%	- 전용면적 45㎡ 이하 - 72.5%(131세대) - 전용면적 45㎡ 초과 60㎡ 이하 - 27.5%(51세대)

주) 계획내용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이며, 향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운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마. 하용용적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필수항목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 할 수 있을 것 -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무량판구조) 리모델링이 가능한 비내력벽체 부분설치	건축위원회 결정 사항
	커뮤니티 지원 시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최소 450㎡)이상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 : 53,535.52㎡ - 법정 커뮤니티면적 : 1,606.06㎡이상 - 커뮤니티 확보면적 : 1,607.74㎡ ∴ 1,606.06㎡(3.0%) < 1,607.74㎡(3.0%)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에너지 효율 건축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86점 이상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인증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친환경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주택사업은 최우수 등급, 기타 건축주택사업은 우수등급 이상의 친환경 예비인증	우수 등급 이상 인증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신기 타 항 목	신재생 에너지 사용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은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을 일반건축물은 3%이상을 설치	표준건축공사비의 1%이상 설치	1개 항목 선택 적용
	공공 기여 방안	공공기여방안을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설계에 반영한 경우로서 위원회(또는 건축위원회)에서 공공에 기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역사 문화 보존 계획	사업대상지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문화 보전이 필요한 지구 등에 포함된 경우 보존 계획을 준수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에 반영한 경우	-	

주) 계획내용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이며, 향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운영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공공시설 부담계획 : 변경없음

구분		합계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제3종일반 주거지역	비고	
면적		14,443.0㎡	12,474.0㎡	1,969.0㎡	국공유지 131㎡ 제외	
공공시설부담율		-	25%	15%		
공공시설의무면적		3,413.9㎡	3,118.5㎡	295.4㎡		
공공시설 확보면적	도로	600.00㎡	558.00㎡	42.00㎡	12.64%	
	공공청사	1,225.12㎡	398.65㎡	826.47㎡		
	소계	1,825.12㎡	956.65㎡	868.47㎡		
세대수 및 면적		구분	합계	60㎡ 이하	60㎡~85㎡	대지면적(㎡)
		합계(세대)	608 (100.0%)	441 (72.5%)	167 (27.5%)	12,336.03 (100.0%)
		분양(세대)	426 (100.0%)	259 (60.8%)	167 (39.2%)	9,460.01 (76.7%)
		공공임대주택 (세대)	182 (100.0%)	182 (100.0%)	-	2,876.02 (23.3%)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 공공시설 부담률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의 1/2을 부담률로 갈음할 수 있음				전체 기부채납 면적 : 1,825.12㎡ (순부담율 : 12.64%) + 2,876.02㎡ (공공임대주택 : 19.91) = 4,701.14㎡ (계획 : 32.55%)
		◦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 순부담 확보면적 :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 이상 ⇒ 3,413.9㎡의 1/2 = 1,706.9㎡(11.82%) ≤ 1,825.12㎡(12.64%) - 공공임대주택 확보면적 : 공공시설 부담율의 1/2 갈음 ⇒ 확보면적 : 2,876.02㎡(19.91%) 확보 ◦ 본 사업대상지는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이상으로 도로(600㎡), 공공청사 건축물기부채납(1,225.12㎡) 등의 순부담 면적(1,825.12㎡)을 설치하였으며, ◦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은 무상양여한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2,876.02㎡)를 확보함으로써 공공시설 의무 면적 이상으로 계획하였음				

사. 상한용적률 산정 : 변경없음

구분	산출결과	산출내역	비고
공공시설 제공면적	1,825.12㎡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956.65㎡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68.47㎡	
가중치	1.016	=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439.52% / 432.78% = 1.016	
α 토지	0.070	= 공공시설 제공부지 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 = 945.69㎡ / 13,497.31㎡ = 0.070	
α 건축물	0.065	= 공공시설 제공 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 = 879.43㎡ / 13,497.31㎡ = 0.065	
기준용적률	206.96%	= [(2종일반주거(7층)×200%)+(3종일반주거×250%)] / 구역면적 = [(11,916.0㎡×200%)+(1,927.0㎡×250%)]/13,843.0㎡=206.96%	
허용용적률	400.0%	= [(2종일반주거(7층)×430%)+(3종일반주거×450%)] / 구역면적 = [(11,916.0㎡×430%)+(1,927.0㎡×450%)]/13,843.0㎡=432.78% ⇒ 400.0% 이하 적용	
상한용적률	400.0%	= 432.78%×(1+1.3×1.016×0.070+0.7×0.065)=492.56% ⇒ 400% 이하 적용	
설계용적률	396.63%	-	
공공임대 주택용적률	94.83%	= (설계용적률 - 기준용적률) × 1/2 이상 = (396.63% - 206.96%) × 1/2 = 94.83% 이상	

주) 용적률 및 순부담률 산정시 국공유지 131㎡ 제외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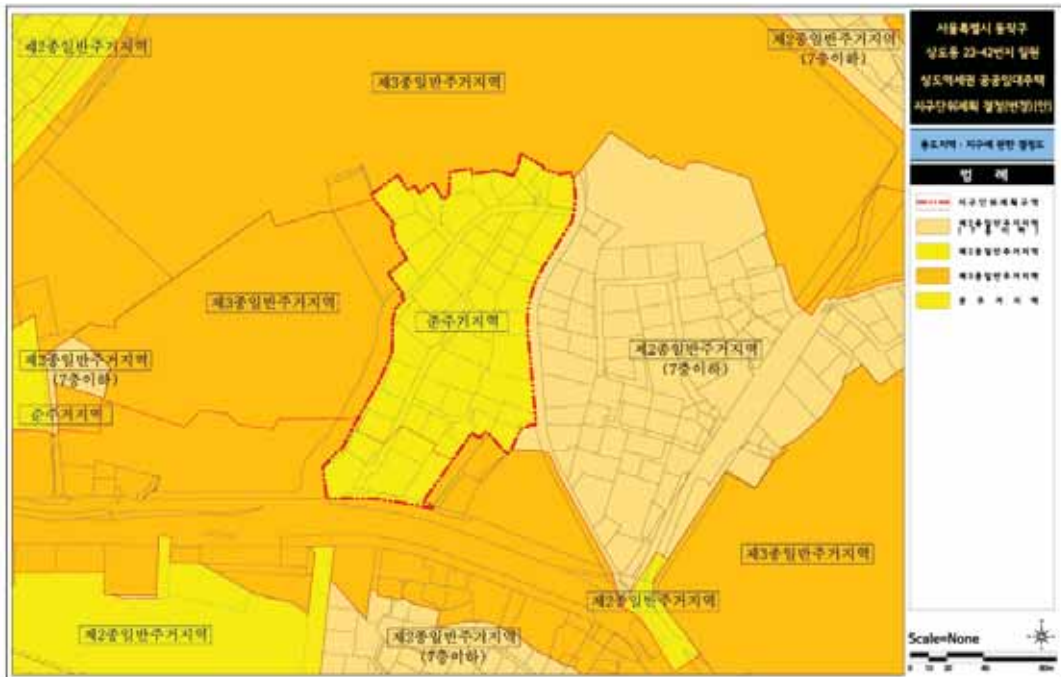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나. 차량 동선 계획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세부시설계획 - 지하2층)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세부시설계획 - 지하2층)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세부시설계획 - 지하1층)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세부시설계획 - 지하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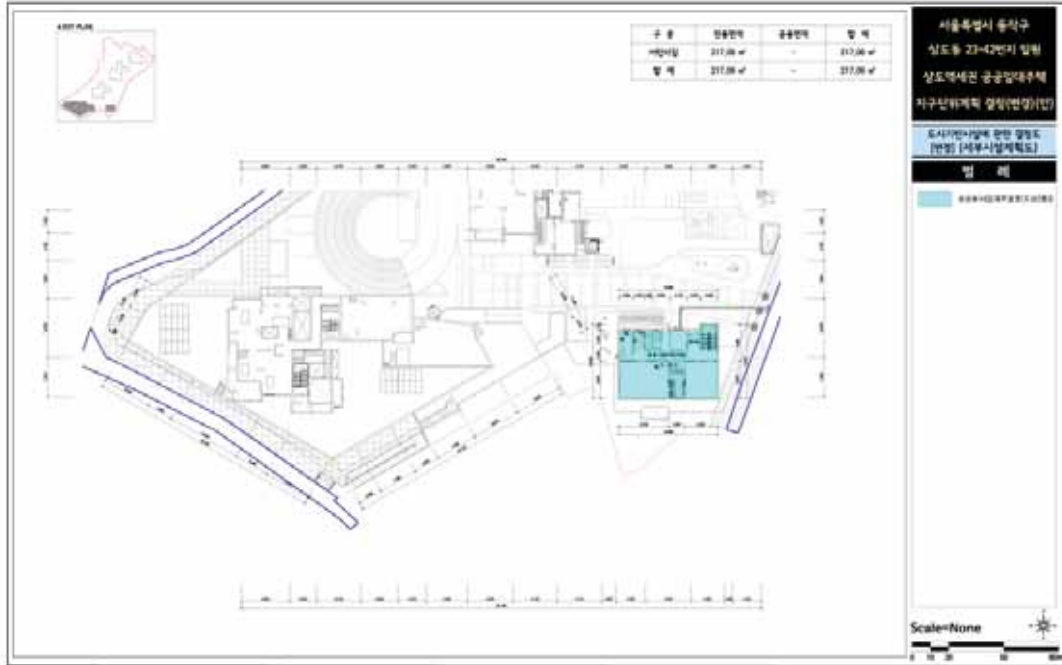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세부시설계획 - 지상1층)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세부시설계획 - 지상1층)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세부시설계획 - 지상2층)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세부시설계획 - 지상2층)



◆ 서초구고시 제2023-98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5호(2022.06.23.)로 결정 고시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 초 구 청 장

1. 변경 취지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2.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가. 건축물 배치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구역명	위 치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변경 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서초동 1693-3	건축물 배치 계획	건축한계선 3m	건축한계선 2m

4. 관계도면 : 붙임 도면(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도) 참고

※ 아래의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92)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서초동 1693 - 3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강동구고시 제2023-116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교통부고시 제151호(1991. 4. 1.)로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 - 226호(1993. 7.24.)로 변경 결정, 강동구고시 제2022 - 210호(2022.12.22.)로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 - 151호(2023. 4.27.)로 변경 결정된 5호선 둔촌동역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 - 1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 2) 사업의 명칭: 둔촌동역 출입구 2개소 및 환기구 5개소 이설공사

다. 사업내용

- 1) 사업규모: 633.4m²
- 2) 사업내용: 양재대로 확장에 따른 기존 보도에 설치된 출입구 및 환기구 이설
- 3) 사업대상
 - 철도(본선)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철도	도시철도 5호선 (길동~마천)	강동구 길동 379 일대	송파구 마천동 226 일대	7,500	-	1991. 4. 1. (건고 제151호)	2023. 4. 27. (서울시고시 제151호)

- 철도(정거장)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철도	도시철도 5호선 (둔촌동정거장)	강동구 둔촌동 416일대	6,349	1991. 4. 1. (건고 제151호)	2023. 4. 27. (서울시고시 제151호)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사업시행자: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승환)
-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오스카상가 3층 316호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4. 10.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 및 지목, 지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근저당권 등 말소 후 강동구에 무상으로 귀속

별첨

토 지 조 서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0 - 1	대지	112,101.1	1,044.7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촉정비사업조합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316호				
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450 - 39	도로	8,529.1	535.6	강동구					
3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450 - 40	도로	3,910.7	793.3	서울특별시					
4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0 - 1	도로	3,935.0	235.9	서울특별시					
5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0 - 8	도로	951.9	509.7	서울특별시					
6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9 - 7	도로	3,902.5	3,229.8	서울특별시					
7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29 - 7	도로	9.0	0	서울특별시					

구 공 고

◆ 동대문구공고 제2023-88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75길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3년 7월 20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결정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조성하고자 도시 계획시설(도로)를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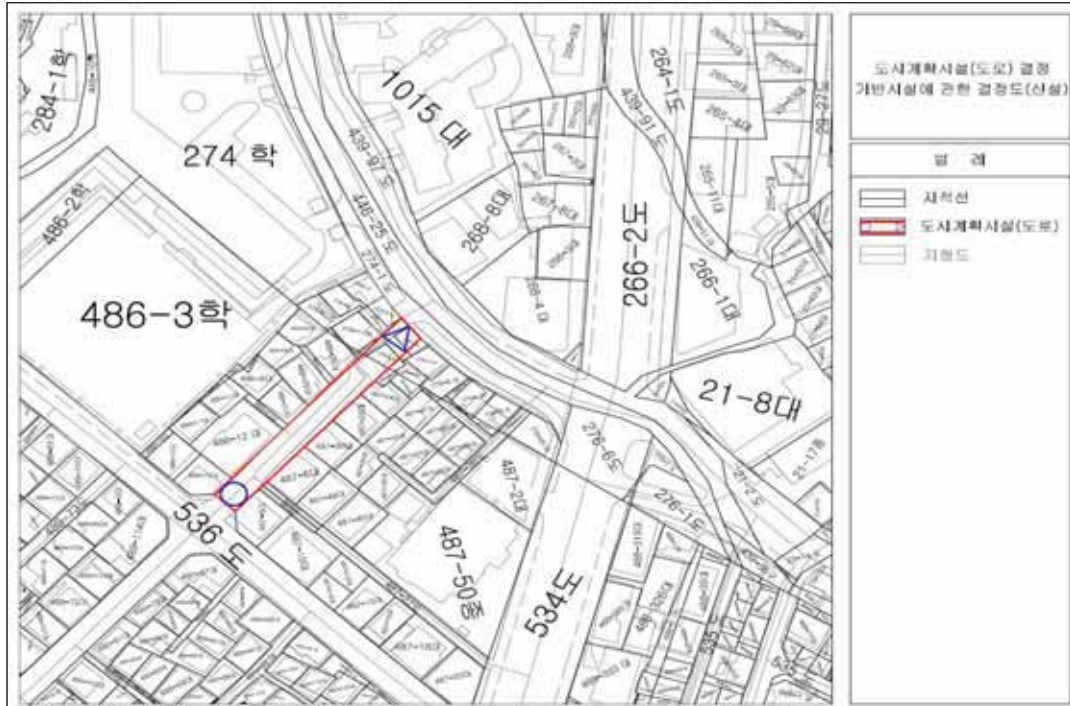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	8	국지 도로	75	답십리동 487-9	답십리동 276-13	일반 도로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내용	사 유
-	-	신설	인근 주민들의 보행 안전사고 방지 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안)



4.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동대문구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2127-5668)

동대문구 도시건설국 도로과(☎2127-4814)

다.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 동대문구공고 제2023-888호

**도시관리계획[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KT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 - 272호(2023.06.29.)로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2022 - 416호(2022.04.07.)로 열람공고한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KT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06.26. 개최된 2023년 제1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 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0일
동 대 문 구 청 장

I.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II.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02 - 2127 - 4947)

I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④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2.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
 - 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1) 왕산로 전면부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 2) 미주상가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 3) 병원이적지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4) KT부지 특별계획구역(변경)

구분		계획지침	
		기정	변경
건축선	건축 한계선	• 홍릉로 : 4m 이상 • 인접대지(청량리8구역) : 3m 이상	• 홍릉로 : 4m 이상
건축물 용도	불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생활시설 중 총포판 매소, 장의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따돌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	좌 등
	완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바닥면적 제한 없음)	-

5) 청량리8구역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6) 왕산로 남측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7) 미주아파트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나.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변경없음)

3. 특별계획(가능)구역 인센티브(변경없음)

⑤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IV. KT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

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④	KT부지 특별계획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368번지	3,748.7	-	3,748.7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생략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생략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생략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 생략
 - 나.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 생략
 - 다.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	동대문구 청량리동 368번지	884.3㎡	• 토지 기부채납 : 청량리동 368번지 일부(884.3㎡) • 활용방안 - 현재 토지주와 동대문구 협약을 통해 “공공청사(도로관리시설물 창고)”로 계획하여 무상 임시사용 - 향후 토지소유권 및 대토권리를 동대문구에 이전하고 - 청량리제8구역 재개발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정비기반시설(택지2)과 통합계획(변경)함으로써 규모있는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 - 공공청사에 창업·산업 지원센터 등 R&D관련 지원시설 도입 예정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공공기여 시설 : 시설의 세부용도, 위치, 규모 등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 관리 시스템」에 따라 서울시 통합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라.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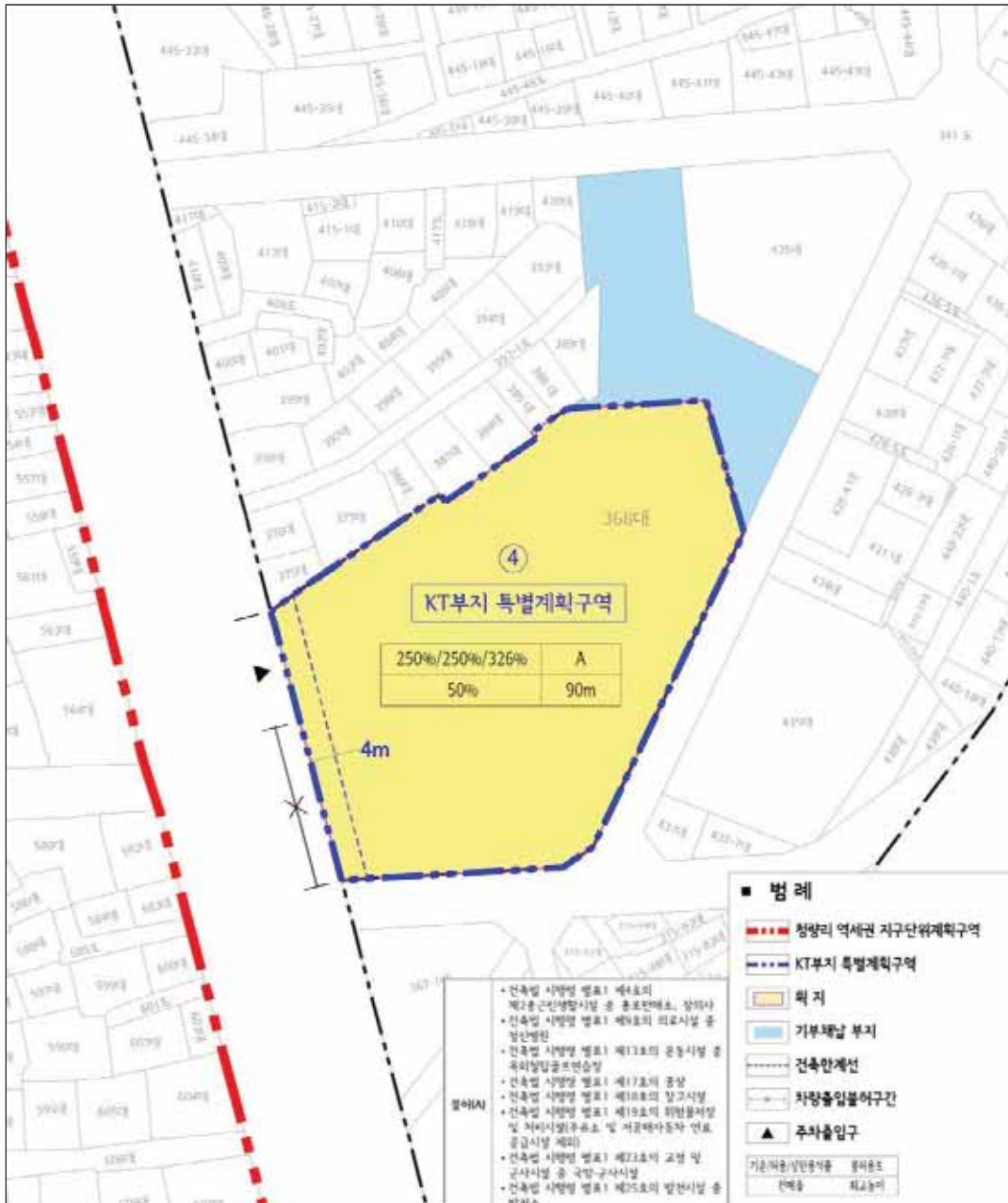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신설	동대문구 청량리동 368번지 KT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우선공급	• 홍릉연구단지, 바이오·의료 등 R&D 산업지역종사자를 위한 주거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및 신고시 동대문구와 협의하여 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종사자에게 우선공급

④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 생략

⑤ 특별계획구역 결정도면 : 생략

V. 열람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끝.

<특별계획구역 종합결정(안)도>



◆ 도봉구공고 제2023-987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381-1호에 위치한 서울도솔학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0일

도 봉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안)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학교	특수학교	도봉구 도봉동 381-1	-	증)6,966	6,966	-	-

2)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 조서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수)	건축 제한 완화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35 이하	-	110 이하	4층 이하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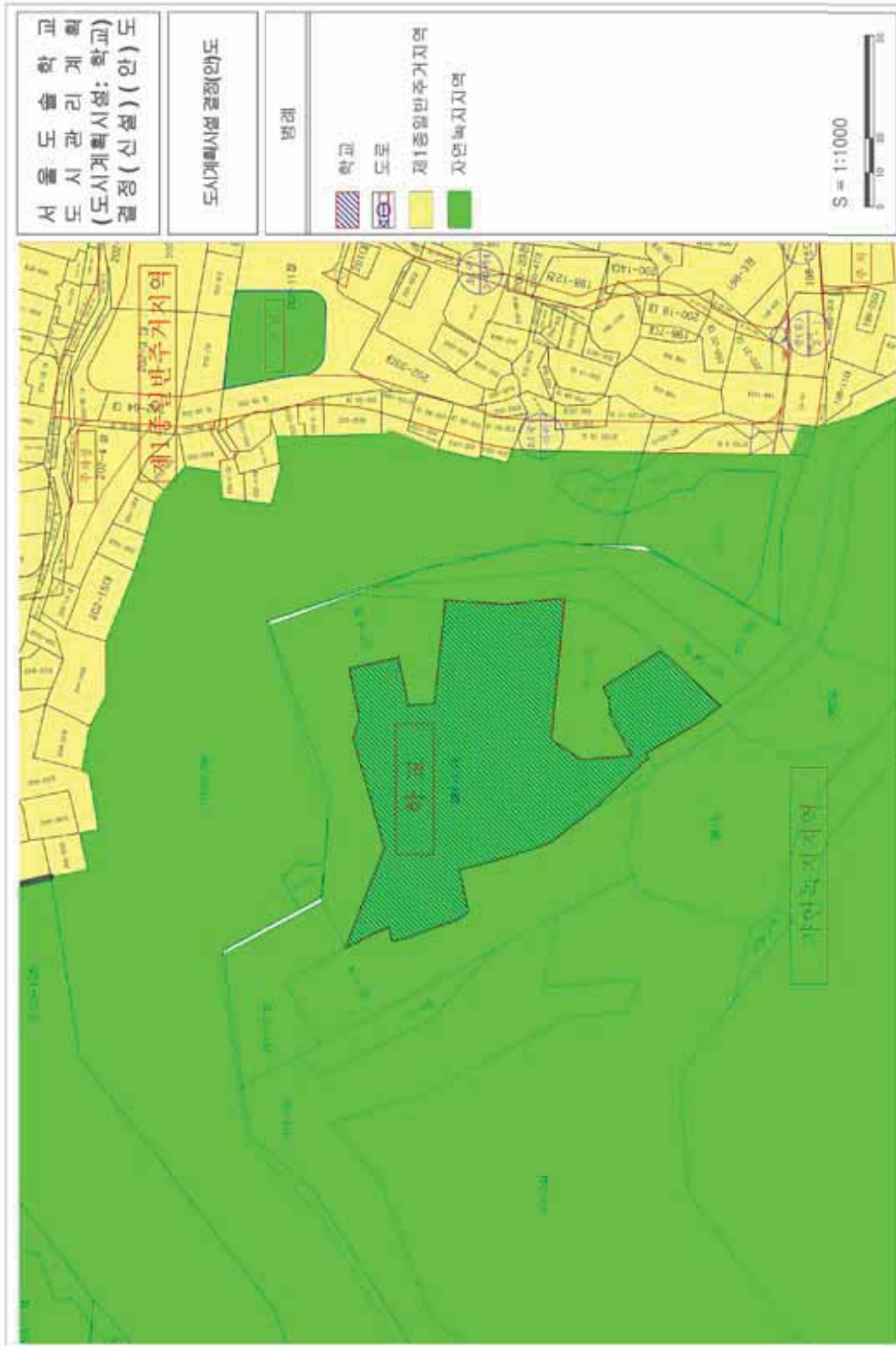
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학교	○ 특수학교신설 A = 6,966㎡ (증)6,966㎡)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학교시설의 노후화가 가속되어 학생의 안전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2091 - 3554)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마포구공고 제2023-1123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 - 186호(2021.10.07.)로 결정(최초)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 - 120호(2022.06.23.)로 실시계획 고시되어,
2. 도시계획선 분할에 따른 면적 정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과(☎02 - 3153 - 935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7월 20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85 - 9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 2) 명칭: 합정동 85 - 9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조성 사업

다. 공사완료 내역

- 1) 사업시행 면적: 38m²
- 2) 규모: 무허가건축물 보상 및 해체(51m²)
- 3) 사업기간: 2022. 6. 23.~2023. 6. 22.
- 4) 공사완료일: 2023. 6. 2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2)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 관계도서: 생략

◆ 양천구공고 제2023-1251호

도시계획시설(온수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재열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465(1971.08.06.)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 - 254(2022.06.16.)호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온수근린공원)의 조성계획(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6조 및 제16조의2 규정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하였으나,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0일

양 천 구 청 장

가. 입안취지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완료지에 대한 생활밀착형 공원조성으로, 새로운 산지형 공원의 모델 구축 및 고품격의 공원서비스를 제공코자함.

나.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재열람공고 사유 :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원안가결)에 따른 권고사항 반영

라. 열람장소 : 양천구청 공원녹지과(☎02-2620-3574)

마. 열람내용 : 도시계획시설(온수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안)

- 시 설 명 : 온수근린공원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7동 350 - 31번지 일대

부지면적(㎡)		시설면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증·감
427,993.00	427,993.00	65,876.75	70,669.63	증) 4,792.88

- 주요(변경) 내용

· 기반시설 : 0㎡ → 3,983.44㎡ (증 3,983.44㎡)

· 조경시설 : 0㎡ → 650.72㎡ (증 650.72㎡)

· 관리시설 : 0㎡ → 158.72㎡ (증 158.72㎡)

· 녹지 및 기타 : 28,155.50㎡ → 23,362.62㎡ (감 4,792.88㎡)

바. 관련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동작구공고 제2023-11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9 - 74호(2019.9.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0 - 32호(2020.4.2.)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 - 24호(2021.2.15.)로 인가된 동작구 상도동 산65 - 74번지 일대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정비2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정비2과(☎820 - 1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0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정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65 - 7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사업
- 사 업 명 칭 : 동작구 상도동 산65 - 74번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중로3 - 37, 소로1 - 1, 소로2 - 2, 소로3 - 4, 소로2 - A호선 및 공공청사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중로3 - 37호선 : L=188.0m, B=12.0~16.0m, A=3,434.0m²
- 소로1 - 1호선 : L=288.0m, B=10.0m, A=3,093.0m²
- 소로2 - 2호선 : L=233.0m, B=8.0m, A=2,460.0m²
- 소로3 - 4호선 : L= 41.0m, B=6.0~8.0m, A=43.0m²
- 소로2 - A호선 : L= 56.0m, B=8.0m, A=431.0m²
- 공공청사 : A=1,221.0m²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법 인 명 칭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법인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 대표자성명 : 기 정 - 이 창 하 외1인
변 경 - 이 중 근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준공 예정일 : 2024년 2월 29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불임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 사업시행자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업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공 부 면 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합계	중로 3-37	소로 1-1	소로 2-2	소로 3-4	소로 2-A	공공 청사						
1	동작구 상도동	210-333	구	116	16	-	16	-	-	-	-	동작구					
2	“	210-488	구	100	100	-	100	-	-	-	-	동작구					
3	“	210-489	도	87	87	-	87	-	-	-	-	동작구					
4	“	210-490	도	8	8	-	8	-	-	-	-	동작구					
5	“	210-491	도	205	205	-	205	-	-	-	-	동작구					
6	“	210-492	도	24	24	-	24	-	-	-	-	동작구					
7	“	210-493	도	23	23	-	23	-	-	-	-	동작구					
8	“	210-494	도	13	13	-	13	-	-	-	-	동작구					
9	“	210-425	대	70	70	-	70	-	-	-	-	기획재정부					
10	“	227-25	대	67	66	-	66	-	-	-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11	“	236-40	도	2	2	1	-	-	-	-	1	동작구					
12	“	236-41	도	52	52	52	-	-	-	-	-	동작구					
13	“	236-42	도	148	148	148	-	-	-	-	-	동작구					
14	“	237-2	대	18	18	18	-	-	-	-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공 면 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합계	중로 3-37	소로 1-1	소로 2-2	소로 3-4	소로 2-A	공공 청사						
15	“	237-3	대	66	66	66	-	-	-	-	-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16	“	237-4	대	3	3	3	-	-	-	-	-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17	“	237-45	대	20	20	20	-	-	-	-	-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18	“	237-44	대	11	11	11	-	-	-	-	-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19	“	238-20	대	106	74		-	-	-	74	-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20	“	산65-49	임	8,783	1,022	666	-	-	-	356	-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21	“	산65-52	임	2,479	503	-	503	-	-	-	-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22	“	산65-53	임	694	420	-	420	-	-	-	-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23	“	산65-74	임	18,971	1,830	274	1,556	-	-	-	-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24	“	산65-113	임	3,523	1,278	24	-	-	43	1	1,210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25	“	산65-272	도	10	10	-	-	10	-	-	-	동작구					
26	“	산65-171	임	752	744	744	-	-	-	-	-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27	“	산65-172	임	536	336	336	-	-	-	-	-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28	동작구 상도동	산65-173	임	305	305	305	-	-	-	-	-	서울특별시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공 면 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합계	중로 3-37	소로 1-1	소로 2-2	소로 3-4	소로 2-A	공공 청사						
29	“	산65-265	임	13	13	13	-	-	-	-	서울특별시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30	“	산65-266	임	13	13	13	-	-	-	-	서울특별시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31	“	산65-267	임	69	69	69	-	-	-	-	서울특별시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32	“	산65-262	임	27	27	27	-	-	-	-	서울특별시						
33	“	산65-263	임	382	382	382	-	-	-	-	서울특별시						
34	“	산65-264	임	139	139	137	2	-	-	-	서울특별시						
35	“	산65-177	임	116	116	108.9	-	-	-	-	7.1	서울특별시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36	“	산65-268	임	1	1	0.2	-	-	-	-	0.8	서울특별시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37	“	산65-269	임	2	2	1.9	-	-	-	-	0.1	서울특별시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38	“	산65-270	임	16	16	14	-	-	-	-	2	서울특별시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일련 번호	소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공 면 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합계	중로 3-37	소로 1-1	소로 2-2	소로 3-4	소로 2-A	공공 청사						
39	“	산65-178	임	437	437	-	-	437	-	-	-	동작구					
40	“	산65-258	임	102	102	-	-	102	-	-	-	동작구					
41	“	산65-259	임	3	3	-	-	3	-	-	-	동작구					
42	“	산65-181	임	92	92	-	-	92	-	-	-	동작구					
43	“	산65-182	임	184	184	-	-	184	-	-	-	서울특별시					
44	“	산65-271	임	78	78	-	-	78	-	-	-	서울특별시					
45	“	산65-189	임	6,810	1,403	-	-	1,403	-	-	-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46	“	산65-190	임	1,243	151	-	-	151	-	-	-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 서초구공고 제2023-1625호

**도시관리계획(서리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A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96호(2021.6.24.)로 결정된 친환경 문화업무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서리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A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서초동 1005-6번지 일원	165,511.4	-	165,511.4	-

2)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도시기반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6)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A	서초구 서초동 1005-6번지 일원	97,275.2	-	97,275.2	-

7)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나. 특별계획구역A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2.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과(☎02 - 2155 - 6791),
서초3동 주민센터(02 - 2155 - 7465)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로 같음)
5. 기타사항 : 위 사항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절차보완 사항으로 일부 결정조서 내용(구역계, 용적률, 건축계획 등)은 변경할 수 없음.
6.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방문, Fax 2155 - 6819, 이메일 mh2012@seocho.go.kr)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23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경찰청장(생활안전과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내자동, 서울경찰청)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61-1번지
 - 면 적 : (영구) 2.67㎡, (일시) 31.9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한강경찰대 이촌센터 노후 하수관로 개선공사`에 따른 하수관로 매설
 - 내 역 : 하수관로(L= 53.3m, D= 50mm) 매설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23.07.11. ~ 2028.07.10. (2023.07.11. ~ 2023.08.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236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일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산구 일원
(서강대교 북단, 마포대교 북단, 동작대교 북단 인근)
 - 면 적 : (일시) 420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중앙~서빙고 열수송관공사 사전 지반조사
 - 내 역 : 일시 굴착 및 복구 1식
 - 부지정지(L=7.0*5.0m) 및 보링(12공)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23.08.20.~2023.10.10.(점용기간 동일)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